

교 육 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3. 12.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 사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유 아 교 육	3
● 유치원 정교사 1급자격 연수를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	5
● 사립유치원 임용보고의 어려움	5
● 국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지원	5
● 유아학비 지원 방식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감독	6
● 유아학비 신청오류에 따른 소급지원 여부	6
● 병설유치원 세자녀 우선제도 없어졌나요?	7
●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증 발급	7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관련 결석일 산정방식 개선	8
●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에 따른 교육경력 산출	8
● 유치원선생님 급여 정부 보조금 문의	9
● 사립유치원 방학 기간	10
● 해외 출국(장기)시 유아학비 지원 중지 여부	10
● 공립유치원 반일반 종일반 공식 명칭	10
● 유치원 입학가능 나이(만3세)	11
● 유치원에 대한 가압류	11
●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 유치원 취학 및 학비 지원	12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공립유치원 포함여부	12
● 누리과정 보조금 문의	13
● 유치원 시설의 건축물 용도 표기	13
● 종일제 유아학비 지원 조건	13

■ 특수 교육	15
● 초등학교 취학유예 이후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 요청	17
● 지체장애학생 맞춤형 책상 등 특수교육 지원 요구	17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특수교육보조원 참여 가능 여부	18
●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실시 의무화 요청	19
● 재활복지 교사들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20
● 농학교의 교재에 대한 질의	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청원	21
■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2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25
● 학생 봉사활동	26
● 의무교육과 전학 문제	26
● 학교회계 운영 수익 범위 해석	27
● 초등학생 귀국자 학년 배정	27
●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 유예	28
● 해외 체류시 취학통지 처리	28
● 학생기록부 기재 자격증 종류	29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의 모호성	29
● 학생 전출입에 따른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30
●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기재 범위	31
● 학교 내 영어 국제부 개설 가능 문의	32
●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 기피시 소집 승인 신청 시점	32
● 학교규칙 개정 절차	33
● 한국 국제학교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33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34
● 학교 명칭 사용 제한	35
● 귀국학생 편입학	36
●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자격	37

● NEIS-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	37
● 특성화학교와 혁신학교 선정 기준	38
● 사립학교 설립 주체	39
● 초등학생 미인정 유학자 학적 관리	39
● 대학 진학 예체능 실기고사 준비	40
● 외국학교 제출용 전학증명서 공증	41
●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41
● 미인정 유학생의 학기 중 재입학	42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교원연구비	42
● 해외에서 전학시 초등학교 입학	43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해석에 대한 질의	44
● 재취학 학생의 해당학년 수업일수	44
● 자율형공립고 예산 집행	45
● 학적부(현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기간 변경	46
● 귀국학생 중학교 배정	46
● 자율형공립고 추천전형방식에서 경쟁전형으로 훈령 변경 요구	47
● 전수학교 졸업자 학력인정	48
● 취학통지서 배부 방식 개선 요청	48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관리 강화 요청	49
● 국적 회복 관련 고등학교 인적사항 변경	49
● 학교생활기록부 교외상 기재	50
● 교육청의 학교 배정 절차 및 원서 서식	51
● 인문계/실업계 고교 평준화	51
● 청각장애 학생 듣기시험 평가방법	52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52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53
●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신청 시 증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53
●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행되는 학교수업 문제	54
● 선행학습규제법 발의 관련 보충사항	55

● 신고포상금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55
● 공직선거법 위반자 학교운영위원 자격 여부 해석	56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적용시 대안 마련	57
● 학원 지도·점검 요청	57
● 아파트 입주인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친 공동과외 운영 가능 여부	58
● 초등학교 돌봄교실 야간보육 대상자를 3~4학년으로 확대 요청	59
●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시정 필요	59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문의	60
● 초등학교 방과후 외부강사	60
● 토요일 학교 지도교사 지도비와 식대 중복 지급 문제	61
● 방과후 학교 수강료 일반수용비 전용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61
● 초등돌봄강사 자격에 대하여	62
● 유학생의 방과후 어학 봉사활동 가능 여부	63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관련	63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통보	64
● 학교 행정실 직원의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가능 여부	64
● 초·중·고 교육비 지원관련	65
●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수를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	65
●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운영체제 지원 확장 요구	66
● 인턴교사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좌 강사 활용	67
● 절대평가제 시행 예고	67
●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대학입시 대책 강구 필요	67
●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서류	68
● 영어회화전문강사 재임용 절차	69
●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 경력인정	69
●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대학원 실습 면제	70
● 영어회화전문강사 출산휴가	70
● 제주도 여행 입찰시 지역제안 및 제안서 제출방식 이의	71
● 학생 봉사활동 개선	72

● 학생 봉사활동 근거	72
●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교내취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73
● 그룹 스터디 사업의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절차	74
● 전문상담교사의 방과후교육활동 참여 가능 여부	74
● 방과후강사 수당(봉급) 책정 절차	75
● 방과후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	75
● 토요일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통학버스 지원 필요	76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 이용 확대	76
● 학교운동부지도자 신분	77
● 방과후학교 지도 수당	78
● 초등학생 체력검사제도의 개선 요청	78
● 운동부 지도자 초과근무수당	79
● 농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문의	80
● 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81
● 학교 체육수업	81
● 골프 운동부 육성 중학교 명단	82
● 예술체육 중점학교 지원 과목	83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화	83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명칭	84
● 스포츠강사 4대 보험 납부	85
● 중학교 토요일 스포츠강사 모집 및 선발	85
● 학교 스포츠강사 퇴직금	86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86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88
● 현직 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전직	88
●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	89
●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보전수당(교원연구비) 지급 건의	9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90
●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사의 채용 자격 기준 건의	91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인증 여부 및 인증 상담사 자격증 문의	91
●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종결 사안	92
● 학교폭력 가해자의 강제 전학	92
● 전문상담교사 전직에 있어서 보건교사 제외의 불합리성	9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용 중 ‘따돌림’ 해석	9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이의 신청	94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95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불응 행정심판이의신청	95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절차	96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강제 전학	97
● 전국 학교 복도, 교실에 CCTV 설치 건의	98
●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질의	99
● 다문화가족 지원	99
● 학생생활지도규정 아래 사항에 대한 법리검토 요청	100
● 이중언어 교육정책	101
●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10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사용	102
● 다문화 사업내용 및 예산	102
● 검정고시 문제 출제 기준	103
● 고등학교입학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휴일시행	104
● 대입검정고시(고등학교졸업인정시험)합격자 동등학력 인정범위	105
● 학생생활규정 개정	105
●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시기	106
● 교복 자율화 제안	106
● 검정고시 응시 제한	107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심사 기준개선 요청	107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108
● 교육지원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선	108
●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요구	109

● 교육비지원 선정 시 조부모 포함 개선	110
●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학교명칭 사용	110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111
●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물의 위법 및 위험성 여부	112
● 대안학교 재학 중 의무교육 재취학	113
●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신청 및 운영비 지원	113

■ 학생 건강 안전 115

● 학생정서 행동발달 검사	117
● 학교 환기설비 설치	117
● 학교안전사고 공제회 청구	118
●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미지급 이의	119
● 급식 중 치아과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요구	119
● 교육환경평가 평가서 재검토 대상 여부	121
● 학교급식 가정통신문 포함 내용	121
● 학교급식비 목적외 사용 금지 항목 이의	121
● 급식비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여부	122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적용 대상 여부	123
● 현장체험학습 시 단체여행자보험 가입의 중복 여부	1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구상금	124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125
● 학교급식법 상 건강진단증 유효기간	127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127
● 교육환경평가서 대상 및 수립시기	128
● 학교급식	129
● 학교교사 예상 일조량 조사 대상	130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131
●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학교	131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신청 소멸시효	132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시기	133
● 학교설립예정지(학교용지)가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계획’ 수립대상이 되는지?	134
● 학교의사제도 취지	134
● 학교 세면대에 사용하는 물은 음용수인가요?	135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상 소독제	135
● 절대정화구역 범위	136
● 건강증진모델학교	136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137
● 예방접종과 초등학교 취학	137
● 학교보건법에 의한 소음기준	138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139
●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에서 “급식종사자”의 범위	139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자격	140
● 상대정화구역 심의 대상	140
●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보건교사의 주사행위	141
●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142

■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143

● 교사 타시도 진출 방안	145
● 협동조합 관련 검직허가 문의	145
● 공무원 국제결혼시 증빙서류 제출	146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인적 적용범위	147
● 학교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근무	148
● 기간제교사 임용 기간	148
● 시간강사(계약제교원) 채용시 임용 상한연령	149
● 임용고시의 장애인 편의제공 절차 개선	149
● 육아휴직 중 계절제 대학원 수강 인정 여부	150
● 공익근무요원 근무경력과 교원 임용	150
● 교육공무원 검직금지 등에 관한 공무원복무규정 준수	151

● 교원 겸직허가	152
● 교사 출퇴근 복무 관리	153
● 2013년도 임용시험 응시 자격	154
● 해외 파견 고용휴직	154
● 교사의 유학휴직	155
● 공무원 징계 종류	156
● 교육공무원 임용 규칙 개정	156
● 교육 공무원 연가	157
● 교육공무원의 해외여행	157
● 동반휴직 가능 기간	158
● 공기업 지방이전(혁신도시)에 따른 배우자(교원) 전보	159
● 연가일수 계산	159
● 교육공무원의 겸임 및 타 직으로의 이동 가능 여부 질의	160
● 교장 공모제	161
● 육아휴직 중 교육대학원 수강 인정 여부	162
● 동반휴직 신청 기간	162
● 수석교사의 교육전문직 전직 가부	163
● 국립학교 교사의 외국 교육기관 파견교류 가능 여부	164
●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및 제도	165
● 육아휴직중 야간대학원 수강 및 학위 인정 여부	165
● 수석교사제 지원 결격사유	166
● 교원의 연가 허용 범위	167
●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168
● 유학휴직 자격 조건, 육아휴직 중 어학연수 가능 여부	168
● 퇴직 사학 공무원 기간제 근무시 급여	169
● 교원 퇴직시 승진 제도	170
● 국립교사 차별하는 승진가산점 및 전문직 응시 제한 시정 요구	170
● 주간대학원 학위 취득 인정	171
● 교육경력 산입	171

● 교육경력 평정의 수정 요청	172
● 병가와 연속된 연가 휴가처리 방법	172
● 수석교사제 연구활동비 지급	173
●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부당 제한	174
● 기간제 교사 근무 연한	174
● 퇴직수당 지급 여부	175
● 사립학교 개방형 교장의 중임횟수 제한	175
● 교육공무원 징계	176
● 교감 직무대리 발령시 절차	176
●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재직시 연금 지급 이의	177
● 올림픽 대회 출전시 교원 복무처리	177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78
●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 가능 여부	179
● 유치원 교사(2급)의 전문상담교사 임용 지원 가능 여부	179
● 병가일수 산정 방법	180
●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퇴임후 중임 기간	180
● 현직 교원의 고용휴직 가능 여부	181
● 학교장의 임무와 책임	181
● 교육공무원의 해외영주권 취득	182
● 병역복무 휴직기간중의 승진 가산점 처리	183
● 외국계 회사 취업 배우자의 경우 동반휴직 가능 여부	183
● 현직 교사의 타 학교 출강 가능 여부	184
● 교직 인적성 검사 실시 횟수 축소 요청	184
●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 문의	185
● 셋째 아이 육아휴직자 호봉 승급	185
● 2급 정교사 자격증	186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186
● 상담 2급정교사 자격의 전문상담교사 자격 전환 요청	187
●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신청 반려	188

● 2013년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기준의 불합리 시정 요망	188
● 실기교사 자격증	189
● 기간제 교원의 성과금	189
● 교육공무원 해임취소 결정에 따른 보수 지급	190
● 학령년수 교사 호봉 인정 여부	191
●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증 취득	192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192
● 유치원 교사 가산호봉 인정기준	193
● 교원 각종수당 지급 대상	194
● 교사 육아휴직시 수당 지급	194
● 농사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195
● 사립학교 교원 급여	195
● 교직 적인성 검사	196
●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196
●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197
●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사망조위금 지급	197
● 초등교사 이중학력 호봉 인정	198
● 현직 교원의 부전공 학점 이수	198
● 사범대학생 교원자격증 취득	199
● 주말, 공휴일 초과근무 인정	200
● 외국인학교 교직원 법 적용 범위	200
●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 발급	201
● 교원의 방학중 시간외 수당 지급	201
● 사립학교 조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대상 여부	202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의 자가연수 및 보전수당 지급	202
●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2급정교사 자격부여 기준	203
● 교원임용고시 장애인 구분 모집	203
● 실기교사 교원 자격	204
●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 산정시 교원 임용전 경력 반영	205

● 계약직 근로자의 사학연금 가입후 퇴직금 지급	205
● 공무원 가족수당	206
● 국내 교원 임용시 해외 교사자격증(PGCE) 인정 여부	206
● 교육대학교 성비 비율 지정 선발	207
● 연금수급자 자격변동 지체의 경우 권리 청구	207
● 교육공무원 호봉 재확정 및 정정	208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208
● 유치원 교육실습	209
● 교감, 교장 자격	209
● 산전후 출산휴가 사용 교원의 성과급 불이익	210
● 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	210
● 위탁형 방과후학교 강사 호봉산정	211
●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상통직 경력의 교원 경력 환산율	212
●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자	213
● 교육공무원 군필자 차별 대우	213
● 상담교사 자격 취득	214
● 학교현장실습 공결 인정	215
● 비사범계 학과 명칭	215
● 유치원 교원 자격증 발급	215
● 교원 양성자격	216
● 기간제 교사의 사학연금 가입 대상 여부	216
● 준거집단 관련 교사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	217
●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명칭 업체로 인한 피해	217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부담금 납부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	218
● 공적연금 중복 혜택 가능 여부	218
● 교원 성과상여금 등급기준 이의	219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220
●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시 교육경력 기준	220
● 기간제교원 대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221

● 호봉 산정시 산업기능요원 군경력 인정	221
● 사학연금 재직기간 초과 시점부터 정년퇴임까지의 퇴직금 지급	222
● 퇴직 교사 정부포상	223
● 교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223
● 교사자격증 단기 취득 연수과정	223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법 개정	224
●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신청기한 시효제도의 불합리성	225
● 교육대학원 영양교사(2급) 취득 학점인정	225
● 학점은행제 이수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226
● 전공교과 자격 변경시 산업체 경력 인정	226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재발급	227
● 신규 교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실경력 인정 범위	227
● 사학연금 재직기간 산정시 군경력 반영	227
●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228
● 교직이수제 폐지	229
● 교생실습 면제	229

■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231
● 과학영재학교 전형일자	233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33
●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234
● 스토리텔링형 수학교과서 자료	235
● 초등 국정 교사용지도서 PDF 자료 배포	235
● 고등학교 교육내용 난이도 조절 필요	236
● 고교 사회탐구 과목 편성 운영	236
● 다양한 사회탐구 과목 편성 운영 필요	237
● 개정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	238
●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의 형평성	238
● 교육과정 계열변경시 중복 이수	239

● 집중이수제에 따른 대책 요청	239
● 상담 교과목 중고등학교 개설 필요	240
●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41
● 2009 개정 교육과정 학년군의 수업 시수	241
● 스마트 교육 진행 과정	242
● 역사교육 강화 및 중국 동북공정 대응 방안	242
●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다양화에 따른 문제	243
● 교과서 저작권 관련	243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e-교과서 필요	244
● 에듀넷과 e교과서에 관하여	244
● 교과용도서와 저작자와 발행사가 동일하면 안 되는지요?	245
● 교육과정 교과서 민원 제기 사이트	246
● 고등학교 교과서	247
● 가정학습 학생에 대한 교과서 지원	247
● 2013 개정 교과서 사용 불편	248
●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사용 문의	248
●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도서 신청	249
● e교과서 활용	249
● 초·중·고 교과서 용지 관련	250
● 인정도서 편찬 시 수당(개고료) 지급 문의	250
● 교과서 검수 제도 문의	251
● 개고료 지급 기준	252
● 교과서, 자습서, 문제지 발간 자격	253

■ 대 학 입 시	255
● 대학교 이중학적 인정	257
● 대학 입학전형 문의	257
● 농어촌특별전형 응시자격 변경	258
● 장애인 혜택	258

● 수능시험에서 수험생 소유 샤프펜 사용 건의	259
● 장애인에게 주는 국가고시 시간 연장 혜택	259
● 외국 고교 졸업 후 대입자격 및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 가능 여부	260
●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전형	261
● 시각장애 수험생 수능 시험 편의 제공	261
● 주소 동일한 고교졸업생도 교육청에서 수능원서 접수 요청	262
● 학교장 외 외부기관 주최 공모전 수상시 대학입시 반영	263
● 외국 체류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동등 자격 인정	263
● 해외 유학 학생의 대학입학 자격	264
● 입학사정관 지원자격 및 양성연수 이수	265
●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 지원 자격	266
● 2016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자격	266
●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지원 자격	267
● 수능시험 범위 표준 지침	267
● 특성화고교졸업자 재직자특별전형 재직 증명	268

■ 교 육 시 설 269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271
● 전국 학교 운동장에 교직원 주차 금지 요청	271
● 대학 학교기업 운영	272
● 학교 부지내 학생·학부모 숙소 신축 가능 여부	272
● 사립학교 시설사업시 건설업체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가능 여부	273
● 대학교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274
● 개인 안전 장구류 지급	275
● 대학내 건물에 학생 휴게공간 설치	275
● 운동장 휴일 개방 기준	275
● 학교시설의 소방시설 및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 준법 내진설계 적용	276
● 학교 화장실 신축 BTL 사업 관련	277
● 부설 주차장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여부	277

● 대학교 교지내 도입 가능 시설	278
● 교육연구시설의 부분용도 변경	278
● 교사확보율 산정시 주차장 등 포함 여부	279
● 강의동 건물 지하주차장의 교사확보율 포함 면적 규모	280
● 특수학교 건축물 증축시 도시계획시설 처리 절차	281
●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학교)결정 적용 여부	281
● 커피전문점의 부대시설 및 후생복리시설 포함 여부	282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부대시설 범위	282
●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	283
● 학교시설축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84
● 공립고 신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85
●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관련	286
●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	287
● 대학 교지 범위	287
● 학생복지 주택에 대한 정의	288
● 교지내 교사 시설 인정 여부	289
● 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 교사 및 교지면적 산출	289

■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291
● 교장 임용 관련 질의	293
● 평생교육사 취득 제도에 대한 의견	293
● 사회교육시설 운영업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94
● 학원법의 진학지도상담(입시컨설팅)의 규율 범위	294
● E2비자 영어 원어민강사의 과외활동 문제	295
● 사회교육원(학점은행제) 학생 신분	295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간편화	296
●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297
●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의 요건	297
● 대학교 시설 대관	298

● 이미용에 관한 개인과의 가능 여부	299
● 미신고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실시 가능 여부	299
● 유아의 개인과의 교습대상 여부	300
● 학원법에 저촉 여부	300
● 학원 지점에서의 모의고사비 징수 가능 여부	301
● 평생교육시설 설치	302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302
● 지자체 설립, 민간업체 위탁운영 중인 평생학습 시설의 학원시설 전환 등록	303
● 학점인정 기간 전 교육실적 학점 인정 여부	304
● 학위취득 기준	305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	305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성격	306
● 학원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학원등록	306
● 화상강의 형태 원격학원 등록 가능 여부	307
● 학점은행제 학생의 국제대회 출전 대상자 포함 여부	307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용 여부 확인	308
●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08
● 미국 국적인의 사단법인 대표자 가능 여부	309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309
● 교습비 인하금액 변경 등록	310
● 평생교육사 취득 제도	310
●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제한	311
● 사회복지관에서의 저소득층 학생 학습지원	311
● 학점은행제 수강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	312
●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	31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유아 대상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313
● 방학 중 대학교 저소득층 캠프 운영	314
● 수강료 환불금액 기준	315
● 학원의 시설 기준	315

● 보육실습 대체 과목	316
● 오픈마켓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학원 등록 대상 여부	317
● 자격시험 응시료 과다 및 부당 요구	317
● 미용 민간 자격시험	318
●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등록	318
● 위탁 검정업무 대행 민간자격의 등록대상 여부	319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319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	320
● 진로진학상담교사 전환시 자격 제한의 부당	321
●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	322
● 직업위탁교육 관계법령 등	322
●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연수 신청자격	323
●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격	323
● 진로교육 지원 체계	324
● 진로진학교사 자질	324
●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	325
● 마이스터고 특별전형자격 요건변경	326
● 직업학교 위탁교육 포기 근거	326
● 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사업	327
●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요청	327
●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	328
● 특성화고 취업졸업생의 사이버대 진학시 취업, 진학통계 병행 산정 건의	329
●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초과조무인력 양성 반대	329
● 직업기초능력평가 제도 이의	330
● 대학입시 취업자전형 확대 필요	331
● 대학입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331
● 마이스터고 예산 지원 방법	332
● 전문계고등학교 교명 변경	333

■ 국 제 교 육	335
● 인정유학 처리에 따른 학적 관리	337
● 외국법인의 대학교 및 대학원대학교 설립가능 여부 문의	338
● 외국인학교 입학시 제출 서류	338
● 외국인학교학생 학력인정에 관하여	339
● F4 비자 유학생 장학금	340
● 해외 대학 장학금 문의	340
● 교환학생 수를 알고 싶습니다.	341
● 인정유학 6개월 기간 관련	341
● 고등학교	342
● 재외 한국학교 명칭에 대한 질의	342
● 한국학교 전입생 학적 관련 문의	343
● 한국어 교원 파견	343
● 재외 한국학교 채용 응모시 유사 자격의 지원 가능 여부	344
● 재외 한국학교 특수아 입학 허가	344
● 해외 거주 주재원자녀의 일시귀국시 학교수업 가능 여부	345
● 재외 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346
 ■ 교육청 및 지방교육	347
● 근속승진 요건	349
● 부부공무원 인사교류	349
● 육아휴직 요건	350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350
● 호봉확정시 유사경력 인정	351
● 학교외 기관 소속 조리사(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351
● 지방공무원 연수휴직 대상 기관	352
● 지자체 일반직과 교육자치단체(교육청) 일반직 간 전출입 가능 여부	353
●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353
● 계약직공무원 연봉 수시 조정	354

● 휴무일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병급 지급	355
● 업무대행수당 지급 요건	355
● 상시학습 인정 기준	356
● 공무원노조 전입	356
●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357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여부 및 전환 시기	357
● 휴직중인 자 징계에 따른 인사 처리	358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58
● 임대주택사업시 학교용지부담금 혜택	359
● 도시형생활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359
● 초등학교 학군 배정	360
● 폐교재산 대부 허용사업 범위	360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361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362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363
● 재개발구역내 학교용지부담금	363
● 학교용지 설치 기준과 폐지 기준	364
● 공공기관에 학교 포함 여부	364
● 폐교재산활용 촉진법상 교육용시설 종류	365
● 폐교재산 대부기간	365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366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해석	367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367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기준일	36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해석	368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주체	369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370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37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371

● 학교용지 확보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372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여부	372
● 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인근학교 증축 비용 부담	373
● 학교 교실증축 기부금 납부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여부	374
● 폐지학교 대부자의 권리	375

■ 교육정보 및 통계 **377**

● 나이스 접속	379
● 나이스 접속 어려움	380
● VMS 봉사활동 실적 NEIS 전산입력에 따른 불편	380
● NEIS에 입력된 개인정보 변경	381
● NEIS 대국민서비스 프로그램	381
● 학교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 문제	382
● 개인정보 보호	382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383
● 학교운영위원회 고유업무영역내 전산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청구	384
● [증명서자동발급기] 주민번호 입력 방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384
●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요청	385
● 대학정보공시자료 활용	386
● 사이버대학 설립 취지, 현황, 방향성	386
● 사이버대학 공무원전형 추천 절차	387
● 시간제 등록 보육실습	387
● 사이버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388
● 학과 통폐합 관련 학칙 개정	388
●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인터넷 강의 활성화	389
● ebsi 인터넷 강의 다운로드 불편	389
● 사이버 대학원 박사과정 인허가	390
● ebs로 인한 교재 출판의 어려움	391

■ 대학 및 대학원	393
● 사립대학 교원임면 문의	395
● 대우교수의 법적 조항과 합법성	395
● 사립대학 교원임면 문의	396
● 사립대학 총장 임용	396
● 국립대학교 교수의 겸직수당 지급 가능 여부	397
● 대학 교원의 종류 및 임면	397
● 교수회 성격	398
● 대학 교원의 인사관리	398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399
● 교육공무원 조교의 야간수업보조 근무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399
● 대학 교원 특별채용	400
● 교육공무원의 휴직, 연구년, 해외연수 파견 기간 중 직무종사 가능 여부	401
● 징계의결 요구 요건	401
● 본인의 전공과 다른 대학원의 전공교수로 소속변경 발령	402
● 〈교육공무원법〉 휴직 관련 해석	40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조항 관련	403
● 대학교 야간건축공학과 및 기타학과 야간대학 개설 요청	404
●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가능 여부	404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부속병원의 법적기준 마련 요청	405
●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간	406
● 서울대학교 법인화 목적	406
● 대학 교원의 상통직 경력	407
● 교육공무원 호봉 재확정 상통직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407
● 일반직전환 인사 관련 및 교육공무원 유급휴직 경력 인정	408
● 4년제 대학교 교수 임용 학력 기준	408
● 전공전환에 관한 질의	409
● 대학의 학과개설 및 운영	409
● 대학 교원 졸업 학부 연한 문제	410

● 간호교육인증평가 항목에 비정년전임교수 반영 이의	410
● 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수의 정년트랙 전환	412
●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방법	413
●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평생교육원 시간강사 경력)	413
● 간호교육인증평가 시 전임교원 기준	413
● 교원확보율 포함 전임교원 기준	414
● 대학교 교직원의 범위	415
●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경력 인정	415
● 학과 개편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	416
● 공과 대학 공학인증	416
●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교원 해석	417
● 대학 정원 조정	418
● 사립대학 총장 임용	418
● 대학교 학칙 관련 교육부 권한	419
● 학교 폐쇄 관련 질문	419
● 학점 인정	420
● 편입학 모집 규모 축소	421
● 대학의 성적처리 권한 소재	422
● 신입생 학생회비 납부	422
● 편입학 규모 축소	423
● 학위 및 성적증명서 인증	423
● 약대 6년제 과정 도입 목적	424
● 부당한 교수업적평가규정	425
● 대학 정규학기 최소 수업일수 문의	425
● 호봉제 공무원의 성과급제 공무원 전환	426
● 근속가봉 경력의 신임교원 초임호봉 확정	427
● 외국대학 졸업 학력 인정	427
● 조기졸업관련 학칙의 해석	428
● 학교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의 구별	429

● 사립대학 기능직 직원 대우 수준	429
● 학교법인 개방 이사 선임 절차	430
● 학교법인 교육용 재산의 사용	430
● 사립학교 정관 변경	431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PF)	431
● 재단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등록	432
● 산학협력단 회계	433
●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권	433
● 대학교 토지 기부채납 절차	434
● 대학교 부지에 학교의 부대시설로 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	435
● 외상매출채권 발행시 관할청 허가 여부	435
● 대학설립계획서 제출시 대학의 교지 소유권 확보 여부	436
● 해외 의과대학과 공동 국내교육법인 설립	436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437
● 사립대학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437
● 교비회계로 지어진 건물(어린이집) 운영	439
● 사립대학 건축공사 계약 방법	439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상 “법정부담경비” 의미	440
● 학교법인 설립 임원 정관 기록 범위	440
● 학교법인의 의료기 리스 차입시 관할청 허가	441
● 대학법인의 임원(이사) 자격기준	441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상 “법정부담경비” 범위	442
● 부속병원 차입금 반환시 회계 처리	443
● 부속병원 설치 지역 제한	443
●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44
● 사립대학 분식회계 처벌 규정	444
● 교육용 토지의 수익용 재전환 후 기부채납 가능 여부	445
●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결의	445
● 소송에 따른 교원인건비 등 교비회계 처리	446

● 대학평의회 심의 및 자문 사항	446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중화 현상	447
● 대학원 학위 취득 방법	448
●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반영 요소	448
● 학사학위 취득 인정 여부	449
● 대학졸업자 동등 자격 인정 기준	449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지원 자격	450
● 기초수급자의 대학원 진학	450
● 대학원 이중 학적	451
● 로스쿨 등록금	451
● 전임교원의 타고 겸임교원 임용 가능 여부	452
● 계절학기 이수를 통한 졸업 가능 여부	453
● 의학대학 편입 자격	453
● 로스쿨 학사 엄정화 제도 폐지 요청	454
● 대학원 종류 구분	454
● 복수학위 학생의 학적 관리	455
●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 조건	455
● 산학협동과정 학사 운영 방법	456
● 대학원 재입학 여석 판단 기준	456
●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 자격	457
● 석박통합과정 학위 인정	457
● 사립대학내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절차	458
● 한의과와 한의과전문대학원 차이	459
● 학사학위 없이 외국 박사학위 취득시 인정 여부	459
●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460
● 외국인 학적 관리 자격 기준	461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간의 소속 변경 가능 여부	461
● 로스쿨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462
● 대학원 응시 자격 충족 여부	462

● 일반대학교에서 사이버강좌로 대학원학위 수여 가능 여부	463
● 의무전문석사학위로 박사 과정 지원 가능 여부	464
● 대학 및 대학원 동시 진학 가능 여부	464
● mba 학위 취득	465
● 지원자격 및 학력 허위 기재 판단	465
● 의학전문대 폐지 관련	466
● 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용 자격 요건	467
●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요청	467
● 전문대학원 체제 관련 법령	468
● 국립대학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	469
● 글로벌 닥터 펠로우십 제도 개선요청	469
● 2013학년도 대학 평가지표 계산식 문의	470
●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중 ‘총장직선제’ 문의	470

■ 전 문 대 학	473
● 초임호봉 책정 - 학력과 상통직 경력 산정	475
● 전문대학 교과목 이수단위	475
● 계열 변경 가능 여부	476
● 정원 조정 통보	476
● 대학 교원의 대기발령	477
● 질병휴학 처리 가능 여부	477
● 사립학교 일반직원 자격 제한	478
● 사립대학 조교의 사학연금 가입대상 여부	479
● 학교법인 이사 자격	480
●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시 학력 인정	480
● 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와 산업체위탁과정 개설 제한	481
● 대학 학과장 교체	482
● 직장인 학생의 출석 가능 여부	483
● 한국폴리텍대학의 소관 부처	483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 연한	484
● 초빙교수 재임용	484
● 대학 교원 자격 기준	485
● 졸업 대학의 보육교사 실습기록 확인	485
● 학교법인 정관 개정	486
● 호봉 재획정 적용 규정	487
●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지원 자격	488
● 폐과 교원 신분 정리	488
● 대학 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가능 여부	489
● 전문대학 학과장의 업무 범위와 관리 의무	489
● 대학 전임교원의 겸직	490
● 편입학	490
● 계약당사자에 대한 질의	490
● 전문대학 산업체 입학서류 중 위탁교육계약서 필요 여부	491
● 사립대학 교수 해임 절차	492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493

●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반환	495
● 학자금 상환	495
● 국가장학금 소득 근거 문의	496
● 차별적인 등록금 면제	496
● 학자금 대출	497
●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안내 소홀	497
●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 변경	498
●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장애인)	499
● 계절학기 수업료의 등록금 포함 여부	499
● 전문대학 학기 중 취업시 등록금 납입액	500
● 수업료 반환 기준일자	500
●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시기	501

● 로스쿨 특별전형 장학금	501
●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	501
● 대학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기준	502
● 장학금 자격 상실에 따른 구제 절차	503
● 신청학점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감면요구	503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자격 기준	504
● 교육대학원 신설과정 평균 등록금 책정	505
● 의대생, 약대생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	505
● 해외 유학생 장학금	506
●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506
● 입학시 장학금 규정 적용 시효	507
● 대학교 입학금 사용용도	507
● 대학교 수강학점과 등록금 금액 책정	508
●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	509
● 대학생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 마련 필요	509
● 학자금 대출금액 감면 요청	510

■ 산학협력 및 취업 지원	513
● LINC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5
●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515
● 국공립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회계 처리	516
●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 산정 기준	516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인정 기준	517
●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입 회계 처리	517
● 국립대 기금교수 수당 제한	518
● 대학운영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 인정 기준	518
● 사립대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519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520
● 산학협력단의 캠프 진행 가능 여부	521

● 연구관련 개인카드 사용시 회계 처리	521
● 특허 출원 비용, 특허 소유권	522
●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522
● 계약학과 개설과목 수강 관련	523
● 계약학과 설치	523
● 선취업 후진학제도 정보	524
● 학교기업 설치 및 인허가	525
● 사범대학 취업률 지표 이의	526
● 계약학과 운영	527
● 산업체 소유시설에서의 계약학과 수업 진행 가능 여부	527
● 학교기업 수익 장학금 지급 및 폐업시 신고 절차	528
●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휴학생 문제	529
●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연구보고서의 경우 무상으로 볼 수 있는지?	529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규정 소급적용 효력	530
● 연구윤리 분쟁시 중재기관	531
● 세계적 학술지 논문 투고 지원	531
● 인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요청	531
● 연구윤리 징계사유의 시효	532
● 연구부정행위 시효기간 문의	532
● 대학교 도서관 활용	533
● 타 단과대학 교수에게 사례금 지급 가능 여부	534
●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및 저작권 정책	534
● 대학교 도서관 종이 좌석표 대신 반납대여 가능한 칩 대체 요청	536

■ 기타(소속기관) 537

● 원격연수과정 선착순 수강신청 개선	539
● 원격연수 콘텐츠 강의진행 바 학습자 임의 조정 개선	539
● 이수증 발급	540
● 이수 점수 등록 요청	540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연수 수강	54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날짜	54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저작권	542
● 환급문의	54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장 증설	543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UCC 관련 저작권	544
● 국외 한국인 유학생(대학이상) 통계	544
●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파견	544
● 공무원 신분으로 국비유학생에 선발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지원 유무	545
● 방송통신대 졸업생의 지원 가능 여부	546
● 고졸학생 유학 장학금 제도	547
● 대학 중퇴자 지원 장학제도	547
● 정부 국비장학생 선발 지원 분야 질의	548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시 학점 인정 여부	548
● 한국어능력시험 자료 다운로드	549
●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자격	550
● 한국정부 국비장학생 수혜 전공 문의	551
● 한국정부 국비유학 서류 확인대조필	551
● 기획재정부의 아프리카개발은행 인턴십 수행 지원금 지원 여부	552
● 해외교포학생 일시귀국시 학교수업 허용	553
● 일본공대 국비유학생 선발 관련	553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복무 관련 질의	554
● 국비유학생 자격	554
● 일본 문부성 연구장학생 관련 문의	555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문경고 의결 가능 여부	556
● 교원의 파면 및 해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절차	556
● 사립학교의 징계절차 문의	557
● 징계위원회 위원의 공석에 따른 징계절차 문의	558
● 조건부 재임용 문의	558

● 구속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방법	559
● 담임 배제 처분의 교원소청 심사 청구 등의 가능 여부	560
● 교원징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른 재징계 절차 문의	560
● 당연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 계속 진행 가능 여부 문의	561
● 전보 처분의 교원소청 심사 대상 여부	562
● 기간제 교사의 교원소청심사 대상 여부	563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 아 교 육

● 유치원 정교사 1급자격 연수를 위한 교육경력 범위

질의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의 교육경력에 대해 문의 합니다. 지난번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드려 답변을 받았는데 교육경력 산정시 어린이집 경력은 제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저는 유치원 정교사 2급을 취득 후 9년 10개월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으며 올해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 8조 2호에 의거하여 교육경력이라 함은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2항에 의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였기에 교원자격검정령 제 8조 2호와 제2항의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 1급의 자격연수의 교육경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어린이집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위자격 취득시 인정하고 있음을 교육부에서 공문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립유치원 임용보고의 어려움

질의

- 신입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임용일입니다. 승급과 경력에 있어서 아주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단지 신체검사서일 뿐 날짜를 어긴 것은 아니니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의해 부득이한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지원

질의



- 사립유치원은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국립유치원은 사교육 방지를 위해 원아를 5시에 하원시켜야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7조 및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1일 기본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방식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감독

질의

- 유아학비 지원 방식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공개, 유치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만 3~5세)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2에 의거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사립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감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오류에 따른 소급지원 여부

질의

-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지 않고 유치원에 다녔을 경우 유아학비를 소급 지원 받을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신청일

보다 입학일이 늦을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으로 지원됩니다.

병설유치원 세자녀 우선제도 없어졌나요?

질의

- 내년엔 큰아이를 병설유치원에 보내려 알아보았더니, 2012년 모집에는 세아이 자녀가정 우선제도가 있었는데, 2013년도 모집에는 없더라고요. 병설 유치원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세 명이라 병설유치원에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제도가 갑자기 바뀌니 당황스러워 문의 합니다. 출산을 장려 하면서 다자녀의 가정에 대한 혜택은 나날이 사라지니, 출산장려가 의미가 있나요?
-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애들은 많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1개/ 유치원은 병설 하나뿐입니다. 2014년 모집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면, 교육부의 지침 따라 달라진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우리 부는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그 설립 취지 및 역할 재정립 필요에 따라 입학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 입학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07.3.27), 시·도교육청의 지역 실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우선순위 및 할당제를 자율 적용하도록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자 선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11.3.28).
-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2013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자체 요강을 안내하면서 '우선순위 및 할당제 등 자율 적용'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선순위와 할당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취지를 재차 안내('12.11.3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증 발급

질의

- 저는 유치원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며, 유치원 경력 2년의 경력이 있고,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정 석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원 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저와 같은 경우는 유치원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시교육청 자격 관리 담당자에게 저의 이력을 말씀드리고,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되는지 알아보았더니, 유치원1급 자격증을 받을 자격은 된답니다. 그런데 자격증 발급대상



자이긴 하지만,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22.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관련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표2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제2호에 의해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 현직교원에 한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관련 결석일 산정방식 개선

질의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이용방식 중, 결석일 산정방식이 개선이 필요하며, 감기 등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할 경우 10,000원의 경비가 발생하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

회신

회신일 : 2013. 4. 10.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일수 및 해당 월의 일수에는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에 따른 교육경력 산출

질의

-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및 원장 자격 인정 기준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3항 별표1, 별표 2에서 말하는 교육경력 중,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유치원교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본인의 경우 1979.9.1~2008.8.31(29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81.3.1~1984.2.28(3년) 병설유치원 겸직교사로 재직) 2012.3.1~2013. 현재 유치원 설립자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별표 2]의 <개정 2012.11.6>일자 교장 및 원장자격 인정 기준(제23조 제1항 관련)에 의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는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경력이 유치원 원장자격연수대상자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원장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감자격증소지자로서 가능한 제1호 기준 또는 자격인정에 의해 가능한 제2호 기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장자격인정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1의 유치원 원장란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제1호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원, 다.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제2호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 선생님께서는 29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에 해당되므로 자격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자격기준이 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유치원에 원장으로 임용된다는 임용예정각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원장 자격검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선생님 급여 정부 보조금 문의

질의

- 유치원 선생님에게 지원 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치원선생님이 호봉이외에 일정 금액이상을 받을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정부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우리 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처우개선비(월 40만원)와 담임수당(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은 관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자로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방학 기간

질의

- 사립유치원 여름방학이 3주나 되네요. 유치원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작년까진 최대가 2주였다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보조해줘서 그런지 학부모 의견도 문의 없이 결정통보네요. 국공립이라면 3주 감당하겠지만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을 선택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회신

회신일 : 2013. 6. 17.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수업일수)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에서는 방학 기간 중에도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출국(장기)시 유아학비 지원 중지 여부

질의

-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이 해외 장기출국 시, 유아학비 지원이 중지가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5.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유아의 장기 해외 체류로 한 달 동안 유치원의 출석일수가 0일이라면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립유치원 반일반 종일반 공식 명칭

질의

- 공립유치원의 경우 반일반과 중일반으로 구분되어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반의 경우는 올해 초부터 방과후 과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는데 반일반의 경우는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유아교육법에도 반일반의 공식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립유치원에서는 기본과정반이라고도 하는데 2012년을 기준해서 어떤 명칭이 정확한 표현인가요? (예 : 기본과정반, 반일반, 교육과정반), 그리고 만약에 기본과정반이 맞다면 기본과정반 교사라는 표현도 맞다고 할 수 있나요?(예 : 기본과정반 교사, 방과후 과정반 교사)

회신

회신일 : 2012. 11. 9.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의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하고 방과후과정반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교육과정만 하고 귀가하는 반은 일반학급이라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가능 나이(만3세)

질의

- 공립 유치원 입학가능 나이가 작년과 올해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교과부 지침 때문에 작년에는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만 받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 그리고 3~5세 누리과정의 혜택을 받으면 아이가 조기입학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유치원을 1년 더 다니고 8세에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국가보조금을 환수된다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4.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의해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의 경우에도 유치원 입학이 가능하며, 무상교육의 대상이 됩니다(단,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가압류

질의



- 유치원에 채무가 있으면 감사 시 지적을 받아 폐원이 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유치원에 대한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4.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 유치원 취학 및 학비 지원

질의

- 부모가 외국인인데, 아빠는 근로자로 엄마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 사립, 공립 일반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때 학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0~5세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한국 어린이들처럼 무료인지 아니면 별도 학비를 내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2. 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11조는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조항은 없으므로 유치원별 여건, 해당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과 거주사실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원장의 재량으로 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이며,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공립유치원 포함여부

질의

- 공립유치원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으로 유치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누리과정 보조금 문의

질의

-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 및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회신

회신일 : 2013. 3. 12.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3~5세 누리과정 도입 확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에 대한 방과후과정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방과후과정비는 자치단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 및 내역이 다르며, 주로 누리과정을 위한 교원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금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시설의 건축물 용도 표기

질의

- 유치원 시설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는지요? 현재 유치원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반드시 바꿔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2.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08.10.29 개정·시행)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설립인가된 유치원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 종일제 유아학비 지원 조건

질의



- 유아학비가 전체 유아에게 지원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학비 중 종일제 지원은 유아가 기관에 8시간 이상 생활하여야 지원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리교육과정에서 기본 교육과정은 3~5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 유치원에서는 기본교육과정만 참여하는 유아는 거의 없습니다.
- 그런데 또 8시간을 꼭 채우지 않아도 무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점심식사하고 오후 방과후 특성화 활동과 간식까지 먹고 귀가를 희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이상이라는 규정상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9.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거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맞벌이 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 및 유아 발달 특성과 재능을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부는 이처럼 유치원 기본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1일 기본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운영)에 참여하는 만 3~5세의 유아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 수 교 육

초등학교 취학유예 이후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 요청

질의

- 저는 장애 아동의 아버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안 하고 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여러 혜택을 보고 있으며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야하는데 지금 유치부를 다니고 있으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유예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 ○○○학교에서 약 4~5년 정도 보고 배우고자 했으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적응은 하겠지만 또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급을 해버리고 유치부로 다닐 수 없으면 이런 장애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에 따라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법령에 준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취학이 불가능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받고 다시 유치원에 취학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 의무교육과정을 중복지원 받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본 건을 통해 요청하신 초등학교 취학 유예 이후의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체장애학생 맞춤형 책상 등 특수교육 지원 요구

질의

-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체장애 학생 100여명이 함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첫째 우리아이들에게는 책상과 의자가 준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오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몸에 맞는 맞춤 형 의자와 책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 수업을 위해 사 백 여만 원 하는 책상과 의자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학생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조차 외면당해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책상, 의자를 가지고 학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 둘째 지역에 있는 유일한 지체장애학교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선택할 권리조차 주어진 지 않은 채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년의 정원초과, 전공과는 시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설치조차 되어있지 않고 5개구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은 2대의 통학버스와 학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급의 규모는 상관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원이 초과 되는 것은 이미 교육청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셋째 학교에 급식실이 없는 관계로 시설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어 몇 년 전부터 학교 담당 영양사 파견을 요청하여 작년 한해 영양사가 파견되어 학교 급식다운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영양사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여 다시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사회시설의 급식은 부식의 선정 기준부터 다르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교육청은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 지금까지의 내용은 학생이 이 나라에서 받아야하는 기본혜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보았지만 도저히 개선이 되질 않아 이렇게 상급기관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4항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 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3호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책상 등이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 장 또는 교육책임자는 학생에게 필요한 설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거리 통학 문제와 해당 학교의 전공과 및 급식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교육청의 소관업무로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부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특수교육보조원 참여 가능 여부

질의

- 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우리 학교 1학년에 뇌병변, 간질 등 지체장애등 3가지 장애

를 가진 학생이 배정되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일반교사인 저희들보다 특수교육지도사(보조교사)의 역할이 큰 거 같은데요.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특수교육지도사가 참여하면 불법인가요?

- 또, 저처럼 일반교과인 수학교사가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야 하나요?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특수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 순회교육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99%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현 학교 현실에서 일반교과 수학시간에 개별화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에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이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여부는 해당 학교의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화교육의 작성은 동법 제22조 제2항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해당 교과 담당교원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등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실시 의무화 요청

질의

-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갈 텐데 아이들과 잘 지낼지 걱정입니다. 요즘 장애를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것은 느낍니다.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른들조차 마주했을 때 낮설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장애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휠체어도 타보고 눈 가리고 걷기도 하던데, 어릴 때 저렇게 해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선 그리고 대해 줄 태도도 다르겠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을 장애인의 날에라도 년에 한 번씩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헤쳐 나갈 짐이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부는 교육 현장에서 장애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재활복지 교사들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질의

- 저는 특수(재활복지2정)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특수-재활복지는 치료교육이 없어지면서 임시로 임시방편처럼 만들어진 교과입니다.
- 따라서 이 교과로는 1정연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직에 들어온 선생님들이 1정연수를 통해 1정자격을 얻는 동안 저희는 미래를 기약도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개설하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들어서 표시과목을 전환하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 문의를 하라고 서로 미룹니다.
- 사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치료교육을 만들었다가 또 정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치료교육을 없애고 재활복지과목을 가져오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 저희같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에 저희 같이 재활복지 2정 자격증 소지자의 현황을 공문을 통해 파악하시고, 부전공을 받을 수 있는 연수기회를 열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우리 부 특수교육정책과-242(2007년 6월 15일 시행) ‘치료교사 제도 변경 내용 및 변경에 따른 행정 조치 사항’ 공지에 따라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재활과 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소정의 부전공 연수를 이수하면 특수학교 중등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치료교육교사를 대상으로 특수학교 초등(2정) 또는 중등(2정) 자격 전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희망 교과목의 부전공 연수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부에서도 ‘재활과 복지’ 자격 소지 교사들이 부전공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농학교의 교재에 대한 질의

질의

- 농아들 대부분이 독순술을 익히는 걸로 아는데, 그들은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발성법을 가르치나 보던데 무슨 교재를 통해 익힌 걸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치료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특수학교 치료교육활동 교사용지도서”의 8개 영역 중 언어치료와 청능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동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2항에 따라 치료지원 차원에서 발성법 등 언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농학교 등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는 치료지원의 일환으로 언어치료사가 여러가지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발성, 조음 등의 언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특수학교마다 발성 및 조음 훈련 시 참고하는 교재는 다양합니다.
- 언어치료 관련 서적을 보시면 문의하신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참고 서적의 제목, 저자, 출판사 등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청원

질의

- 특수교육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특수교육법은 아동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차별받아온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일반 학생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취학 전 사전 검사를 통하여 일반 학교에 통합할지, 시간은 어느 정도 배분할지 등을 부모님의 판단이 아닌 전문기관(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의 경우는



1반에 1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정상적인 통합 학급 운영이 어려운 학생은 전문기관(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 학급에 통합될 경우 특수 교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0.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에 관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2항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원 내용의 장애학생은 상기한 법률에 준하여 교육상 가장 적합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통합교육 환경개선을 통해 좋은 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에서도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교원 증원 등을 통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질의

- 학교 내 단순우발적인 폭력이 발생되었다고 상법령에 의해 학교자치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징계를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5년간 보관되는 것이 맞는지요?
- 어린학생들이 단순우발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 어느 정도의 조치는 피할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해 받는 조치에 의해 그 학생의 인생행로가 바뀔 수도 있는 추가조치를 받는다면 이법의 목적에 나와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과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은 피해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또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우리 부에서는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시 사실에 근거하여 장점과 단점을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토록 하여 반성의 기회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의 긍정적이고 발전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 그 변화된 내용도 균형 있게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2. 3월)』
-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보도자료('12.6.25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성평가 부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학생의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이 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변화노력에 따라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외부전문가(경찰, 변호사, 의사, 상담가 등)가 참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촉된 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관련 법령, 갈등 예방과 해결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 향상을 통한 수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시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변화의 노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선도를 위한 교육적 조치임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봉사활동

질의

- 중학생(60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못 채울 경우 고등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봉사가 아니라 여기저기 전화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은 많은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일부기관으로 정해 놓고 또 어린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도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는데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3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치과]

- 각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기준은 우리 부 기준을 참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 봉사활동시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며, 그 적용 기준도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으로 학생들이 정규수업의 일부로서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중 상당 시간(평균 연 10시간 내외)은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궁금하시면 전국의 246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VMS), 청소년자원봉사센터(DOVOL) 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부는 나이스와 행정안전부의 나눔포탈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2013학년도부터는 학생이 나눔포탈을 통해 봉사활동 수요처를 찾아 봉사활동을 신청, 수행하고 그 기록은 나눔포탈을 통해 자동으로 학교생활기록부로 연결되어 염려하셨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무교육과 전학 문제

질의

- 중학교 3학년 딸 전학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올립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란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는 일부세대만 오는 건 위장전입이다 라는 이유로 전학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중학교의 전학 등)에 의하면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합니다. 또한 동시행령 89조 ④항에 의하면 “거주지”라 함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고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 운영 수익 범위 해석

질의

- 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관할청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해석을 달리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학교정책과]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총액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에 의거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3(학교세입 예산과목)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전입금수입액, 원조보조금수입액, 기부금수입액, 학교운영지원비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되, 원조보조금수입액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보조금수입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사업비 등으로 특정 연도에만 지원되었다 하여도 해당 교육청에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교부금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초등학생 귀국자 학년 배정

질의

- 한국과 영국의 학제 차이로 인해 1학년 없이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나 한 학년의 절반을 못 채운 것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학년 배정에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유학의 경우 시도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또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기간으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해당 시도의 교육청에 귀국자 편입학 처리지침을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기간으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에서 다닌 학년이 아닌 외국에서 수학한 연도수(학기수)를 계산하여 학년을 배정합니다.
- 즉 외국에서 2학년부터 들어가 4학년까지 3년을 수학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3학년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어 4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입특례대상은 외국의 학교(중학교 과정)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으로서 외국에서 부모(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 유예

질의

-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지 부모의 신청으로만 의무교육대상자인 자녀를 유예신청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라는 문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학 중인 학생도 부모의 신청으로 유예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는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호자가 유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 자료 등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체류시 취학통지 처리

질의

- 내년에 초등학교 취학예정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로 나가 2년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초등학교에 입학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국내에 두고 나가면 내년에 취학 통지서가 올 텐데,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금년 12월경에 취학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의 입학 및 전학)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학생은,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유예 신청 절차나 시기, 방법 등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세부적인 전편입학 규정을 별도 지침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기록부 기재 자격증 종류**질의**

- 학생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학교정책과]

-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법에 의한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것에 한해 기재가 가능합니다. (초, 중학생은 자격증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음)
- 자격법에 의한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 현황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자료실(홈페이지 상단 우측)/정보자료/ 교육정책실(홈페이지 좌측)의 게시판에 탑재된 201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DF파일(중등용)의 176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의 모호성**질의**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련입니다.
- 1. 교육과정(시수)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 학교장 결재를 득하고 실시한 체험활동을 어떻



게 입력하는지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창체는 담임에게 기록의 권한이 있는데, 담임교사가 아닌 일반 교과담당교사가 실시한 경우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헛갈립니다.

2.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통솔하여 환경등반대회를 한 경우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영역-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지요? 이때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3. 체육교사가 체대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탐방을 학교장 결재를 득하고 실시한 경우 누가, 어디에 기록할 수 있는지요? 이때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혹시 체육교과 특기사항란에 적을 수는 없는지요?
4.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의 체험활동은 기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누가, 어디에 기록할 수 있는지요? 이 때 학생 개인별로 참여한 경우도 기록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4. [교육부 학교정책과]

1. 원칙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초 수립된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한 활동만 기재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는 담임교사 또는 창체 담당교사 등 권한을 부여받은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학습발달의 특기사항에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와 관련된 특기사항만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2.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은 학년초 수립된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대학탐방 등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이 주최, 주관하는 진로체험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한 활동은 기재 가능하나 학생이 개별적 또는 그룹단위로 참여한 활동은 입력하지 못합니다.
4.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체험활동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참여한 학생 개인별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별로 배부된 '201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진출입에 따른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질의

-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각종 자료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년말에 창의적체험활동기록을 위한 창의적체험활동과 관련되어 나이스상의 누가기록에 대해서입니다.
-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창의적체험활동은 학생별, 반별, 개인별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며 학생들의 활동사항 또한 그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로 교사나 학교 주도,

외부강사 초청 강연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내용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1.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은 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을 위한 보조장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부인지 구분을 요청합니다.
- 질문 2. 학생이 전입·전출하게 되면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누가기록을 함께 보내고 받게 되는데 이 때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을 요청하게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학교정책과]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가기록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학 시에는 자동으로 전입교에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전출이 있을 경우 누가기록을 입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학년도의 경우 이미 마감처리된 상황이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수기기록한 누가기록 송부 여부는 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산입력과 동일하게 해당교에 송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기재 범위

질의

- 국가의 역사인식에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교육의 목표에서도 역사인식 비중을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한국사능력시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여 주든지 국사 과목의 비중을 더 주어서 더 많은 역사 인재의 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학교정책과]

- 학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 학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경우 기술자격 등이 취업과 직결되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만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 영어 국제부 개설 가능 문의

질의

- 국공립, 사립학교 내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학교에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미국 커리큘럼으로 수업 및 유학 상담을 돕는 반 개설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2년은 한국에서 1년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5. 15. [교육부 학교정책과]

- 국·공·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미국 커리큘럼 수업이 어려우며, 또한, 현행 교육관계법령에서 학교 내에서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학교 내 유학상담반 개설 운영이 어렵습니다.(사립학교 설립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비영리 특별법인임) 학교 내에서 미국대학 입시를 위한 영어 국제반 개설은 영리행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 등 계약의 형태로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 기피시 소집 승인 신청 시점

질의

-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소집 하려고 할 경우, 관할청에 이사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 소집 시 적어도 회의 7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4항에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함.

회신

회신일 : 2013. 6. 28. [교육부 학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에 이사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사회의 소집이 2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라는 의

미보다 소집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20일 안에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 제4항에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20일+7일, 즉 27일 이상이 경과된 후 소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학교규칙 개정 절차

질의

-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의거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사립학교의 장은 학칙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 학칙 개정 시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 여부는 학교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심의·의결 사항)에 따를 것이고,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의 필요 여부 등은 학교장과 학교법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국 국제학교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질의

-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현재 외국 한국국제학교 6학년에 전학하여 등교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상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작은 아버지 내외가 현지 보호자로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그곳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 다시 국내에서 중학교를 보내고자 합니다.
- 한국과 동일한 필수이수 과목교육을 시키므로 유학이 아닌 전학조치가 인정되고 출석도 인정되어 차후 한국 내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2. [교육부 학교정책과]



- 재외한국학교로의 진출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외출국(인정유학)은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출국한 경우로 처리 기준은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부모님의 자녀는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지 않아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미인정유학)이며 정당한 해외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한국학교로의 진출처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학력인정 및 중학교 진학 등에 관한 사항은 귀 자녀의 귀국 이후 홍콩국제학교에서의 학력 이수 상황 등 관련 학적서류 확인을 통해 사후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질의

- 제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학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교육비 원클릭 지원시스템에 교육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당시는 물론 지금도 확인했지만 저소득층 외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학교정책과]

-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받는 대신, 일반 사립고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시도로부터 지원받지 않으며,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학생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일반 사립고등학교 보다 높은 등록금 문제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제3항에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자녀 및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수급 자격이 재학중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운영된 학교로 2010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 경우, 종전의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을 당시 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6개의 학교는 입학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할 의무는 없습니다.

-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학교로 귀하의 자녀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임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 명칭 사용 제한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제2항에서 학교의 명칭사용 관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학교라는 명칭으로 상호등록이 가능한지요? 대법원 상호검색에서 학교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확인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30. [교육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로서 ① 초등학교·공민학교, ②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③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④ 특수학교, ⑤ 각종학교를 열거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각종학교는 동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 제67조 제2항 제1호가 의미하는 “학교”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의미하며, 인가를 받지 않고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동조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식회사,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명사로서의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7조의 취지는 각 학교가 위 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되어 학생들로부터 추후 졸업 시에 학력인정 등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런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동조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교’ 명칭 사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보통명사로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위법 제67조 제2항 제1호 규정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제재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은 위법 제6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관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 “사실상 학교의 형태”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같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학년제에 의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명칭으로 보통명사로서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 법 제67조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귀국학생 편입학

질의

- 귀국학생에 대한 편입학이 2010. 12.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에 비해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질문> 1. 여기서 말하는 귀국학생이라 함은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에서 미인정유학은 배제하고 인정유학만 대상이 되는지요?
- <질문>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지8호 출결상황관리 해설 중 “학업중단자가 취학·재취학(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제외)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75조).”는 인정유학만을 적용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학교정책과]

- 정당한 해외출국(인정유학)은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이고, 미인정유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학을 말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문의한 두 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첫째, 귀국 학생은 해외에서 귀국한 한국 국적의 모든 학생을 통칭합니다.
- 둘째, 귀국 학생의 편입학 관련은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 모두 외국에서의 학력 이수 상황 등 관련 학적서류 확인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29조와 제75조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미인정유학 후 귀국 학생은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자격

질의

- 저희 아이는 자율형사립고전형(2012년 3월 입학)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경제적지원대상자) 전형에 합격되어 현재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4월말 학교로부터 “2012년 강화된 수혜규정에 의해 귀댁 자녀는 경제적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니 2013년 3월분부터 수업료 등 제반 모든 비용을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동일하게 납부 하라”는 요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해당 전형을 통해 입학을 하였으므로 통념상 졸업 때까지 수혜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해 왔으며 지원 당시에 그 누구로부터도 도중에 수혜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그럴 때에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의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육부 학교정책과]

- 2013학년도 이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우리부에서는 경제적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지원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고, 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경제적 여건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교육비 지원 중단을 고려하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①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의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입금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과 같이 교육비 지원 ②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입금 적용 결과가 다를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③ 상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고려 권장 - 일반고 수준의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고 교육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 다만, 최저생계비를 과다하게 넘어서는(예 : 300% 등)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 중단

NEIS-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

질의

- 교과평가(수행평가)만 실시하여 기재하고 1학기 학기말 종합의견 기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6. [교육부 학교정책과]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5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



달상황은 각 교과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진보정도와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특성화학교와 혁신학교 선정 기준

질의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성화학교와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특성화학교와 혁신학교에 적용하는 재정을 비롯한 각종 지원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의 한 종류로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부에는 혁신학교 선정기준이나 관련 법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공·사립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운영하며, 다만 국립학교와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성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91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며, 시·도교육감이 지역여건과 학교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고시하는 학교로서, 선정기준, 절차, 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인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특성화중학교는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교육감이 종합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지정 전에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그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따라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설립 주체

질의

-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니 국공립학교의 설립주체가 정부나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 때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만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단체장이 법인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3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되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공립학교의 설치 등 관련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기의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의 설립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초등학생 미인정 유학자 학적 관리

질의

- 3개월 장기결석 전이라도 미인정유학 확인 즉시 정원의관리할 수 있는지요? 학업중단자가 취학·재취학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당해학년도 유예후 재취학하는 학생을 불평등하게 하는 규정이 아닙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8. 2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취학의무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중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하며,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미인정유학 등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취학유예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학교에서는 불이익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미인정 유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의무교육 이행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P.77)의 의미는 전년도 학업중단자가 당해연도 복학시(재취학) 학업 중단 이전의 수업일수를 인정하거나, - 귀국학생의 경우 외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하고 온 학생에 한 해 수업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취학의무 유예자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미진급 및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도록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이므로 동 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 예체능 실기고사 준비

질의

-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교 공부와 피아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기고사 준비를 위해 수업시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는데 교과부 공문 지시가 있어 실기고사 준비를 위한 수업시간 할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계고에서도 예체능 교육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학교의 역량이 안 될 경우 개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에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 고시에는 교과군별로 필수 이수단위를 정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소 20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실기고사 준비를 목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을 수료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12-14호)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하고 있고, 또한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아노 수업을 하고 있는 타 학교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곳에 가서 피아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정규 수업 시간 중 피아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학교 제출용 전학증명서 공증

질의

- 두바이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데, UAE 교육부는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발행한 TRANSFER CERTIFICATE를 우리나라 교육부와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10. 1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장관 직인 날인을 받을 서류(전학증명서, 학생부사본,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해외 근무 확인서- 양 부모 및 해당 학생의 항공권 사본(부모 모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불법유학이므로 장관 직인을 찍어드릴 수 없음.
- 예약확인서가 아닌 항공권 사본이어야 함 * 해외 근무로 이미 부나 모가 출국한 경우, 출국하지 않은 부나 모의 항공권 및 해당 학생 항공권 사본 필요- 양 부모, 해당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질의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말이 많은데, 2013년도 시범학교로 특목고를 지정하여 시행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2013년부터 특목고가 시범학교로 시행되는 게 맞는지요? 시범 시행된다 하더라도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절대평가제하고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 특정 점수 이상이면 무조건 그 점수 구간에 알맞은 학점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최고등급인 A를 전교생 대부분이 획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교 전문교과에 적용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14년부터 고교 보통교과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고자 일반고와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대상으로 2년간의 시범학교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체제이므로 최종 성적처리는 석차9등급제를 적용하여 나이스에 입력하고 있으며 시범운동을 위해서는 원점수를 성취평가제에 알맞게 별도 관리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가 최고등급인 A를 전교생 대부분이 획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셨는데 학교 특성에 맞게 기준 성취율과 성취기준·성취수준을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공동출제, 공동채점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평가전에 평가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알려주어 나타난 경우인지, 학생 수준에 비해 기준 성취율과 성취기준·성취수준을 낮게 잡은 결과로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인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단위학교가 인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정한 학업성적 관리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사연수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인정 유학생의 학기 중 재입학

질의

- 미인정 유학을 한 당해연도에 다시 해당 학년에 재취학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3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학교에서는 미인정유학 시 3개월(90일) 무단결석 처리 후 유예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예는 당해연도의 의무교육을 다음연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재취학은 불가합니다.
- 다만, 학생의 관리 등 측면에서 학부모가 요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진급 또는 졸업에 위해서는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을 해야 하나, 90일 무단결석으로 인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교원연구비

질의

- 아래의 조항에 의거 보직교사에 준하여 업무를 하는 일부의 교사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예산에서 교원연구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일부교사에게만 적용 가능한지? 2. 추가가 된다면 최대 얼마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1.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교원의 연구 및 교육지원) 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자공고로 지정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제시된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 학교의 예산 사정과 담당 교원들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도 지정·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체 교원에 대한 일괄적인 교원연구비 지급 보다는 자공고 운영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전학시 초등학교 입학**질의**

- 첫째, 초등학교 입학 희망자의 나이가 2007년 3월입니다. 이 경우 취학 통지 예정시기가 2013년 12월인지요?
- 둘째, 한해 일찍 조기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중 꼭 국내 /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입학예정일(3월, 4월)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러한 조건으로는 신청이 안 되는지요? 부모, 자녀 모두 해외에 있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 조항은 없는지요?
-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누리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누리과정 등 만 3세(2009년 5월생), 만 5세(2007년 3월생)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다른 제도는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9.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2007.1.1~2007.12.31 출생한 아동은 2013년 12월경에 취학통지를 받아 2014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읍·면·동장은 매년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취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을 조사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을 신청 받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아동이 귀국예정이라든가 거주예정지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입학 신청 접수를 담당할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입학 신청자의 취학아동명부 등재 및 해당학교 통보 등 취학업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므로 주민등록법상의 국내 거주지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조기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며, 내년에 귀국하시면 매달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비(유치원) 또는 보육비(어린이집)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단,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만 해당)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외에도 방과후과정,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해석에 대한 질의

질의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목 특기사항 란에 [수업 시간에 많이 떠들며 산만하며, 잠을 수시로 자는 등 참여도 및 태도가 좋지 않음], [수업 시간에 큰소리로 떠들며, 수업시간 참여도 및 태도가 좋지 않음]이라고 부정적인 문장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록할 수 없다면 훈령에 명시한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의 범위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학생부는 학생의 인성, 학업성취도 등을 기록하는 법정장부로서, 학생의 장점과 단점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에도 해당사항을 기록할 수는 있으나 해당 부분은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이며, 제시한 예시는 바람직한 기술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또한, 학생부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해당학교에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재취학 학생의 해당학년 수업일수

질의

- 재취학 학생의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해석
 1. 현재 재취학 학생의 결석 일수로 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취학 학생의 수업 일

수 : 201일, 2012학년도 수업 일수 191일(9월 4일 재취학으로 2011년도 9월 3일까지의 수업일까지와 2012년도 9월 3일까지가 10일의 차이가 발생함)

2. 생활기록부 길라잡이의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수업일수가 201일과 191일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3. 수료 및 진급 될 수 없는 결석 일수-현재 재학생의 결석 일수 : 64일 이상-해당 학생의 수업 일수로 해석 하면 결석이 67일 이상-2012년도 학교 수업 일수로 해석하면 결석이 74일 이상으로 수업 일수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재취학 학생의 결석일수가 64일로 수업일수의 해석에 따라 수료 및 졸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재취학 학생의 학생부 입력 시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등)에 대하여, 재취학 일자가 학업을 중단한 학년의 중단일 이전인 경우 재취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이전의 내용으로, 재취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 후 당해 학년도에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하므로, 재취학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학생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수업일수는 재취학 이전의 수업일수와 재취학 이후의 수업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당해 학년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도 재취학 이전과 재취학 이후의 수업일수를 합산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형공립고 예산 집행

질의

- 우리 학교에서 자공고 예산으로 '학생연구 소논문 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학생 1인당 시상비를 2만 5천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수 논문 제출 학생에게 시상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학교행정실에서 자공고 예산도 이를 근거로 2만 5천원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자공고 예산도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 2.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우수 논문 제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 또는 지도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다음 방식 중 가능한 방식과 불가능한 방식을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격려금 지급 2) 지도 수당 지급(일시, 지도내용, 시수가 포함된 지도일지 제출) 3) 논문지도 관련 연구보고서 제출에 따른 연구비 지급

회신

회신일 : 2012. 11. 2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6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시·도의 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학교에 시달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공고 예산집행도 그 적용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 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가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자체적으로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도수당, 격려금 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반드시 법령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반영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부(현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기간 변천

질의

- 학적부의 보존기간 및 변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2005년 이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었으나 2005년 이후부터 준영구보존하는 것으로 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귀국학생 중학교 배정

질의

- 올해 서울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입학하지 않고 외국에서 지내다가 내년 초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하려고 배정받은 중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유학 간 경우는 입학처리하지 않아 학적 관리되지 않는다고 편입 신청하라고 합니다.
- 지방으로 이사 갈 예정인데, 이사 가는 지역에서 배정받고 싶은데, 이사에정지역에서는 이미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되고 편입학하라고 합니다. 새로 배정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12. 17.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시도교육청에서 중학교 재배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과 같이 외국에 유학 등으로 인해 중학교의 입학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학교로 재취학을 할 경우는 배정 받은 것과 차이가 없으며, 귀국 후 이사를 갈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지정(배정)해 주는 학교로 재취학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이사를 가는 해당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추첨전형방식에서 경쟁전형으로 훈령 변경 요구

질의

- 교과부 훈령에 평준화지역의 자율형공립고는 “추첨”에 의해 학생을 모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고보다 월등히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형은 경쟁방식이 아닌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임. 자율형사립고처럼 내신 등 경쟁 방식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 판단되니 해당 훈령 시정을 요구함

회신

회신일 : 2012. 12. 2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12년 자율형 공립고 지정 계획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공립 일반 고등학교 중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학교, 교육혁신의지가 강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지정절차는 학교장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받아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 해당 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부로 추천하고 교과부에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12년 추가로 선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2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 후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 ○○○○고의 경우 '13.3.1 개교 예정교로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신설 학교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 유도 등을 이유로 교과부에 자공고로 추천하였으며, 교과부는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자율형 공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한 특목고와 자사고와 같이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등학교가 아닌,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비평준화)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에 소재한 학교로 나뉘며,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의거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으로 학생을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로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으로 학생을 배정할 수 있으며, 비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구분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학교 졸업자 학력인정

질의

- 1977년도에 전수학교(3년제)를 졸업하였는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일 뿐 고등학교졸업 자격은 아니라는데, 3년이란 시간을 수업하고도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일 뿐, 왜 고졸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1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전수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인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시 상업·공업계의 기능을 전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수학교는 정규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이지만, 교원·시설 등이 정규학교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학력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수학교 재학생들은 전수학교 졸업이 고졸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안내받은 상태에서 해당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당시 상당수 졸업생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학력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졸업생에 대하여 학력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등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학통지서 배부 방식 개선 요청

질의

-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하는 취학통지서 배부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취학통지서 배부 방식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네요. 맞벌이 가정도 많고 외출도 잦은 요즘 시대에 왜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배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17.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취학통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로써, 보호자에게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직접 통지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주민의 거주 사실 확인을 담당하는 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 또는 우편 송부 등 지역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취학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학통지서의 인터넷 발급 문제는 인터넷 민원 발급시스템(민원24 등)과 각 읍·면·동의 취학아동명부와의 연계여부 및 시스템 추가 개발, 향후 처리 절차 및 방법 등 지방행정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임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11. 12월부터 자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관리 강화 요청**질의**

- EBS, 방과후교육 등을 이용하며 학교교육에 충실할 것을 아이에게 늘 강조해 온 엄마로서, 3년간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앞 둔 첫 자녀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아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에겐 교사들의 책무성 있는 학기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학기말 내용 없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학교에선 학기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운영 지침을 매년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도, 작년 11월에 학기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진로 등)을 운영하고 무리한 단축수업 등 파행되지 않도록 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를 지도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혹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여주시면,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국적 회복 관련 고등학교 인적사항 변경**질의**



- 외국 국적 소유자로서 2003년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이후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다가 2011년에 졸업했습니다. 올해 국적회복 허가가 나왔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려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신분이 외국인이어서 국적 회복을 하면 제 인적사항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국적회복 한 경우 졸업하신 고등학교에 가서 국적회복 증빙서류와 당시 학생이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또한, 학생부 정정과 별개로 수능 시험은 해당학교의 졸업증명서와 국적회복 증빙서류를 통해 본인 여부 검증을 통해 응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외상 기재

질의

-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렇듯이 2월은 생활기록부가 총정리되는 시점입니다. 수시, 입학사정관제로 인하여 각종 외부상이라든지 비교과활동 등 사교육방지를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불가능 목록들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가능 것이 아니고 선행, 봉사, 효행 등 일부사항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것들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간에 잦은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첫째, 교육감의 선행상의 경우 교외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선행상이나 봉사상 등 외부의 좋은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의 취지나 그 상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을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증명할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장, 상패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장이 수여하는 상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상이라고 해도 기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셋째,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담아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재학하는 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교육청의 학교 배정 절차 및 원서 서식

질의

- 전입학 서류에 교육청 직인을 받는 것은 전국 교육청마다 동일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때문에 절차와 서식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전국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혼동이 없애고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전입학 절차 및 탑재 서식 등이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중학교 배정 등 입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교육감(도교육청)이 정하는 지방 사무로써, 각 교육장(지역교육지원청)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 지역별·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되며, 추천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의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청에서 정한 추천 및 배정방법 등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계/실업계 고교 평준화

질의

- 인문계 진학 학생의 선택권은 1개이면서 실업계 지망 학생의 선택권은 2개인가? 어째서 실업계에서조차 떨어진 학생이 대학에 가고자 할 마음이 없음에도 인문계고교에 진학을 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이는 헌법에서 기준하는 평등권에 심히 위배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적성과 소질 등에 따라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 선발시기를 전·후기로 구분하여 과학, 예술, 체육, 외국어, 직업교육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에 우선하여 전기에 학교를 응시할 수 있으며, 전기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후기에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특성화고, 특목고 등 전기에 선발하는 학교에



응시할 수 있고, 전기에 선발되지 않으면 후기학교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특성화고, 특목고 등 전기학교에 응시하는 것은 적성, 소질 등에 따라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선택적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반고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고교이므로, 일반고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현장에서 학생 지도 및 수업 운영 관리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각장애 학생 듣기시험 평가방법

질의

- 저희 딸아이가 신생아 때 뇌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올 해 중학교에 입학하여 진단고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수능고사 때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의 중·고등 교과과정 중에 있는 시험의 듣기(영어, 국어)시험시 지필고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요구할 수 있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법률 근거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이며, 그 내용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도적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듣기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청각장애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질의

- 학교 운영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현 시의원이라면 어느 누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교육 현장을 본인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에 정치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공교육진흥과(학부모지원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적 근거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왜 지역위원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부모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공교육진흥과(학부모지원팀)]

- 학운위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부모 외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적기구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설치·운영되어 있지만, 학부모회는 학교 내 자생단체로 법적 기구가 아니며 모든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 없어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임원으로 참여하거나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신청 시 증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질의

1. 신고포상금 신청 시 증거자료 미제출은 반려 사유가 아닌 접수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신고포상금제도에서 반려 처분을 증거자료 제출에 선행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항에는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신청 시 증거자료 제출 없이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즉시 반려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신고포상금 처리절차에 따라 접수·처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행되는 학교수업 문제

질의

- 학원에서 선행학습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학교수업으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 합니다. 선행학습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진한 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5.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 상실, 학업 스트레스 유발, 사교육비 부담 증가, 일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부실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이 제정되면 학교의 선행교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여 우려하시는 학교 현장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교사 컨설팅 및 연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행학습규제법 발의 관련 보충사항

질의

-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친 범위 안에서 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고, 선행 출제의 경우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여 시험점수를 무효화하거나, 시험문항별로 출제범위를 표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요 교과는 교과서 종류를 단순화하고, 예능 과목은 각 학교에 교과서 선택권 부여하여야 합니다. 성적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상급학교 진학시 내신반영율을 낮추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고, 교과과정을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3.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우리 부는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이 제정되면 학교의 선행교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여 우려하시는 학교 현장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교과용도서의 다양화는 수요자가 원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시중에 발행되는 해당 교과서를 모두 구입하여 학습할 필요가 없으며,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기존 학년 단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석차 9등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성취도를 부여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 '12~'13학년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14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
- 또한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를 위하여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포상금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질의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를 해당 교육청에 신고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정해진 기간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항에서는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학원법령에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향후 불법 학원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학원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자 학교운영위원 자격 여부 해석

질의

-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에 의하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그런데, 신원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승인 2112, 07. 01)에 의하면 각 시·읍·면사무소의 수용인 명부 전산망에 금고 이상의 실형만 나타나고 벌금형은 평소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다가 선거시점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 때에만 공직선거법 위반자 등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자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적격자가 학교운영위원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각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였더라면 이를 빠져 나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공교육진흥과(학부모지원팀)]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의 학교운영위원 자격여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입후보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항6호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적용시 대안 마련

질의

-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빠르게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고등학교의 교육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학업관련 불안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3.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 기존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 사고력 등 학생들이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 아울러, 자유학기에도 학생들의 국·영·수 등 기본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이루어지며 오히려 수업방식이 실습,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스럽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3년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14~’15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16년에 전면 실시하는 등 자유학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는 학부모, 학생, 학교 선생님,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여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항구적인 교육제도로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 지도·점검 요청

질의

- 프랜차이즈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합니다. 이 학원은 등록된 교습비 외 상담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튜터라고 칭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강사 자격이 의심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0.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는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에 모의고



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상담비 명목의 교습비등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운영 시스템이 학원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한 후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다른 지점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인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친 공동과외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교육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1. 아파트단지 내 사무실에서 1개 클래스당 최대정원 5명의 학생을 강사 1명이 교습
 2. 교습과전 강사는 모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할 것임
 3.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비를 준수하고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운영

회신

회신일 : 2012. 7. 10.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의 운영주체는 외부 사업자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자대표 측이고, 개인과외교습자 선정·교습비등·제반 운영비 등을 정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실비차원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무실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형태 교육사업’은 학원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야간보육 대상자를 3~4학년으로 확대 요청

질의

- 제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기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야간보육이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봄교실 대상자가 2학년까지만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막막합니다. 야간보육을 3~4학년으로 확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9.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대상학생 선정은 저학년(1~2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가 가능하며,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기타 지원대상자(한부모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등)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지역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대상학생 선정은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시정 필요

질의

- 초등학교의 방과후 각종 활동에 있어서 여름방학 중 임의적으로 휴강을 실시하고 보충을 실시하지 않는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관계당국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방과후활동은 사교육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나 단가 측면에서도 일반 사교육의 비용을 상회하고 있으며 학생 관리 측면에서도 방과 후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등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과후활동 제도의 폐지 등의 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관계당국의 현실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5.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방과후학교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 운영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



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사교육 시장보다 저렴한 범위에서 학교의 실정과 여건(수요자의 요구조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해학교에서 시행하는 관련 설문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희망하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 되고 적정한 수강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학생관리와 수업 결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시·도교육청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문의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가 들지 않는 가까운 도보 현장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9. 13.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 32조는 필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나,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법상 필수 심의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 아니지만, 교육과정 관련 사항이므로 학운위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연간 교육계획서 등 심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이라면 이후 학운위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외부강사

질의

- 교과부의 사교육절감 정책 중 방과후 교육 관련하여 학교는 매년 1, 2월에 공고를 하여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방과후 강사를 선정합니다. 다양한 과목-영어, 수학, 미술, 한자, 줄넘기, 바둑, 댄스 등 아주 많습니다. 학교는 해당 강사에게 교실을 빌려주면서 계약기간 동안 해당과목의 방과후 수업을 일임(위임, 채용)합니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였습니다. 교과부 지침은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된 자격의

개인 강사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8.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의 종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돌봄교실과 같이 상시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수강희망 인원내 따라 간헐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비상시적 프로그램의 경우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수강희망인원에 따라 강사료 및 개설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반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학교 지도교사 지도비와 식대 중복 지급 문제

질의

1. 교사가 토요일(휴일) 교내 및 교외에서 토요학교 프로그램 지도시 지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비를 지급할 시 지도비에 식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식대를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지도비와 식대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따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도비에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토요학교 프로그램 지도 시간이 9:00 ~ 12:00 까지인 경우(점심시간 미포함) 또는 지도 시간이 9:00 ~ 15:00 까지인 경우(점심시간 포함)인 경우를 불문하고 무조건 지도비를 주고 있는데 만일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에 지도비 이외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출장비(교외) 및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회신

회신일 : 2012. 10. 8.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현직 교사가 토요 방과후학교에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 외부 강사와 같이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도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식비는 따로 지급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수강료 일반수용비 전용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의



-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학교에서 방과후 수강료에서 공제한 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항목에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방과후 학교 수강료 중 일부(몇%)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각 교육청별 운영비 공제율(금액) 현황 자료, 방과 후 수강료 중 일부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관련근거와 적법성 여부, 만약 불법 또는 편법에 해당된다면 교과부 또는 교육청에서 가능한 조치 수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8.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절 제32조(기능)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집필한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에는 '방과후학교 수용비는 전체 수강료의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강사료에 수용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각 교육청별 운영비 공제율(금액) 현황은 조사한 자료가 없어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강사 자격에 대하여

질의

- 초등돌봄강사 자격기준에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도 학교 밖에서는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충분히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학과나 청소년교육과를 졸업하여 일정의 자격시험을 치른 전문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또한 초등돌봄강사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0.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초등돌봄강사의 자격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초·중등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청소년지도사가 돌봄교실 강사로서 활동하는데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학생의 방과후 어학 봉사활동 가능 여부

질의

- 대학의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 등을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에 무료봉사활동으로 활용하고 대학이나 외부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3.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원어민 유학생은 방과후학교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어민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교와 초·중·고교 간, 원어민 유학생과 초·중·고교 간의 금전적인 계약은 출입국관리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관련

질의

- 저는 예비초등생 맞벌이 가족 엄마입니다.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외부모, 맞벌이 순으로 순차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 더군요.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초등학교는 20명 정원으로 오후 다섯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때는 오전에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마품 돌봄교실에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재정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돌봄시간도 필요시 저녁 9시까지 돌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21.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야간까지 운영하는 교과부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 1,393개교(전체초등학교의 23.7%)에서 1,424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매년 확대해나가고 있으나 예산, 학교시설 여건 상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02)365-1264, www.icareinfo.info/ → 주민센터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코너를 통하여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통보

질의

- 본교는 전교생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고, 2, 4주 금요일만 학생들이 가정으로 하교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절차상 가정통지의 범위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바, 다음과 같이 규정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의 선출공고와 선출공보 규정에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 가정통지의 방식은 가정통신문에 의한 통지만 가능한 것인지 SMS발송과 홈페이지 공고 확인절차로도 같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4.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학부모위원 선출 통보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초·중등교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와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라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습니다.
-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선출규정에 선출공고와 선출공보 방법을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가정통지의 방법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학교에서는 전교생 기숙사생활 등으로 인한 가정통신문 전달이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SMS, 홈페이지 공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 학운위 선출 등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동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59조(위원회의 선출 등), ○○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학교 행정실 직원의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가능 여부

질의

- 학교 행정실 직원(교사가 아니라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학교 강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2. 18.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방과후 학교 강사는 교원을 포함하여 강사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성별·나이·국적 등에 차별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활동 할 수 있

습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의 경우도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관련

질의

- 저는 국가유공자이고 제 딸이 올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별다른 신청서 제출 없이 관할보훈지청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자녀 명단으로 방과후 학습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학교 방과후담당교사가 국가유공자 자녀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더불어 기준 월소득액도 5인 가족 기준 월소득액을 상회하고, 신청자격도 안되는데 신청은 자꾸 하라고 합니다. 작년처럼 매년 초에 관할보훈지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하는 명단만으로 방과후 학습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4.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포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처 소관 업무이므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방과후 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답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수를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수를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증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2학년도 ~ 2013학년도(임기 2년) 운영위원회가 지역위원 2명,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학교장 포함) 계 11명 심의하여 확정된 다음 201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하여 왔습니다.
- 학교장은 과거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지역위원 3명이 되어 있으므로 1명을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2013학년도(2년) 운영위원회가 출발할 때 지역위원 수 2명 학부모 위원 5명, 교원 위원 4명 계 11명으로 한다고 심의 확정된 다음 학운위가 출발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8.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학운위 위원수를 규정의 변경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변경·운영할 수 없으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12명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다면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학교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운영체제 지원 확장 요구

질의

- 저는 현재 윈도우7 사용 중이며 IE10을 사용 중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번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성한 후 작성내용이 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IE7~9까지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바닥에 매우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점 PC 운영체제가 다원화 되어가고 인터넷 프로그램 또한 다원화 되어 가는 데 이를 하나의 운영체제와 하나의 프로그램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지원 확장을 요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6.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웹표준화와 관련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버전에서 호환성이 떨어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부는 2013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우선 기능개선 사업으로 window 8 및 멀티브라우저의 사용 환경 확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내로 웹접근성 및 웹표준화 강화를 통하여 윈도우 8 운영체제 및 익스플로러의 다양한 버전에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능 개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다른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스 하나를 변경하는 작업에도 ‘개발 프로그램 적용 → 전수 테스트 → 각 시도 서버환경에서의 시범운영(최소 두 개 시도) → 각 시도별 테스트 후 적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기능 개선이 확대되기에는 추가적인 사업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는 최선을 다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기능 개선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턴교사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좌 강사 활용

질의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인턴교사를 채용했는데 인턴교사를 현직교원처럼 근무시간내 특기적성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과]

- 교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는 정규수업, 방과 후 수업 등 정규교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정규수업 시 교사 보조, 방과 후 교과 및 특기적성 수업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제 시행 예고

질의

-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내년 고등학생부터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여부를 조속히 알고 싶습니다. 절대평가가 시행된다면 과학고나 자사고 자율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올 7월에 원서접수가 시작될 예정인 과학고를 지원해야 하나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내신에서 유리한 일반고를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 우리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정도를 평가하여 'A-B-C-D-E'로 성취도 부여하는 성취평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성취평가제 적용년도는 중학교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교과는 '12년 신입생부터, 고교 보통교과는 '14년 신입생부터('17학년도 대입 반영)입니다.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대학입시 대책 강구 필요

질의



- 중 2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절대평가 제도로 인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취평가제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특목고 입시에서의 더욱 많은 스펙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더욱 많은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 새롭게 바뀌는 평가제도로 학부모님 입장에서 다소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으시리라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취평가제는 90점 이상이면 모두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정도를 평가하여 ‘수-우-미-양-가’ 대신에 ‘A-B-C-D-E’로 성취도를 부여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기존에도 절대평가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와 기본적으로 점수 분포가 유사합니다.
- 오히려 성취평가제 시행과 함께 성적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 성취기준·성취수준 개발·보급, 정보공시를 통한 정보공개 등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 중학교 절대평가하에서의 성적부풀리기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취평가제 시행과 함께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적 부풀리기 등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서류

질의

- 원어민보조교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계약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9월에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국에 가려면 그리고 한국 공립교육기관에서 근무하려면 F4 비자 소지자인데 잠깐 미국서 지내는 동안이라도 다시 FBI 범죄 체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주 정부 체크 범죄경력여부를 또 별도로 지참 제출해야 하나요? 나머지 서류는 이전 사용했던 서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추천서 성적표 등). 그리고 공증(어포스티유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미국 Los Angeles 지역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영어교육팀)]

- 우리 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받아 EPIK 원어민보조교사를 모집,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9월) 채용을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지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반기 채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국내에서 근무

한 원어민이 EPIK에 지원하는 경우(해외 체류 기간 3개월 미만), 채용될 당시에 제출하였던 FBI 범죄경력증명서 사본과 한국 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만일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새로 준비하셔야 하며, 성적증명서는 봉인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또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공증은 U.S. Department of State의 웹사이트(<http://www.state.gov/m/a/auth/>)를 참조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재임용 절차

질의

- 영어회화전문강사 4년 만료자 중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는 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함. 공개모집-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전형을 마친 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할 때 공고를 생략하고 사실확인 등을 거쳐 우선 선발 가능하다고 영어회화전문강사 편람이 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1.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영어교육팀)]

-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재임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의 방침과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아울러 업무 편람 수정에 대하여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동일교 재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업무 편람에 반영한 것이며, “상급기관(교육청)의 절차를 거친 자”에 관해서는 4년의 근무 기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신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안내한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 경력인정

질의

-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다시 중등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일한 경력과 호봉이 50% 밖에 인정이 안 되더군요. 당초 선전할 때는 안정성이 보장되고 경력도 인정된다니, 경력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많은 중등 자격자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그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초등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50%만 인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른



전일제 강사처럼 호봉과 경력을 중등에서 일하더라도 이런 경우 100% 인정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9. 13.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

- 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보면 교원 경력은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교원 경력을 50퍼센트를 인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부서(교원정책과)에서는 동일급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경력 등을 100퍼센트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경력은 100% 수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초등 경력은 향후 선생님이 생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대학원 실습 면제

질의

- 중등 영어회화전문강사 분들은 교육실습을 면제받는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등과 다름없이 정규수업을 맡아서 많게는 주당 22시간을 교수하며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교육대학원 실습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실습 면제 행정사항 안내」를 2011년 9월 9일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교생실습 등 교원자격검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소관부서는 교원정책과이며, 교원정책과에서 2012학년도 4년제 대학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승인 신청 안내를 각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취득자의 교직과정 면제 및 교육 실습 대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동일영역의 학교급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이 다르므로 교육 실습 면제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출산휴가

질의

-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나서 출산휴가 3개월 받았네요. 영어회화전문강사 규정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규정이 있지만, 쓰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좋은 관리자 만나는 분은 출산휴가를 쓰지만, 출산을 핑계로 계약을 해 주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영어교육팀)]

-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출산 휴가 및 출산 휴직에 관해서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 편람’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분들이 정규 교원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께서 정규 교원과 차별을 받지 않고 영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입찰시 지역제한 및 제안서 제출방식 이의

질의

-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조달청에 올려서 여행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시 제주도 여행은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공고에 올립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제주, 충청과 제주로 지역제한을 둡니다. 가끔은 전국으로도 나오는데요, 입찰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학교 방문해서 제출하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제주 여행업체는 교통비 소요로 인해 공정한 입찰의 제도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제안서는 우편접수가 가능하게 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입찰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치과]

- 우선 입찰제안서를 직접학교로 방문하시는 불편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에서는 입찰서를 직접방문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봉사활동 개선

질의

- 중학생(60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못 채울시 고등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봉사활동 장소를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은 많은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 데 없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3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치과]

- 각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기준은 우리 부 기준을 참고하고 시·도교육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 봉사활동시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며, 그 적용 기준도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의 자녀가 봉사활동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으로 학생들이 정규수업의 일부로서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중 상당 시간(평균 연 10시간 내외)은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시간만 학생이 실제 교외에서 봉사 수요처를 찾아 봉사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 다만 봉사활동을 미루다가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봉사활동을 하려다 보면 봉사활동 희망자가 집중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평소 꾸준히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궁금하시면 전국의 246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VMS), 청소년자원봉사센터(DOVOL) 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봉사활동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부는 나이스와 행정안전부의 나눔포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2013 학년도부터는 학생이 나눔포털을 통해 봉사활동 수요처를 찾아 봉사활동을 신청, 수행하고 그 기록은 나눔포털을 통해 자동으로 학교생활기록부로 연결되어 민원인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학생 봉사활동 근거

질의

○ 봉사활동이란 개인 스스로 봉사정신으로 개인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기관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1. 고등학교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2. 고등학교장의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기관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자원봉사활동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들의 차별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2. 8. 3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치과]

1. 고등학교 학생의 봉사활동은 '2009 개정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본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한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2. 우리 부는 2012학년도 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 시행 계획('12.2.24)을 수립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반영 정도 등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인정 기관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봉사활동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봉사활동 시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 학교나 관할 시·도교육청 민원실과 충분히 상담을 나누시면 불편함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봉사활동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정규 수업시간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결처리는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적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면 됩니다.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교내취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학 주도 부처형 예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대학 졸업자들이 교내취업자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대학교와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교내취업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대상 기관이 별도 법인(단체)으로 설



립·운영되고, 강사가 취업하여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교외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산학협력단 소속의 법인(단체)은 교내취업자로 분류되며, 취업자의 인건비 대부분이 대학 지원비 내에서 지급된다면 교내취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 사업의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절차

질의

- 초등4년~6년/ 중등1년~3년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공모전을 월1회 씩 시행하여 상금 및 상을 주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룹 스터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사회성발달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방식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육부 인증이나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2. 학교의 방과후 수업으로 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이나 인정 제도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1. 그룹 스터디 운영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 및 초·중등 학생 대상 교습행위를 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 및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학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 진행절차 : 기초(희망)조사 → 방과후 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 홍보(훈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 희망프로그램 조사 → 개설프로그램 강사 구성(교사, 초빙강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프로그램 편성·운영 →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차기프로그램 계획 수립]
3.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이나 인정제도는 없습니다.

전문상담교사의 방과후교육활동 참여 가능 여부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의한 전문상담교사로 임용된 교사가 정규수업시간외의 방과

후학교 운영에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Wee클래스 운영 및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총괄-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 보고- 학생 대상 개인·집단상담 운영(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학업성적 문제 등) - 심리검사 시행 및 추수 관리, 상담관련 각종 통계 자료 수립 및 관리 -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연수·자문 활동 등 이러한 직무를 봤을 때 전문상담교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중에 한 부분을 맡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2012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의 운영방침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지도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되는 현직교원·외부강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가 가능하며, 다만 직무수행(학생상담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등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방과후강사 수당(봉급) 책정 절차

질의

- 방과후강사 봉급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되니까? 미술강사를 하려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5.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당(봉급) 책정은 수업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책정됩니다. 강사료는 학생 1인당 수강료를 정하여 학생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 학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 수 등에 따라 월 단위로 고정 지급되는 방식이 있으며, 학교·지역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 방과후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

질의

-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교육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 선생님께서 방과후교육을 진행하시는데 혹시 내신 대비반 같은 것을 운영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경우에 정규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방과후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 내신



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것도 운영 목적의 하나이므로 교과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심화 수업이 가능합니다.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통학버스 지원 필요

질의

- 요즘 주5일수업제와 관련하여 토요방과후학교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면 소재지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20~3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운행하여 교통환경이 열악합니다.
- 스쿨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키는데 토요방과후학교를 위한 기사분들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토요일 스쿨버스 운행을 할 수 없어 토요방과후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요방과후학교 참가를 위해 인건비가 꼭 필요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우리 부는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포함) 지원예산 활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시행 : 학부모지원과-3579, 2012.5.30)해 드린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통학버스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시간외 수당지원이 가능(시간외 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시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 이용 확대

질의

-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현재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로 바우처 제도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영재학급은 방과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현재 저는 학교에서 영재학급에 속해 있고 영재학급 활동을 통해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바우처 담당선생님께 문의를 드린 결과 선생님께서는 영재학급에 대한 지원은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재학급 활동도 방과후에 하는데 어째서 방과후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또 지원이 정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1.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해당 학교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해당학교, 타교, 공공기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영재들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영재학급이나 방과후수업 이외의 학교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나 교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방과후학교의 시행 목적에 맞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신분

질의

-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시행령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신분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신분이 시행령상 빠진 듯합니다.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한편,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신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제6항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기명시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직원에 해당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학교의 구성원을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

방과후학교 지도 수당

질의

- 저는 운동부를 맡고 있는 지도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교에서는 운동부 지도 코치 수당 중 일부분을 방과후를 하고난 이후 학부모님으로부터 방과후 명목으로 해서 학교 CMS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가 전지훈련 및 시합에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하였을 경우 방과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편람」('13.2.18)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며,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가 전지훈련 및 시합에 참가하는 경우 출장비 등을 지급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 「2012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행정실을 통하여 수납·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동부 지도자의 수당 일부를 방과후 수강료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없으며, 전지훈련이나 시합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또한 방과후수업 수당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생 체력검사제도의 개선 요청

질의

- 요즘 학교평가에 해당 항목이 평가 과목으로 있어 5·6학년이상의 고학년 학생은 800미터 달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게 도와주고, 그에 맞는 체육교과 교육이 체육교육의 목적이 되어야지, 학교 편의주의에 맞게 학교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이 이용되는 것은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 바라며 아이들의 체육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체력검사제도는 과거의 학생신체능력검사를 개정하여 '09년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생신체능력검사가 운동기능체력위주의 항목이라면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는 건강관련체력 위주로 구성하여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비만을 평가하며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과거에는 측정종목이 6개 종목으로 정해졌는데 개정된 학생건강체력평가는 5개 체력요인별로 2~3종목 중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심폐지구력 평가는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중에서 학교에서 선택하여 한 가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 학생신체능력검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측정하여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신체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NEIS에서 평가결과를 조회하여 학생 스스로 건강, 체력 상태를 확인 및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체력수준별처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학교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평가하는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학생들 기록이 좋아야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통수준 이상의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저체력(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학생들이나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보통체력(학생건강체력평가 3등급) 이상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건강체력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체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1등급에서 체력을 향상시켜야하는 5등급 까지 나누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부족하다면 보통수준인 3등급정도 이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며 모두가 1등급의 체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체력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뛰기가 힘들면 걷고 걷다가 뛸 수 있으면 다시 뛰며 학생들 체력상태에 따라 점차 체력을 증진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수업은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다양한 체육활동(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단순히 운동 종목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체력 증진 및 인성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동부 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질의

- 운동부 지도자로서 교육청 소속이며, 계약관계는 학교장과 합니다. 초과근무 및 국공휴일



특별근무를 상시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초과수당에 대한 지급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합니다. 계약상 등급제가 적용됩니다. 매년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성적에 비례한 등급제적용에 의해 급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것에 타당한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7.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1.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장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학교장은 사전에 초과근무를 명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 등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운동부지도자의 성과에 비례한 등급제 적용에 의해 급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학교운동부지도의 급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도시 농업이 주는 힐링 효과를 알게 하는 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착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 그리고 점차 확대되어질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지원가능한 방식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1.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식물재배 등 농사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인식,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 등등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우리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8개의 농어촌 마을 권역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350 여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운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지속적인 체험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가족단위나 소규모의 단체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농촌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민원인께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로는 행정상,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된다

면 추후에 더욱 권위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현재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협력하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http://insungedu.or.kr>)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인증하여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하여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국민 홍보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하반기에 2차 공모가 있으니 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응모하여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질의

-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채용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시간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에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수당을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 학교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6. [교육부 인성체육예술평과]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분이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나, 생활체육회 등 타 기관에 채용된 자가 근무시간 중, 채용기관이 정한 직무로서 중학교 스포츠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등에 대한 지침 등 더욱 상세한 답변을 위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수업

질의

- 고등학생들의 건강 관련 체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3.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평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



는 모든 중학교에서 정규 체육시간 외에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1~2시간씩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체육·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집중이수제를 개선하였습니다(’12.7.9. 초·중 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 정규 체육시간 외에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년도부터 전국 178개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전년도 10개 종목에서 올해 32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다양 한 종목의 스포츠클럽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 팀을 선정하여 팀당 3백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을 확 산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학교체육시설을 현대화해서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함께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진 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스탬프 인증제, 체육수업 모니터링제, 운동용품 대여시스템, 청소년체육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실현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제도화할 수 있 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사순환지도는 학교마다 수업시간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프 운동부 육성 중학교 명단

질의

- 현재 골프를 계속 배우고 있고 내년에 주니어 골프대회 준비 중인 상태로 중학교 진학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에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골프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중학교 에 진학시키고 싶은데, 중학교 정보를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5.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사항(학교장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의 운영 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학교체육 전반에 걸친 법·제도·정책을 만 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자료는 시·도교육청 및 대한골프협 회(시도골프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개별 운동종목에 대한

현황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 지원 과목

질의

- 2011년부터 전국 30개교를 예술-체육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과목은 음악, 미술, 공연영화, 체육으로 구분되어 있더군요.
- 궁금한 내용은 지원과목 중에 “무용”을 중점학교로 지정된 곳은 없는지요? 현재 무용은 예술-체육 중점학교의 지원과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무용은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9.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현재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총 30개교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체육중점학교는 7개교가 있습니다. 체육 중점학교의 경우 체육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과목들을 체육 중점 교과로 선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무용의 경우 체육교과 내에 표현운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체육중점학교 내에 중점교육과정으로 운영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체육 중점학교의 경우 각 종목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종목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육 중점학교 추가 배정 시에도 무용 중점학교는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화

질의

- 학교체육 활성화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직업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체육진흥법”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직업적 안정화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에 관심이 있는가?

회신

회신일 : 2012. 11. 14.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스포츠강사 제도 - 스포츠강사 제도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유발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스포츠강사는 주로 초등 및 특수학교 교사를 보조하여 체육수업을 협력지도하며, 방과후 스포



츠클럽을 지도하여 초등 및 특수학교 체육교육 및 학교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임금 동결 - 스포츠강사의 재원은 '08~'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5 분담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13년부터는 분담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와 스포츠강사의 임금인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 예산 배정과정에서 국가재정의 한계로 임금인상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스포츠강사의 선발 및 채용 -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학교장의 권한이며 때에 따라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선발이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 스포츠강사 자격기준, 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은 '12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명칭

질의

- 2013년 첫 시행을 앞둔 학교체육진흥법 조문에 명시한 내용은 스포츠강사는 체육전문강사라고 하였는데,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체육전문강사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명칭을 바꿀 수 없을까요? 영어회화전문 강사는 수업권을 부여해 수업을 단독으로 하는데 스포츠강사는 수업 보조로 업무의 제한을 둡니다. 현재는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1년단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보면 교육감 계약이 아닌 학교장과 계약으로 신분의 불안정성이 있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바 시행지침을 통해 시도교육청 선발 배치, 학교장과 계약이라는 절충안을 주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또한 결국 학교장 계약의 신분이 아닌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강사의 정확한 소속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4.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첫째,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강사로 전환 - 스포츠강사의 명칭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이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체육강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영어회화전문강사와의 형평성 -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스포츠강사는 도입 초기부터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수업

시간 경감이 아님)과 초등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고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시작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채용 문제 - 스포츠강사의 경우 학교장과 계약을 통해 채용됩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근로자는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학교 회계직원에는 포함됩니다.

스포츠강사 4대 보험 납부

질의

-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강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인건비를 받을 때 보니 4대보험이 사업자부담금까지 다 합해서 100% 제 월급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해보니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공제하는 거라고 하네요.

회신

회신일 : 2013. 2. 1.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인건비는 스포츠강사 1인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문화부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교부되는 금액의 명칭입니다. 1,766,000원은 스포츠강사의 월급이 아닙니다. 4대 보험은 기관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766,000원에서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스포츠강사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토요 스포츠강사 모집 및 선발

질의

- 중학교 토요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매뉴얼 내용 중 지원자격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모든 직종에 나이, 학력, 성별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 시대 상황과 정부정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령층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때 상기 명시된 연령제한은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8.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우리부에서는 중학교·토요스포츠강사 지원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지원 자격에 교육공무원



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사의 주된 임무는 스포츠클럽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기존 체육교사의 역할과 매우 흡사합니다.

- 그러므로 스포츠강사 연령 제한을 체육교사의 정년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강사 퇴직금

질의

- 스포츠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번 2013년도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포츠강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스포츠강사가 ‘11년부터 ‘12년까지 동일학교에서 근무하였고 ‘13년에 근무학교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나, 수당에서 별도 퇴직금을 적립하여두지 않았으므로 해당학교 또는 도교육청에서 퇴직금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후 14일 이전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전에 있던 학교나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9.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학교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 방식(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수정하다 보니 혼선이 있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귀하께서 해당학교 행정실에 직접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질의

1.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중대한 사안은 소집 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에서
가.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와 소집사유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의 의미?
나. 어떤 날을 기준으로 부터 7일을 계산하는지? 당일 포함여부?
2. 7일 이내란 의미에서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조사 기간이 길어져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당사자의 결석, 진술거부, 진술내용의 불일치 등)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5일을 받았을 경우>
 -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하고 사회봉사를 실시하려 하는데 피해자 학부모가 사회봉사 실시 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한 경우 사회봉사를 유보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면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지역위원회의 조치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둘 다를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기록해야 하는지?
 - 나. 만일 사회봉사를 5일 중 3일을 실시한 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는 즉시 조치를 중지하고 재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조치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와 달리 특별교육이수 5일이 주어졌다면
 - 1)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방법?
 - 2) 학생의 조치는 실시한 3일의 사회봉사는 생략하고 특별교육이수 5일을 하면 되는지?
 - 다. 사회봉사 실시 이후에 재심으로 지역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5일의 조치를 받았다면
 - 1)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법?
 - 2) 학생은 사회봉사 5일을 실시하였지만 지역위원회에서 조치한 특별교육이수 5일을 다시 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1-가. '신고받은 후 7일 이내'의 의미 → 신고를 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받은 것이 4.1(월) 경우, 4.8(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의미 → 소집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간을 의미합니다.
- 1-나. '어떤 날을 기준으로 7일을 계산하는지' → '신고를 받은 날'은 신고대장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대장에 기재하는 것을 늦추는 경우, 신고한 것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당일 포함 여부' → 기준일을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공휴일 포함여부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즉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도 7일 이내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공휴일인 관계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월요일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7일이 종료되는 날짜가 공휴일인 경우에만 적용)
3. 학교의 조치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7일 이내에 학폭위 개최를 공문 등으로 공지하고 추후 기타사유가 발생시 연기를 공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 변경된 것이 효력이 있는 경우 최종 조치사항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나-1) 효력이 있는 조치사항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나-2) 사안의 경우, 사회봉사는 생략하고 특별교육이수 5일을 하시면 되고, 생활기록부에는 특별교육이수 5일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1) 효력이 있는 조치사항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2) 사안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5일을 해야 하며, 생활기록부에는 특별교육이수 5일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질의

- 저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일반대학원 심리치료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다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을 하여 석사를 취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wee센터에 계약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혹은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해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취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입니다. 둘째,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 셋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직 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전직

질의

- 2012학년도에 현직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전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직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교사 전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우리 부에서는 학교폭력종합대책(2012.2.6)에 따라 2012년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500명(신규 250명, 전직 250명)을 선발하여 2012년 9월 1일자로 학교에 배치하였고, 2013년에는 사립학교에 467명을 선발하여 금년 3월 1일자로 배치하였습니다.
- 금년에는 전문상담교사 선발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전문상담교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 및 선발계획(신규, 전직)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질의**

- 초등학교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를 1년 사용한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의 위치를 즉각 전송 받을 수 있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알리미는 참 고마운 시스템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알리미 사용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미 우선 대상자가 기초소득자 한부모 가정 등에만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 1.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알리미 사용은 대폭 늘리는 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라고 봅니다.
- 2. 그리고 기존 사용자는 해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몇 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3.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현재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월 5,500원, 연66,000원(기본)의 사용료가 필요한 안전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가급적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핸드폰, 스마트폰 등)를 보유할 여력이 없는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학부모가 집에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서비스를 지원할 대상을 매년 선정하여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학생(일반가정 학생, 스마트폰 보유 학생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상자에 새로 포함되는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보전수당(교원연구비) 지급 건의

질의

-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교원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여건이 학교 근무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교육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에게도 보전수당(교원연구비)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3.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수당과 관련하여 일반교사들과의 차별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교원의 수당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교육부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가장 큰 예산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및 Wee 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하시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당의 필요성은 업무 담당자로서 공감하고 있는 바이며, 처우개선과 수당 개선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및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질의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개조식으로 써도 되는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 사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록을 개조식으로 쓰자고 합의하면, 아니면 개조식으로 작성한 회의록에 자신들이 서명을 하면 회의록을 개조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4.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의하여 학폭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지만 작성 방식을 개조식, 서술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판단하기에 회의록을 개조식,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사의 채용 자격 기준 건의

질의

- 최근 전문상담사의 계약 해지에 대한 대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다른 교과 같은 경우는 계약직 교사를 하려고 해도 교원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 왜 상담교과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상담사, 즉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상담교과는 교원자격증 소지를 필수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자격증만을 소지한 사람은 상담교과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교원자격증 관련해서는 우리 부 교원복지연수과에서 담당하고 전문상담사 등의 배치에 관해서는 학교폭력대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인증 여부 및 인증 상담사 자격증 문의

질의

- 최근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 교육기관이 인터넷에 많이 게시되고 있지만 모두 사설 교육기관이라 이수 후 자격인정이 되는지가 의문스럽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나 현재 시험제도 등이 궁금합니다. 학교별 모집인 것 같은데 연령제한이나 자격과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이 필요한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0.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최근 전문상담 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법인, 단체, 개인이 민간자격을 남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상담사는 국가나 우리 부의 인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 또한 과장 홍보로 “자격취득 후 상담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비인가 교육기관의 내용은 과장 홍보의 것으로 시정 대상입니다. 우리 부에서 인가 받은



상담사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원),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과정이나 발급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종결 사안

질의

- 각급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든 사소한 것이든 감지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됩니다. 그 내용은 접수 대장에 기록되는데, 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거나, 미미한 사안일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사소한 내용일 경우에는 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끝내면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7. 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해학생으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강제 전학

질의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시 학생의 거주지가 이전되는 곳의 학교로 희망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7. 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의 전학(강제전학 조치)과 학생의 거주지 이전에 의한 희망 전학의 상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또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대한 조치로 정해진 전학처분은 거주지 이전과는 무관하게 학교장이 교육장(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강제전학에 따른 학교배정을 요청하고, 교육장(교육감)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 전문상담교사 전직에 있어서 보건교사 제외의 불합리성

질의

- 본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이며 전문상담 1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전직에 있어서 보건교사가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신보건에 관한 일은 거의 보건교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연륜 및 열정이 충분히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를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7.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전문상담교사의 전직의 정원은 중등학교 교과교사의 정원을 감하여 만들게 되었으며, 중등학교 교과교사의 정원이 감소되는 만큼 전문상담교사로의 전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 의해 다른 교사들의 지원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보건교사이시면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추후 교과부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용 중 ‘따돌림’ 해석

질의

- 여중생 A가 친구 B를 음해하는 거짓말을 해서 A의 엄마에게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B의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한 B가 A친구에게 “나는 네가 싫어” 당분간 안 놀아 하고 돌아섰습니다. B는 다른 친구들에게 A가 거짓말을 해서 본인 B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말을 했다.



- 이런 상황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으며, 이를 듣고 아이들은 A가 말을 걸자 모른척하고 했지만 중간에 서로 화해와 모른 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B와 다른 친구들은 A에게 화해의 노력을 했지만, 기분이 상한 A가 다시 이전에 너희들이 나를 따돌린 것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황에서 B와 친구들의 행위가 따돌림이 맞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7. 3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따돌림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법적 기구인 전담기구에서 가해(추정)학생, 피해(추정)학생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 참고로 구체적 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가해학생 보다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이의 신청

질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법률 제17조 1항~7항)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관할청에 제기할 수 있으나, 관할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건은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 받아 주는지 궁금합니다.
- 국·공립은 받아주고 사립고는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이 원해서 사립고에 간 게 아니라 평준화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사립고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8. 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행정심판(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취한 조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는 행정심판(소송)의 청구대상이 아니며 사립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조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중앙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는 시·도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구성되는 구·군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민원인께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법령에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12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 수용비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0만원,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당 5만원 편성)
-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불응 행정심판이의신청

질의



- 가해 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에 불응하여 재심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질의 1.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가해학생 재심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질의 2. 행정심판이의신청은 가해학생의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거나 피해학생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만 행정심판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이의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요?
- 질의 3. 교육청의 민원답변 중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본 학교폭력건에 대해 전학조치를 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질의 4. 교육청의 민원답변 중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는 “행정청(학교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학교폭력에 관한 처리와 재심청구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이 우선처리대상법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법 제3조가 우선처리 대상 법률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1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재심은 각각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재심과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란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별도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퇴학조치가 결정된 경우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용(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학의 실제 이행에 대한 조치는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 취소와 변경의 재결은 형성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재심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절차

질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1. 사안이 생겨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2명의 자치위원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스쿨폴리스와 전담기구 소속교사를 자치위원으로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요?
- 2. 만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 3. 자치위원회의 결과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불처분의 요건에 맞는지, 이런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 기능과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 또는 의료전문가, 경찰관 등을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전문가는 자치위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한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는 자치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쿨폴리스와 전담기구 교사를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자문을 위하여 배석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쿨폴리스와 전담기구 교사가 참석하여 결정한 사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기각한다.”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은 사안 등의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결정은 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수 등이 부족하여 ‘기각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책임교사, 상담교사 및 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강제 전학

질의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강제 전학이 결정되면 교육청에서는 전학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학 배정시 일반 전학처럼 정원이 비어 있는 학교에만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처럼 정원 외로 처리하여 정원이 없는 학교에도 배정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0. 1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내지 2항에 따르면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따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초 · 중등교육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초 · 중학교의 경우는 교육장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감이 전학에 대한 배정권한을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격리토록 한 조치이므로 배정의 방법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정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이는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과는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학교 복도, 교실에 CCTV 설치 건의

질의

- 요즘 청소년들은 고가의 핸드폰이나 명품 옷, 그리고 많은 현금을 소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복도, 교실의 CCTV 설치를 건의합니다. CCTV가 설치되었다는 학교는 대부분 그 위치가 사람 없는 곳입니다. 실용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해 뭐합니까? 하루에 몇명 찍히지도 않는데, 학교폭력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도 교실과 복도에 CCTV 설치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및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취약지구

및 사각지대를 우선으로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校舎 내 복도 및 교사 간 이동통로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CCTV를 확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CCTV설치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나, 교실 내 설치하는 지속적 감시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될 수 있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교사 학생 초상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12.2.23)
- 따라서 교실 내 CCTV설치를 위해서는 정보의 주체인 학생(저학년의 경우 학부모), 선생님들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학교내 CCTV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 설치된 성능 면에서 화질이 떨어지는 CCTV의 경우 야간에 인물 식별이 가능하고, 행동 자동감지 기능이 있는 CCTV로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관제 확대를 통하여 전문모니터링 요원과 경찰이 함께 24시간 관제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적극적인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기할 것입니다.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질의

질의

-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요건과 인적, 재정적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알고 싶은데 1) 인가 대안학교 2)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로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인가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시설·설비 기준(3조),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3조의2), 교직원의 배치기준(10조의2)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인가를 받으시려면, 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의 종류'로 볼 수 없으나, 다양한 이념과 철학을 배경으로 기관마다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있지만,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질의



○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아래 물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그동안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떠한 지원했는가?
2. 2013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 계획된 지원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 계획(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가 개정된 이유와 개정에 따른 자세한 지원 계획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우리 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예비학교 운영, 1:1 대학생 멘토링 운영, 이중언어 교육,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산은 '12년에 181억, '13년에 151억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생활지도규정 아래 사항에 대한 법리검토 요청

질의

- 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에 대한 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상 조항으로는(학생생활지도규정) 제24조(휴대폰 및 통신기기) ①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고 정상 일과 후 되돌려 받는다. - 위반 시 한 달(30일) 간 휴대전화 압수 제27조 (소지품) ④ 학생들의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교규칙에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 동조 제4항에 따라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을 통해 귀하의 학교규칙을 확인하고, 입법 취지에 합당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정책

질의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이중언어교육정책’에 관심이 가고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가장 궁금한 점은 “왜 이중언어교육정책으로 바뀌었나”입니다. 이중언어교육을 채택한 이유나 이중언어교육의 장점이 아닌 그 전의 교육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중언어교육이 시행 되기 전 ‘한국어로만 이루어진 교육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교육방식을 이중언어교육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이중언어교육은 제1언어인 모국어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며 자신의 배경이 되는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확립 및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09년부터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중언어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언어강사('12.12 기준 242명)가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모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을 실시중입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KSL,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을 마련하여 '13학년도부터 정규학교에서 한국어과목을 운영(예비학교 형태)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질의

-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와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 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심사에서 탈락되어 두 아이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제가 단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제한된 복지예산에서 무주택자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수입이 적은 한부모가정에서는 교육비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삶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4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보다 어려운 학생부터 지원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비 지원 예산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사용

질의

- 교육복지 사업에 관해 예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교사가 교육복지 아동을 인솔하여 체험활동을 갔을 때 출장과 초과근무(시간외근무)를 달고 나갑니다.
- 이때 교육복지 아동들에게는 체험활동비, 점심식사비, 간식비, 교통비를 교육복지 예산에서 품의하여 나가는데요, 교사도 교육복지 예산안에서 품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에서 사업 관련 협의회비, 업무 관련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이는 시도교육청의 집행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10% 이내로 편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109쪽 참조)
- 학생 인솔을 위해 체험활동비(입장료 등) 등은 동 사업으로 집행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외부 근무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식비·교통비 등은 공무원 여비에 포함되어 있어 병급이 불가능합니다.(공무원여비규정 제2조) 즉 질의 내용 중 2번과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문화 사업내용 및 예산

질의

-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3년 다문화 사업안과 2012년, 2013년 다문화사업예산을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8.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13년 다문화학생지원은
 1. 한국어 부족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2.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배치·운영

3. 1:1 대학생 학습 멘토링 운영
4. 다문화 친화적 학교 모델 개발, 확산을 위한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
5.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12~'13 예산(국고, 특교)은 각 181억, 15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검정고시 문제 출제 기준

질의

- 2012년 1회 검정고시 시험문제가 유례없이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어 학원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졸 자격 고사이자 중졸 졸업고사의 시험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기에 검정고시 문제의 출제기준이나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너무 쉬운 검정고시 시험 자격 제도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1. 검정고시 출제 기준 및 난이도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4조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9조의 2에 제시한 바에 의거하여 각각 중학교 졸업 정도,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수준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이도 수준의 결정은 우선 고연령자의 학력취득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10대 응시자들의 적정 학업성취도를 검정하여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4조(고시방법) 고시는 객관식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9조의2(출제방법 및 정도) 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 2~3. 2012년 1차 검정고시 주관 기관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출제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고입의 경우 대략 60~70%인 반면에 고졸의 경우 47~55%)되어 쉽게 출제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여 출제 난이도의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분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학교를 퇴학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령기(13~19세)도 반이 넘지만 적기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검정고시를 응시하시는 20세 이상 60세 이상까지의 응시자들도 50%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검정고시는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둔 분들을 위한 시험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재학생의 경우 학력이 어느 수준이냐에 관계없이 이수 기간만



채우면 모두 졸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즉,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도 검정고시 문항을 60점 이상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검정고시 문항을 어렵게만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민원인께서 지적해 주신 검정고시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령이 높아서 학력을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평생학습계좌제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과목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점차 미학력 고령자의 수가 감소하고 10대 응시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난이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에 대해 '12.5.31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검정고시부터는 관련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삭제됨을 안내드립니다. 검정고시의 공고 및 원서 접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검정고시 응시 자격 및 시기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검정고시 시험의 구체적인 일정은 매회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관 협의회를 통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다양한 응시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온 결과 4월과 8월 시행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입학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휴일시행

질의

- 매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4월에는 휴일에 실시하고 있으나 제2회 시험은 학교가 방학이라고 평일에 실시하고 있어 4, 8월 모두 휴일에 검정고시를 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검정고시도 국가고시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평일에 실시해야 하는지? 검정고시를 휴일에 실시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8. 1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검정고시를 평일이 아닌 휴일에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하셨는데, 검정고시 시험일자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검정고시 협의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처럼 휴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평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검정고시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응시자들이 자신에게 편리한 요일이나 일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1년에 2차례(4월, 8월), 휴일과 평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공제도의 특성 때문에 당장은 민원인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입검정고시(고등학교졸업인정시험)합격자 동등학력 인정범위

질의

- 안녕하세요. 제가 대입검정고시(고등학교졸업인정시험) 합격자인데요.
1.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범위가 인문계, 혹은 공업계 졸업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요?
2. 회사에서 경력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요.(예 :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으로 실무경력 5년)

회신

회신일 : 2012. 8. 3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제도로써 인문계, 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학생생활규정 개정

질의

-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현재의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교내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가 기숙사(1주에서 2주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퇴사를 학생생활규정에 넣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내에서 음주를 했을 경우 교내봉사는 징계로써 효과가 적고, 사회봉사는 수업의 결손을 초래합니다. 교내봉사와 사회봉사의 중간 단계로 1주 또는 2주의 기숙사 퇴사를 자체 규정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치과]

- 1. 관련 법령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학칙 기재사항으로 징계, 징계 외 학생 지도방법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다섯 가지로 제한됩니다.

2. 법령의 적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의 종류는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별도의 징계(초·중·등·교육법상 학생징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기숙사 생활과 무관한 비행(학칙위반)을 이유로 기숙사 퇴사를 명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귀교 특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과 기숙사생활은 원칙상 분리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3. 기숙사 내 음주, 무단이탈, 기숙사 무단이탈 및 음주 등 기숙사 내에서의 비행 발생 시에 기숙사 퇴사 (1~2주 또는 영구퇴사) 등의 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경우 학생생활규정과 별도의 기숙사 운영규정(입사 조건, 퇴사 절차, 생활규정 등 포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시기

질의

- 육성회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953~1960년도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타비용(교과서등)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1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육성회는 1970년부터 1997년에 폐지될 때까지 각급학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육성회비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1953년에서 1962년까지는 육성회의 전신인 사친회에서 사친회비를 걷어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다만 당시 초등학생이 납부한 각종 경비 명목은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자율화 제안

질의

- 추운 겨울인 12월부터 2월까지의 교복 자율화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은 편리하고 좋을 때가 많지만 겨울에는 보온성이 떨어집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1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치과]

- 교복 등 복장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위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가 이뤄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규정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검정고시 응시 제한**질의**

- 저는 현재 18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입니다. 저는 12월에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 8월에 검정고시를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시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학교를 관둬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험날짜 공고일 6개월 전이 아닌 시험일 6개월 전에 학교를 그만 뒤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1. 9.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검정고시는 가정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응시자격)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퇴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경과 규정을 둔 것은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자퇴일로부터 시험일까지를 6개월로 하게 되면, 내신성적이 불리한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자퇴하는 학생이 속출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심사 기준개선 요청**질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의료보험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7.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12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비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였으며, 작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조항에 따라, 금년부터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교육비 지원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재산 조사는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지원 사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에 탈락하시더라도 담임 추천과 학교장 심사를 거쳐 추가 선정될 경우 교육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질의

- 2013년도엔 직접 주민센터에서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하라고 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7.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특수교육대상자도 이번 교육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신 바,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에 따라 학비, 급식비가 무상입니다. (의무교육 지원 범주에 포함)
- 따라서 학비, 급식비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지원 됩니다. 다만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며,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교육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선

질의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 자녀 가정 및 경제적배려자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 산정이 모두 바뀌었다 하네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항목에 있어 근로소득과 일반재산 그리고 금융소득 및

기타 부채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재산에 있어 본인 소유든 아내 소유든 자가 주택이 있을 경우에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주택공시지가에서 대도시 기본공제 및 대출금 부채 등을 차감하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남을 경우에 일반재산을 그냥 0원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자가소유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상계 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 그에 적정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상계 시켜야 실제 소득 인정액이 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귀하께서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달라고 말씀 하신 바, 현재 우리 부 지침 상, 월 소득 환산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0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월 소득 환산액을 0원 이하를 소득 평가액에서 차감해 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방지하는 것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본인의 소득액보다 과도한 부채를 질 수도 있으나,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켜 타 재산에 투자, 혹은 소비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일일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월 소득 환산액을 0원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아울러 현행 제도로도 금융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액에서 대출액은 공제되고 있습니다.(주택 구입 시 통상 주택 가액보다 대출액이 낮음)이러한 이유로 현행 제도의 변경은 어렵다는 점 말씀 드리며, 우리 부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요구

질의

-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교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6. 3.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재정 여건상의 제약으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비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도 경제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교육비지원 선정 시 조부모 포함 개선

질의

- 같이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시 조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선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6. 3.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귀하께서는 교육비 지원 심사 시, 가구원에 조부모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현행 제도상 조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 하는 사업의 특성 상 직접적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구성하게 되며,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학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미성년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산정하며, 학생을 직접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없는 조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등) 참고로 영유아 보육비, 유아 학비, 국가 장학금 등 국가에서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조부모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학교명칭 사용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 60조2항 “각종학교는 그 이름에 제2조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학교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론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당연히 적용 되어야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와 똑같이 학력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중학교”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경우 어떤 학력을 인정해 주는지 학교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1.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 ②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안학교가 정규학교와는 달리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

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만의 다양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예, 중·고 통합운영, 초·중 통합운영 등)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대로 대안학교가 일반학교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일반학교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생이나 학부모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의 학교와는 달리 5호의 각종학교로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대안학교) ②의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동법 제2조 제1호~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질의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3조의2 제4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 [교육감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에서 [교육감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 만일, 확보기간에 대한 내용이라면? 제3조의2의 제2항에서 교사, 교지의 임대기간을 정하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경기도교육청은 10년으로 고시되어 있음)을 준용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간확보기간에 대하여 교육감이 별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참고로 교사에 대한 폐교 임대기간을 10년까지로 고시하는 근거는 폐촉법상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된 폐교재산의 임대가 10년까지 가능하므로 그 법률에 근거하여 10년 고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 및 국공립운동장을 사용허가 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내 주는 상황에서 폐교재산에 대한 교육감이 고시하는 기간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의2는 대안학교(각종학교) 설립 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한국인 자녀 및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설립하는 경우 임대 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옥외체육장의 경우 해당 학교 내에 반드시 확보하지 않고 공원녹지 또는 국공립 체육시설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10년으로 고시하고 있어 선생님께 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자치단체 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감이 반드시 10년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규정 내용과 같이 안정적 사용과 교육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 일반자치단체 시설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물의 위법 및 위험성 여부

질의

- 현재 대안학교는 시행령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대하여 위법성이 있는지 혹은 지도 및 감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위법성 및 지도감독 대상 관련하여 해당사항 있다면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단체명을 “○○학교”로 지음 - 신입생 입학설명회도 개최하고, 대안교육을 제공 - 학생수는 총 58명이고, 교직원 포함 근로자는 12명 - 월 35만원의 수업료를 받음

회신

회신일 : 2012. 10. 2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대안교육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일부 중도 탈락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대안교육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각종학교) 등 대안교육 제도화를 추진해 왔고 '13년 현재 대안학교 19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35교(중 11교, 고 24교)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 그밖에 제도권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185개 있으며 동 시설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모집과정,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이 일반 학교와 유사한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일반 학교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며, 정규 대안학교 설립이 연차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안학교 재학 중 의무교육 재취학

질의

1. 중학교에 배정을 받은 후 입학하지 않고 곧바로 미인가 대안학교로 가서 2학년까지 재학 중 생각이 바뀌어 일반 중학교 2학년으로 재취학을 희망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이 경우 해당학생의 수업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여 수료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 재취학 이전에 기간이 공백이라고 해서 일반학생의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190일 이상 특정의 일수)에 의해 학년말에 해당 학년의 3분의2이상 출석해야 수료되는지, 아니면 해당자의 경우 취학 이후 수업일수만을 가지고 3분의2이상 출석하였으면 해당 학년의 수료를 인정되는지요? (* 개별 학생마다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는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

회신

회신일 : 2012. 11. 3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편입학 등) 제1항에 따르면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말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 또는 특정한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2학년 재취학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신청 및 운영비 지원

질의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대안학교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대안학교에 관해 '대안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여기에 대안학교의 설립 신청 구비 서류와 조건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운영됩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서로 별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이지요?
2.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신청 구비서류들은 규정에 기재돼 있는데, 신청서 등의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서류를 꾸며 신청하는 것이지요?
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먼저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위 1번 질문과 같이 서로 별개로 굳이 평생교육시설 인가 없이 구비



조건을 갖추고 학력인정 대안학교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4.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비학력인정 대안학교와 달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5.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설립주체가 법인이어야만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도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1. 2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및 제5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0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 제2조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형태(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를 넘긴 일반 성인 또는 근로청소년 등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며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의3 제1항에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듯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는 학교형태(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의3 제1항에서 국가교육과정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안학교는 학칙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단, 국어·사회 교과는 국가교육과정 상의 수업시수 50% 이상 반영)하여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별도의 지정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정식 학교로서 별도의 학력인정 기준 없이 설립인가와 동시에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먼저 인가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 서류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 생 건 강 안 전

● 학생정서 행동발달 검사

질의

- 자녀가 고3인데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에서 기준치 보다 4점 높게 다왔다는 이유로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동의서를 제출하든지 안 받을 거면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차검사를 하고 다시 2차검사를 한 다음 별도로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이 검사가 어디에 자료로 남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검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해를 본 부분과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2. 7. 3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

- 현행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성장기학생들의 건강행태와 심리정서적인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 다만, 학교 내 검사결과 전문기관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님께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고 학부모님의 동의하에 심화된 검사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된 학생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등 공식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으며 학생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교 환기설비 설치

질의

1. 신축학교의 경우 무조건 기계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자연환기가 확보된다면 기계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신축학교의 경우 무조건 기계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학교가 개축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
3. 만약 학교내에 기숙사 및 부대시설(행정실, 동아리방, 보건실, 준비실 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공간들에 대해서도 기계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8. 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환기의 조절기준은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



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적용은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학교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환기용 창에 의한 조절기준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적정기준이 유지된다면 부가적으로 기계적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학교 교사의 경우 교실뿐 아니라 행정실, 보건실 등도 특별교실에 포함되므로 학교 교실과 동일한 시설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학교안전사고 공제회 청구

질의

- 학교에서의 지게차 실습 중 지게차에 의한 신체사고로 입원 및 수술치료 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지게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으로 1,0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한 손해액(약 4,6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4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제45조 제2항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5.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1항 제3호는 공제급여의 제한 사항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보기는 어려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에 지게차가 포함되는 지 여부는 해당 공제회에서 지게차의 개별적인 기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민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공제가입자)에서 공제회에 사건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에서 사건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공제회에 일단 지급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공제회에서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회에 심사청구,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 재심사 청구, 이후 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주의할 사항으로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의제기 기간은 각 90일, 90일, 60일임)

-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지급제한 사유(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이든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 특별규정임을 알려 드리고, 동법 제45조는 자동차손해배상을 제외한 다른 보상, 배상과의 일반적인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43조 제1항 제3호와 제45조는 동일한 영역을 다루는 법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미지급 이의

질의

- 학교에서 눈썹 밑이 찢어져 봉합하고 상처가 심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치료비를 청구하니 봉합비(37,000원)만 지급되었고 레이저 치료비(50,000원)는 비급여 대상이라 지급을 못 받는다 합니다.
- 문의하니 공제회 법률상 레이저 치료는 비급여라고 하며 정 지급받고 싶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레이저 치료까지 왜 해야 하는지? 사진, 입증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받기 어려울 줄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것을 후회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9.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요양급여 세부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별표 2 ‘마’는 성형수술비에 대하여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상 반흔 제거수술(일명 레이저 수술)은 신체기능 장애,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레이저 치료비는 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후 해당공제회의 심사를 거쳐야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지적하신 대로 지급절차가 복잡하다 할 수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 재원 한도 및 신중한 공제 지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공제회에서 부지급 결정을 내리면 심사청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급식 중 치아파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요구

질의



1. 본인 자녀가 학교 급식에 나온 찜닭을 먹다가 46번 치아가 파절됨.
2. 이에 대해 본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보건실 교사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신청했고, 보건실 교사는 어딘가에 전화해서 알아본 뒤 그 당시 급식은 외부급식이었으며, 닭에는 뼈가 있음이 당연하다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함.
3.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란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의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학생에게 발생하는 질병임.
4.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2항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에 해당하고, 또한 3항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에 해당함.
5. 학교 보건교사는 급식이 외부급식이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외부급식이라 할지라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범위이며, 정상수업시간 외에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 학교에 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옳지 않음.
6. 학교의 보상신청 거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30.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함) 제2조 제6항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어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바, - 동 사건은 학생이 급식 도중 닭을 먹다가 치아를 파절당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그 절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가입자(학교장)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고, 치료를 마친 후 학부모 또는 학교가 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청구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진단서, 등본(50만원 초과시) 포함
- 민원인께서 위 절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용 지급을 청구하시면 해당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법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같은 법 61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의거, 해당 시·도 공제회에 심사청구(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심사청구(60일 이내)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여기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을 6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공제회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 교육환경평가 평가서 재검토 대상 여부

질의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학교 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 확장으로 부지가 증가(10% 이상)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29.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 기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확장에 따라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 바, 동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학교용지의 확장에 따라 해당 정화구역 또는 변경(확장)이 예상되는 바, 확장되는 예정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금지행위 및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후속조치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 가정통신문 포함 내용

질의

-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식단표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식단 외에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정보 등 4가지이며, 2012. 9월부터 시행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매뉴얼에는 영양량과 원산지 표시 외에 새로이 추가되는 알레르기 정보의 표시방법을 제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급식비 목적외 사용 금지 항목 이의

질의



-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항목에
 1.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2.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 보험료
 3.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4. 소모품비(세제류, 위생장갑 등) 외의 경비 : 급식실 방역 소독비, 덤웨이터 보수 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 이게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에 위에 열거된 급식비 목적외 사용금지 항목은 모두 급식을 실시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를 수익자부담 급식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럼 이런 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보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설비비(급식기구 구입비 등 포함)와 유지·보수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연료비 및 소모품 등의 경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나, 보호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부담경비 집행 시에는 학운위 심의결과와 예산편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급식의 질 저하 및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권한이 있는 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여부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급식비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이 상정되어 심의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및 기타 인원 등 급식대상인원이 280명인 학교에서 280명 중 18명을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상세안전(요약) :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18명은 학생이 아니며, 학교에서 임금

을 지급하는 학교회계직원 8명(영양사1, 조리사1, 조리원4, 청소원2)과 학교에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배움터 지킴이 2명 및 행정구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실버도우미(배식)8명 임.-급식비 지원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교육청이든 학교든 대신 납부-급식비 면제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대납하지도 않음

1.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학생과 직원을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학운위에서 결정하여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선정된 18명의 급식비 없이 262명이 낸 급식비로 280명 급식을 해야 하는지.
3. 262명의 급식비로 280명이 급식한다면 선정된 18명을 '지원'으로 봐야 하는지 '면제'로 봐야 하는지.
4. '지원'이라면 어디서든 급식비가 나와야 하므로 18명의 급식비 지원방법까지 학운위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5.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위 학교회계직원 및 기타 인원을 '급식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급식비 면제대상자'로 선정하여 262명의 급식비로 280명이 급식할 경우 상급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 받을 사례는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 중 제6호의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납부가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지원 대상 학생의 급식비는 학교 또는 교육청 예산에서 충당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학교직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권한을 가진 관할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적용 대상 여부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시설인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축될 때만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잠깐 머무는 장소인 마사, 관리사, 실내마장 등이 정화구역 내에 저축될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 또는 마사, 관리사, 실내마장 등도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과 공유시설로 보아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종말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학교보건법」에서는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정의(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모든 배출시설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상의 시설에 한하여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마사, 관리자, 실내마장 등이 신고 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체험학습 시 단체여행자보험 가입의 중복 여부

질의

-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여행자보험을 별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이중가입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교는 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라 별도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가입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단체여행시 보험관련 학교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시 국가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국내 단체여행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중보험 가입 지양(단체여행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회의 보험가입여부 심의)- 수학여행 등은 숙소 등 건물의 배상보험, 화재보험과 차량의 종합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구상금

질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의료보험으로 된 진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았고,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금 청구가 발생이 되면 이는 학교에서 지불하여야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불하여야 됩니까? 아니면 지불하지 말아야 됩니까?
- 만약, 공단구상금 독촉장을 받아 구상금을 학교 측에서 공단으로 지급하였다면 법률 “②항에 보면 법원의 판결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확정으로 보아 안전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추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답변 및 어디까지의 범위를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석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함) 제36조제2항에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44조는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로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학교로 구상한 손해배상청구액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여야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교 측에 구상하는 금액은 학교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실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에 학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 된 경우에는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측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법원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종국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란 소송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재판상 화해나 조정과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에 응해서 임의로 지급한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질의



1. 특성검사에 불참해도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2. 특성검사에서 요주의학생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에 학교 측에서 권유하는 정신과 치료 등을 거부하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3. 결과가 만약 공개되어 학생이 따돌림 등 피해를 입는다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정서발달 경향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이 함께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체제입니다.
- 본 검사의 대상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기본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이와 달리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참여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학교와 의논하셔서 참여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학교와 의논하신 결과 불참하시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나 학생 마음건강관련,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게 되므로 가능하시면 교육활동에 참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검사결과 지속관리 부분에 대한 참여여부의 문제도 상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학생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관련교사(담임, 보건, 상담 등) 로만 열람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관련교사가 학생상담 등 지속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검사 및 상담 등 지속관리에 관한사항은 학생부와 건강기록부 등의 공식적인 자료에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당해 학교 재학 중 상담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폐기조치 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해 이해말씀을 더하자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학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서행동발달 경향에 대해 이해자료를 파악하는 검사로 결과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참고하게 됩니다.
- 물론, 이 과정에서 인지된 문제해결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간단히는 학교 내 상담관리와 좀 더 전문적으로는 병의원 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는, 판단 능력과 감정관리가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갖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교육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좀 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학교급식법 상 건강진단증 유효기간

질의

-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 학교급식의위생안전관리기준 중 2.가.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하여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지역 보건소에서 하고 있음.
- [이슈] 보건소에서 흉부를 x-ray 촬영하는 폐결핵의 경우, 건강 상 해롭다는 이유로 건강진단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식재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건강진단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폐결핵의 경우 1년 간 유예가 된다는 표현을 건강진단증에 해주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아서 건강진단증을 유지하였습니까.
- [질문] 식재의 위생과 개인의 건강 2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건강진단 항목과 발급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시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상 위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식재의 안전여부 검증을 위하여 폐결핵 항목을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5.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적인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위생관리기준을 학교급식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의거 식재료업체의 배송요원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실시하되, 폐결핵검사는 연1회만 실시하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질의

- 유치원에서 아이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유치원을 상대로 진료비의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가 발생되었습니다. 최초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한 상태였으며, 이후 구상금이 발생되어 공단에



구상금과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선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선지급한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였으나, 안전공제회에서는 구상금은 지급하지 못한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의료보험공단에 지급한 구상금을 유치원에 지급을 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공단에서는 의료보험공단 구상금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며, 안전공제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6. 7.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액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규정에서 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여 두었을 뿐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제소하여 청구권 여부 및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많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등 참고) 법원에 대한 소송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특정 기관의 권리행사(구상금 청구 등)가 즉시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는 없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귀 유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 손해배상금액을 확정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환경평가서 대상 및 수립시기

질의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시기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교육환경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이 학교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물리적 정서적인 환경 중 부정적이거나 유해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택지개발(도시

개발) 및 학교용지 확정을 위한 객관적인 도구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가 결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에서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빈번한 변경 또는 중대한 변경이 예측되어 교육환경평가의 재평가 등이 예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전까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

질의

- 저희 학교는 중·고병설교에 기숙형 자율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생활관운영으로 3식(아침, 점심, 저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 학교급식법상에서 아침, 저녁, 토, 일요일, 방학중 방과후 교육활동기간 급식실시에 관한 사항이 몇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지?
 2.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서의 아침, 저녁에 대한 업무수행 범위가 어디까지임을 어느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3.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시행령2조에 의거 점심급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일 2·3식 학교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방학기간 급식도 실시함으로 인해 교육을 제외하고도 업무가 1인이 수행하기에 한계에 와있음. - 현실적으로 3식 식단 작성 등 운영만도 힘든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관리가 중요하지 법에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아침, 저녁, 방학중 방과후 교육활동기간 급식 등에 대한 업무내용까지 점검에 포함하는지? 아침, 저녁 등에 대하여 지도가 아닌 점검을 한다면 관련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실시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3. 6. 1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급식법」 제2조에 의거 ‘학교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급식대상 및 급식횟수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 내에서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일의 점심이외에도 아침 또는 저녁, 방학중 점심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학교급식으로 보아야 하며, 2000년부터 모든 급식학교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을 적용하는 만큼,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저녁을 제공한다면 중요관리점(CCP) 및 관리점(CP) 작성 등 HACCP시스템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2식 이상 제공학교 및 기숙사 운영학교는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학교보다는 위생·안전관리 및 행정업무가 많으므로 교대근무가 가능토록 영양사 및 조리원 등 급식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교교사 예상 일조량 조사 대상

질의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정비구역(재건축등)이 북쪽에 배치되고, 남측에 30m 도로를 경계로 하여 학교 등이 남쪽에 배치된 경우 남쪽에 위치한 학교 등에는 일조량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런 경우도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8】 규정에 의한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규정에 의한 일조량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17.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제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경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면서,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사의 일조량 조사기준 및 절차

1.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교사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 이상으로 할 것
2.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을 정부 행정기관 등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일조권 관련 예측자료(시뮬레이션)에 따를 것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부지가 학교 북쪽에 위치해 있어 객관적으로 학교에 미치는 일조량에 영향이 절대 없을 것으로 확인되어 교사일조량 조사기준 및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해당 교육감 등) 별도의 일조량 분석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질의

- 집단급식소에서도 알레르기유발식품을 표시해서 피급식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업체는 어디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17.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우리부에서는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를 전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 5월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11월부터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학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학교를 제외한 집단급식소에서 알레르기 표시제도 실시여부는 식품위생 법령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학교

질의

- 학교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정수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먹는 물조차도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4.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먹는물의 관리를 적절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설치 이후 오히려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등이 정수기에 증식되어 관련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수기의 경우 수시로 저수조 및 취수구의 청소와 주기적 필터 및 호스 교체 등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의 소홀과 위탁관리기관의 부실관리(형식적 점검, 수질검사시 소독약품 투여 등)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을 주기적으로 점검(1회/분기)하여 정수기의 관리 및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관련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과감히 철거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기준을 준수하는 먹는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학교정수기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일반세균 등이 오염된 음용수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부적절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하고 관련 기준에 적정한 먹는물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정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학부모님이 우려하시는 학교에서의 먹는물 공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음용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수기의 부정적인 관리로 인한 먹는물 오염에 따라 학생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정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신청 소멸시효

질의

- 학교안전사고 발생 당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7. 2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교안전공제회 민원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이 영 시행 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2007.9.1)는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포괄 승계한 공제회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당시 ○○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상 소멸시효 완성 규정은 없고,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민법, 상법의 규정의 준용하고 있으며, 민법은 단기채권 2년, 장기채권 10년, 상법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상법 관련(대법원, 97다52622, 1998.3.13)에서는 단기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판시한 바 있음]법 원리상 민원인의 의사, 신뢰와 무관하게 시효는 계속 진행되며, 시효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상 소멸시효 완성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하시고, 만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면 민법, 상법에서 준용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부분에 대하여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임

니다. (또한,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자녀분의 사고 당시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안전 공제회에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연하면, 법적으로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민원인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민법상 장기채권(10년)에 대한 소멸시효(단기는 소멸시효 완성)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다룰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승·패소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아드님에 대한 장해급여 보상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정되면 보상은 불가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심사 청구를 알려 드리면, 먼저,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동일 학교안전공제회에 심사청구를 제기(9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재심사 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6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공제회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시기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3항에 의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해야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질의)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라는 시기가 정비계획결정고시전까지로 봐도 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8. 1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시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득이하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교육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예정지(학교용지)가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계획’ 수립대상이 되는지?

질의

- 본 사업지는 재건축정비구역으로서 북측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학교설립예정지가 있습니다.(본 사업으로 준공시 일조분석기준을 만족 못함).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 및 30조에 따르면, 200m 이내에 학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협의토록 되어 있는바, 학교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계획(일조기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1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교육감은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경우 학습환경조사 항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200미터 이내 정화구역이 포함된다면, 예측되는 일조량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의사제도 취지

질의

- 학교 보건법에 의한 학교의사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의사제도의 취지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의사제도의 법적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의사는 직무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이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상담, 그 밖에 학교보건 관리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 학교 세면대에 사용하는 물은 음용수인가요?

질의

- 학교에서 양치질이나 손씻기로 사용하는 물은 음용수인가요? 음용수이면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는지요? 상수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8. 2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에서의 양치시설이나 수세시설은 보통 화장실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두고 있는데, 별표 6호에서는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상 소독제

질의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유효염소 농도 100ppm과 동일한 살균소독력을 가진 살균소독제를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라.” 라고 지침이 나와 있고, 식약청에서 허가된 살균소독제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영양사 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니와, 알고 있어도, 실제 사용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 제가 지침서 및 식약청 고시를 알려드리고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교육 및 공문 없이 그냥 진행하면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이 옵니다. 이산화염소(이산화염소수)에 대한 내용은 교육 및 공문이 없어 몰라서 여태껏 못 썼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우리 부가 각급학교에 시달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에 대한 살균·소독제로 승인하여 고시한 식품첨가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소독방법으로는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식품첨가물 표시제품)에 5분간 침지한 후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행군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절대정화구역 범위

질의

- 학교정문(후문)에서 노래연습장이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데 정확한 거리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업소 출입구인지? 건물 경계 시작까지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3.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업소가 정화구역내 포함되는지 여부는 통상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부지경계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물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을 추가 고려하여 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모델학교

질의

- 건강증진모델학교는 언제부터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이며 각 지역별로 몇 개의 건강증진모델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7.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건강증진학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대부터 제시해 온 것으로 “배우고, 일하며, 생활하기 위한 건강한 장소로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강화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모델학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의 안배 없이 심사를 통해 98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모델학교로 선정이 되면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우리 부는 대학의 건강증진 관련 학과 교수와 학교 현장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건강증진모델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질의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의하면 소음계는 KSC IEC 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소음 환경조사에 의거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하여 학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55데시벨 이하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2006년에 발간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는 소음 측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의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하는지, 닫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7.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음’의 경우 55dB(A)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조치로 외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음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에 의거 소음을 제거 또는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사(校舍) 안에서의 소음측정은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방접종과 초등학교 취학

질의

- 예방접종을 안 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 거절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 조”에 의해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제10조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 검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가 자녀분의 초등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감염될 경우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물론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소음기준

질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4에서는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소음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질의 2. 교사내 소음기준 55dB(A)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측을 할 경우 측정지점의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의 3. 해당 학교는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 및 이를 법적근거로 하여 학교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1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교사내에서의 소음은 연중 1회 이상 소음환경과 소음수준을 점검하는데, 교통, 항공등 외부소음의 영향 및 일반교실, 공작실, 음악실, 복도, 급식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내소음의 경향이 있는지의 소음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한 후 학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책상면 높이에서 5분간 측정하여 등가 소음 레벨 LeqdB(A)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점검결과 외부에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소음저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공소음의 경우 소음 정도(영향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일반소음과 상이하여 직접적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가소음 수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로 판단되며, 필요시 항공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소음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소음 피해지역내 학교의 경우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가능기타, 해당 학교의 소음 발생수준 및 후속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질의

- 교육환경평가관련 법규정 시행 전인 2007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은 인정하나,
 1. 2010년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부지에서 중학교 부지로 옮겨지면서(약 20~30미터정도 인 근임) 부지면적이 10%이상(약12%) 감소가 되었으며,
 2. 초등학교가 중학교 부지로 옮겨지면서 당초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부지가 2종일반주 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학교 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거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로도 판단되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 1. 7.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이미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로 설정 고시되어 있고, 학교설립예정지로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이 설정고시 되어 있다면, 학교설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 학교용지로 설정고시된 용지가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변 경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육환경평가에 준하는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에서 “급식종사자”의 범위

질의

- 학교급식에서 종사자의 배치 숫자는 종사자의 근로부담 또는 학생급식비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과소한 종사자 배치는 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질 것이며, 과다한 종사자 수는 학부모의 부담과중이 되는 Trade-off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 따라서 종사자의 배치는 명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사립고등학교인 우리 학교는 도교육청이 “2012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정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급식종사자 수를 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서 언급하는 “급식종사자”의 범위가 명 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3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평소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정의하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자 모두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한편, 조리원 등 배치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재정여건, 지역 및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지침에 대한 건의사항은 관할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자격

질의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자격으로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해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자격이 자동 상실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위촉 자격인 학교운영위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정화위원 임기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자격도 자동 상실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 3. 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우리부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차원으로 지난 '12. 8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임 또는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해임 또는 해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정화구역 심의 대상

질의

- 상대정화구역에 걸친 대지에 관광호텔 및 오피스텔을 별동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 중간정도를 상대정화구역(200m)선이 지나가고 있고, 상대정화구역내에는 오피스텔을 짓고, 상대정화구역을 벗어나서는 관광호텔을 짓고자 합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상대정화

구역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3. 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되는 시설에는 관광호텔을 포함한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문의하신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관광호텔과 오피스텔과의 경계구분 및 인허가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정화구역 설정 고시권자인 해당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보건교사의 주사행위

질의

- 본교 학생이 소아당뇨로 인해 인슐린 주사요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께서 보건교사에게 인슐린 주사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의료법」상 당뇨병환아에 대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행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보건교사가 행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의)
- 다만, 학교에서의 당뇨병환아에 대한 기본처치(혈당체크, 인슐린 주사 등)는 간단한 1~2회의 응급처치가 아닌, 당뇨병아동에 대한 식전·후의 혈당측정과 혈당정도에 따른 인슐린양의 조절·투여 등 면밀한 관찰과 집중적인 관리를 해당 아동이 졸업할 때까지 보건교사에게 의무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는 당해 학교의 많은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담당해야 하고, 또한 병원과는 달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과 주사행위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 등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해 학생의 보호자와 의료기관(해당 아동의 치료기관 등) 등과의 사전협의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학생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합의하에 학생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런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간호사인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3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의사처방에 의한 인슐린주사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를 위한 의사소견서, 학부모 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 제출받아 학생에게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내부결재: 담임교사 등 관계자 협조결재)·시행하시고, 당뇨병환아에게 자기건강관리 기술함양이라는 보건교육적 측면이 중요한 바, 혈당검사와 인슐



린 주사 등의 필요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식이 및 신체활동 등 필요한 관리방법에 대한 보건교육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질의

- <먹는 물의 공급 및 위생관리 원칙>의 근거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5 제2호 다 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제공 또, 물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저수조 청소, 지하수·정수기 등 수질검사,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등)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중 1항과 2항 중 어디에 더 적합한 임무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위생과 식품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원 또는 행정직원 등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고)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 교사 타시도 전출 방안

질의

- 올해 중 부족한 교원을 충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들 중에 현 근무지 외의 다른 타시도로 전출을 희망하지만 1:1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몇 년 째 전출을 가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교원을 현직 교사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원하는 시도로 전출을 한 후 부족한 부분에서 신규 교사들을 채용하였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원의 시·도간 인사교류는 학교자율화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이양되어 전입·전출 제한 등 인사교류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매년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인사교류계획이 확정됩니다.
- 즉, 시도교육청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인사교류를 실시하는데 시도교육청의 전출입 기준은 - 전출 시도의 기준에 따라 전출 순위를 결정하고, - 일반 전·출입의 경우, 전입 받는 시도의 전입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인사교류가 있기 전에 개최되는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인사교류 관련 시도교육청 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협동조합 관련 검직허가 문의

질의

1. 국가공무원인 공립 중등교사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관장의 검직허가를 받아야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 가입시 5만 원 이상 출자해야 되고 조합의 사업실적 결과 잉여금을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하도록 조합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2.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에 고등학생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활동 및 사업수익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1. [영리업무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함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등을 행함으로써 직무상 능력의 저해, 공무에의 부당 영향, 국가 이익 침해, 정부의 불명예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 능력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영리행위의 지속성, 영리추구의 정도 등 관련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교원은 영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임용권자(복무감독권자)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합니다.

2.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겸직허가 대상 직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이외의 사적인 업무(사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사, 아파트 동대표, 장학재단이사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동창회·친목회)의 경우에는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단순히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직무상 능력의 저해, 공무에의 부당 영향, 국가 이익 침해, 정부의 불명예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참여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지만, 필요시 임용권자(복무감독권자)와 사전 상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의 이사 등 직위를 수행할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용권자(복무감독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 국제결혼시 증빙서류 제출

질의

- 국제결혼을 앞두고 특별휴가를 5일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국제결혼인 경우는 국외로 나가서 결혼식을 하므로 출국전 자술서를 쓰고 귀국 후에는 사진과 혼인증명서를 첨부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술서를 제출하고 결혼식 사진과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교원정책과]

- 모든 특별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예 : 결혼청첩장)를 첨부하는 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학교의 경우 학교장)가 판단하여 특별 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복무 허가권자인 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후, 특별휴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인적 적용범위

질의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은 전술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전술한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 규칙의 효력에 적용을 받는 인적범위가 교육공무원에 한하는 것인지, 그 이외의 자 역시 동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근무

질의

1. 기간제교사도 방학 중에 정규교사처럼 연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간제교사도 방학 중에 연수를 실시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기간제교사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0. [교육부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사 운영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연수 및 급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교사 임용 기간

질의

- 기간제 교사가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후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사유를 달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용사유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신규채용절차에 따른 재임용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0. [교육부 교원정책과]

- 법제처 법령해석(10-490)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해석의 이유를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시간강사(계약제교원) 채용시 임용 상한연령

질의

- 교육부에서는 시간강사 지원 자격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채용지침에서 시간강사 채용시 임용상한연령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불합리한 제도이며 고령화정책에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제도개선(임용상한연령폐지)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는 결원보충, 양성자원이 없는 특수 교과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제교원의 채용상한연령은 교단의 노령화 심화 등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임용고시의 장애인 편의제공 절차 개선

질의

- 저는 다발성 섬유성 이형성증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를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이고, 현재는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준비생이기도 합니다. 새로이 바뀐 임용시험은 논술과 서답형으로 논술은 1시간, 서답형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써야 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 작년 첫 시험 원서접수 때 임용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상지지체장애인'에게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에 저는 하지장애로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제공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장애인 개개인의 모든 요구와 불편함을 단지 서류 몇 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 등 국가고시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법적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불편한 정도를 직접 관찰 면담, 판단하는 등의 유연한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사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게 되며, 동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공고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험계획의 공고 내용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중 택일], 의사소견서(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전문의 진단서,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시험연장 및 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계절제 대학원 수강 인정 여부

질의

- 계절제 교육대학원의 마지막 논문 학기를 남겨두고 2학기 때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 연구 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고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접하게 되어서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해당하는 규정이 모호하여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출석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중 취득한 학위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에 따른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해당 교육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경력과 교원 임용

질의

- 저는 공군입대했다가 현역 부적합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를 하였습니다. 혹시 임용고시 후 선생님이 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29.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 초·중등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라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강사, 산학겸임교사로 재직하면서 금품수수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각급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 또한, 상기 결격사유 이외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원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공무원복무규정 준수

질의

- 지역 주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강좌가 개설, 운영 중이며, 일부 주민들의 수강신청에 의해 참여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사료 지원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5주, 하반기 15주 등 6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강좌이며, 해당 강사에는 현직 교육공무원인 초·중·고 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분들의 입장은 재능기부의 형태로 소정의 차비정도의 지원을 통해 무료봉사를 하신다는 입장인데 반해, 몇몇의 견해는 수 백 만원의 강사료가 어떻게 재능기부이며, 차비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현직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해당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각 학교장(기관장)에게 출강에 대한 사전인가(공무원 복무규정 이행사항)를 득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일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교사(교육공무원)의 외부 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지양)에 의하여 요청되어야 하며, 외부 강의는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서 출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때, 모든 외부강의는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무시간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하며,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만 출장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학교장에게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위의 학교에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할 때,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1.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강의로 보여지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득했는지 여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 가능 여부 판단 필요)
 2. 겸직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해당 교사가 학교장의 강의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 및 도교육청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겸직허가

질의

- 교사가 수능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자습서와 문제지와 교과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ebs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돈을 받나요?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영리업무에 대해서는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일때,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학원 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참여,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의 제공(예:EBS), 일시적인 강의 참여 등은 관련 수당을 받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출판, 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 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저촉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겸직에 관해서는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겸직이 허락되는 것에는 - 재건축주택조합장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 교원이 신문, 잡지 등에 투고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비영리활동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저술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동창회·친목회)의 경우에는 허가 불필요 위의 내용에 따라, 민원인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교원이 자습서와 문제지, 교과서를 만들고, EBS강의를 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업무에 따라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서 집필 및 EBS 강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겸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교사 출퇴근 복무 관리

질의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교사의 복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복무 책임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 출퇴근카드가 필요하다면 비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카드를 비치하지 않고도 직원의 근태가 관리된다면 미비치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임용시험 응시 자격

질의

- 2013년부터 초·중등 임용시험에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이 자격요건의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는 교과부의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항’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법령으로 명문화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타 법령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9. [교육부 교원정책과]

- 2013년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접수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에 통과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및 제10조입니다.

해외 파견 고용휴직

질의

- 중국 ○○○한국학교가 올해 개교할 예정입니다. 초빙교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인가는 나왔다고 합니다.
- 교육부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는 합니다. 교육부 인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휴직이나 청원휴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휴직이 가능하여 파견을 갈 경우 교육 경력과 호봉에는 인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2.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

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 이를 고용휴직이라고 하며, 고용휴직이 가능한 재외교육기관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한국학교의 경우, 해당 부서(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학교로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엔 고용휴직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사의 유학휴직

질의

- 저는 유학휴직을 하며 미국에서 영어교육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바로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찬이 필요하다 여겨 캐나다의 한 대학에 영어교육 박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 유학 휴직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도교육청에서는 석사학위를 위해 유학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두 번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휴직 중 간병휴직은 재직기간 중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육아, 유학, 동반 등의 휴직은 그 횟수에 대한 제한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저의 유학휴직 신청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단, 유학휴직은 청원휴직이나 보니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감이 직권으로 명할 수는 없는 휴직입니다. 유학휴직의 사유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될 때이며, 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는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가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입니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에는
 1.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2.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따라서, 유학휴직을 명할 때에는 유학이 가능한 기관인 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이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에는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함과 동시에 대체 인력 운영 등 교육청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시·도교육청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질의

1. 공무원징계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경고 견책 파면 등 순서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2. 교사의 경우 공립, 사립, 국립으로 나뉘는데 징계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0.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국·공립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견책(譴責)-감봉-정직(停職)-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종류는 사립학교법 61조의 규정에 의거 견책(譴責)-감봉-정직(停職)-해임-파면으로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규칙 개정

질의

- 한국사 시험에 대한 개정 부분에서 시험을 치는 해로부터 역산하여 5년까지 유효함으로 바뀐 것을 이미 입법예고 안내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시험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사람까지 응시 가능한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사람까지 응시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과목에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되,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선정경쟁시험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지난 2012.12.28에 개정되어 2013.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3년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를 역산하면 2008년 이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결과는 모두 반영됩니다.

 교육 공무원 연가**질의**

- 징검다리 휴가기간 동안 수업에 지장 없이 미리 교체하여 수업을 다 하고, 연가를 사용하여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연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수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하고 가는데요. 학기 중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교원이 휴가 등 복무에 대한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 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임 - 때문에 민원인의 연가 사용에 대한 사항은 소속 학교장 또는 임용권자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협의토록 권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해외여행**질의**



1.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여 41조 연수를 달고 해외에 나갈 시에는 연가일수를 범어난 범위에서도 실시 가능한지요?
2. 만약 학교장이 방학을 활용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사유라 할지라도 41조를 활용한 해외여행이 절대 불가하다고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41조를 활용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지요?
3. 올해 추석연휴가 수, 목, 금요일이 공휴일이고 토, 일요일은 주 5일제 실시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이 5일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약 잔여 연가일수가 0일일 경우,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복무를 처리하여도 괜찮은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정책과]

1. 공무 외의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여행 허가시 별도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자율연수와 연가일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휴일에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 학교장에 최소 구두 보고의 형태로라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시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반휴직 가능 기간

질의

1. 2000.8.1~2002 8.31 25개월간 공무원인 남편을 따라 네덜란드에서 동반휴직을 했고요.
2. 2011.3.1~2014.2.28 3년간(36개월)을 이란에서 동반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2014년 2월에 복직할 예정인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동반휴직을 11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습니다. 2014년 2월까지라면 총 61개월을 동반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동반휴직시 우선 3년을 할 수 있고, 추후 3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동반 휴직시 꼭 2회로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에 상관없이 6년(총 72개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꼭 2회로 제한이 된다면 저는 내년 2월에 꼭 복직을 해야 하고요. 남아있는 11개월을 더 쓸 수 있다면, 2015년 2월에 복직을 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동반휴직은 휴직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새로운 휴직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휴직기간은 3년이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하나의 동반휴직 사유에 따라 최장 총 6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이 네덜란드 거주로 인해 이미 실시한 동반휴직은 소멸된 것입니다. 이란에서 시작하는 동반휴직은 새롭게 시작하는 휴직으로 볼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통해 총 6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의 연장 허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교육청 및 학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지방이전(혁신도시)에 따른 배우자(교원) 정보**질의**

- 저는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상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배우자의 직장 문제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인원의 배우자가 교원인 경우 정책적으로 혁신도시 내 신설되는 학교나 인접 지역의 학교로 전보나 발령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교원정책과]

1. 시·도간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교육청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인사교류가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2. 우리 부는 2012년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 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별거부부가 발생할 경우 타 시·도 교류 순위 설정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가일수 계산**질의**

- 교원이 병가 60일 사용 후 남은 연가 20일을 사용 후 휴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병가 끝난 후 연가 사용시 휴무일 포함하여 20일을 신청해야 하는지, 휴무일(토, 일) 제외한 날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7. [교육부 교원정책과]

-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휴가이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되며,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교육공무원의 겸임 및 타 직으로의 이동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이하 교사로 함)의 근무와 생활, 타 직과의 겸임 및 타 직으로의 이동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일반 교사가 부장 교사가 되는 것은 교장이나 교감이 지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장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 응시 후 부장 교사로 될 수 있는가?
- 2. 교사의 근무 실태가 근면성실하고 평소 타 교사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면 학교 측에서 교사를 기본 근무 기간인 5년을 넘겨서 추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가?
- 3. 학생이 평소 감사의 뜻으로 스승의 날에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 이 때, 금액과 관련 없이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만 선물을 주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가?
- 4. 현재 교육공무원이 월급이 적어 영리를 추구하는 타 직(예 : 운수종사자 등)과 겸임하고자 한다. 이 때, 영리를 추구하는 다른 직업과 동시에 교육공무원을 할 수 있는가?
- 5.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중 행정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임용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 때, 교육공무원 직을 그만두고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가?
- 6. 교육공무원이 행정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돌아와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는가?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교원정책과]

-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부장교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장이 임용하게 됩니다.
- 2.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교사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초빙교원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 3.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행동강령(시행 2009.1.30)에 따르면,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는 직무관련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학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국립학교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침 등으로 정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위에 제시된 6호와 유사하며, 이에 따른 선물의 경우에도 제한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령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공무원을 의원면직하면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행정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을 의원면직하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6. 순환근무는 불가능하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교장 공모제

질의

- 본교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전체 60명의 소규모 사립학교입니다. 현재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8월말일로 만료가 되어 새로 교장선생님을 뽑고자 하는데 교장공모제 방식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직하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그 동안 학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의 학교를 위해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어 교장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교장 공모제를 시행할 때 사립학교법에는 교장공모제에 따른 조항이 따로 없고, 공모제 지침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국공립지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29조의3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은 국공립학교의 공모교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초중등학교 교장(공모교장 포함)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교육대학원 수강 인정 여부

질의

1. 2013.3.1.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작년에 교육대학원 계절제에 합격하였으나 출산으로 곧 휴학을 했습니다. 지역 인사규정은 생각지 못하고, 올해 휴직 중 계절제를 수강하려고 복학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는 야간제는 가능하나 계절제 수강은 인정받을 수 없다든지, 야간제든 계절제든 연구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든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5.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에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기간이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평정이 가능한 학위인지는 평정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동반휴직 신청 기간

질의

- 배우자의 해외유학과 해외근무로 2회에 걸쳐 총 5년 6개월 동반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새로이 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하여 7월 1일 다시 3년간 동반휴직을 해야만 합니다.
- 도교육청에서는 인사권자가 교육감이기에 동반휴직이 안 된다는 대답만을 하십니다. 교사의 동반휴직에 대한 권리도 교육감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16.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건의 동반휴직 사유에 대해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동반휴직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미 동반휴직을 사용한 자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한 후, 새롭게 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용권자는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의 교육전문직 전직 가부

질의

- 교육부에서 공고한 ‘2013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에는 수석교사를 응시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수석교사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을 제한하고 있는 바, 수석교사의 교육전문직 제한 가부를 법령에 근거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4.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제2조에 따르면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수석교사로 임무를 수행 중일 경우에는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으로 승진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0조에 따르면,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운영지원과에서는 “2013년 교육전문직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추천 제외 대상자”에 수석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계획서에서는 응시자격에 대해 - 본 공고일 현재 국내 초·중등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재 재직 중인 교사로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 -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별표 1]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교사 이에 따라 정교사만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는 제외되었고, 교사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교(원)장, 교(원)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렇게 할 경우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는 수석교사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획에 수석교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었습니다. 수석교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석교사가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하지만, 수석교사의 도입 취지 및 제도의 안착에 노력해야 하는 도입 초기에 따라 수석교사를 전문직 응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향후, 필요하다면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전문직을 선발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도 일반교사와 함께 선발하기 보다는 수석교사들만을 대상으로 따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일반교사 그룹과는 달리 교감만을 대상으로 따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학교 교사의 외국 교육기관 파견교류 가능 여부

질의

- 국립고등학교 교사와 외국 대학 교사 상호 간에 파견교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1. 파견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 6호」에 의거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때, 고용휴직 상태가 아닌 재직 상태로 남구요, 근무처만 외국 대학이 됩니다. 보수 일체는 소속 국립고등학교에서 지불할 것입니다.
- 2.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결원의 보충을 국외 교사로 대체 가능한지(국외교사는 외국 대학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육부 교원정책과]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파견 중, 1호 내지 6호의 파견을 국내의 기관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외를 대상으로 파견이 가능한 것은 제7호와 제8호에 따른 파견입니다. 이 때,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 사유가 되어야 하나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파견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중등의 경우 동일한 표시과목 소지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및 제도

질의

- 중등임용고사 일본어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일본어 교과가 올해 사전예고에서 수급이 0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어교사 수요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몇 명이 있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 소수의 인원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자 현행법상 임용권은 각 시도교육청에 있으나 소수의 인원을 임용하기 위해 시도별로 개별 출제팀을 구성하여 임용을 하게 되면 예산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각 시도교육청이 모든 과목을 개별적으로 출제를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최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에서 제외된 소수의 과목들은 그 과목의 교사를 필요로 하는 교육청끼리 예산을 $1/n$ 로 나누어 출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육부 교원정책과]

- 귀하의 전공과목인 일본어과목이 2년간 선발인원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부에서는 시도별 교원의 총 정원만을 관리하며, 교원의 신규채용 시 구체적 선발 분야 및 규모(과목과 인원)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상황에 따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출제관리상 선발 소수인원 과목에 대해 몇 년에 한번 정도로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록 2년간 선발인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선발인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부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향후 임용시험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중 야간대학원 수강 및 학위 인정 여부

질의

-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 학기부터 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육아휴직 중에 야간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야간대학원 수강 가능 여부와 학위 취득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자가 자비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학위의 인정여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석교사제 지원 결격사유

질의

- 수석교사 선발 계획 수립시 교원의 말소된 징계에 대해서는 지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7. [교육부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수석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전형에서 선발된 후, 자격연수('13년 임용대상자의 경우 120시간)를 이수한 후 교육감이 수여하는 수석교사 자격증을 수여받은 후, 교육감이 임용을 해야 합니다. 수석교사 연수대상자 선발 계획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12년 10월에 수립된 민원인의 관할 시·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전형 계획에 따르면, '수석교사 지원제한 조건'에 '금품·향응 수수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자 추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되었을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석교사의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시·도교육청의 판단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원의 연가 허용 범위

질의

- 연가란 방학 등과 같은 휴업일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에서(예를 들면, 부모생신, 기일, 공무외국외여행 등) 학기 중에도 학교장이 허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우리학교에 한 교원이 매 학기마다 10여일 이상 연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유는 아버지의 병간호입니다. 물론 연가제한일수 안에서 말이지요. 아마도 해당 교원의 사유가 연가를 신청하고 허가할 만큼 특별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학교 결보강 처리방식에 따르면, 동 교과 교사가 연가 교사의 수업을 대강하므로, 학교수업에도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권리가 있는지요? 허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그 합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7.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4호, 2012.3.1, 일부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원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연가를 실시할 경우 원활한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등과 같이 학기 중에 해당 교원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가의 허가권인 학교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학교장이 연가를 허가할 수 없는 사유는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신청했을 경우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학교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휴업기간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여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허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를 든 것처럼 그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안이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연가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예를 든 사례처럼 교사 10명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 동일한 기간에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 판단되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학교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서 연가 신청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소속 교직원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야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연가 허용 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많고 연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학교장은 복무 지도·감독권자로서 소속교원의 연가 사유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한 연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에는 근무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휴가 등 복무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질의

- 6개월짜리 기간제 자리가 있는데 하겠느냐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더니 계약 날짜가 3.4~7.16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8월 말까지라 생각했는데 방학기간 전까지 계약 날짜가 되어 있어 여쭙보니 지침에 따른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 그런데 3.1~3.3 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날짜가 빠진 것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기간을 '3월 4일'부터 시작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1. 8월말까지가 아닌 7.16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정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만약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8월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알기로 3.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와 같은 경우도 3.1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이 임용하며 시·도교육청별 계약제교원지침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지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간제 교사의 채용절차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근로계약체결 기간을 정하는 문제도 당해 학교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유학휴직 자격 조건, 육아휴직 중 어학연수 가능 여부

질의

- 올해 미국으로 어학연수로 인한 유학휴직(1년)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청에 어학연수로 인한 휴직의 세부규정이 궁금하여 질의를 했다가 어학연수로 인한 유학휴직은 초등 영어전담교사만 가능하고 중등의 경우는 영어과더라도 학위 취득의 경우만 유학휴직이 가능하다는 어학연수로 인한 유학휴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학휴직 승인이 안날 경우에 육아휴직을 해서 어학연수를 떠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10.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유학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자기의 비용 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임용권자(교육감)는 교원이 희망할 경우 반드시 휴직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에 외국으로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며, 어학연수의 목적에 맞도록 유학휴직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퇴직 사학 공무원 기간제 근무시 급여

질의

- 2011년 8월에 명퇴를 신청하고 사학연금 수급대상자입니다.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고 현재 기간제교사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가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호봉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시 호봉으로 받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0.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14호봉으로 정한(공무원보수규정 개정, 2000.1.8.) 이유는 기간제교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므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 교원 퇴직시 승진 제도

질의

1. 교직에 40여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승진 혜택 없음.
2. 교직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퇴직 때 승진시켜 퇴직시킴.
3. 교육에 대한 공헌도 등 모든 분야에서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한 교원이 우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불이익과 심적인 고충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정 바람.
4. 교육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정년퇴직 교원에게는 승진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며, 명예 퇴직 교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음.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교원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교육공무원에게만 예외를 정하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교사 차별하는 승진가산점 및 전문직 응시 제한 시정 요구

질의

- 현재 일선학교에서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승진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요, 국립고에 근무하는 담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진시 담임 점수가 정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보완되는 특혜도 없으면서 국립고 근무 교사만 담임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교원정책과]

- 담임 가산점은 선택가산점의 하나로서 선택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가산점을 산정하고 이를 명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간대학원 학위 취득 인정

질의

- 공무원 승진규정 주간대학원 학위 취득 인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1981년 3월부터 1983년 2월까지 일반대학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재입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일반대학원 재학 시 1982년 사립중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장의 허락을 받았고 대학원 수업이 교육대학원생과 함께 이루어져 근무시간에는 지장이 없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료만 하고 말았는데 대학원의 결원이 생기면 재입학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걸쳐 심의 받고 논문을 제출하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13년부터 소속 상관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을 하려고 하지만 1982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 야간에 교육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다는 서류는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 취득 실적을 평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교사 신분에서 대학원(1982~1983)에 다니고 교감 신분(2014년)에서 학위를 받아도 교감신분 평정 시 사용할 수 있는 학위 취득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교원정책과]

- 주간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실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는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학교장의 허가(승인)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 원본 또는 사본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승진후보자작성권자의 권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경력 산입

질의

- 학군장교는 졸업과 동시에 입관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 군복무를 하



게 됩니다. 교원인사 발령과 관계없이 군에 입대하므로 제대하고 교원인사발령을 받아도 교육경력에 군복무 기간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교원인사발령을 받은 후 군 입대하는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교육경력에 산입해 주고 있습니다. 학군장교는 교원인사발령을 받고 입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5.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 시경력평정 기간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ROTC 장교로 복무한 기간 중 가산 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으로 승진 경력 평정의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육경력 평정의 수정 요청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연수휴직(국내 연구기관)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의 경우에는 경력평정은 50% 산입하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0%도 경력평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는 2013년 4월 16일자로 30년이 되어 25년이 초과되었기에 나머지 50%도 경력평정으로 산입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국내연수휴직은 50%만 경력평정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제 경력은 2개월이 부족한 29년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하게 된 경우’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50%의 평정비율을 적용하여 경력평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가와 연속된 연가 휴가처리 방법

질의

- 동일 질병에 대한 병가(60일)에 이어 연가(21일)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연가처리시 공휴

일, 토요일휴무일은 산입해야 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교원정책과]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주5일수업제 전면 미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는 산입하게 됩니다.

수석교사제 연구활동비 지급

질의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없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는 것은 어떠한 지침(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 등)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개 시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도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매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직책급여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교육부장관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활동비는 교육부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지정해 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품의로 부터 시작하여 사업경비로 간주하여 정식회계절차(계약 등)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교원정책과]

-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5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12년 수석교사(초등·중등) 산발·운영 기본 계획 통보」(교원정책과-9716, '11.10.30)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계획에 따르면,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 월40만원 지급·연구활동비 정산관련 - 시도교육청에서 6개월 단위로 수석교사 개인 계좌로 연구활동비를 입금하고, 정산서를 제출 받는 방식으로 처리권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학교에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와 관련한 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방식 등을 보



완하여, 학교 단위에서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부담 제한

질의

- 교육부의 방침은 수석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과 어긋나게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9. [교육부 교원정책과]

- 수석교사는 도입 취지에 따른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며, 이 때문에 교감, 교장으로 승진이 제한되게 됩니다. 민원인께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방침과 어긋나게 수석교사가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전문직 응시와 관련한 자격 제한에 대해 따로 방침(또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즉,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이 판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예, 교육경력 15년 이상 및 관내 근무경력 5년 이상 등) 또한, 수석교사의 경우 법률 및 법령에 따라 임기 중에 교장(감), 원장(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은 하고 있으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근무 연한

질의

- 형편이 어려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공부하고 싶으나 5년 동안 기간제교사가 근무연장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기간제 교사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법률상으로는 1년이 임용기간이고 3년 연장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 [교육부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의 경우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임용한다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수당 지급 여부

질의

- 21년 재직 후 의원면직 처리된 퇴직교사입니다. 퇴직 후 교육청에 명예퇴직수당신청하였으나 다음사유로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불가사유 : 당시 공무원일 때 수당신청기간에 접수 안 했고, 의원면직된 자) 당시 업무담당자에게 18년 교직근속재직과 육아휴직 3년을 알렸음에도 재직기간 계산착오로 의원면직한 것인데 참작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9. [교육부 교원정책과]

- 재직기간 착오로 의원면직 후 명예퇴직 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규정에 의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의 규정에 서 정한 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립학교 개방형 교장의 중임횟수 제한

질의

- 본 학교법인의 학교장 임기가 만료 예정에 있어 현재 재직 중인 개방형 교장을 재임용 예정에 있으나, 관할 교육청에서 중임제한 횟수에 해당되어 재임용이 어렵다는 의견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5항에 의거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학교법인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0.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5항의 규정은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질의

- 교육공무원(영양교사)에 대해 징계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3. [교육부 교원정책과]

1. 「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의 임용권은 해당 교육감에게 있으며,
2.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사의 징계사건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교육공무원(영양교사) 징계 관련 사안은 해당 교육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교감 직무대리 발령시 절차

질의

-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현재 공석인 사립고등학교(학교법인)의 교감 자리에 평교사를 “교감 직무대리”로 발령 내려는 경우도 반드시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이러한 절차(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교감직무대리 발령 낸다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지요? 교감 직무대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도 무방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4. [교육부 교원정책과]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교감의 교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교감의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교감의 직무대행은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될 사안이며, 직무대행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서 정하는 관할청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재직시 연금 지급 이의

질의

- 학교 교직 명예교사들은 명예를 신청해놓고 똑같은 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면서 연금에 월급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보충하면서 연금도 주고 월급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자들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명예퇴직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에 의해 임용된 경우로 14호봉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 후 연금수급 중에 재취업 또는 자영업 등을 통해 연금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금액(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매월 약 317만원(전년도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월액) 이상이 되면 매월 연금이 일정부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소득공제후의 금액이므로 연금일부정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매월 소득이 약 4백만 원 이상 되어야 하며, 현행 기간제 14호봉의 급여는 연금 감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올림픽 대회 출전시 교원 복무처리

질의

- 교원이 국가대표감독으로서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될 경우 참가를 위한 합숙훈련 및 대회 참가 기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7.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9호에 따르면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에 대해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 등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질의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관련 사항입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포함)로 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17시에 퇴근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은 어떠한 근거로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교사들만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는 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시행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은 교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7. [교육부 교원정책과]

- 현재, 국·공립 유·초·중등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국가공무원인 교원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교원은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8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교원은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하고 학교 단위로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 가능 여부

질의

-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상담교사가 제출한 휴직원에 의거 질병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또 다시 질병휴직원을 신청하자 연장발령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없이 휴직자가 제출한 휴직원으로만 질병휴직 처리하였습니다.
- 휴직 발령기간은 그대로 두고 질병휴직 연장 발령기간인 뒤늦게 알게 된 임신(5개월) 사유로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7. 2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병휴직을 증빙자료 없이 한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병휴직이 2010.9.1부터 2011.2.28로 이미 종료가 되었다면 질병휴직 기간 중에 임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없었다면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2010.9.1~2011.2.28기간 중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시점으로 질병휴직을 종료하고 육아휴직을 발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공무원이 임신을 인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육아휴직기간을 2010.9.1자로 발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 시점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으로 정정발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즉 휴직은 사유가 있고 해당 공무원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휴직 발령을 하는 것이지만 해당 사유가 있다고 당연히 휴직발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원 교사(2급)의 전문상담교사 임용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고,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자격이 되는지, 전문상담교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4.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사 채용은 교원자격증의 해당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인 상담교사와 별개로 비교과 교사자격입니다.



- 따라서 전문상담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응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이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병가일수 산정 방법

질의

- 방학 중에 수술하여 병가일수를 2달(60일) 쓰고자 합니다. 방학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2달을 쓰고자 합니다. 가능하나요? 아니면 수술한 날 기준으로 2달을 써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8. 20.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시작하는 시기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병가 일수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60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부득이 하는 휴가임을 고려할 때, 학교 운영 및 학생지도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또한,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교원이 휴무일이 아니므로 방학이나 학기 중을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퇴임후 중임 기간

질의

- 학교장으로 2년 6개월 근무한 후 정년퇴임한 교장이 퇴임한 그 학교에서 중임하고자 할 때에 중임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24.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장의 중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장의 임용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교장으로 2년

6개월 근무한 후 정년퇴임한 교장이 퇴임한 그 학교에서 중임하고자 할 때에는, 교장의 임기제와 정년제에 대한 당해 학교법인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정관이 정한 기간 동안 중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직 교원의 고용휴직 가능 여부

질의

- 공립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 내 계약직 입법조사관으로 임시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6.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6항에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 사무처도 다른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 교원 입법조사관은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인 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력직공무원 직위를 개방형직위에 따라 채용계약이 되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직여부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의 임무와 책임

질의

- 교장의 임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고,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의 임무는 각각 다릅니다. 임무가 다르면 책임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 1) 지필고사가 끝난 후 오류문항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도 담당교사와 똑같이 오류문항 출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 질의 2) 교장으로 임용되면 경리관의 직위가 부여됩니다. 경리관이기에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항 이외 추가되는 임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계법령을 알려주십시오.
- 질의 3) G2B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한 것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 내용이 실무자와 똑 같



은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인지요? 같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학교장의 책임 내용이 실무자와 똑 같다면 학교장에게 회계전문 연수를 시켜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8.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교직원의 임무 중 ‘교장은 校務를 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감이나 행정직원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교장은 학생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시설관리, 예산 집행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임무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학생의 교육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실무자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 내용 및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해당 관할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해당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관직이 지정되어 있으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예산의 집행시 회계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청이 분임경리관인 학교장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교장자격연수시 표준교육과정에 학교회계 및 시설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자체 교장 직무 연수과정 또는 기타 연수과정 등에 회계실무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해외영주권 취득

질의

- 교육공무원의 휴직을 통한 해외 체류시 영주권 취득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외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1항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법 제10조의2(외국인 교원)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국적을 유지한 상태라면 복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병역복무 휴직기간중의 승진 가산점 처리

질의

- 현재 시행되는 교원 승진규정에는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경력평정을 하고 있으며, 역시 호봉승급에도 정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여금도 소급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유독 가산점 규정에는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관계로 본인은 이 부분이 매우 부당 하다고 여겨집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군 휴직 중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인정 요청과 관련하여 가산점 관련 경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이는 같은 군 휴직을 하더라도 군 휴직 시 소속 학교가 도서벽지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교원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이는 불공평한 인사평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계 회사 취업 배우자의 경우 동반휴직 가능 여부

질의

-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필리핀의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재직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당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국내기업이 아니므로 동반휴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의 기업이 아닌 국내의 기업에 근무할 때만 동반휴직이 가능한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동반휴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현행 법률상 배우자 및 근무기업의 국적 여부를 따져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 교육장)는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지 배우자 및 근무기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반휴직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휴직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직 교사의 타 학교 출강 가능 여부

질의

- 정규 수업 후에 타 학교의 방과후 수업 강의를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통상 근무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는데요. 현직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근처 타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같은 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학교 방과후 수업강의는 영리 업무는 아니므로 겸직가능하나, 본 소속기관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는 겸직허가 신청서 및 타 학교의 강의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재를 받고, 외부 출강시에 출장(여비 미지급)으로 복무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직 인적성 검사 실시 횟수 축소 요청

질의

- 2013년부터 각 대학에서 교직 인적성 검사 도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횟수를 2회로 규정하셨는데 1회로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 드립니다. 사실상 2회 측정이 1회 측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직 인적성 검사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이나 피검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잖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예비교사들의 교육자적인 인성과 자질을 함양코자 하는 데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이 신뢰를 잃어가는 현 상황에서 열정과 바른 인성을 갖춘 교

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 실시 횟수를 2번으로 정한 것(2년제 대학은 1번만 실시)은 그 만큼 교사에 거는 국가사회적 기대가 지대하다는 의미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면, 교직 적성, 인성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적격 판정의 기준 등은 대학의 장이 자율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음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책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 문의

질의

- 저는 2006년 3월 1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초임부터 한 호봉씩 높게 책정되어 2012년 7월 1일자로 호봉정정이 되었고 억울하긴 하지만 과다 지급분을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과다 지급된 봉급의 반환을 호봉정정 기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기간만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봉정정 기점에서 초임호봉까지 전 기간을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국가가 공무원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3.1.22) p48에서 규정된 [호봉정정의 경우 당초의 잘못 발령된 호봉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며,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과소 지급된 보수의 환급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 육아휴직자 호봉 승급

질의

- 셋째 아이 육아휴직을 2년간 하고 2009년 3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최초 1년에 한해서만 호봉 승급을 했으나, 2011년 1월자로 셋째 아이 육아휴직에 한해 최대 3년까지 호봉을 승급해준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보았습니다.(제44조 제1항 제7호) 그 조항의 뒷부분에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은 산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관리자분께 호봉승급을 요청 드렸는데, 그 조항에서 '셋째 이후'라는 표현이 넷째 자녀부터 해당되므로 승급은 1년만(전과 동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54에 따르면,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이후(셋째부터 가능)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 가능합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질의

- 전문대생인데 사고로 휴학을 하였고 필요한 과목이수를 위해 졸업을 미루고 1년을 더 다녀야 했습니다. 돈에 해까지 미뤄가며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생들과 동급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저만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총점평균 75점 이상 정교사 자격 이수 조건에 같은 교수님께 같은 강의를 듣고도 04학번이라서 부분 교직과목만 평점 80점이 되어야 하는데 79.3점이라서 취득을 못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졸업년도가 아니라,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 분류되어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이 기준점수 미만이라 무시험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원자격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발급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므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신력을 잃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질의

- 현재 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올해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으로 입학하려 하나 내년 쯤 집안사정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면 계속 재직 중인 상태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다면 현직 교원이 아니라도 자격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 단,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검색 :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가능 대학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2급정교사 자격의 전문상담교사 자격 전환 요청

질의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학과를 졸업하면서 상담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자격증은 아주 쓸모없게 되는 방면 오히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은 아주 필요한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 사회도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은 현실에 맞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으로 전환해 주는 절차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원에서 이수했던 과목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의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1971년 교육법에서 “교도교사”라는 이름의 자격제도를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199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명칭을 “전문상담교사”로 변경하였고, 2004년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와 같이 정교사 이외의 교사로 분류됩니다.
- 정교사 이외의 교사는 교과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고, 학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은 중등학교의 상담관련 교과지의 지도를 위하여 도입된 표시과목으로, 학생상담이 목적인 전문상담교사와는 달리 교과지도의 목적으로 1982년 도입되었으며,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자격증은 양성의 목적과 양성과정, 자격취득 후 주요 업무, 정원 관리 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현행 규정상 기 취득한 교원 자격증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등학교 상담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을 전문상담교사 자격으로 전환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의 신규 발급은 어렵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신청 반려

질의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공통사회 자격과 2급 정교사 역사 자격을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공통사회 과목으로 2년 간 근무하고, 2012년 3월 1일자로 임용발령 교과가 역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역사로 임용교과가 변경되기 이전 공통사회로 근무한 2년 경력은 역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준으로 인정하지 못하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습니다. 2년 간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 두 과목을 지도하였으며, 중학교 공통사회 교과에는 역사 교과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및 별표1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3조에 의거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그가 전공한 학과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취득하신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통사회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자격증은 과목이 유사할지라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자격증처럼 다른 자격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을 선발할 때에는 임용이 된 자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력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013년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기준의 불합리 시정 요망

질의

- 본인은 8월말에 퇴임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8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토록 한 지침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무원(사립학교는 정교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하고 지급기준일에 공무원 신문을 유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공

무원 성과상여급 평가 및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예외를 정하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간제 교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사기진작,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위해 2개월 이상 동일학교에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 지급 근거가 공무원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기교사 자격증

질의

- 교원자격증 분류 중 실기교사자격증 무시험 취득 방법으로 전문대학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한 상태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상태에서 다시 전문대학을 재입학하지 않고 제 전공인(자동차정비)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방법은 소원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증 검정은 무시험검정과 시험 검정이 있습니다(시험검정은 '80년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실기교사 자격은 다음의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실기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무시험검정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난에서 같다)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기교사 양성 과정이 승인되어있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서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현 제도에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성과급

질의



- 기간제 교원 성과급 비지급분 중 2009년도 ~ 2012년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년도까지 받지 못한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07. 3. ~ 2008. 2. ○○학교(공립), 2008. 3. ~ 2009. 2. ◇◇학교(공립), 2009. 3. ~ 2011. 2. □□학교(사립, 2년간), 2011. 3. ~ 2012. 2. △△학교(공립)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거 공무원(사립학교의 경우 정규 교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경력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사립학교의 경우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평가 대상기간 : 2012년 1월~12월 31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해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은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동일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2.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 분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2012년 1월~2월까지 2개월간 기간제교사로 △△학교에 근무하셨는데,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신 2개월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으로 1일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은 학교가 선택한 개인별 차등지급률에 따라 지급 받으시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은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 +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입니다.



교육공무원 해임취소 결정에 따른 보수 지급

질의

- 교사가 해임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해임 중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의원으로 재직할 경우 보수 지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보면 “~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계보전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특수근무수당(담임수당)등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급가능한 수당과 지급 불가능한 수당을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2.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료수집 및 직무활동비로 매월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보수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3. 교사는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복귀가 된 것으로 보아 보수하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복귀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보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상 지급가능한 수당과 지급불가능한 수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징계 해임 처분되었던 자가 권한 있는 기관(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 그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그 해임기간동안의 보수를 소급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교원이 해임기간 중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보수는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는 교육청에서 소급하여 지급하고 정산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에서 별도의 정산 절차를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3. 복귀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전이므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령년수 교사 호봉 인정 여부**질의**

- 1. 초등학교 6년 졸업 2. 중학교 3년 졸업 3. 고등학교 3년 졸업 4. 전문대학 2년 졸업 5. 대학 4년 졸업을 하였으면 학령년수는 18년입니다. 물론 위 기간 동안에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문대학 2년이 교사 호봉 산정에 가산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규 규정에서 경력 80% 인정가능한



동등 정도의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2개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간의 동등학력인정으로 인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증 취득

질의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어디인가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아니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없나요? 또, ○○여대는 아동학과 안에 아동심리학, 유아교육학 전공으로 구분되는데, 유아교육학 전공을 하면 1급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부가 지정하는 대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주대, 군산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가천대, 경기대(수원), 경남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아대, 명지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순천향대, 신라대, 연세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조선대, 한국외대(서울), 한양대 입니다. 해당 대학원의 유아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셔야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협검정 기준

질의

- 현재 주전공으로 지구과학교육을 이수중이며, 복수전공으로는 물리교육과, 교직연합전공으로는 공통과학을 이수중입니다.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복수전공, 연계전공에서 15학점을 중복인정이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이 물리, 지구과학, 공통과학 세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려 하는 경우는 서로간의 15학점이 상호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요? 만일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면 공통과학 ↔ 지구과학 간에 중복인정받은 과목을 공통과학 ↔ 물리 간에도 중복 인정이 가능한지요? 물리(40학점) 지구과학(52학점) 공통과학(35학점) 위와 같이 이수하고 모자란 학점은 중복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공통과학 이수 기준에 대해 입학 당시(2009년 3월)에 안내받고 이수중이었는데, 기본이수과목이 2009년 2학기에 변경되었던군요. 하지만 학교에서 2013학년도 1학기에 그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수를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9.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득 시 학점 중복인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1조에 근거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계전공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 가산호봉 인정기준**질의**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4년제 일반 종합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 졸업장에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열이 명시되어 있어야 9호봉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2. 교사호봉획정 예규에 보면, 가산연수 인정기준에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되는 자'가 9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범대 또는 사범계열 졸업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3. 교사 호봉 획정은 전국에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열이라는 문구는 졸업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9호봉 인정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가산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와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예규상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이면 인정됩니다.
2. 사범대 또는 사범계열 졸업자여야 2급정교사 자격기준 1호에 해당됩니다.
3. 국가공무원인 국공립 교사에 해당되며,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유치원정교사(2급), 유아교육법 제22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에 따른 졸업자이므로 가산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 각종수당 지급 대상

질의

1. 중학교 전문상담교사가 파견 가셨습니다. 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연구업무수당(월 8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파견가신 선생님이 원소속 기관이 중학교인데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이신지요?
2. 올해부터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에 따라 파견 기관이 정해지며 주로 자택에서 연구연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 정액분과 초과분을 지급해드려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연구업무수당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할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원소속기관이 아니라 현재 담당하는 업무 기준입니다.
2. 초과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출근일수로 인정하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사전명령과 근무종결후 퇴청 시간이 명시된 서류가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없을시 인정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 육아휴직시 수당 지급

질의

- 현재 여교사가 육아휴직시 얼마 기간 동안 할 수 있고, 얼마가 나오나요? 앞으로 추진 중인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육아휴직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최대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며 금액의 산

정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없습니다.

● 농사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질의

- 일반행정직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농사경력이 있으면 공무원 임용시 호봉에 반영(군제대자 2호봉 반영처럼)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영된다면
 - 1) 안전행정부에서 시험 공고하는 국가직 교육행정공무원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각 지방교육청에서 시험 공고하는 지방직 교육행정공무원만 해당되는지?
 - 2) 관련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본인의 농지원부 등)
 - 3) 세대주가 본인이어야 하는지?
 - 4) 군제대자 2호봉과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인지(군제대자 2호봉 + 농사경력 n호봉) 등 위 1)~4)외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농업에 종사한 경력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3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행정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 급여

질의

- 사립학교 교원(초, 중, 고)은 공무원이 아닌데 모든 임금을 왜 세금으로 받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립학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 등 국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차별 없이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직 적인성 검사

질의

- 2013년부터 시행되는 교직 적인성 검사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로 입학할 경우 입시전형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범대 인성, 적성검사를 하고 점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2013학번부터 적용되는 교직 적인성검사 2회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그러면 사범대 학생들은 적인성검사를 받고 입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별도로 또 실시하려는 재학중 적인성검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다시 말해서 (A)와 (B)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5. 29.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범대 입학 시 입시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적성검사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교원자격검정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되는 검사입니다. 동검정령 별표1에 따르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한 교직 적성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입학 전 치른 인성, 적성 검사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질의

- 2년제 유아교육학과 졸업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 하였습니다. 지금은 문헌정보학 전공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준비 중인데 학점이수시 사서 2급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제가 유아교육 전공시 교직과목을 18학점 이수 했습니다.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서교사 2급 자격기준 1호를 말씀드리면,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 기준에 따

르면 대학 재학 중 해당 전공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귀하와 같이 해당학과 재학 중이 아닌 곳에서 이수한 교직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서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제3호 기준에 따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질의

- 전문대 출신이며 학교에 다닐 당시 교직과목 2과목 이수하면 실기교사 자격증이 나온다 하였으나 받지를 못하였고 아울러 현재 학교는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적부 확인 후 어떤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께서 졸업한 학교가 폐교가 되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폐교된 학교의 학사 자료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8항4호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02-3479-2509)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사(건축)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직과목 이수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건축 과목의 경우 건축목공, 건축제도,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 당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사망조위금 지급

질의

- 회원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망 후 3년 이내에만 신청가능하며, 지급 가능하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기간을 제한하여 회원 개인에 대한 복지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사학연금에서도 교직원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사망조위금 해당)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학연금법 제54조) - 상기의 시효제도는 교직원의 복지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급여 지급과 관련한 법률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보전이 어려운 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결 76다148 참조) - 아울러 민법(제163조), 근로기준법(제92조), 공무원연금법(제81조) 등 타 법률에서도 사학연금법과 동일한 시효제도를 두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초등교사 이중학력 호봉 인정

질의

- 초등교사 임용 전에 4년제 대학교(교육대학교가 아닌 일반 4년제 대학교)에서 5학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사 임용 이후 나머지 3학기(야간대학)를 이수하고 졸업하여 졸업장을 획득하게 되면, 임용 전에 다녔던 대학 5학기(이중학력)를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규에 따라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 나머지 3학기를 이수하면 3학기는 경력 중복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임용 전 5학기의 경력은 경력 중복이 없는 한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직 교원의 부전공 학점 이수

질의

- 저는 현직교원으로 부전공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본 대학원 학사 규정에 따르면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과 석사학위 과정 수료 조건에 전공 30학점과 교직 6학점 총 36학점 이수입니다. 제가 2011년 3월 입학 당시 과목당 학점이 2학점이었으나 2012년 9월 과목당 학점이 3학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과목당 2학점이었을 때 교과영역 3과목에 6학점, 나머지는 내용영역 24학점으로 이수 할 목적이었으나 시간당 3학점으로 상향되면서 교과교육영역 필수교과목 3과목 수강에 8학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교직을 제외한 전공 30학점 중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필)과 교과

내용영역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을 이수했다면 나머지 학점은 교과교육영역이나 내용영역에 구별 없이 나머지학점만 이수된다면 석사 학위 수료와 부전공 무시험 검정 합격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서 행정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일이 벌어진다면 지도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학칙개정 과도기에 있어서 일부 아쉬운 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학칙 개정 내용을 보니 경과규정을 두어 학칙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대상의 구분도 학칙개정 전후 입학자로 구분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 또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만 교원자격검정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면서 졸업하셔야 부전공 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생 교원자격증 취득

질의

- 사범대에 진학하였으나 뜻이 맞지 않아 교원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범대 학생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학교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졸업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6조에 의한 학교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 일부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졸업기준을 교사자격증 취득기준 이상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해당대학의 학칙을 우선 살펴 보셔서 졸업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초과근무 인정

질의

- 매주 주말 교육청 주관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 담당자로서 대회 운영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근무지내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관련 공문에서는 단위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전국단위 대회 등에 인솔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교육청 직원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당일에 휴일근무수당, 대체휴무 등도 없어 출장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입장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상 출장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교원의 근무특성상 학생인솔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조치 및 교과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의 판단 하에 인정하도록 안행부와 협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반체육행사 운영 및 참가 시에는 시간외수당과 출장비의 중복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학교 교직원 법 적용 범위

질의

1. 외국인학교의 교원(외국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제4장 교원의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받게 되는지 여부
2. 외국인학교 직원(내국인)의 경우에는 그 퇴직금과 관련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여부에 대하여, 외국인학교에 근무하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학연금의 적용 범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교원 및 사무직원 모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사립학교법」 제60조의2(사회보장) 참조
- 즉, 외국인학교 법인의 정관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해도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은 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사항 중 외국인학교 교직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노동부 등 해당법령 소관부처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 발급

질의

- 특수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1조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장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적근거로 교육청에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 발급을 요청한 결과 초등학교 교장 임용을 전제로 할 때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용이 전제 되지 않을 때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장 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 취득이 목적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현재로서는 임용예정학교가 없을 경우 교장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장자격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4호, 초등학교 제3호, 고등기술학교 제1호에 대한 검정은 해당학교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함.”[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55] 귀하께서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 취득이 목적라면 실무편람의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가능하며, 초등학교 교장자격증 취득 후 사립 초등학교에 임용이 목적이라면 사립 초등학교 임용 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원의 방학중 시간외 수당 지급

질의

-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방학중 자가연수) 기간 중 시간외근무와 관련, 교원의 방학기간 중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정액지급분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시간외수당 실적지급분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교원이 자가연수 기간 중 학생 교외생활지도를 위하여 16:30~20:30까지(4시



간) 관내출장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였다면, 시간외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자가연수 기간 중 학생지도 명령을 받아 관내 출장 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외의 관계로 관내출장으로 할 것인지 시간외처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 교장의 명을 받아 처리 하시면 됩니다. 대신 시간외근무 명령시에는 20:30까지의 일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의 시간외근무 명령은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보다 엄격성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립학교 조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대상 여부

질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단의 방침으로 교직원인 조교를 2012. 7. 1일부로 교직원연금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학연금공단의 이러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행정처리로 사료되며 이러한 행정처리는 조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일선에 많은 혼선과 인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조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3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전에 조교는 교원으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였으나, 직무의 성격상 교원에서 제외된 이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는 현행법상(사학연금법 제2조) 교원이거나 정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무직원이어야 하므로 정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조교일 경우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2011년 6월 감사원에서 '대학조교는 사무직원으로 관리하여 국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에 따른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서는 여전히 행정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교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종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조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학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의 자가연수 및 보전수당 지급

질의

-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특수교사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기관장의 허락 하에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자가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에게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동일하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행 법령상 학교가 아니므로 자가연수 및 보전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교원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2급정교사 자격부여 기준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내용 중 산학겸임교사 자격증 발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현행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되는 과목에만 산학겸임교사의 2급정교사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하지 못하는 특수과목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입니까? 미술, 디자인 교사자격증 소지자로는 애니메이션, 만화 분야를 가르칠 수가 없어 학교의 채용공고를 거쳐 산학겸임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위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저희가 만화, 애니메이션 2급정교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사의 자격증 표기 표시과목은 기존 표시과목에 교육감이 세부종목을 병행하여 표기하게 됩니다. (예시) 체육(승마), 체육(골프), 미술(애니메이션). 대통령령은 교원자격검정령입니다. 법령 관계는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임용고시 장애인 구분 모집

질의



- 교원임용고시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이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과목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누적인원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매뉴얼 13쪽에 근거한 것입니다.
- 각 시·도교육청에도 제대로 장애인구분모집을 해달라고 했지만 자꾸 6%만 언급하고 누적인원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장애인 누적인원을 해서 홍보해달라고 하였으나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교육감은 교사의 임용권자이며, 동법 제9조에 의거 교육감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며 장애인 교사 채용인원도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채용인원의 6%를 적용하여도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이 0명일 때 누적인원채용을 적용하는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의무채용인원이 0명일 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도교육청의 판단으로 더 세분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적채용 인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교사 교원 자격

질의

- 안녕하세요. 기계분야 교원자격(실기교사) 무시험 자격 검토에 문의 드립니다.
- 1. A대학(전산전공)졸업 후 B대학(기계전공)으로 편입했습니다. A대학 재학 때 교직과목을 취득했고 B대학 편입 후 졸업(기본이수과목 취득)한 다음 기계분야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러면 기계분야 실기교사 무시험 자격 검토로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 2. 만약, 가능하다면 A, B대학 중 어느 학교에 문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 3. 현재 B대학에서는 교원자격 발급불가라며 교직과목을 이수한 전적대학에 문의하라는데, 제가 취득하고 싶은 것은 기계분야(B대학)거든요. B대학에서 교원(실기교사)자격 발급불가라고 얘기하고 A대학에서도 발급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28.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은 교원양성과정을 승인받은 학과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A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이수

하셨으므로, A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졸업 이후라 할지라도 관련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자격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인의 경우 A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전산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의 A대학의 전산전공 학과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국가자격증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격증이 아닌 경우 자격 발급이 불가합니다.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 산정시 교원 임용전 경력 반영

질의

- 교원임용 전 약 4년의 대학조교 경력과 약 1년 9개월의 학원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원로교사수당 지급대상 교육경력 산정 시 포함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30.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원로교사수당 지급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실제 교원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원 임용전 조교경력 및 학원강사 경력은 호봉인정과 달리 원로교사수당 교원경력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사학연금 가입후 퇴직금 지급

질의

- 일반 사립대학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1년간 근무하고, 계약직 만료 후 1년 연장계약을 한 근로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사학연금을 1년 6개월 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2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때 일반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2. 8.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학연금제도의 적용대상 중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사무직원의 정원·임면,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을 지급받습니다. 이 때 퇴직수당이 일반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시금은 사학연금법 제42조에 의거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8조(퇴직일시금)에 의하여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급여산식(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여 재직기간별로 산정되며, 퇴직수당은 사학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에 의하여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비율(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6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재직기간별로 산정됩니다.
- 즉, 이와 같이 본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20년 이상 재직 시에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일시금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질의

- 배우자는 교육공무원이고, 저는 준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10조5항에 보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한 명이 인건비가 보조되는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 중복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니는 기관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정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저는 저희 기관에서 자체 가족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배우자(공무원)는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가족수당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관이 아닐 경우 배우자가 민원인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내 교원 임용시 해외 교사자격증(PGCE) 인정 여부

질의

- 국내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을 얻는 방법이 있겠으나, 내년에 기회가 되어 해외 대학교의 PGCE(교사양성과정)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PGCE 과정을 이수하면 정교사로서 채용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외 대학교의 PGCE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든(초등/중등, 1급/2급) 교사로서의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교원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설치 및 운영 승인을 받은 곳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해외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은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해외 대학교의 PGCE(교사양성과정) 과정을 수강하셨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교사 자격증의 취득은 불가하며, 따라서 해외 대학교의 PGCE 자격증의 경우, 국내 유치·중등 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대학교 성비 비율 지정 선발

질의

- 교육대학교 성비 지정 선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육 대학교는 입학생 선발 시 남녀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 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며 능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8.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초등교육의 경우, 지나치게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언론 등을 통해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 교육대학에서는 초등교육의 균형발전 및 교직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상한비율을 정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수급자 자격변동 지체의 경우 권리 청구

질의



- 사립학교에서 여러 차례 파면을 당했으나 결국 파면무효처분을 받았고, 밀린 임금과 손해 배상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금수급자로서 그 동안 50%밖에 받지 못하였기에 자격변동 신고를 학교재단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2개월 이상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학교재단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요? 사학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파면무효처분에 따른 복직이 결정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직원의 신분변동신고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동 이행을 지연하여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청구를 할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호봉 재확정 및 정정

질의

- 저는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2년 2개월 다녀왔으며 정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1호봉 되어야 하는데, 9호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교육청에 알아보았더니 병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하여 군복무 기간이 빠져서 9호봉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군요. 호봉의 정정을 해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3. 29.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호봉 재확정 및 호봉 정정의 판단은 이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 의한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그것이 호봉 담당 공무원의 책임일 경우 호봉의 정정으로 처리하고, 반면에 교원(관련 서류 미제출 등)에게 책임 있을 경우 호봉 재확정의 사유로 처리됩니다.
-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정상적인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호봉의 정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 호봉담당자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질의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1급 발급이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여 졸업했을 시 발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그 교육경력이 대학원 입학전 기간제교사 기간을 포함해서 3년이 확실한지?
2. 또 교육경력 3년이 채워지고 대학원 재학기간 중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그만 두었을 경우에도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교육경력이라고 하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기간제교사도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2. 3년 경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직 교원이 아니라도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25)

유치원 교육실습

질의

- 현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반으로 유치원 교육실습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에서 실습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유치원 교육 실습이라 하면 유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에서 교육실습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급적 다른 유치원에서 정확하게 교육실습을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 만약 본인 설립 유치원에서 교육실습 과정이 부실했다는 민원 등이 있을 경우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선정은 해당 대학이 책임을 지고 선정해야 하므로 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감, 교장 자격

질의



- 상업정보 1정 자격증을 취득한 후 A특성화고교(사립학교)에서 11년 근무를 하다가 B특성화고교(사립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B학교법인에서 장학 교감, 교장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비교과교사라도 교감연수를 받아 교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교장 발령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는 현재 비교과 교사이지만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11년의 교육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교육을 통해 교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연수 및 일정,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소관 업무로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출산휴가 사용 교원의 성과급 불이익

질의

- 저는 2012년 2월 말에 출산 후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인 교원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에서 출산전후 휴가 사용한 교직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침을 새로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학교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월 발표한 새로운 지침은 2012년에 휴직한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소급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아직 받지 못한 성과급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때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직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실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예외를 정하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또는 육아시간)를 사용하였더라도 평가등급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산전후 휴가 기간은 평가기준 중 근무일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권고 반영)



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질의

-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2개월~8개월 근무하고 정년이나 명예 퇴직한 교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원은 주고 어떤 교원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무원(사립학교는 정규교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근거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 합동, '12.1.16)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성과상여금은 지급 기준일(2013년 : 전년도 12. 31, 2014년 : 금년 2월 말) 공무원인 자(사립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정규교원의 신분 유지)를 대상으로, 2개월 이상 실제 근무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예외를 정하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2014년부터 평가 대상 기간이 3.1~다음해 2월 말일로 변경되어 2월 말일이 지급기준일이 됨)

위탁형 방과후학교 강사 호봉산정**질의**

- 2005~2008년 ○○중학교의 위탁형 방과후학교에서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소속으로 상근하며 근무했습니다.(오후 2시 출근 ~ 오후 10시 퇴근) 현재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방과후 강사 호봉법이 바뀌어 호봉 재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학교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3할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위탁형 방과후 강사 또한 똑같이 호봉 인정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근무한 학교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경력증명서는 3할 인정 가능)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상통직 경력의 교원 경력 환산율

질의

- 교원 산업체 등 근무 경력교사의 임용 전 경력인정에 의하면 4년제와 2년제 대학 졸업 후 산업체 동일직무 경력은 100% 인정,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동일직무 경력은 40% 인정 적용되고 있습니다. 4년제, 2년제는 동일하게 100% 인정되고, 고등학교 졸업생은 동일직무와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자격취득) 상통직에서도 왜 40%로 적용되는지요?
- 4년제, 2년제 졸업 후의 산업체 상통직 경력을 100%로 인정하고 있으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후 동일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그곳에서 배운 지식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100%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교사자격 기준 별표2의 정교사(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임용에 따른 자격 요건을 보면 공통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산업체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실업계 전문교과 등의 교원으로 입직시키기 위한 제도상의 취지를 감안하여 교원입직에 상응하는 순수 상통직경력은 최소 대학(전문) 졸업 후의 경력으로 판단해 적용한 것입니다.
- 민원인은 대학 졸업 후에 동일업무 동일분야의 민간 산업체의 경력의 종전 4할~5할 인정 비율을 → 8할~10할까지 특별 상향해 주는 과정에서 고교졸업 후의 경력이 배제된 것을 학력차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교 졸업의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거 해당 경력별 특성에 따라 일반교과 교원들과 동등하게 3할부터 10할까지 별도로 경력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대학졸업후의 경력과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영양사경력(8할), 전산보조(8할) 노동조합등 근무경력(7할), 지방자치단체근무경력(10할) 등 고교졸업후 경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동 제도는 실업계 교원들의 입직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 해석되는 사항으로 실업(전문)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자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를 보면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협력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1.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을 오로지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 2. 실무편람의 규정이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된 것이라면 ‘강사’를 비롯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 3. 향후 강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1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대학원에서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전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이며, 강사의 경우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강사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실습 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군필자 차별 대우

질의

- 교사로 재직 중 장교로 복무한 후 재작년에 전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이후에 1급 정교사 연수나 해외 파견, 영어연수 등 참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교육계에서는 ‘교육실경력’으로 대상자 순위를 매기다 보니 저 같이 군복무를 한 남성들은 동기 여자들보다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간 뒤쳐지게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군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호봉 책정 시 인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개정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 상담교사 자격 취득

질의

- 기존 중등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상담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와 같이 중등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은 교육부 홈페이지-실국마당-교육정책실-정보자료실에 탑재되어있습니다. 해당 자격 취득 후 전문상담교사로 전직은 각 교육청의 교원정책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 공결 인정

질의

- 사범대학 학생들의 실습인 학교현장실습을 하는 한 달 기간이 공결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결로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보강을 해야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교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수업 결손에 대한 보강을 해야 합니다.

비사범계 학과 명칭

질의

- 사범계나 교직과정 설치가 되지 않은 학과나 전공이 ○○교육학과나 ○○교육학전공으로 명칭을 쓰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대학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육과는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맞으며, 그렇지 않은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교사자격증 발급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교육계의 전공자가 아니면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민원인께서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학과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자격증 발급

질의

- 일본에서 받은 유치원 1,2급 교원 자격증과 초등 교원자격증으로는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없을까요? 꼭 한국의 전문대학에서 공부를 마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외국에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사용할 수 없다니,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현재 일본에서 취득하신 교사 자격증을 그대로 한국에서 인정해 드리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원 진학 및 학부 편입을 하였다면, 일본에서 전공하셨던 전공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로 한국에서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는 대학원 진학 및 대학 편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교원 양성자격

질의

- 교원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자가 특수교육과로 학사편입을 하였고, 중등특수의 표시전공을 이미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하려 할 때 표시과목의 전공수업 인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ex)국어교육과를 졸업해 국어교사 정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특수교육과(중등)로 학사편입을 해 표시과목을 국어로 했을 때, 교직관련 21학점+특수관련 42학점+표시과목 30학점을 취득하여야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에 표시과목 30학점 인정(면제)을 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의 경우 이미 중등 특수교육과 표시과목과 동일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중등특수교육과에 해당되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입학교에서 해당 표시과목에 대해서는 이수 학점이 면제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사학연금 가입 대상 여부

질의

-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되면 사학연금 가입자가 되나요? 대상자가 맞다면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면 다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능자가 되나요? 기간제교사를 20년 이상 할 경우 사학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에는 사학연금 가입 대상인 교직원을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사학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거집단 관련 교사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

질의

- 준거집단(청소년연맹, RCY 등)을 위한 출장 및 시간외근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 질문 1. 초과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정규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업으로 인정되는 학생 인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거집단 학생 인솔지도 시간외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2. 준거집단을 위한 지도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못 주고 관내나 관외(도내)의 학생 인솔은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여부로 판단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학생 준거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장이라 주지 않을 수도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업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정가능하므로 준거집단 학생 인솔지도 시간외 근무는 인정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결재 하에 출장처리는 가능합니다.
2. 출장의 경우 기관장의 결재 하에 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될 경우 출장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도자회의 등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으로 출장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명칭 업체로 인한 피해

질의

- 대출 관계로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는데 비슷한 문구인 다른 교직원공제회가 나타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금동의를 한 적 없는 상태에서 매월 출금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부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하여 교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교직원공제회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대부업체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니 ○○교직원공제회와 관련된 일은 금융감독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하여금 유사 교직원공제회로 인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모든 민·형사상 수단을 검토하여 유사 공제회의 영업을 저지하여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부담금 납부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

질의

- 현재 본원은 사립학교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교직원들의 개인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을 단체협약에 의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개인부담금 지원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부담금 납부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4조는 교직원이 개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개인부담금을 매월 교직원의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에서 대신 부담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적연금 중복 혜택 가능 여부

질의

-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다가 한사람 사망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서로 다른 공적연금을 부부가 수령하다 한사람이 사망하면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우리 부 소관 법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제45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준용 규정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사학연금에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밖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안정행정부, 국방부 소관 사무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원 성과상여금 등급기준 이의

질의

- 단위학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시정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자체 기준이라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등급 기준이나 기준 마련 과정에서 대상자 전체의 의견 수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갖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201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셨다고 하니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단위기관장은 예시된 '교사 성과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 성과 평가 기준(평가분야 -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을 마련하고, 어느 한 평가 분야의 반영비율을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위기관장은 평가분야별 세부 항목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30%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체 교원회의를 통해 성과상여금 지침에 대한 연수와 함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을 선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를 통해 성과평가 기준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교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절차는 단위학교에서의 교원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성과 상여금은 2개월이상 실제 근무한 분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고성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단위학교에서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의 신청 시 재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귀하께 고지해주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마련 시 검토하겠습니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질의

- 초등교사로서 교육대학원(계절)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때에는 졸업과 함께 중등2급 상담교사자격을 주었습니다. 그 자격으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은 중등학교의 상담관련 교과의 지도를 목적으로 1982년 도입되었으며,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과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은 별개의 자격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초등교사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시 교육경력 기준

질의

-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기 위한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2012년에 1년 동안 학생교육원에 5호 파견(교수요원)을 다녀왔습니다. 파견 기간 내 학생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2. 임용 전 과학(물리) 자격증으로 사립학교에서 물리로 임용되어 1학년 과학(즉, 공통과학 영역)과 2학년 물리를 지도하였습니다. 3년 전 다시 공립학교에서 ‘공통과학’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사립학교 증빙서류로는 위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3. 1정 연수 무시험검정 관련해서 “교육대학원(석사) 졸업하고 1년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석사 때 ‘환경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이것도 무시험검정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생교육원 파견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 1년의 교육경력은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만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므로 물리로 임용된 경력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2013년도 교원자격실무편람 p.55]
- 발령 교과와 동일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전공일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단, 이 방법으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점수는 최대 90점을 획득하게 되므로 귀하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제교원 대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질의

-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2학기에 재계약이 안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8월 10일 새로운 일자리로 옮겼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나,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분은 계약한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상황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해지하신 것이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개월간 학생지도에 많은 수고를 하셨으나,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셔서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교원의 경우도 실 근무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와 지급기준일(매년 12월 31일)에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분의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호봉 산정시 산업기능요원 군경력 인정

질의



- 군 복무만료 후 교대에 입학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 산업체 경력이 군경력에 들어가지 않아 호봉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 국가에서 만든 제도였고 3년의 기간을 복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제자라니요? 그런데 임용 이후에 산업체에 복무한 사람들은 호봉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임용 전에 복무한 것과 후에 복무한 것에 왜 차별을 두십니까? 현재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산업기능요원 관련 경력인정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45호) p60에 규정되어있으며,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군경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 예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안전행정부에서 법률개정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민원인의 사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 재직기간 초과 시점부터 정년퇴임까지의 퇴직금 지급

질의

- 사학연금 최대 재직기간을 초과하여(33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이 계시며, 올해 8월 정년퇴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학연금법상 최대 재직기간 초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경우, 최대 재직기간이 초과된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5. 3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부 소관 법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 준용 규정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산정 시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 사학연금법상 최대 재직기간(3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 교사 정부포상

질의

- 재직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원)처벌 받은 사실로 퇴직교원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추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인 경우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이 제외됩니다.
- 해당 지침은 상훈법령에 따라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통일적 기준 및 공정성 확보 등 정부포상 업무의 합리적인 계획 및 집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질의

- 임용 후 10년 이상인 교사는 재교육의 성격의 의무 연수에 참가합니다. 이 경우 교원 본연의 업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연수가 교과연구회 주관으로 본인 소속교에서 행해지는 경우 일과 후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국가공무원 징계복무관련 예규에 교육 참가의 경우는 본연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교육 참가 시간은 초과근무 대상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교사자격증 단기 취득 연수과정

질의

- 산학겸임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승인하면 연수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로 실제로 교원자격을 받은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연수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2.1.1.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산학점임교사 임용, 학교장 추천, 교육감 전형, 특별과정 개설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어 해당 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 해당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특별양성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연수비용은 연수인원 규모, 연수형태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제도이지만, 우리부에서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학교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법 개정

질의

- 작년에 모든 학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문제로 한 학기 졸업유보를 한 상태에서 학교로부터 교직인적성검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학사과정을 마쳐 놓고 교생실습 또한 마친 졸업유보자로서 8월 졸업식에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명서만 받으면 되었으나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성검사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따른 불편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일이 벌어진다면 지도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경우 예비교원에 대한 적성 및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는 수료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법령 개정의 과도기에 놓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의 시기, 방법 등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된 사항이므로 소속 학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신청기한 시효제도의 불합리성

질의

- 사망조위금 신청기한에 3년의 시효제도를 두는 것이 지급과 관련한 법률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보전이 어려운 점을 구제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 76다148) 것이라고 하지만, 사망사실은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전되기가 어려워 3년 안에 조위금을 신청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관련하여 사망 사실의 경우 서류에 기재되므로 증거보전에 어려움이 없다는 민원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급여신청자와 사학연금공단 간의 채권채무관계라는 측면에서 장기간 채권채무관계를 불확정 상태로 두는 것은 양 당사자간 법률생활의 안정을 저해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민원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영양교사(2급) 취득 학점인정

질의

- 교육대학원 영양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교육대학원 입학 당시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 중 총 27학점(영양학 3학점 포함)을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 관련 유사학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 유사학점으로 인정받은 총 27학점 중에 “영양학 3학점”을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영양교사 이수과목의 영양학’ 학점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과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에 따른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지도 감독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학부



때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유사학점으로는 인정이 되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해당 학점의 인정 등은 대학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해당 학과 전공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기본이수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이수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질의

- 대학교 4년제 졸업, 현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아동학 학위 이수과정을 밟는다면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원 정교사 2급 교직과정이 설치되어있는 아동복지학과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학점은행제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 진학하시면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전공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일반대학원(서울대, 한국교원대 제외)에서는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교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을 진학할 경우 학부과정에서 전공을 이수한 사람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전공교과 자격 변경시 산업체 경력 인정

질의

- 복수의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당시 전공교과 자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려는 과목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1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원정원 수급관리상 복수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거 채용당시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임용당시 전공교과 자격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

거 교과정원 관리 등을 고려해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당시의 표시 과목 교원자격증의 변경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많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사회교과 교사가 전기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도 없는 산업체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주장대로라면 이를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과 교원수급 관리상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재발급

질의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자격증 재발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1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셔서 재발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으신 대학의 행정실(교직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교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실경력 인정 범위

질의

- 기존 실기교사 자격증 외에 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기존 경력을 새로운 자격증의 실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2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현재 귀하가 임용된 직위(실기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외에 직위가 다른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실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2013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57) 실경력이라 하면 임용된 직위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사학연금 재직기간 산정시 군경력 반영

질의



-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력사항에 군경력 부분에서 2년 7개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군경력이 날짜로 29일이라서 1달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32개월 군복무하고 제대 했는데 32개월 군복무가 31개월로 경력이 되어 1달이 없어진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학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일수(日數)가 아니라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에도 1월을 채우지 못한 1일~29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1월로 인정하는 계산방법이므로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경우도 병역복무기간 32개월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 참조 그러나, 병역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환산에 있어서는 병적증명서상 입대일부터 전역일까지의 실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경력메뉴에 민원인의 군복무기간이 '2년 7개월 29일'인 것도, 호봉산정시 민원인께서 병무청에서 발급받아 소속기관에 제출하신 병적증명서를 토대로 입력·관리되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별지 제1호 서식 :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참조 아울러 군 입대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날 입대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상의 군복무기간 기록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소관사무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질의

- 교육대학원 입학시 몇 개의 교육학 과목이 유아교육학과 다니던 시절 중복이 되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은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 교육대학원 편람을 본 결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포함)하여 실습이 면제됨이라 명시되어 있어 학교에 문의 하였으나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다며 학교급이 다르니 무조건 실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6.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검정 업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 그리고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9에 따르면 학교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하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마다 적용사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해당 대학의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교직이수제 폐지

질의

- 요즘 교직이수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글을 남깁니다. 교직이수라는 제도가 임용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인재들을 육성하는 중요한 교원을 정말 실력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이수 폐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폐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고등교육법 41조에 의하면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환경의 변화과정을 보면, 학교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사범대학의 정원보다 더 많은 수의 예비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각 대학에 교직과정을 개설하여 교사를 양성하고, 심지어 임시교원양성기관 등을 통해서도 교사를 양성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변하여 교사양성 인원에 비해 임용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중등학교 임용경쟁률이 20:1)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젊은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임용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게 되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마이너스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원양성인원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등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 보다는 교직과정을 우선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생실습 면제

질의

-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나 경력이 인정되면 교과교실 강사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작년에도 교과교실 강사로 1년 근무하였고 올 해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정교사가 수업하는 일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일만 안 한다는 것과, 제 수



업만 하면 퇴근 할 수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올해까지 하면 거의 3년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인데 교육대학원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 경력이 있더라도 교생실습은 면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영어 회화 강사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학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되면 교생실습은 면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 실습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4학점 이상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에서 근무 경험은 있으시지만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이므로 면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과학영재학교 전형일자

질의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올해 저희 아들이 대한민국 대표로 ISEF(인텔국제과학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과학에 흥미가 많아서 과학영재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했는데 이번 과학영재학교 입시 일정을 보니 세계대회랑 모두 겹치게 되었습니다. 과학영재학교가 수학과학에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세계과학대회랑 겹치는 날짜를 교육부에서 정하는 것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영재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입시일정 등 학사일정은 영재학교에서 결정하여 공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재학교가 국내외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회 일정을 모두 반영하여 입시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영재학교 입시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질의

- 현재 정보교과는 생활교양영역-교양교과-기술가정-심화 교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1. 기술가정의 심화교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기술가정과 정보는 계열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가정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정보교과를 들을 수 있는 건지요? 동일한 맥락에서 기술가정 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교과만 존재할 수 있는 건지요?
-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원한다면 좀 더 명확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교과는 매년 교육과정 편성이 어렵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 과목 구성은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을 선택과목으로 했습니다.



- 이러한 과목편성은 2009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전에 국민여론과 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공통지침 (마)에서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조항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 중 안전, 소프트웨어, 기계언어, 인구교육, 성인지, 폭력, 교련 과목 등 신설 및 모든 과목의 수업 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국가사회적인 새로운 과목 신설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 임용은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질의

- 교과(군)에서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 영역의 이수시간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없는가?
- 1. 국가수준교육과정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교과(군)의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감축할 경우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하여 총 수업 시간 수를 유지해야 한다.
- 2. 학교스포츠클럽지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위 1.에 의하면 교과 수업시수는 증감하여 기준 시수를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는 교과(군) 수업이 줄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중 (3)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고시 내용은 예를 들면 국어 20%를 줄이면 국어를 제외한 교과(군)에서

20%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총 수업 시간 수 3,366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면 교과(군)이 줄어들면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수업 시간 수 3,366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스토리텔링형 수학교과서 자료

질의

- 평소 수학 교과서에 스토리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마침 수학교과서가 스토리텔링형으로 개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이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4.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수학 스토리텔링 교과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현재, 수학 스토리텔링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교과서를 출판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수학적 관심을 주고자 스토리텔링 등을 포함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EBS의 EBSm(www.ebsm.co.kr)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 국정 교사용지도서 PDF 자료 배포

질의

- 2013년부터 09개정 교과서가 초등 1,2학년에 배포되어 특정 출판사에서 수학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용지도서 PDF 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용지도서 PDF 자료는 일선 교사들이 연수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7.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교사용지도서의 PDF파일 제공을 요청하셨는데, 우리부에서는 모든 국정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 전체를 PDF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과목에서 학습 활동에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부분을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 말씀하신 출판사의 경우에도 교과서의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수학의 경우에도 교사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우리부에서 교대생의 교수학습 방법 등 연구 및 학습을 위해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각각 30~40부씩 배포하였으며, 국공립도서관에 5~6부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내용 난이도 조절 필요

질의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 때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교육과정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에 지나치게 높아지는 난이도와 엄청난 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우리부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기존보다 내용을 20%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교과와 개념이나 원리 중 일부를 축소하였음에도 교과서 분량이 줄어들지 않아 많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올해에는 육과정의 내용 요소의 적정화를 위해 보다 중요한 성취 기준은 무엇인지 연구하여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난이도의 경우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수준에 따른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 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셋째, 우리부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교과 내용을 축소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고교 사회탐구 과목 편성 운영

질의

-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이 다양한데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과목은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탐구 과목은 언제부터 학교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3.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고등학교의 사회 탐구 과목의 편성 운영에 대한 우리부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 편성 등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8.9)에 기초하여 학교가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등학교의 사회 탐구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와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특정한 교과목은 개설하고 특정교과목은 폐지(정지)하는 등의 조치는 법령에 의해 취할 수 없는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2009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사회탐구 과목은 2014년 신입생부터 새로이 적용됩니다.

다양한 사회탐구 과목 편성 운영 필요**질의**

- 수능에서 사회탐구를 두 과목만 시험 본다고 해서 공부하기 가장 쉬운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만 가르치고 경제, 정치와 법, 세계지리, 세계사 등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 같은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2학기 이상 또는 2년 동안 가르치는 학교는 제재해 주시고 다양한 과목을 배울 있도록 시수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3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첫째,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탐구 영역은 학생들이 3년간 15단위(한 과목 당 5단위를 기본 이수단위로 정함)를 필수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탐구 교과에서 총 35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문 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개 과학 탐구에서 3과목, 사회 탐구에서 4개 과목 정도를 이수하게 되며 학교 자율과정으로 1~2개 과목을 더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문 과정에서 사회 탐구 과목 중 10개 과목을 모두 배울 수 없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교육과정상의 다른 교과(군)의 과목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 둘째, 학교에서 탐구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수가 소수이거나 학교의 교사 배치상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 과목을 모두 개설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다만,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사전에 지정하여 개설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하여는 시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컨설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육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

질의

- 이번에 개정된 한국지리 교과서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현재 학생들에게 보급되어 사용되는 ‘한국지리’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09년 12월 23일 고시)에 의해 집필된 도서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시 2009 교과 교육과정도 개정되었습니다.(주로 고교 선택과목)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의 형평성

질의

- 평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고에는 2학년 이과반이 4반 있습니다. 남학생반이 3반 여학생반이 1반이지요. 남학생 2반은 1학기에 생물과 물리 2학기에 화학과 지구과학을 집중이수하여 시험을 치고, 남학생 1반과 여학생 한반은 1학기에 화학과 지구과학 2학기에 생물과 물리를 집중이수하여 시험을 치고 성적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남학생 3반 여학생 1반이 동시에 시험을 쳐서 산출한 석차와 남학생 1반 여학생 1반만 시험을 쳐서 산출한 석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이득이 되고 누가 손해가 되었든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배우는데 1, 2학기에 반마다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쳐서 내신을 산출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고의 2학년 과학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1, 2학기에 2과목씩 번갈아 수강하도록 편성한 것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학교에서도 과학과 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계열변경시 중복 이수

질의

- 고등학교 2학년이 자연과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로 계열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계열 변경을 하면 3과목(지구과학1, 한문1, 정보1)이 중복이수됩니다.
 1. 이런 경우 중복이수와 관계없이 계열변경이 가능한지요?
 2. 중복이수되는 과목은 중복으로 나이스에 입력이 가능한지요? 예) 1학기 지구과학집중이수로 4단위 이수한 과목이 2학기에도 집중이수로 4단위 이수 입력이 가능하지?
 3.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만 쓰면 이수하지 못한 3과목에 대한 그 학생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방과후나 방학을 이용)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학생의 계열 변경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중복이수를 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복이수 과목이 편성되는 시간에 다른 과목이수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중복이수를 피해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중복이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에게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고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이수제에 따른 대책 요청

질의

- 인천에 거주하다가 전주로 올해 이사를 왔습니다. 중3, 중2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때문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방학 중에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1. 첫번째 문제 중2인 자녀는 미이수 과목이 2과목이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수하면 된



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3인 자녀는 미이수 과목이 3과목인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과목씩 이수한다고 해도 한 과목이 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이전 학교에서 배운 과목은 전학시 그 학교에서 과목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집중이수제에 따른 미이수 과목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미이수 과목에 대하여 2009 개정교육과정(2009-41호, 2009.12.23개정)에서는 전입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보충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할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수준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에 전학으로 해당 과목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지침 또는 규정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여 이수 인정을 하거나 방학 중 보충 학습 과정을 개설하여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복 수업의 경우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이수 과목을 면제하고 다른 교과 수업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학교 수준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미이수 과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교과목 중고등학교 개설 필요

질의

- 현재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하는데 이에 대해 상담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에 1~2번에 상담이라는 교과목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차례로 상담실을 찾아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학교 상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학생들은 상담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담 교과목 개설이 이를 해결해줄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학생 상담은 학교에서 담임과 상담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내 Wee Class와 교외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담기관등과 연계하여 상담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번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또래 상담 및 또래 중재 활동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서 또래 상담 및 감정조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어, 도덕, 사회 등 교과에서 실천과 사례 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교수·학습모형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상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질의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입니다. 국어 교과서와 수학 교과서 그리고 관련 문제집들을 보니 왜 요즘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시간이 없는지 알겠네요. 교과서 집필위원들의 권위의식 때문인지 교육과정을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결국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 및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현될 때 일부 내용이 어렵게 집필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우리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수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학년군의 수업 시수

질의

-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학년군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요, 학년군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별 시수 개념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년도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 교육과정 총론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또 학년도 개념으로 한다면 학년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년도 중심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개정교육과정의 근거를 알려 주시면 교육과정 편성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2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도 기준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2년간의 교과별 시간배당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2013학년도 1학년, 3학년, 5학년은 2013~2014학년도 2년간의 시간배당기준을 세워야 하며, 2013학년도 2학년, 4학년, 6학년은 2012~2013학년도 2년간의 시간



배당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교육 진행 과정

질의

- 스마트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스마트교육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혁신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업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사-학생 쌍방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 교육용 콘텐츠 확보, 콘텐츠 공정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과 인프라 조성 등이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년 현재 교원 연수와 역기능 완화방안 마련,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와 교수학습 플랫폼 제공 등은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 강화 및 중국 동북공정 대응 방안

질의

- 교원들의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 함양을 위해 연수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교과서기획과(동북아역사대책팀)]

- 역사교육 강화와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 등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군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고등학교 사회(역사) 교육과정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건국주체로서의 단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2011. 3. 기준) 발행된 6개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로서 고조선과 우리민족의 시조로서의 단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 함양을 위해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가진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독도 및 동북공정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율적으로 연중 교사에 대한 역사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부는 동북아역사재단,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중국 역사왜곡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학문대응 연구’, 한국의 역사인식 확산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공정 및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학문적, 외교적 대응은 물론 명백한 역사왜곡이 드러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다양화에 따른 문제

질의

- 교과서가 검인정체제로 바뀌어서 학교별로 무척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됩니다. 일례로 20여종이 되는 국어 교과서를 보면 잘 만들어진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각 다른 수준의 교과서를 배움으로써 생기는 교육 수준의 편차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이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국가 중심의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의 변화는 수요자가 원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시중에 발행되는 해당 교과서를 모두 구입할 필요가 없으며,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한 것처럼 1종 다책의 검인정 체제에서 출판사별, 저자별 교과서의 질적인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교과별 권장 교과서 목록, 학교의 선정 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 또한 학교, 지역,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어 교과서는 형식 교과로서 텍스트는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과서의 텍스트를 다 읽고자 하기보다는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에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과서 저작권 관련

질의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빨간펜으로 내용(지문) 분석을 해주는 동영상 을 올릴 계획입니다. 동영상에는 국어 교과서가 나오고, 저의 목소리와 설명하는 저의 오



큰손과 빨간펜이 나오겠죠. 그 외 수학 교과서는 수학 익힘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이과정을 쓰며 설명해 줄 계획입니다. 사회, 과학도 내용설명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영상은 저작권에 위배되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중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는 발행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교육부에, 검·인정의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에 허락을 받은 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에 해당되므로 우선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과서 내용 중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시, 소설, 노래 등) 원저작자의 허락도 추가로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e-교과서 필요

질의

- 초등 3학년은 e-교과서가 있는데, 1학년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교과서를 들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과서를 추가로 구매하려니 부담됩니다. e-교과서 만들어 주세요. CD를 배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에 올리면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0.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11년 1학기부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e-교과서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투입 대비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영어'에 대해서만 e-교과서를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하여는 '국어', '수학' e-교과서가 보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책가방 해소를 위해 e-교과서를 지속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에듀넷과 e교과서에 관하여

질의

- 집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도통 학습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올해 초등

1/2학년 교과서가 다 바뀌었는데 에듀넷에는 그에 관한 학습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알고 싶네요. e교과서도 1,2학년 부분만 없고요. 문제은행처럼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나요? 사교육비가 들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인 시·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00년부터 ‘사이버학습(구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초 1, 초 2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너무 어린 학생들에게 사이버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교 과정을 사이버 콘텐츠로 제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향후 사이버학습의 콘텐츠를 추가 개발할 예정인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신규로 개설할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새로 보급된 초등학교 1~2학년군 교과서의 무게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교육과정과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통합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학년군’ 개념을 도입하였고, 국어 교과서의 경우 이전에 「말하기, 듣기, 쓰기」와 「읽기」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국어」로 통합하면서 종전에 비해 삽화와 ‘읽기자료’가 보다 풍부해졌습니다.
- 수학 교과서의 경우도 흥미도 제고를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함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많아지고 두꺼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과서 제도 선진화 정책’에 따라 국정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였던 국정도서의 외형체제가 자율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형, 쪽수, 디자인 등을 편찬기관과 발행사가 교과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교과서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편찬기관과 우리 부는 민원인께서 제기한 바와 같은 교과서 무게 증가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어 교과서의 경우 한 학기 교과서를 ‘국어 ①-가, ①-나’ 형태로 분권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교과서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향후 수학교과서도 국어 교과서와 같이 분권하거나, 교과서에 뒷부분에 ‘학습보조자료’의 목적으로 첨부되어 있는 스티커, 게임카드, 놀이판 등의 양을 축소하는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과서의 무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와 발행사가 동일하면 안 되는지요?

질의



- 교과용 도서 중 인정도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작자와 발행사가 동일하면 안 되는 것인지, 동일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사는 “**출판사”, 저작자는 “**출판사 교과서 개발팀”으로 하려고 합니다.
- 현재 해당 교육청에서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동일하면 안 된다고 하고, 민간기관을 저작자로 했던 경우가 없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령에는 민간기관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는 상황인데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교과용도서의 경우 인정도서 신청 시 저작자 또는 발행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는 저작자가 아닌 발행사가 심의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시하신 저작자의 요건에 관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저작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장이 저작자 대표)을 제외하고는 실제 집필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 출판사 소속 집필진이 교과서를 기술했다면, 해당 집필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도, 인정도서의 발행 시 필자들의 이름이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가(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인정도서를 집필한 필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교사, 학생이 교과서를 사용할 때 참고하는 정보 중의 하나로서, 향후 교육현장에서 수정, 보완 또는 내용 검토 요구가 필요할 때 해당 도서를 집필한 집필진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일반도서가 아닌 교과서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저작자는 해당 책의 집필 내용에 대한 대표성과 책무를 다하며, 해당 책의 사용 기간 동안에 각종 문의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교과서 민원 제기 사이트

질의

-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이트를 찾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아닌 현직교사나 교수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이트를 찾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5.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우리 부는 현재, 교과서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과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통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www.textbook114.com>)’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현직교사나 교수님들을 포괄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로 콜센터(☎1566-8572)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질의

-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교 내에서 교과서를 주문하고 수업시간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점에서 학생들이 따로 비싼 교재를 따로 구입하거나 EBS 교재를 사용합니다. 교과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아마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5.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교과서는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를 천명한 교육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업시간 중 EBS교재 활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교과용도서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EBS 교재 등은 교육상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과용도서의 보완교재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정학습 학생에 대한 교과서 지원

질의

- 홈스쿨링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교과서를 받고 싶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따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학생을 생각한다면 교과서를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의무교육과 취학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수업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홈스쿨은 현행 법령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 방법이므로 취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반드시 공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학교에 재활용가능 도서나 여분의 도서가 있는 경우 제공이 가능할 것이므로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개정 교과서 사용 불편

질의

- 저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올해 교재가 바뀌어 뭔가 새롭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켜본 결과 1~2학년 국어 교과서, 통합교과 교과서 등의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7.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국어교과의 「국어활동」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그러나, 구성 체제 중에서 ‘생활 속에서’는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더 찾아읽기’, ‘우리말 다지기’, 놀며 생각하며’, ‘글씨 연습’은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어 공부 안내’라는 예시답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교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취기준과 내용을 정한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술됩니다.
- 통합교과 교육과정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영역별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들의 생활중심 통합형 사고를 기르기 위하여 월별·주제별 교과서로 편찬하여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과서의 구성은 주제별 교과서 안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내용이 흐름에 맞게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사용 문의

질의

-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교과부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초등학교 교과서를 전자책형태로 만들어 인터넷 강좌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국정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예전에는 국정교과서 발행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걸로 봐서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에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국정교과서의 경우 저작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 게재되어 있는 시, 사진, 삽화 등과 같은 자료의 경우 원저작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교과용도서로 대한 보상금 기준에 따라 고시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보상금 기준은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며, 교과용도서 외에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도서 신청**질의**

- 저희 학교에서 2013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로 인성관련 좋은 책자가 있어 인정을 받아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인정절차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인정도서 심의 자체가 없어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지난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은 인정된 교재를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교재를 개발하여 도교육감에게 인정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창의적 체험활동에 좋은 교재가 있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교재로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2009 교육과정에 의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를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 나온 교재를 창체 시간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학교 운영위원회 검토나 도서 선정 협의과정을 통해 학교장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완교재 등을 개발하여 자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교과서 활용**질의**

- 9월초 학교를 통해 안내문을 받아보고 e교과서를 다운받아 이용하려 하였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에듀콜 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먼저 e-교과서 토·일(공휴일 포함) 에듀콜 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기 초, 새로운 e-교과서에 대한 안내를 위해 8, 9월 토·일(공휴일 포함)에 에듀콜 센터가 운영되어 오다가, 10월부터는 평일 8:30~18:00로 콜센터 운영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향후에는 에듀콜 센터 운영시간 변경이 있을 경우, book.edunet.net에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콜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초·중·고 교과서 용지 관련

질의

- 교과서 용지는 예전과 달리 코팅이 되어 있는 관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얇기는 하지만 코팅에 사용하는 돌가루의 비중이 너무 높다보니 생기는 결과라 하겠죠. 요즘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볼륨감 있는 일반 서적용지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교과서 용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2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교과서의 판형 확대 및 쪽수 증가 등으로 학생들의 책가방이 무겁다는 민원 및 의견 등이 있어 우리 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교과서 용지 무게 결정에 있어서는 현재 어떠한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도서 편찬 시 수당(개고료) 지급 문의

질의

- 인정도서 편찬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개고료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하는지? 둘째, 여러 사람(6명 정도)이 원고를 제출하여 인정도서를 편찬하면서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하였고, 그 중 3명이 전체를 여러 번 수정(교정)하면서 원고를 고쳤다면 이들 3명에게 개고료 지급이 가능한지? 셋째,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출한 원고를 개고하였다고 개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넷째, 기타 개고료를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3. 1.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개고료는 교과서 원고본에 대한 심의회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한 개고본(수정본) 원고료를 뜻합니다. 따라서 개고료는 집필진 중 수정 원고 집필에 참여한 분들이 받습니다. 인정도서 개고료도 집필진 책임자가 개고본 원고 매수와 개고료 단가 기준,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회계 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개고본 집필자에게 지급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최종 정산시 동시에 원고본 및 개고본 고료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고본과 차후의 개고본, 집필, 수정보완 담당자, 집필 쪽수(수정·보완한 쪽수)’ 등을 기록한 ‘집필 내역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 등을 제출 또는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교과서 검수 제도 문의**질의**

- 교과서 검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정, 검정 교과서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정, 검정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수는 어느 시기(수시 또는 정기적)에,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나요?
 3. 검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모든 교과서에 대해 검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교과서를 선택하여 검수를 하게 되는 건지요?
 4. 검수는 교과서에 게재된 내용의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각각의 해당 분야를 알 수 있을까요?
 5. 교과서 검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만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참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1. 현재 초·중고등학교 국정 교과서는 총 57종, 검정 교과서는 47종, 인정 교과서는 50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국정도서는 별도의 검정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검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 검정 실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최초 사용학년도 1년 전에 검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정 심사는 크게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내용오류 및 표기·표현오류 등을 심사하게 되며, 본심사는 기초조사 자료를 근거로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하게 됩니다.



3.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교육과정에 따라 각 교과서를 어떠한 체제로 개발·보급할지를 확정해서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구분고시'라 하며, 검정 심사는 구분 고시 상 검정도서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과별 검정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은 교원,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있습니다.
5.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과서 검정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따라 교과 관련 전문 기관으로 위임 위탁되어 있습니다. 각 교과별 검정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정심사기관 : 국사편찬위원회(역사 교과), 한국개발연구원(고교 경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역사와 고교 경제를 제외한 검정 도서)



개고료 지급 기준

질의

- 당초 지출서류에는 개고료 관련 증빙자료가 없었으나, 추후 원고본과 개고본을 비교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완성본 책자가 206쪽이고, 본인들이 144쪽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몇 쪽의 개고료를 지급하는지? 둘째, 원고료 지급 시 인정도서 1쪽을 원고료 5매를 지급하였는데, 개고료 지급 시 인정도서 1쪽의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3. 2. 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개고료는 교과서 원고본에 대한 자체 검토와 심의회의 수정 보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집필진이 수정한 개고본에 대한 원고료를 뜻합니다. 따라서 개고료는 집필진 중 수정 원고 집필에 참여한 분들이 받습니다.
- 인정도서 개고료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인정도서 개발비 단가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원고본이 100쪽이고, 쪽당 산정 원고지 매수 5매, 원고지 장당 단가가 15,000이라면 총 원고료는 $100\text{쪽} \times 5\text{매} \times 15,000\text{원} = 750\text{만원}$ 입니다. 개고료는 수정 보완한 원고 쪽수가 100쪽 중 80쪽이고, 계상된 원고료의 0.3%를 지급한다는 기준을 정했다면, $80\text{쪽} \times 5\text{매} \times 15,000\text{원} \times 0.3 = 180\text{만원}$ 입니다.
- 원고본 1쪽(5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 수정 보완 작업이 페이지(쪽)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쪽의 구성, 사진, 삽화 배열, 내용 검토, 표현 표기 오류 등을 재검토 과정

및 수정 보완 작업 등을 통해 실시하므로, 개고료는 쪽당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교과서, 자습서, 문제지 발간 자격

질의

- 교과서와 자습서와 문제지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교과서는 크게 국정·검정·인정도서로 구분되며 국정도서는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로 교육대학교 등에서 교수, 교사, 교과전문가 등이 집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을 담당하며 교수,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출판사가 집필진을 구성합니다.
-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개발(집필)하거나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한 내용을 심사하여 교과서로 인정합니다. 교수, 교사, 전문가 등이 집필에 참여하며 민간출판사는 민간에서 결정합니다. 국정·검정·인정도서의 집필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습서와 문제지는 해당 출판사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 학 입 시

대학교 이중학적 인정

질의

- 대학교 4학년으로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데요, 제가 수능을 봐서 내년 3월에 다른 대학에 가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중 학적이 적용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월 학기 개시일 전에 졸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대입제도과]

- 우리 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학기가 다른 경우)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학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학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전형 문의

질의

- 우리나라 대학별 2013학년도 입시요강은 언제 발표했으며, 2014와 2015학년도 입시요강은 언제 발표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대입제도과]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매년 11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대학입학 정보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입학상담센터(<http://univ.kcue.or.kr> : 1600-1615)를 운영하고 있으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민원인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각 대학교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특별전형 응시자격 변경

질의

- 2014년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시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2014년 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 3년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려는 대학도 4년으로 바뀌었더군요. 고교입학 당시의 기준을 적용시켜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대입제도과]

-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96학년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따라 각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의 대상과 지원 자격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학생부와 학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의 장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편법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각 대학에 편법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입시요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이 학생·학부모의 농어촌 거주기간요건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소 허위 이전 등을 통한 편법 등이 발견된 바, 이를 예방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하여 2016학년도부터는 농어촌 거주기간을 6년(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으로 확대(학생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전예고 실시)하여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15학년도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해당대학교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혜택

질의

- 자녀의 무릎부상으로 장애인 5~6급 판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혜택 중 교육관련 대학입시 부분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대학입시 가산점 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대입제도과]

- 대입제도에서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은 2012학년도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었다가 전형 명칭이 변경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수험 생 본인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세부 지원 자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모집요강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대학의 대입정보에 관련 된 사항은 해당대학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설명센터(<http://univ.kcue.or.kr> 상 담전화 1600-1615)에 탑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에서 수험생 소유 샤프펜 사용 건의

질의

- 수능 시험장소에서 제공받는 샤프가 자꾸 똑똑 부러지고 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말이 아 납니다. 자기가 가져온 샤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대입제도과]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오나 현재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시험 응 시 시 유의사항 중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제공한 것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이 준비 한 샤프펜은 시험시간에 휴대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휴대가능물품에서 흑색연필, 샤프심(0.5mm, 흑색)은 가능하므로 미리 사전에 연습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주는 국가고시 시간 연장 혜택

질의

- 현재 전 자폐성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수능을 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장애인들에게만 시간 연장을 해주는 건가요? 왜 심장, 자폐, 신장 등 나머지 장애인들에게는 시간 연장의 혜택이 없는 거죠? 장애는 다 똑같이 어려운 것인데 4개의 장애인에게만 시간 연장의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대입제도과]



- 현재 수능시험에서 특별관리대상자는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부여되고 증빙서류 구비가 가능한 맹인, 저시력자, 청각장애자, 뇌병변자(지체부자유자)로 구분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별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맹인수험생의 경우, 점자 문제지를 활용하여 손으로 판독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므로 현실적으로 시간 연장이 필요하며, 저시력자의 경우에도 확대 문제지를 통하여 시험을 보게 되므로 부득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뇌병변자(지체부자유자)의 경우 신체적인 장애특성으로 정상적인 답안지 작성 및 문항 이동 등이 어려우므로 시간 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 청각장애자의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을 뿐, 시간 연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시행 방안을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간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존하는 모든 장애 유형 및 희귀병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시간 연장을 실시하는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별도 기준을 모든 장애 유형별로 각각 마련하여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록, 시간 연장은 아니더라도 기타 개별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의 판단에 의거 탄력적인 시험실 배치 및 답안지 이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고교 졸업 후 대입자격 및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카자흐스탄으로 들어 갑니다. 저희 자녀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교 배정을 받았으나 고교 입학 취소를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학교에 2013년 9월에 9학년으로 입학을 하며, 2016년 6월에 3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11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현지 11학년제)
- 1. 이 때 한국 대학 입학자격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지요?
- 2. 3년을 부모와 같이 해외에서 다니는데, 이 때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 [교육부 대입제도과]

- 통상적으로 초·중등교육 과정이 11년 학제인 외국에서 마지막 2년 교육과정(예 : 10~11학년)을 이수한 경우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이며, 국내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획득

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동일학년(학기)을 반복적으로 수료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편,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별로 지원자격(부모의 해외 거주기간 및 해외학교 재학기간 등)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 입학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통상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2~3년 또는 비연속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3~4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 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전형

질의

- 재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선취업후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경력기간이 너무 깁니다. 또한 토목공학 관련된 과의 선발 인원이 없으므로 선발인원을 부여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대입제도과]

-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취업한 후 해당 분야의 학문을 심화하여 학습·연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악용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 토목공학 관련된 과의 선발 인원에 대해 제기하신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대학의 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각장애 수험생 수능 시험 편의 제공

질의



- 시각장애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녹음테이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크린리더(컴퓨터 환경과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가 설치된 컴퓨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9. [교육부 대입제도과]

- 수능시험에 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평가원의 답변으로 같습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 시에 맹인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음성평가 자료(녹음테이프 : 1, 3, 4교시)를, 저시력 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 발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서 맹인 수험생에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 자료를 제공함이 공지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제공 사이트의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suneung.re.kr)
- 다만, 맹인 수험생에게 음성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동일한 고교졸업생도 교육청에서 수능원서 접수 요청

질의

- 고등학교 졸업시화 주소가 동일할 경우에는 출신학교에서 수능원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나 주소지가 다른 응시생만을 교육청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출신학교와 주소지가 동일한 응시생도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3. 6. 3. [교육부 대입제도과]

- 졸업생의 편의를 고려할 때 수능 응시원서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수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심분 동감하며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매년 전국 1,200여개 시험장에서 68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규모로 응시하고, 수능시험의 결과가 여전히 대학진학을 위한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수능시험을 시행,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응시 편의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원서접수 방식을 변경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점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응시원서를 출신교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하여 관리하는 것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불편함과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대리응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의 철저, 출신교에서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점검으로 원서기재 오류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 예방, 수능시험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정, 전국단위 대규모 수험생의 응시에 따른 시험장 확보 및 안정적

인 수험 여건의 조성 등 수능 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향후에도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험생의 편의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장 외 외부기관 주최 공모전 수상시 대학입시 반영

질의

- 가. 외부기관 공모전 수상경력이 대학 입학 시 도움이 되는지요? -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상 학교장 수상 경력만 인정(입력 관리 등)되고,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수상은 제외(인정 불가)라고 합니다. 나. 공모전 주최 기관의 범위와 역사 공신력 등에 따라 인정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다. 일부 외부기관 주최 공모전 수상경력이 대학 입학 시 인정된다면 가점 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라. 외부수상 경력의 의미와 범위 및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9. [교육부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 및 입학처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대학입학 정보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이 협력하여 대학입학상담센터(<http://univ.kcue.or.kr> :상담전화 02-1600-1615)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체류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동등 자격 인정

질의

-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고,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얼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공부하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젵(Mariano Polis) 2년 중 3학기를 2012년 5월에 마치고 2013년 대학 수시입시에 응하려고 합니다.

- 아이가 유학한 캐나다의 학제가 한국과 같은 12학년제가 아니어서, 저희 아이의 2013년 수시모집에 응시할 자격에 대해 문의하는 바입니다. 'college 교육'인 CEGEP을 대학과정으로 본다면 저희 아이는 '11학년제 +대학1년수료'의 자격으로 수시입학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CEGEP을 대학과정이 아니라 고등과정의 연장으로 본다면 10~12학년을 수료한 자격으로 수시입학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0. [교육부 대입제도과]

-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교과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등교육법 제98조 제1항 제9호)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중등교육까지의 학교제도가 6-3-3학제이므로 고교 졸업자의 우리나라 학력은 12학년(고3)에 해당되어 동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퀘벡주의 경우 6-5학제이므로 고교 졸업자의 우리나라 학력은 11학년(고2) 수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귀하의 자녀의 경우 11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1년) 만큼을 해당 국가 대학과정을 이수하여 외국에서 12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외 유학 학생의 대학입학 자격

질의

-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야 할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대학진학시 전형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대학입학 때는 다소 달라지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해외거주일수와 학력 등에 대하여 인증과정과 대학 들어갈 때의 입학 조건 등에 대하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6개월~1년을 정식으로 다니고 현지 적응이 안 되어 다시 한국으로 올 경우 초등졸업 인증은 받을 수 있고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20.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학력 인정,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충족입니다.

-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외국의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총 23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와,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후자는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22학기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합니다.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합니다.
-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기관(시·도교육청 및 각 대학)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통상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2~3년 또는 비연속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3~4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지원자격은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우리나라 학교를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갈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게 되며, 해당나라에서 초등학교 과정(6학년 2학기 혹은 6학년 1학기)을 다니고, 중학교 과정으로 진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인정유학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국하여 다니게 될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사정관 지원자격 및 양성연수 이수

질의

- 입학사정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입학사정관에 지원하려면 사정관 양성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까?
 2. 입학사정관 양성연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10. 11. [교육부 대입제도과]

- 현재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은 양성훈련을 통해 충분한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에서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사교육시장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국회 지적 등 우려가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 또한, 입학사정관 선발은 대학의 장이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대학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 지원 자격

질의

- 본교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부모, 학생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입니다. 아래의 특별 사례가 있어 이 경우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 [사례] 1. 어머니와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는 영주권자임 * 어머니는 학생 초등학생 기간 중 시민권 취득, 학생은 출생시 시민권 취득 [사례] 2. 부모님이 학생 14세 때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고, 법적 부모인 어머니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

회신

회신일 : 2012. 11. 12.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 지원자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의 경우 자격확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통상 부·모 및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형으로, 이중국적자 및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외 사항은 전형의 취지에 맞게 각 대학의 입학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됩니다.

☎ 2016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자격

질의

- 2016학년도 대입시에는 농어촌특별전형요건이 강화되어 중·고교 6년간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중·고교를 다녔어야 하며, 또한 부모도 6년간 같이 거주하여야 합니다.
- 1. 아이의 부모 중 아빠의 주소지가 읍면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 요건을 아이와 엄마는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 2. 부모 중 엄마와 아이는 전형요건을 갖추고 아빠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요건에 맞지 않아도 아이가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23. [교육부 대입제도과]

- 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96학년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의 대상과 지원 자격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학생부와 학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

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도 농어촌특별전형에 편법 등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안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조치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해당대학의 학칙 및 모집 요강 등의 규정을 엄중하게 적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지원 자격

질의

- 우리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제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2013학년도부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만 대입 정원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복지급여 수급자인 아버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아르바이트 수준이라고는 하나 소득이 있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가구로 보아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만 대입 정원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인정하는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격미달자로 처리한 행위가 지침에 위배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12. 27. [교육부 대입제도과]

-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저소득층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자격은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대 구성원인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모두를 확인하여 편법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다만, 민원 내용과 같이 학생의 주민등록이 부득이하게 분리 되었다면, 주민등록 분리가 실제 불가피 했었는지, 해당 학생의 소득은 있었는지(어느 정도인지), 해당 가족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해당 학생의 소득은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대학 자체 전형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지원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을 듯 싶습니다.

● 수능시험 범위 표준 지침

질의



1. 매년 수능 시험범위 표준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그 지침을 모든 국민이 쉽게 알아야지 수능시험 보려는 사람이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수능시험 범위 표준지침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1. 15. [교육부 대입제도과]

- 매년 수능 시험범위 표준지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3월 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6월말-7월초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www.kice.re.kr) - 수능정보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교졸업자 재직자특별전형 재직 증명

질의

- 전문계고교 졸업후 3년 이상 취업하던 중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바뀌어버린 사람은 공부할 방법이 없나요? 전문계고교 졸업후 3년 이상 4대보험 납입하였고 현재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어 ○○대에 지원 후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 그런데 현재 직장이 정직원에서 계약직(특수고용노동자, 즉 프리랜서사업자)으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28. [교육부 대입제도과]

- 특별전형이란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자격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입니다. 전형요소도 대학별·전형 유형별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입시요강에 맞게 전형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대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산업체(ex, 자영업, 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 판단하되, 학교장이 학칙·입학전형계획·입학요강 등에 반영하여 자율 인정 가능

교 육 시 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질의

- 사업대상지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로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부지를 확장(5%이내의 경미한 변경)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르면 감독청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내용을 협의 마친 경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청이 시행계획 고시 시에 의제사항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가능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학교시설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의제처리 협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 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부지의 경미(5%이내)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감독청(교육청)에 신청하여 승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동법 시행령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에 정한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이 가능합니다.
- 동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이미 받아 사업시행 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학교 부지를 일부 편입(제척)하는 문제는 학교시설사업 계획당시 제출한 설립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내용 만으로는 가부의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본건과 관련한 각종 도서(도면, 승인신청서 등)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문의 후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학교 운동장에 교직원 주차 금지 요청

질의

- 전국 학교 운동장에 교직원이 주차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



직원이 운동장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금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7.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중 개교한지 오래된 기존 학교 내에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운동장 등 학교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학교의 경우 주변 주택과 통학로 등이 근접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 또는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부에서도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도와 인도 분리공사와 전용주차장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여 설치가 가능한 학교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차도 분리공사 및 전용주차장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학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직원이 학교 운동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까지 홍보하여 운동장내의 주차하는 행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학교기업 운영

질의

1. 하나의 학과(계열)에서 두개의 학교기업을 운영해도 괜찮은지요?
2. 제과점업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는지요? 교육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학교기업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3.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기업을 설치하려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기업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재지 및 사업종목, 관련 학부,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과점은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대학교 내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부지내 학생·학부모 숙소 신축 가능 여부

질의

- 군청에서 인구유입을 위하여 학교에 학생과 학부모(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청으로 예산교부하면, 교육청에서 해당학교 부지내에 학생과 학부모(세대)가 거주하는 숙소를 아래 규정의 복합시설 적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 4. 14.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은 학교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며, 동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조항은 도심지에서 학교 신설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를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학교 부지에 지역 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평생 교육 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고,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의 절감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인접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 따라서, 현 민원인께서 제기한 내용은 학교 내 학생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은 특정학생(인구유입 가정 학생)을 위한 주택(학생과 학부모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을 학교에 짓는 것은 특혜시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인접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당초 학교 내 복합시설의 설치를 위한 법 제3조의2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인접 주변에 부지를 마련하여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며 이 경우 시설사업의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사립학교 시설사업시 건설업체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가능 여부

질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주체인 학교법인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실시협약체결조건(건설업체에서 학교시설(교사)을 건립하여 학교법인에 기부채납)에 따라 학교법인(학교설립주체)이 아닌 건설업체에 학교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요구합니다.
- 학교설립에 따른 시설(교사)에 대하여 기부채납방식으로 진행시 학교법인(설립주체)에 시설사업의 준공 및 기부채납 전까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확보가 안 되는데, 실시협약서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학교설립주체(학교법인)가 아닌 건설업체에 승인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또한 문제가 있을시 사업진행이 가능한 처리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동법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동법 제4조 제1항의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즉,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설립주체(학교법인)가 아닌 건설업체에서는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을 작성하는데 학교법인과 시행사간 별도 약정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 주체는 학교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학교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의

- 대학교 부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복지시설 용도의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학교부지 내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 전체 건물 중 2층 172.97㎡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나머지 건물은 대학교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대학의 학교부지내의 건축물에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정하여진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교 내 건물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안전 장구류 지급

질의

- 모든 근로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안전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대학 공사 감독관이 지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기(1~3일)근로자는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한 안전장구류 지급을 금지시키는 것이 감독관의 월권 행위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4.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건설공사에서의 안전장구류 지급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2-126호)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및 사진 등)를 발주처에 제출하면, 계약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내 건물에 학생 휴게공간 설치

질의

- 대학교 내의 건물에 학과와 연계하여 학과 및 창업동아리가 운영을 하는 커피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품을 판 금액은 재료 구입 및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비수익 목적의 커피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공간에 대해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등이 필요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8.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교 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학교기업을 설치할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운동장 휴일 개방 기준

질의

- ○○초등학교는 휴일에 운동장개방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 가능하고 다른 주민에게는



전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BTL 운영학교로 그 회사에서 개방을 안 하고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장 개방 관계법령은 다 무시하고, BTL 운영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7.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폐쇄한 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폭력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학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학교 환경을 저해 하는 등으로 학교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학교 시설개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학교시설 이용 및 개방에 대하여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안전과 시설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를 사전에 신청 받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학교 및 교육청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시설의 소방시설 및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 준법 내진설계 적용

질의

-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비구조요소인 각종 파이프 내진설계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소방시설 내진설계 신설 개정 2011.8.4.공포, 2012.2.5.시행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개정 고시하고, 일선 행정 광역시 도교육청에서 각종 파이프 살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을 하도록 지침을 하달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4.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은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구조체에 적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각 부재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구조 요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할 경우 구조설계 비용 및 시공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과다할 우려가 있어 건축법령에서 모든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준에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 요소에 대한 지진하중을 규정함으로써 내진 설계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건축구조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화장실 신축 BTL 사업 관련

질의

- 요즘 서울과 경기 등 전국적으로 2005년 이후부터 BTL 사업을 통해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전에 학교 측은 관리나 위생적 이유로 동양식 변기를 설치했으나 BTL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부터 서양식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사업자가 양변기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 학교 측과 수요자를 놔두고 왜 사업자 즉 학교의 실질적 사용자도 아닌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양변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양변기 위주로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7.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 및 신·증축 사업으로 공동화장실개보수 및 신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화장실 변기의 혼용설치 문제는 민자사업(BTL)의 경우에도 설계단계 및 실시협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관부서(교육청)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의견 등을 수렴(설계 및 공사협의회 등) 절충하여 서양식 및 동양식변기의 혼용설치 계획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학교시설사업의 설계협의회는 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교육 시설관계자, 학교 운영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및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남녀비율 등은 사업시행기관(교육청, 학교 등)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교육 관련자가 설계협의회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직접 참여가 어려울 경우 학교설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변기나 양변기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시설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 부설 주차장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여부

질의

-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교 내 주차장을 경유하는 시



내버스와 학교 통학버스 차량들이 있어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재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교육환경개선으로 본교 부지에서 약 60미터 정도 이격된 토지에 학교 통학버스 및 시내버스 차량들이 주·정차 및 회차할 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어 부설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1.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부지 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설주차장 및 회차장을 만드는 경우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도서를 준비하여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교지내 도입 가능 시설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은 교지내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교지 내 BTL 사업방식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 체험공간을 위한 카트 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바 상기 시설이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7.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교 교지 내 설치가능한 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교지 내에 설치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교지 내에서 설치, 운영할 시설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카트경기장의 경우도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한 수준에 대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연구시설의 부분용도 변경

질의

-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본교 교사건물에 영화학과 실습용도로 영화관을 설치하고 상업영화관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가 문화집회시설이어야 하는데 300㎡ 미만의 소규모 극장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교육연구시설의 일부분(약 300㎡ 미만)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상업용 영화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유관부서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은 시설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목적이 아니고 상업 영화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께서 제기했듯이 영화관 등록을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가 문화집회시설로 변경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관리 및 보호)제1항』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니 관련부서(사립대학지원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확보율 산정시 주차장 등 포함 여부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교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하며, 동조 3항에 따르면 별표 2의 교사시설 중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에는 각 건축물의 부대시설도 포함됩니다.
- <문>(1) 위 별표 2에서 부대시설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2) 만약 강의동 건물을 건축하면서 지하1층에 주차장(예로 지상4층 지하2층 건물인 경우)을 건축한다면 그 주차장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 확보율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위(2)의 건물 지하 4층에 전기실을 건축한다면 그 전기실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1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부대시설’이란, 각 시설의 주용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데에 필수적인 보조 기능을 하는 시설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교육기본, 지원, 연구시설로 사용되는 각 건물에



포함되어 건물 주용도의 활용에 필수적인 보조 기능을 하는 시설은 부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육기본, 지원, 연구시설 건물에 포함된 주차장의 경우, 당해 건물 규모에 맞는 법정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만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이 별도의 독립건물을 이룰 경우에는 기타시설로서 교사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의동 건물 지하주차장의 교사확보율 포함 면적 규모

질의

- [현황] < '12.6.30. 현재 건물보유 및 법정주차대수 > - 건물보유 : 대학부지내에 5개동 건물(행정동, 기숙사, 도서관 등) - 법정주차대수(5개동 전체건물 총량기준) : 90대 - 주차장 : 옥외주차장 <'12.7월 신축예정 강의동 건물 및 법정주차대수> - 신축예정 : 약 6,000평의 강의동 - 신축 건물 6,000평에 해당하는 법정 주차 대수 : 66대 - 주차장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의 옥외 주차장을 없애고, 신축 건물 지하에 대학부지 내 건물 총량(기존+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법정 주차대수인 156대(기존 건물 90대 + 신축 건물 66대)분의 지하 주차장 마련 계획

[문의] 신축 강의동 건물에 전체 건물 총량 기준의 156대분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경우

- (1) 156대분 지하 주차장 전체 면적을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 (2) 건물 전체 총량기준 156대분에 해당하는 지하 주차장을 신축하더라도, 이번에 신축하는 강의동 건물에만 해당하는 66대분 면적만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 (3) 만약 (2)의 경우와 같이 교사확보율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아주 인접한 2개의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하 주차장을 교사확보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비효율적 건축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2개의 건물에 각각 지하 주차장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내부 주차장의 경우 각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차장은 건물 주용도의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법정 주차대수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해당 건물의 주된 용도를 보조하는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단, 민원 내용과 같이 2개 이상의 건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1건의 건축 행위에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를 합산한 규모의 옥내 주차장은 그 주용도의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수학교 건축물 증축시 도시계획시설 처리 절차

질의

- 대상지는 1961년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특수학교(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수학교는 임의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사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신설)한 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와 교육법 설치규정에 미흡한 교실환경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당됨)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절차로 진행 가능한지 - 아니면, 사립학교의 특성상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②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3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교육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한 내용은 촉진법 이전에 건축된 학교 중 인허가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규정에 적합하게 학교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먼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받은 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도서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학교)결정 적용 여부

질의

- [현황] 당해 학교는 1955.5.4. 개교되어 단일 필지 내 학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지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계획)이며,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이전 설치된 학교로 현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질의] 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도시(군)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면, 별도 지형도면고시만을 통하여 도시(군)계획시설 (학교)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9.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부칙(법률 제3634호, 1982.12.31) 제2항(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은 많은 학교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례를 정하여 각종 인·허가사항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 제기하신 민원 내용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 민원내용을 관련도서와 지적도 등을 준비하여 해당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커피전문점의 부대시설 및 후생복지시설 포함 여부

질의

- 전국 대학교에서 교내 학생들을 위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을 대학교 내 후생복지시설 및 부대시설로 볼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복리후생 및 편의를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커피전문점의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부대시설 범위

질의

- 학생 및 교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대학교 교정 내에 휴게음식점 설치하고자 합니다. 복지 증진 차원에서 휴게시설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 내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

질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된 건축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지적고시(現 지형도면고시)로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후속 절차인 지적고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학교 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법률 제4881호, 1995.1.5) 제2항(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은 많은 학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학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정한 부칙으로 해석됩니다.
- 민원 내용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법률 제4881호, 1995.1.5)개정 이전 이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된 학교이므로, 부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의 허가, 시행자의 지정,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검사 또는 협의 없이 건축 등이 된 학교시설로 동법 제2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건축물로 특례를 적용하여, 동 교육시설물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교육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지적고시(지형도면 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담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적고시로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학교시설가업촉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학교 지적고시로 도시계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부협의를 관련도서를 준비하여 학교소재 교육청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질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승인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결정·지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서류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협의(학교시설 용지로 협의)를 완료한 이후, “시행계획 승인”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 대한 타당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학교 신설 또는 변경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조건을 완화하거나 생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6조,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

정 등이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청의 시행계획 승인 담당부서는 법 제5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위한 각종 법령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서류 제출시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한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사업 시행자의 요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갖춰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부서는 시행계획 승인 검토시 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항에 대하여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시행계획 승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공립고 신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

-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A=291,688M^2$)이 되었으며 용도지역 결정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A=80,020m^2$, 농림지역이 $A=211,688m^2$ 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신축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법 제1조, 제4조 4항, 제5조 참조)으로 해당군청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환경부는 지난 7.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5,000m^2$), 생산관리지역($7,500m^2$), 계획관리지역($10,000m^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7,500m^2$) 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5,000m^2$ 이상)의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행 법률상 계획관리지역($80,020m^2$), 농림지역($211,688m^2$)인 학교 신축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며,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의 승인 전 환



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관련

질의

- 부칙 제2조 제3항의 고시(기존학교 인정 고시)로 제1항의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 등이 된 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의 제정이유인 기존 위법상태 건축물의 양성화 취지를 고려할 때 부칙 제2조 제3항의 인정고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포함한 해당 인허가의 고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적고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의 절차로 제1항에서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경우 지적고시로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적고시 전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제3항의 인정고시로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상기 사항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며, 귀하께서 요청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법률 제4881호, 1995.1.5) 제2항(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은 많은 학교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학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정한 부칙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부칙 제2조 제3항의 고시(기존학교 인정 고시)로 제1항의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 등이 된 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 전 운영 중인 기존 학교 건축물의 양성화 취지를 고려할 때 부칙 제2조 제3항의 인정고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포함한 해당 인허가의 고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협의는 관련до서를 준비하여 학교소재 교육청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

질의

- 건물이 4층이라 휠체어를 타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장애인이 입학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관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연구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에서 별표 1 사. 항에서 교육연구시설, 즉 학교(대학교 포함)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의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가. 일반사항의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그 내용은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다)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학 교지 범위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4에 의한 기준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님 도시계획시설과 관계없이 설립주체 소유 토지를 말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대학)내 타인 소유 토지는 교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대학) 밖의 설립주체 소유 토지도 교지에 포함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11. 3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교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농장, 학술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학교 구내는 학교시설 결정지 외곽 경계선의 내부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교지란 설립 주체 소유의 토지로서 학교시설 결정지여야 하므로 학교시설 결정지 내 타인 소유의 토지는 교지에서 제외되며, 학교시설 결정지 외부의 설립주체 소유의 토지도 교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학생복지 주택에 대한 정의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조 라항의 기숙사의 범주에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 주택의 성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주택법 등 학생복지주택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1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학생복지주택’은 ‘교육기본법’ 2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학생들의 주거 공간을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학생들의 주거안전과 주거향상을 꾀하고자 제안된 개념입니다.
- 그러나, 학생복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서는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기본 목표만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수단이나 범위 등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공급으로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형태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세부 기준의 적용은 관련 법령인 건축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건축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해양부의 소관 법령임

교지내 교사 시설 인정 여부

질의

- 최근 정부(지정부) 사업을 수주해 국비와 교비 대응투자로 교지 내에 산학협력 목적의 단일 건물(산학융합시설)을 신축했습니다. 이중 교비 투입 공간(약 58%)은 학과 및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게 돼 교사시설로 합산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국비가 투입된 공간(42%)은 지역 중소기업연구소를 유치해 임대를 주고 우리 대학과 R&D,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산학협력 연계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⑦항에 근거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①항의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가 투자해 축조한 건물’에 해당되어 교사확보율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보유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협력연구소가 대학시설의 일부를 임대 사용한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협력연구소가 사용하는 면적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활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보유면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사시설의 구분 중 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 교사 및 교지면적 산출

질의

- 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교사면적 산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사기준면적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요, 2013년에 설립하는 대학이라면 2013년 입학생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하여 학생 수를 산출하면 될 듯한데, 이미 설립된 대학이라면 예를 들어 2010년 설립된 대학이고 각 연도별 입학 인원이 2010년 50명, 2011년 50명, 2012년 60명, 2013년 60명이면 이 때 2013년 입학정원 곱하기 4로 일괄 처리하면 되는지, 각 연도별 입학정원을 더하여 2013년 학생 수를 구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2. 2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 교지 기준면적 산출 시 학생 수는 입학정원에 수업연한을 곱하여 산정하며, 계열별 학생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교장 임용 관련 질의

질의

- 우리 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력인정시설 교장 자격연수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교육청 방침이라는 이유로 교장임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자격연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요? 현재 우리 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사직하고 결원 상태이므로 교장임용 대상자를 교장 연수를 받을 때까지 교장 직무대리로 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자격연수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장자격 대상자 지명에 있어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제③항에 “자격연수중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교장·원장 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별표 1 중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에서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 계획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사 취득 제도에 대한 의견

질의

-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만 8년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교육사 양성시 일정 경력이 상인 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실습’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작년부터 10과목을 신청하여 현재, ‘평생교육실습’을 신청하여 수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이전에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자는 바뀐 제도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 근무자에 대한 현장실습 과목 면제는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2007.12.14) 전까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에 대한 관련법의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평생교육 관련과목에 관한 적용례)에 경과 규정을 두어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민원인께서 법 적용이전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중 2009학년도 3월 1일 이전에 1과목이상 이수하였다면 현장실습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회교육시설 운영업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회사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사회교육시설 운영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명칭이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기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사회교육시설 운영업’이 있으면 평생교육시설(사업장부설)을 등록신고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99.8.31) 전 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에 ‘사회교육시설 운영업’이 있다면 ‘평생교육법’ 부칙 제10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위한 기타 다른 설치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원법의 진학지도상담(입시컨설팅)의 규율 범위

질의

- 학원법에 규율되어 있는 “상급학교 진학목적을 위한 진학지도/상담”의 교습과정을 선택하여 학원을 개업(등록)하고자 합니다.
1. 상급학교 진학목적의 입시컨설팅은 꼭 고등과정에서 대입으로 가는 입학전형절차에 대한 컨설팅만을 의미하는지요?

2. “원격진학지도/상담컨설팅 학원”을 서울에 등록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범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3.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쭙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진학상담·지도가 있으며, - 이 과정은 대입에 필요한 진학상담·지도만이 아닌 지식·기술·예능에 관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상담·지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진학상담·지도를 원격교습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교습비 등에 관하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2비자 영어 원어민강사의 과외활동 문제

질의

- E2비자를 가진 사람이 과외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F2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과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 불법 과외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외국어 학원강사(E-2) 비자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불법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교육원(학점은행제) 학생 신분

질의



- 스포츠 관련 교육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또는 대학 중퇴자로 하여금 사회교육원(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대회 등에 참가시키고자 하는데 대학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등록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교육원(학점은행제) 학생의 대학 재학생 신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습자가 학습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결과 및 취득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한 대안적 고등교육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의 학습과정 운영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법인의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평가인정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는 대학의 재학생 신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의 재학생이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정식 입학을 통해 대학 본교의 정원에 포함된 학생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간편화

질의

- 첫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지위승계신고서도 법의 취지나 다른 부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류의 간소화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둘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시설이다 보니 평생교육설치 신고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대형 교육기관의 경우엔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신고가 아닌 한 개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지위승계 시 제출하는 서류는 인계인수서,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설치 요건(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등) 및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의 적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아울러, 평생교육시설을 각각 신고(원격 별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시설 요건 등)을 갖추게 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질의

1.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인정할 때 중복 과목은 무슨 근거로 판단하나요?
2. 중복과목이 아닌데, 학점은행제에서 중복 과목으로 판단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학점은행제에서 각 학교별 중복과목 판단기준을 정보공개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운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의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비고2에 의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에서 동일한 과목명 또는 동일한 교육내용을 지니는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판단하며,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홈페이지(www.cb.or.kr) 신문고 또는 콜센터(1600-0400)로 문의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의 요건

질의

- 질문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이기 위한 특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2. 어떤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종류) 제1항에서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1항에서는 [별표2]와 같이 교습과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라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 요건 등과 관련한 질의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교습과정, 과목, 교습비 등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스마트폰모바일앱 “전국학원정보”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시설 대관

질의

- 교과부에서 외부 업체(학원)의 대학 시설 대관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대학과 MOU를 맺고 대학과 함께 공동 주최를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고, 또한 대학은 학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설 대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6.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방학이용 영어캠프 불법운영에 대하여 대학시설의 임대를 자제해달라고 전국의 국·공·사립 전문대학 및 대학에 2차에 걸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최근에 방학을 이용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단기 방학 캠프(영어 등)를 운영(고액 불법·편법 기숙학원형태 학생 모집 광고 등)할 것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학원등록 후 교습장소에서 하지 아니하고 외부시설에서 교습한 경우 또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학소재 교육시설 등을 임대, 학습자를 모집하여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불법 참고)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교육을 조장하여 선량한 학생 및 학부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뿐 아니라, 그간 정부가 중산층·서민 등 사교육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방학기간에 단기 숙박형태의 불법·편법 방학캠프

운영자에게 강의실 등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므로 민원인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에 관한 개인과외 가능 여부

질의

- 개인과외라고 하면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려는 것은 메이크업인데요. 메이크업 과정을 초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가 가능한지요? 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9.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는 과외교습에 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따라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초·중·고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2. 그러나 성인의 경우는 초·중·고생이 아니고,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도 아니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러한 경우는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신고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실시 가능 여부

질의

- 성인을 대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육과정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신고할 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내고 평생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1.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5조에 의거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한 동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하여 폐쇄 조치 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의 개인과외 교습대상 여부

질의

- 제가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아도 교습대상으로 신고해야 맞는지요? 지역교육청 문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함) 제2조 제4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외교습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4.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아에 대한 교습은 “과외교습”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과외교습소에서의 교습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학원법에 저촉 여부

질의

1. 일정 장소에서 일정한 인원(10명 이상)이 일정한 교육을 반복하는 행위를 학원법에서 학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매주 1회, 정기적인 날짜에, 30명 정도의 인원이, 일정한 교육(뮤지컬) 강습을 하며 한 달 단위로 수강료를 받는 경우, 이는 학원 및 교습에 포함되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9. 24.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뮤지컬 강습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단순 동호회 차원에서 실비수준에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실 경우라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습과정별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라면 그 일수의 합계가 30일이 넘는다면 학원법 제2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교습형태, 수강료, 교습장소,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지점에서의 모의고사비 징수 가능 여부

질의

- 본사와 지점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학원에서 본사 및 각 지점이 각각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본사와 지점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본사에서 지점으로 공급하는 모의고사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받아주지 않는지 판단 바랍니다. 본사와 지점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4.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모의고사비는 학원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을 기타경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에서 기타경비의 범위를 정한 목적은 학원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편법인상을 방지하고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본사에서 제작하여 사업자가 다른 지점에 공급하는 형태로 모의고사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습자 또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모의고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습자의 실력 및 학업의 성취도 평가를 위한 전국단위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시험결과를 전산으로 평가·분석하여 학습자의 실력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시험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설치

질의

- 모법인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등기부상 지회 관한 교육청에 추가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자격을 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별도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면 지회 이름이 아니라 모법인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가능한지요? 모법인의 이름으로 하면 전국에 복수의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0. 12.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를 한정 한 이유는 사회적 공신력 확보 및 구분별한 교습과정 운영 등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여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은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며, 「1단체 1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부(지점)가 본원과 별도로 해당지역 주무관청(시청 등)에 등록되었거나 지부(지점)의 회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등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별도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시려면 시, 도마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질의

- 방송대에 편입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복지 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실습을 마쳤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 신청 절차를 몰라서 평생교육현장 실습평가서를 방송대로 보냈는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고 학점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학점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성적 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사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5.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학점은행기관(한국복지문화교육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통해 이수하셨으나, 학점인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학점 미등록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측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련과목을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교육과정 종료 이후 학점인정신청 절차를 거쳐 학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 관련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점인정 절차를 거쳐 학점인정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의자께서 이수하신 학습과정이 학점인정 기준에 적합한 과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학점등록이 완료된 과목에 한하여 ‘학점’으로써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기간(매년 1, 4, 7, 10월 예정) 내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학점은행제도 상 학점등록 완료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에 맞춰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 관계법령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6.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 설립, 민간업체 위탁운영 중인 평생학습 시설의 학원시설 전환 등록

질의

- “영어마을”이라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민간법인이 위탁받아 그 사업을 운



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 운영한 경우에도 교육청에 해당 시설을 학원 시설로 수정 등록해야만 하는 것인지?

- 등록 의무가 있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한다면 현재 위탁받은 시설물이 학원시설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 제재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환등록 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현 위 수탁협약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금년 중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위탁협약 기간이 유예기간에 포함되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12. 3.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인이란 자연인과 사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운영 중인 영어마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였다면 학원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겠습니다.



학점인정 기간 전 교육실적 학점 인정 여부

질의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되는 군교육학교 중 해군기초군사학교, 기술행정학교가 교육진흥원에서 2007년에 인정이 되었고 저는 2005년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받은 건 같은 데 불과 2년 차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계획을 하고 공부하는데 안 된다니 답답하네요.

회신

회신일 : 2013. 1. 23.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대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기관의 성격이 상이하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교육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게 되며, 평가인정 받은 교육과목을 이수한 학습결과에 대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학점인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 평가인정 받은 기간 이전에 학습한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위취득 기준

질의

- 학위취득 시기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졸업식 날짜로 이야기를 해서 공부한 학점은행 학점을 인정 못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총장이 학위번호를 발급한 날 자체가 분명 학위취득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7.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위취득 시기”는 졸업증서에 기재된 날짜로 보아야 합니다. 졸업식은 졸업식 날짜로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졸업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총장이 학위번호를 부여하는 행위는 졸업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

질의

- 저희 기관은 5개월 과정 교육비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강 전에 일괄 수강신청을 받아 인원을 확정하고 있으나 취소자가 종종 발생하여 추가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 학습비 징수(수업)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 문구를 근거로 중간 등록자에게 동일한 수강료를 징수 및 환불하고 있는데 적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수강이 시작된 이후 추가모집에 따라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조항관련 별표3에 따르면 총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추가 모집 시 “교육기간은 처음 시작일로 소급적용하며, 수강료도 일할계산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을 공지하시더라도, 추가모집기간에 신청 후 취소하는 수강생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성격

질의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학교에 해당한다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3. 31.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교사의 자격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한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학원등록

질의

- 학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과 경기도는 유예기간이 끝나 문화센터에서 36개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이며, 학원법이 어느 시기부터 일괄 적용되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기관에서는 해당 대상을 상대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2011. 7.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생교육시설인 문화센터에서는 유아,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기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 시설 임대기간, 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상강의 형태 원격학원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원격학원을 등록하려 하여 화상강의 형태의 교육이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1. 원격으로 화상강의 형태의 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등록대상이 되는지요?
- 2. 만약 화상강의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과 같은 홈페이지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강의 형태로 교습을 하고자 한다면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생의 국제대회 출전 대상자 포함 여부

질의

- 학점은행제 학생이 유니버시아드 출전 대상자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KOC선수등록규정에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 자(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12학기 까지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습자가 학습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결과 및 취득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



위취득이 가능하게 한 대안적 고등교육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매년 관보 등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공고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의 기관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의 학사관리 및 수업 이수가 통일되는 것과 같이 학적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위임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을 위한 학습 이수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및 시간제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KOC 선수등록 규정에 의거한 유니버시아드참가대상의 요건은 해당 기관으로 최종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용 여부 확인

질의

- 한 시설에서 평생교육사로 배치되어 근무 중인데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시설명을 알고 싶고요. 혹시나 두 군데 시설 이상에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배치가 혹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민원인의 자격증이 타 시설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2항에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개 이상의 평생교육원에 배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입니다. 법률근거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는 학원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의 합계가 30일을 넘지 않았다면 학원법 제2조에 따른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 학원법의 취지로 보아 교습과정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라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적인의 사단법인 대표자 가능 여부

질의

- 미국 국적 한국인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12. [평생학습정책과]

- 법인의 임원 중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사 중에서 이사가 선임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질의

- 전문대 졸업 후 꿈을 위해 일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따고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위 신청을 하는 중 마지막 12학점 학점인정 처리에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학점인정도 학위신청도 실패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3월 대학원 입학을 하고 한 달여 간 다니는 중에 학점인정과 학위신청을 하려고 하니 지금 신청하면 학위 날짜가 8월로 된다고 하고 그러면 학교에선 합격 처리가 취소되고 나가야 한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취득제도로, 동법 시행규칙 제8



조 제4항에 의거 학점은행제 학위증은 2월과 8월에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 및 학위사정에 관한 확인 업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신청기간과 학위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전 공지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 절차 등 제반 과정을 신청하여야만 학위수여요건 검토 등에 거쳐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 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위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다음 학위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습비 인하금액 변경 등록

질의

- 요즘 경제의 어려움과 정부의 학원비 안정화에 부응하고자 교육청에 등록 수리된 현재의 교습비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자 하였더니 인하된 금액으로 다시 변경등록하여 운영해야 한다 합니다. 인하된 교습비로 학원 운영상 다시 원래 금액으로 인상사유가 발생되어 인상하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습비 동결 방침에 의거 인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비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사교육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습비등조정 위원회에서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학원비를 정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교습비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장에게 등록하여 학원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교습비를 등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취득 제도

질의

- 학점은행제 운영 신청기간이 다가오는군요. 만일 신청과목 중 탈락되는 과목이 있다면 저는 또 한 번 평생교육사 미배치 때문에(제 개인의 경우는, 오랜 기간 평생교육원에 근무했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감점되었다는 현실에 마음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본인의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감점요인을 방어하고자 노력하지만, 주말에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지역적 한계가 있고, 또 직장에서 장기간 휴가를 내서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신청시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인정의 배점은 기관 평가 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는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평생교육 종사자를 양성·배치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 이에,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사 배치는 평생교육 업무 전문성 또는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제한

질의

- 내국인 강사의 학력기준은 전문대학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의 경우 4년제 이상 마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졸업 이상이란 college와 university를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라마다 학년제가 다르고 college와 university만으로 학년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기준을 정확히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외국인강사에 대한 대학졸업 이상이란 college와 university의 명칭을 떠나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에서의 저소득층 학생 학습지원

질의

- 사회복지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습지원사업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학원법 예외조항으로 사회복지관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 등의 학생들에게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습하는 것은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수강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

질의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간호학사 학점은행제 과정을 수강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차상위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차상위 학점은행제 수강생에 대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어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비정규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누적에 따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안적 고등교육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의 학습과정 운영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이외에도 학원, 직업훈련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평가인정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점은행제 기관 및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점은행제 특성상 정부 차원의 장학금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평가인정 교육훈련 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되기도 합니다. 민원인께서 학습하고 계신 해당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차상위 계층에 학습비 지원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

질의

- 저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 자격요건에 필요한 66학점을 이수하였으나 교육원에서는 한 기관에서는 60학점만 인정이 된다고 두 과목을 제외시켜 주시며 타기관에서 다시 학점이수를 하라 하여 6학점을 타기관에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여 보육교사 자격취득증 신청을 했으나 아동안전관리 3학점부족으로 자격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요건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다 이수하고도 담당자가 제외해 준 3학점이 성적증명서에 인정되지 않아 보육자격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자격 제도가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 취득 제도로,

각종 학점인정의 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에 기초하여 학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학습자의 학습계획에 따라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기준, 시점 등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한 일련의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수여 신청 이외에도 학점인정 취소까지도 모두 학습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2013년 2월에 취득하신 전문학사학위는 해당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수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학위 취득 이외에 목표하신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요건과는 달리 보육교사 자격증의 취득 요건은 ‘학위를 취득하며 이수한 학점 중 해당 이수과목을 영역별로 이수하여 인정받은 자’여야 하며, 이에 설령 학위취득 전에 이수하고 학점인정 취소한 학점을 다시 현재의 시점에서 학점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위취득 후 인정 학점이 되며 이에 해당 자격증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득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진흥원에서 안내 받으신 대로 만약 자격 취득을 위해서라면 해당 요건에 맞게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되으나, 제도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유아 대상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질의

- 2012년 3월 7일부로 원격평생교육시설 내에서는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사이트 내에 주니어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격평생교육서비스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2)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사이트 내에서는 아예 별도 상품으로라도 주니어 교육 과정을 등록하면 안 되는 것인지,
- 3) 그렇다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사이트에 별도의 브랜드로 별도로 사업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4) 아예 해당 법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외에 타 교육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등이하 학생을 대상으로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개설할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 ※ 경과 규정 : 제5조(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 및 신고를 하시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 4)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등록(학원)하시고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방학 중 대학교 저소득층 캠프 운영

질의

- 방학 때 저소득층 자녀들을 모아서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 식비, 숙박비, 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1. 각 대학 영어캠프는 현재 비용이 200백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2. 한국 장학재단 등 방학 때도 저소득층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어지겠지만, 개인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립 대학생들과 동아리 연합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프로그램- 외국 원어민 교사 수업, 사물놀이 체험, 대학교내 농사 동아리 작물 재배 체험, 과학실험교실, 독서교실, 대학교수 초빙 강연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등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무상 교습에 대해서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원에서도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나 지자체가 전부 재정지원을 하여 무료로 운영되는 영어캠프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국가 및 지자체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등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강료 환불금액 기준

질의

- 당사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고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환불 발생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원래 수강료 정가가 90,000원이고, 수강생이 이벤트 할인을 받아서 60,000원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발생 시 수강료 기준은 90,000원인지, 60,000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귀 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료를 해당 학습자에게 안내하였다면 할인된 가격이 해당 과정의 수강료가 되는 것이므로 학습비 환불도 그 수강료에 맞게 환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 대해 귀 시설에서 학습자에게 개인사정을 반영하여 수강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안내하였다면 환불 시에는 연장된 수강기간을 고려해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 참고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3 서식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 기준

질의



- 시·도 조례에서 입시, 보습 어학원 등에 대하여 시설면적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책상 등의 시설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학원 운영자가 교습과 학습에 책상 및 의자 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책상 및 의자 등을 각 강의실에 일시수용인원에 맞추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는 교습과정별 시설과 설비를 시·도 조례에 위임한 바, 민원인의 관할 시·도의 조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입시, 보습, 어학원 등의 실습(교구)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에 대하여 일시수용능력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강의실 면적 및 책·결상의 개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학습자(최소한의 학습 공간 확보)와 교습자(정돈된 학습 분위기 조성)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대부분의 시·도 조례에서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구비한 시설·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습 대체 과목

질의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아동학 학사를 준비 중입니다. 보육실습이 필수과목인데, 보육교사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고 경력도 많다 보니 실습할 곳을 찾기가 어렵네요. 보육실습을 대체할 다른 과목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중 희망하는 전공과정의 전공필수를 포함한 일정 전공학점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육실습” 과목은 학점은행제 아동학 전공 학위취득에 필수 과목이므로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에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 독학학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과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육실습] 과목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수강신청 후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 및 학습설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1600-0400)을 통하여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오픈마켓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학원 등록 대상 여부

질의

-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상품 등록이나 광고하는 방법 등 주로 판매자 영업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므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 전부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 회사는 매달 교육일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불과 며칠로 단기입니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회사가 교육하는 것이 소위 학원법의 적용대상인지와 교육내용이 지식이나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2항에 따라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합니다.
- 민원인이 교습하고자 하는 소속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 방법 관련 강의는 학원법상의 교습과정에 유사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과정이 없으며, 학원의 정의 “불특정 다수”와 “지식, 기술, 예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시험 응시료 과다 및 부담 요구

질의

- 민간 상담심리사 자격검정 기관에서 응시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아니면 규정이라고 하면서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부당하게 심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민간자격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격발급 수수료를 책정하고 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자격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추가 문의하신 문제지의 공개여부에 대한 사항은 민간자격운영자의 재산권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기관의 관리운영 규정을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미용 민간 자격시험

질의

- 미용 자격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제부터 Q넷에 등록 되지 않는 민간 자격시험은 시행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법 내용 중에 국민의 보건과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민간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7.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민간자격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설 및 관리·운영이 불가능합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1항)
- 또한 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위의 금지분야에 해당할 경우, 시기와 상관 없이 무조건 자격을 발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의하신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분야의 경우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분야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어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등록

질의

-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민간자격이 시험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이 되는지요?
 2. 민간자격이 시험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이 아니고, 일정한 경력요건 또는 재직요건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이 되는지요?
 3. 한 자격시험을 통해 2가지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2가지 자격을 별도로 각각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가지 자격시험에 대해서 등록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1. 현행법상 단순 교육을 통해 부여되는 것은 수료증이며 수료증 형태로 부여되는 것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유무와는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능력 등을 검정하는 검정절차(예 : 교육훈련과정 중의 검정절차 등)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면 그 자격은 등록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받은 자에게 수여하는 증서이며 경력이나 재직여부를 증빙하는 목적의 서류가 아니므로 만약 일정한 경력요건 또는 재직요건만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자격기본법상 규정하는 자격증이라 볼 수 없고 등록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3. 하나의 자격시험으로 2개의 자격을 주는 경우라면, 2가지로 분리 시행하여야 할 자격시험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자격을 이중으로 부여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자격검정체계를 재검토하여 반드시 1개 검정시험에 1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시고 해당 자격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검정업무 대행 민간자격의 등록대상 여부**질의**

- 요즘 민간자격 시험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Q-NET에 등록을 하고 민간자격 시험 주관 가능하다는 소식과 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험은 미국 주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 보안센터(Pearson Vue)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 정부 라이선스 시험의 경우도 Q-NET에 등록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6.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문의하신 미국 정부 주관 시험과 같이, 위탁계약 등을 통한 검정업무만 대행하는 민간자격은 민간자격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의 등록주체는 자격의 직접적 발급주체인 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입니다. - (예) TOEIC 시험의 경우 미국 ETS와 계약을 통해 YBM시사가 검정대행으로 운영되므로, 민간자격 등록대상이 아님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질의**



- 민간자격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인지도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공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론 그것이 회사나 단체의 사활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 3월말까지 국가공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된 기관과 단체는 실사업무를 거쳐 연말 공인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가 통과된 기관에만 연락이 가고 서류심사가 불합격된 기관에는 연락이 가질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민간자격 공인 절차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조사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능원의 역할은 신청접수 후 조사연구 결과를 각 부처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한하며, 직능원에서는 공인 신청된 서류심사 결과의 합격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각 부처에서는 직능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관 자격종목의 공인 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공인을 확정하게 되며,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최종 공인결과의 통지를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또한 공인 신청 시, “1년 이상 3회 이상”의 집행실적의 허위작성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공고에서부터 시험시행 후 자격증 발급까지의 모든 일련의 절차를 시행한 것을 1회로 인정하므로 그 실적에 대한 관련 근거서류를 면밀히 판단하여 서류접수를 시행하므로 “1년 이상 3회 이상”의 요건에 결격될 경우에는 공인 신청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직능원, 관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

질의

- 저는 진로교사가 꿈인 학생입니다. 현재는 타 교과 교사가 ‘진로교사’라는 직책을 대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타 교과 교사가 대신할 것인지, ‘진로교사’라는 직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31.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우리 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2010년도부터 매년 약 1,500여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일반교과 교사 중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를 선발하여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한 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선발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진로교육과 상담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임시로 대체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여 충원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 전환시 자격 제한의 부당

질의

- 교과부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2011.02) 자격취득 요건 5항 전문상담교사 특례조항에 따르면 현직 전문상담교사 중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2.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를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로 나누고,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 제1항의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을 보면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이 가능한 자격종별은 중등학교/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로 되어 있고, -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지도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자격종별은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으로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며 부전공



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2)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정교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지도 경력, 관련 분야 교육 이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과수업과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

질의

1. 2012년 5월 4일 입법예고한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2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고내용에 의하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2014년까지 5,383명을 배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자가 필요할 것인 바,
4. 모 사단법인에서 개설 운영 중인 “인성심리상담사” 교육을 이수하여 “인성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채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1.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 우리 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여 2013년까지 학생수 100명 이상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정식 교과교사로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한 중등 1급 정교사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후 교과전환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성심리상담사 자격’은 교사자격증이 아니므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직업위탁교육 관계법령 등

질의

- 직업위탁교육, 직업위탁과정을 인가받아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관련부처, 관계법령, 설립조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6.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계학원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기술계학원 설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법령 내용을 보시려면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일반고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시킬 기술계학원을 모집할 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후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연수 신청자격

질의

- 2013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연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의 “진로교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자”라는 항목과 교육청 공문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취득일(2013.9.1) 기준 7년 이상 재직 가능자”라는 항목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사항인지요? 혹은 사립학교는 인사권자인 학교장이나 해당 법원에서 인정하면 지켜지지 않아도 무관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2.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

- 2013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의 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으로 안내한 ‘진로교사 자격취득 후(’13.9.1. 기준)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는 국가 시책 상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자격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3년도 진로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0년 8월 31일까지는 근무할 수 있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격

질의

-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홈스쿨러인데, 지원자격에 딱혀 응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의적 인인재를 발굴 격려하고 획일화된 성적위주의 인재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인재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인데,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은 지원자격 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4.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



-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자격 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 후 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및 지역의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해 중앙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 수상자의 10%내외에서 자체 발굴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상자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진로교육 지원 체계

질의

-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무한한 경험, 중학교는 진로의 선택, 고등학교는 진로의 길, 대학교는 진로를 완벽히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5.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교육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의 토대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질·적성 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 현장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 2013년 3월에는 100명 이상 모든 중·고등학교에 4,550명의 교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 또한 커리어넷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진로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진로 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초·중·고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소속 학교나 인근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상담하면 더욱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진로진학교사 자질

질의

- 교생실습을 가려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진로진학교사로 교생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실습을 했던 학교도 진로진학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지도하는 것 대신 아직도 대학진학의 목적을 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진로진학교사를 많이 양성한

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양성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6.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

-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11년부터 중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진로검사와 상담, 진로수업, 직업체험 등을 담당하도록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인 중등학교에 모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재직 중인 선생님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전공자격연수 대상자를 시도교육청별로 선발하여 57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 후 '진로진학상담' 교과 교사로 배치·발령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진로교사로서의 책무성과 진로진학상담의 전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전공자격연수 후에도 연간 30시간 이상의 특화된 심화연수 프로그램(심리검사 활용과정, 진로상담과정, 집단상담과정, 청소년 상담기법 등)을 전문연수기관에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소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충실한 진로진학상담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

질의

- 진로진학교사가 아닌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요즘 불리고 있는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지요? 진로진학교사를 연수를 통해 심리검사 활용과정, 진로상담과정, 집단상담과정, 청소년 상담기법 등을 전문연수기관에서 연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5.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

- 진로진학상담교사(진로교사)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총괄하는 선생님이로 진로검사와 상담, 진로체험, 「진로와 직업」 수업,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등의 학교 진로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직무에 대한 내용은 진로진학상담교사 홈페이지(www.jinrojinhak.com) <교과부자료> 자료실의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교사의 양성과정은 일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2014년까지 모든 중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라 재직교사 중에서 시도별로 선발하여 연수 후 배치하게 됩니다.
- 다만, 장기적으로 진로교사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 개설 등 양성체제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마이스터고 특별전형자격 요건변경

질의

- 현재 전국 마이스터고 신입학생 전형시에 특별전형 자격 항목 중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우수상 포함) 자녀만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금, 은, 동) 수상 자녀까지로 확대 개선 건의 드립니다. 마이스터고의 설립취지가 기술인력 전문양성에 있는 만큼 각 지방경기대회 입상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혜택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7조에 의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수상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및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학교 위탁교육 포기 근거

질의

- 질의1.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업학교로 위탁교육을 간 학생이 적성 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탁교육을 포기 하고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일반고 재학 중 취업으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이 행복한 직업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직업교육을 원할 시에 서울의 경우는 산업정보학교(3교) 등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학생이 부득이한 여건 등으로 직업교육을 포기시에도 원적학교로 복귀하여 해당학교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학교에서는 자체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사업

질의

- 전국교교 취업지원관사업의 예산이 2013년 2월말 종료되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전국교교취업지원관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졸업생들의 사후 취업관련 추수지도 및 행정수요와 신학기초 3학년 진급생을 비롯한 저학년 학생들의 조직적인 진로지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취업지원관들의 생계대책 또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취업지원관 사업은 '12년 고용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용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조하여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적 기틀을 마련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인력지원, 취업지원 매뉴얼 개발,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담당관, 책임교사, 진로상담교사 및 교직원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학 협력을 통해 졸업 후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즉, 취업생들이 직업세계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 산업체 현장 방문, 개별 학생 대면 상담 및 전화 통화 등 다양한 추수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취업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에 있는 인력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성과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운영 계획과 구체적 운영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13년도 취업지원관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부처,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요청

질의

- 우리 학교는 네트워크보안과 해킹보안과 등 2개 학과 있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6. 12.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마이스터고 지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 학교의 마이스터고 신청서 제출 → 시·도교육청의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요청 → 교육부의 서면·현장 심의를 거쳐 지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리부가 지정 동의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이버 보안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필요 및 의지가 있다면, 마이스터고 표준 요건(마이스터로의 성장경로가 확립, 산업별협업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가 보장,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취업 후 동일분야 고등교육기회가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 후 우리부의 제8차 마이스터고 선정 계획 발표에 따라 관찰 교육청으로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하시면 위에 안내한 절차에 따라 마이스터고 지정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

질의

- 특성화고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비면제를 받고 있는데 시의 장학회로부터 과학특기생으로 선발되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특성화 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이 장학금의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장학회에서는 학교로 입금을 시켰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학비 지원을 받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1.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은 2011년부터 「서민희망 예산 3대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재학생 전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은 다른 기관(법정면제, 저소득층 자녀, 직장의 학비보조, 기초자치단체 및 외부기관 장학금 수혜자 등)으로부터 학비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는 시의 장학회로부터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은 것이라면, 이중 수혜를 금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특성화고 취업졸업생의 사이버대 진학시 취업, 진학통계 병행 산정 건의

질의

- 현재 특성화고 평가시 “선취업 후진학”을 강화하면서 취업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 대부분의 졸업학생들을 취업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의 성공적 삶을 위해 취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고등학교 취업률 산정시 취업과 진학률이 병행하여 통계 산정될 수 있도록 일선고등학교에 하루빨리 기준 지침이 하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30.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식통계로 교육통계를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며, 학교단위 정보 공시제 운영을 통해 학교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학업을 병행할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취업” 혹은 “학업”에 산정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취업률에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2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학업을 병행할 경우 “취업/학업병행”으로 산정하여 취업률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취업한 학생들이 귀 기관 등의 사이버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률에 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행정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치과조무인력 양성 반대

질의

- 교육부에서 어떤 의도로 치과전문인력이 아닌 치과보조인력을 고등학교에서 양성하는 것인지 다시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새롭게 생성된 치의보건간호과라는 곳에서 일반 전문대, 4년제 대학의 치과위생과에서 배우는 교과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찬성하지만 잘못된 교과과정으로 잘못된 치과조무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6.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며 관련기관에서 바로잡아 가야할 문제라 판단



됩니다. 다만, 조무사의 경우도 위생사를 도와야 하며, 위생사는 또한 치과의사의 업무를 보조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 조무사의 경우에도 보조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단위 교육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교육은 치의보건 간호과가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제도 이의

질의

- 전 취직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학업기초능력평가라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통과 못하면 취직이 어려워진다는데 왜 이런 걸 시행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9. 27.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는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고 기업체 취업시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은 일반고와 구분 없이 동일한 시험문제로 실시함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 국, 영, 수를 일반고 학생은 2~3배 더 많이 배웠음에도 똑 같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교육하는 기관이므로 직업기초능력 평가로 대체하자는 일선 학교의 건의를 수용하여 이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학생을 인증해 줌으로써 전국 10만여 회사 취업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시험 성적이 나쁘면 어떨까 고민이 크겠습니다.
- 그래서 오는 10월 15일부터 3일 동안 전수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시험 성적은 학생과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생들이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내년부터 제도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학생이 이번 시험에 불안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시험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직업세계에 들어갔을 때 요구되는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학생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않고 회사에 취업했다면, 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대학입시 취업자전형 확대 필요

질의

- 제가 지원한 대학은 취업자전형은 인문계 전문계 구분 없이 2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250명이었고 전문계재직자 전형은 119명을 뽑는데 지원자수 65명으로 미달로 전원합격인 것입니다. 저도 고교졸업을 하고 직장경력 4년을 초과하며 이번에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작년과는 너무 다르게 입시전형도 바뀌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취업자전형을 위한 것이 아닌 전문계고졸재직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9.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으로 가지 않고 취업 후 대학에 가도록 유도하는 대표 정책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제도입니다. 동 전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가 각 대학에 정원의 특례입학 하는 제도입니다.
- 동 전형은 재직자가 일-학업을 병행하면서 대학공부 할 수 있도록 주로, 야간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 전형의 정원의 입학자격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이므로 고교가 다르거나, 산업체 경력이 3년이 아닌 경우 입학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재직자 특별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내(소수 배정) + 정원외(평균 입학정원 2% 선발)로 정원을 배정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정원내는 입학선발 유형이 대부분 “취업자 전형”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정원외는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수만 배정된 정원내 “취업자 전형”은 경쟁률이 높습니다만, 앞으로 각 대학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많으면 취업자 전형을 점점 확대할 것입니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특별히 대학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거주자, 특성화고(舊 전문계고, 실업계고) 졸업자입니다.
- 민원인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당분간은 특성화고 학생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졸업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성인재직자가 재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입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질의



- 요즘은 정보산업고교를 졸업하면 전문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6.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특성화고등학교(舊 전문계고) 졸업자는 대학의 장이 고교 교육과정과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모집단위에서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입학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대학은 일부 과정에서 동일계 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 하지만 작년 감사원 감사시 일부 특별전형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특성화고의 “동일계 특별전형”이 고교 교육과정과 전혀 무관하게 대학 입학 편법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기에.(대학 시정조치, 교과부 제도개선 권고 등) 최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학년도 대학입학기본계획에서 “동일계열”의 판단을 교육과정 총론의 기준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기준학과를 활용해서 동일계열을 판단하므로 현재와 같이 전산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간호학과, 국문과 등을 진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이 기준학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3년간의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을 증거로 각 대학에 개별적으로 진학의사를 표시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 기본계획 참고, 대교협 홈페이지 참조)
- 민원인께서는 질의하셨던 상업계열의 학과는 상업계열 및 공업계열로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에서 수업 받은(전문교과)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마이스터고 예산 지원 방법

질의

- 마이스터고에서 학생 취업 활성화 전략을 개별 학교별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재원 등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지요? 마이스터고 운영비 등이 전제로 내려가면 세부 지출 항목은 학교 측에서 사용처를 정해서 사용한 후 교과부 쪽으로 나중에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제안하여, 해당 사업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3.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마이스터고는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우리 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지출 항목은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 내역 보고는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명 변경

질의

- 현재 학교 중 ‘마이스터’, ‘바이오’, ‘하이텍’ 이름이 붙는 고등학교 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식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공고, 농고라는 이름을 버리고 뭔가 있어 보이게끔 고등학교의 이름들을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한글’이 아닌 것으로 바뀌가는 것에 이의를 두고 싶습니다. 오랜 전통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름을 외래어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 씁쓸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3.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학교의 교명 변경은 학교의 재량이 아닌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설치조례에 따라 학교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교명 변경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교명 변경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소속 교육청에 교명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 외래어 사용(‘마이스터’, ‘바이오’, ‘하이텍’ 등), 학교교육과정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명 변경 적정여부를 심사·승인(또는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은어, 비속어를 사용한 교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학교에서 그와 같이 교명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면 교명변경 적정여부를 학교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또는 반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국 제 교 육

인정유학 처리에 따른 학적 관리

질의

- 학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민으로 유학가는 사례인데, 이민 비자가 없습니다. 현재 이민 비자가 발급이 안 된 상태이고, 해당 학생에게 캐나다 여권이 있습니다. 4가족 중 3명이 캐나다 여권이 있고 아버지만 한국 여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이 캐나다 여권이 있으니 인정유학처리가 되어 정원외관리(면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유학인정의 범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에 의하여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유학으로 인정함” 다만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로 제한하고 그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 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외교통상부) 또는 실 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시·군·구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재학 기간 등 확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한편 유학인정에 따른 학적처리는 의무교육단계에서 유학 온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과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학하는 초·중학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해외 출국일 경우에는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해외 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로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 여권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등 합법적 사유인 경우 의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중학생은 정원 외 관리 처리, 고등학생은 자퇴처리



가 가능합니다.

외국법인의 대학교 및 대학원대학교 설립가능 여부 문의

질의

- 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대학교나 신학대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한국에 분사무소가 있는 (외)특수법인이며 명칭 앞에 “재단법인”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 1. 그런데 등기부등본 및 정관내 목적사업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설립요건을 갖춘다면 대학교나 대학원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이 가능한가요? - 목적사업 : 특정의 대학원, 대학교, 신학대학교, 특수 직업학교, 전문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보육원), 전문인 양성소 평생교육원을 설립, 교육 활동사업
- 2. 그리고 현재 이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가 미국에 있고,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서 승인을 해 줄 경우 서울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 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립신청 자격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니하는 법인)에 있습니다.
- 또한 외국학교 분교는 일반적인 지역에 설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 입학시 제출 서류

질의

- 외국인학교에 입학시 제출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7.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이거나 ‘해외거주 3년 이상인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입학자격이 ‘외국인의 자녀’인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학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자격이 ‘해외거주 3년 이상인 내국인’인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사본, 학생과 학부모의 출입국사실증명, 해외학교에 재학한 경우 6학기 이상 해외학교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도 학교에서 자체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은 학교 단위로 실시하므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생 건강관련 서류, 어학성적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학생 학력인정에 관하여

질의

- 외국인학교는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맞나요?
 2.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요?
 3. 학력인정이 안 되는 외국인학교는 허가를 못 받은 학교 인가요?
 4. 인가받은 학교와 아닌 학교의 구분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①② 외국인학교는 2009년 현행 규정(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내 학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2009년 현행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학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국어와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이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일반학교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국내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학교는 위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함으로써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가 인가 그 자체만으로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는 '학교'라고 부를 수 없는 '미인가 시설'로서 교육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 받기 곤란합니다.

F4 비자 유학생 장학금

질의

- 현재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 유학생입니다.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정확히 2월 25일 F4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F4 비자로 학교를 다녀도 D2비자 때처럼 유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장학금 제도 중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변경과 연계된 정책은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받으신 장학금은 해당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해외 대학 장학금 문의

질의

- 현재 미국 대학교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국내 대학교에는 국가장학금 등 많은 지원이 되지만 해외 유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능한 한국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정책에 변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학과 학부과정 유학을 지원하는 사업과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외유학(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국비유학 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유형별 장학금 지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웹사이트(www.niied.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환학생 수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수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에 파견된 교환학생수가 궁금하며, 미국의 state별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12.4.1자 기준으로 국내 대학생의 해외 유학생 현황은 총 239,213명입니다. '12년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현황은 비학위과정(OPT* 포함) 12,796명, 학부과정 21,254명, 대학원과정 38,245명으로 총 72,295명입니다. *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 학위 과정 수료 후 취업비자(H-1B)를 획득하지 않고 최대 1년간 학생비자로 일을 하도록 허가받는 기간 미국에 파견된 교환학생 수 및 주별 현황은 우리부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통계 자료는 미국 국제교육협회(IIE) 웹사이트(www.iie.org) 내의 "Open Doors 2012 International Student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유학 6개월 기간 관련

질의

- 교육청 2013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내용 중에 "인정유학이라 함은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의 계산은 역월(Calendar month)이 원칙으로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을 의미 함"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수학기간의 의미가 무엇이며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0.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유학"에 해당하는 "6월 이상의 기간"의 계산은 역월(Calendar month)이 원칙으로,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으로 판단하며, 영어로는 "actual study period on the certificate of attendance"로 표기합니다.



- 유학기간의 계산은 역월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 교육장이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고등학교

질의

- 중국지역 학교 중 한국에서 인가한 학교는 어디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0.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중국지역의 우리 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는 10개교이며,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이상 중국대사관 관할), 상해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이상 상하이총영사관 관할),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이상 칭다오총영사관),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선양 총영사관), 홍콩한국국제학교(홍콩총영사관)입니다.

재외 한국학교 명칭에 대한 질의

질의

- 재외한국학교 중 “○○국제학교” 명칭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7.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한국학교 설립 운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전 세계 15개국 3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표기 여부 대해 법령으로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현지 국가별, 지역별로 주변의 국제학교 명칭 사용 또는 한국학교 이사회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현재 재외한국학교 30개교 중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는 14개교입니다. - 국제학교 명칭 사용 학교현황(14개교) : 교토국제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한국학교 전입생 학적 관련 문의

질의

- 중국 현지 중학교 9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던 아이가 중국 내 한국학교로 전학시 9학년 2학기로 전입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0. 26.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학생의 입학과 관련하여서는 학업능력 등을 테스트하여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 특례입학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이 학생이 9학년 1학기까지 다닌 상태에서 9학년 2학기로 들어오고 싶다면, 한국 특례입학도 23학기도 인정이 되고 있으므로, 특례입학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학제상의 차이로 인해 1개 학기까지의 과다, 과소는 인정하고 있는 바, 해당 학생이 9월 중국학교에 입학해 10.22까지 출석한 일수를 확인해 학기(학년) 수료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장 재량으로 전입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대학 특례입학 시 대학에 따라 특례입학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입학 시 하나의 조건으로서 ‘특례입학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결과에 있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서약서로 받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한국어 교원 파견

질의

- 한국어강사 자격 소지자가 해외 한국어 교사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교사인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27.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현재 정부차원의 한국어교원 파견은 태국 중등학교 파견사업(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현직교사 중국파견(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세종학당 파견(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해외봉사단 한국어교원파견(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등으로 구분됩니다.

가. 태국 현지 중등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은 '11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원칙적으로 한국어 교육학과(학사이상)를 졸업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미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현직교사 중국파견은 초·중등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중국 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학부생 대상 한국어개론, 회화지도 등을 강의할 교원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8호에 의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 1) 자격조건 : 초·중등 현직교사(초등 : 과목제한 없음), 파견일 기준 교직경력 3년 이상
- 2) 선발방식 : 시도교육청 추천 → 국립국제교육원 서류 심사 및 면접 → 선발자에 대한 중국 측과 협의 → 교과부 선발자 최종 확정
- 3) 활동기간 : 11개월

다. 세종학당 파견 : 세종학당재단에 문의(☎ 3276-0700)

라. 해외봉사단 파견 : 한국국제협력단 문의(☎ 031-740-0114)

- 가, 나의 경우에는 해외 현지학교에 한국어 교원으로 파견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고용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외 한국학교 채용 응모시 유사 자격의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현직교원으로 고용휴직을 하고 ○○한국학교에서 초빙교원으로 가고 싶은데 공고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유사한 자격증으로는 안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3. 1. 7.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한국학교의 장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학교장의 직무)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교 교원 임면에 있어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에서 교사 채용에 있어 당해학교의 정관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화학교과 교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임면권자인 소속 시도교육감 권한 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 한국학교 특수아 입학 허가

질의

- 한국에서는 특수아가 입학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근거와 이 법이 해외에 있는 재외한국학교에도 똑 같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 1. 8.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금지)』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는 동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치 거부 등 차별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동법 제3조(의무교육)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전공과와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에 설립된 사립학교 형태의 재외교육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동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교선택권 없이 국내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는 달리 운영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거주 주재원자녀의 일시귀국시 학교수업 가능 여부

질의

-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일시 한국에 귀국한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정상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 현황?

회신

회신일 : 2013. 1. 21.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완전히 귀국하는 학생들을 위한 『귀국학생 특별학급』 별도 운영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서울(4) - 서울대사대부설초, 서울교대부설초, 서울신천초, 서울목원초 경기(3) - 금계초, 호원초, 상도초 대전(2) - 대덕초, 전민초 부산(5) - 와석초, 광남초, 금양초, 낙동초, 양정초 <중학교> 서울 - 없음 대전 - 대덕중 이상의 학교로, 만약 완전귀국하게 될 시에는 상기 학교들에 직접 문의하여 입학하시면 됩니다.
-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귀국한 '귀국자녀'가 국내 초중등학교에 정식으로 전·입학 절차를 거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나, 고국에 일시 귀국하여 한시적으로 국내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받게 되는 "청강"의 경우, 그 해당학교의 장인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해당학교에서의 청강은 시도교육감의 권한 하에 있는 교육청 소속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서 교육부가 강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서울시에는 “다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 일시귀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재외 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질의

-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다면 무상교육인데 외국에 있어서 자비로 학교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혹시 학교가 지나치게 높게 학비를 책정하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 1) 현재 ○○○에 있는 한국학교의 관리감독이 교육부 소관입니까?
- 2) 소관이 아니라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3) 소관이라면 입학금, 수업료 같은 비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나요?
- 4) 한국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결정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4.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한국학교를 포함한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하여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수업료·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재외 한국학교는 해당학교의 학칙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의 경우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자치법규(조례, 교육규칙)에 의하여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의 장이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은 우리부와 관할공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재외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 한국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모의 소득, 거주지, 가정형편 등을 학교별로 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학생에 대해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지방교육

● 근속승진 요건

질의

- 4월 1일자 기능8급에 50명의 근속대상자가 발생하였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모두 4월 1일에 7급 승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승진처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 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의 요건은 직종별·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당해계급에서 근속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 중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결원 등 인력 관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근속승진자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부공무원 인사교류

질의

- 지방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입니다. 주말부부 공무원으로 육아문제부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저희를 도와줄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제가 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소수직렬이긴 하지만 모든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직렬임을 감안하여 근거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우리 부에서는 맞벌이,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근무기관 및 지역을 옮기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을 생활근거지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및 인사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중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의 수시인사교류시스템 “나라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안행부에서 시스템상의 매칭 결과가 우리부로 통보되면 희망의사 재확인 등 검토를 거쳐 해당 교육청으로 통보됩니다. 추후 해당 교육청에서는 인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요건

질의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4호(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기관운영상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을 원하면 무조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6.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육아휴직제도는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휴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요건이 성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에 특별한 사유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음)
- 단,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예를 들면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불허 또는 복귀명령이 가능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질의

- 지역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이 추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3.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동 규정 제5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93호, 2012.1.25)「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처리기준」에 따르면,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본인의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

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의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면,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그 자체로 최종 확정된다 하겠습니다.

● 호봉획정시 유사경력 인정

질의

- 저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호봉획정시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8.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및 그에 대한 해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93호, 2012.1.25)」에 의거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동일분야는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는 7할 이내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기계연구원은 경력인정대상인 공공기관 등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상근한 경우도 인정대상경력에 해당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호봉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외 기관 소속 조리사(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질의

- 공무원 위험근무수당(갑종)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학교 외에도 본청과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에서 조리 기구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조리사(지방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동일하게 조리 기구를 상시 사용하며,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본청, 직속기관 소속'의 조리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6.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에서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실은 초중고 등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시설로서 말씀하신 ‘본청, 직속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시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은 본청, 직속기관 소속의 조리사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휴직 대상 기관

질의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어떤 곳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수휴직 대상기관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2013.6.13)”에 따르면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
 4. 사범연수원
 5.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
 6.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일반직과 교육자치단체(교육청) 일반직 간 진출입 가능 여부

질의

- 교육지원청 소속 일반직(시설) 직원이 기초자치단체 소속 일반직(시설) 직원과 상호 진출입을 희망하는데, 인사교류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9.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1.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희망인사교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직렬 및 동일계급, 즉 동일직급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질의하신 경우처럼 직렬과 계급이 같다면, 즉 동일직급이라면 일반지자체와 교육청 간이라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질의

- 일선에서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혼선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질문 1) 결근 및 월중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복직, 무급인 특별휴가를 제외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위험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 2) 위의 질문이 맞지 않고, 지침에서 기술하고 있는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관련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 3) 일할계산이 맞는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일할계산을 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예시 1)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30일, 연가 3일, 병가 2일, 실제근무일수 25일(공휴일 포함)을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 방법은?

사례예시 2) 지방기계원 및 조리종사원이 방학으로 인하여 근무일수 30일중 실제근무일수 10일을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 방법은?

회신

회신일 : 2012. 8. 28.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될 때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규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실제근무일수로 포함되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질의하신 사례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1]의 조리종사원의 경우 연가 및 병가는 실제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달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험근무수당 정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이경우도 실제 조리실 운영이 이루어져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례2]의 기계원 및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으로 인하여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0일이라면 일할 계산하여 10일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일은 방학으로 인하여 기계실 및 조리실이 운영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하였을 경우임)

☎ 계약직공무원 연봉 수시 조정

질의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2012.1.1자로 연봉정기조정을 하여 보수를 지급하던 중 연도중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연봉(수시)조정(연봉한계액의 110%~120%까지의 조정) 계획에 의하여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12.1.1 연봉정기조정시 연봉은 “2012년 기본연봉액 + 2012년 성과연봉액”으로 책정을 하는데, 연도중 연봉수시조정을 해줄 때에 “2012년 성과연봉액”을 더해서 연봉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3.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 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시조정의 경우 연도 중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정책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채용기간의 연장이 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다시 연봉 산정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의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 휴무일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병급 지급

질의

-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휴무일에 출장과 시간외 명령이 났을 경우 여비와 시간외수당을 병급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8.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승인 및 확인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장여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교육청별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가. 불가피성 : 시간을 다룰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나. 사전초과근무명령 :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다. 시간확인 및 성과확인 : 초과근무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가? 이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출장과 시간외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업무대행수당 지급 요건

질의

- 업무대행수당 관련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업무대행수당』 항목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기관(공공기관)으로 파견 근무간 직원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4.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업무대행수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 제2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기관으로 파견에 따른 업무대행의 경우에는 위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학습 인정 기준

질의

- 현재 국립대학교 야간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한 시간을 상시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하여 신청하려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다 합니다. 이유는 지방조무원의 현업과 연관성이 없다 하여 상시학습 인정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직렬과 연관성이 있어야 학습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1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행부 예규 제17호, 2013.6.17)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야간 등)의 경우 직무와 관련되어야 상시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무원노조 전임

질의

- 공무원노조 전임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교육청 지부 소속 조합원이 1,700여명이라면 노조 전임자수는 1.7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임자 1명을 발령 낸 상태에서 추가로 1명을 전임휴직 발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2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공무원단체 업무관련지침(행안부, 2006.1)에 따르면 전임자의 수는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 기관 소속 총조합원수의 0.1%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합원수 1,700명의 0.1%가 1.7명이라 하여 현재 전임자 1명을 발령 낸 상태에서 추가 1명을 전임휴직 발령 내는 것은 전임자 수 총 2명으로 0.1%를 초과하여 해당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질의

- 현재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평소 요가에 관심이 많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저녁시간에 강사를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일과시간 이후 시간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업무의 의무가 있다고는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8.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리업무란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동 규정 제10조의 각 호에서 규정된 영리성을 띤 행위를 함으로써 동 규정 제10조의 단서규정 즉,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력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금지되는 영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 또한 이렇게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니라면 동 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통해 동 행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비영리업무라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는 업무는 겸직허가 대상업무임)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 허가)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때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의 기간, 허가여부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여부 및 전환 시기

질의

- 연봉제 전환 여부와 전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 1) 2012.1.1일자에 4급 승진(복수직 정원 아님)을 하고 2012.1.1~2012.12.31까지 교육훈련파견이 된 후 2013.1.1자에 4급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
- 2) 2012.7.1일자에 4급 승진(복수직 정원 아님)을 하고 2012.7.1자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후 2013.1.1자 교육훈련 파견이 된 자
- 3) 2012.7.1일자에 4급 승진(복수직 정원 아님)을 하고 2012.7.1자 과장급 직위가 아닌 담당관 직위에 임용된 후 2013.1.1자 교육훈련 파견이 된 자



회신

회신일 : 2013. 2. 2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201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규정 별표11에 의한 일반직·별정직 중 1~4급(상당) 공무원(4·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은 제외) 및 계약직공무원,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공무원이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승진한 당해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 적용, 전보된 다음 연도부터 연봉제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연도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었더라도 당해연도 12.31.현재 무보직, 전보, 휴직,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 또는 전보된 경우, 종전대로 연봉제 적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공무원은 무보직자를 의미).
-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1번을 제외한 2, 3번 해당자는 연봉제 전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휴직중인 자 징계에 따른 인사 처리

질의

- 현재 휴직 중인 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중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고, 동시에 휴직 소멸사유가 발생하여 복직을 하여야 하나, 복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사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8.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우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만,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질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도세 총액의 3.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액과 징수액 간에 실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 제11조 제2항의 도세 총액은 부과액 기준인지 아니면 징수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르면 도세 총액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도세 총액은 부과액이 아니라 징수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제3항에 따라 세입예산과 결산(수입)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시 학교용지부담금 혜택

질의

- 임대주택사업 중 건설임대주택사업은 크게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래 혜택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질의

-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 이하의 원룸형



과 기숙사형 주택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를 받는 것인가요? 만약, 면제를 받는 것이라면, 그 근거(법, 규칙, 공고, 지침 등)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5.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용지의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의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 주택 등 취학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중 30㎡ 이하인 경우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취학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학군 배정

질의

- 아파트 3,500세대(5월 입주예정)를 지으며 해당 아파트 학생 수용을 위해 36학급의 ○○초등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갑자기 교육청이 말을 바꾸어 인근의 타 아파트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서는 학교의 설립, 폐지 또는 이전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학생수용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 대부 허용사업 범위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을 대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서를 제출 받았는바, 사인이 사회인야구 동호회의 리그개최를 위한 야구장으로 폐교대부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야구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 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로서 판단하여 대부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교재산의 소유 및 관리주체인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폐교재산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매수자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여 최초분양자에게 동의서를 요청하는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무반응 혹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거쳐 공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환급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한 지침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환급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부에서 시·도지사에서 안내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업무 처리지침 Q&A 알림(교육복지과-5369, '08.10.27)”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교육복지기획과-5832, '08.11.16)”에 따르면 질의하신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공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질의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여 제안 수용통보 후 1차 관련부서 협의 후 2차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내용) 1차 교육지원청 협의 시 초등학교 36학급 초등학교 대지면적 12,000㎡로 하고 중학교는 인근 학교에서 수용가능하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1차 관련부서 협의 후 구역 및 개발계획이 수정되어(인구는 변동 없음) 2차 관련부서 협의 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이 왔습니다.
- 질의 1) 위처럼 세대수 및 인구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의견을 변경해도 되는지?
- 질의 2) 당 조합에서 제안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 수용통보 시 지침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회신

회신일 : 2013. 6. 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의 급증에 따라 공립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용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개발사업계획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여 학교신설 또는 기존 학교 증축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전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보완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의 확보는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행정 행위이며, 교육감과 시장이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여부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 질의 1) 분양자료 제출 시 첨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질의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환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 학교용지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환급 절차는 국세나 지방세 과오납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질의 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환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 학교용지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4.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의 감액은 시도지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과오납 절차와 환급이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개발구역내 학교용지부담금

질의

- 질의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조합)가 구역내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사례 1 : 재개발 구역면적 약 66,000㎡ 학교용지확보면적 : 5,310㎡ 공동주택 건립세대수 : 1,123세대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세대 : 120세대

회신

회신일 : 2012. 8. 1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 설치 기준과 폐지 기준

질의

- 일반적 또는 재개발, 재건축 부지 안에 설치하는 학교설립기준과 폐지기준에 관련되는 관련 법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폐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관련 법령에 확인되지 않는바 확보한 학교부지 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의 적정면적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설립운영 규정”에서 교사용 대지면적과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학교용지 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 설립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한 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교육감의 의견을 개발사업 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 학교용지의 폐지 역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학교 포함 여부

질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라는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립되는 공립학교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한정하였습니다. 제4

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또한 제6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폐교재산활용 촉진법상 교육용시설 종류

질의

- 폐교재산활용 촉진법상 교육용시설에서 종류에 학생승마체험교실(승마 허가 득함)이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4.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함)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에서는 학습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학교의 정규과정을 포함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용시설의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이상 학생승마체험교실은 교육용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교재산 대부기간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에 의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4.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호에서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주역주민에게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폐교재산의 대부기간은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질의

-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을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인하하였을 경우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또, 인하된 분양가의 증빙서류로 부동산 실거래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1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미분양에 따라 잔여 세대를 할인분양하였다면, 할인분양한 분양자료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할인분양된 자료를 근거로 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즉, 시도지사는 실제 분양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등 근거 서류의 인정여부는 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해석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의1) 조문내용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가 아닌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이유
- 질의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군부담금은 교육경비 사업만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3) 제3조 2항의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의 미부담액의 경비 중 일부만 부담했을 경우에도 2항의 조항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9. 1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는 보조사업의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재량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 2호는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경비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 2호에 의해 “시, 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부라 할지라고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1. 포괄사업(재량)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 2.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 편성 명문화”가 신설되어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질의

- 최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 조례에 의거 각급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경비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으로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 질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 시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회계절차적인 면도 고려하여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⑥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주체는 각급학교장입니다.
- 따라서 교육청으로 교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⑦항은 시도(광역시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로 전출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인 귀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기준일

질의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금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연도에 맞춰 정산을 한다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학교회계 회계연도(매년 3월~다음 해 2월말)에 맞춰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해석

질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 여기에서 말하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는 어디를 말하는지요? 도청이나 시청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교육청을 말하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0. 12.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의 당해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을 말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주체**질의**

- 헌법재판소는 2005.3.31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헌이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공급업자, 수분양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2. 만일 주택공급자가 공시한 분양원가 내역서를 보면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수분양자에게 분양원가에 포함하여 주택분양을 하였고 공공주택 준공승인시 포함된 각종 부담금의 납부내역을 보면 수분양자가 부담한 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공급업자로부터 상기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0. 15.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05.3.31)함에 따라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01.3월~05.3월 사이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납부액을 환급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가 환급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질의

- [질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2009.5.28일자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의 부과 산정기준이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4에서 분양가격 × 1,000분의 8로 개정되었기에 아래의 경우 구법 산정기준과 개정법 산정기준 중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9.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입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401호, 2009.5.28) 시행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다면, 신청행위 자체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에 다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다면, 학교용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최초의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항 2호에 의하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나, 관할 시청 담당자는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명확한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28.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은 개발사업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인근 학구(군)의 초·중·고등학교의 신증설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시 당해 지역 및 인근 학구(군)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학생수용 판단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감과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를 보면~~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질의 1) 여기서 정비사업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의미하는지요?
- 질의 2) 기존 거주자라 하면 세입자를 뜻하는 것인지?
- 질의 3) 세입자를 뜻하는 것이 맞다면 어느 시기까지 거주한 세입자를 뜻하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2. 12. 28.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하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학교 신·증설을 유발시킨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취학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의무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제5조 제1항 제5호의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취학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세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던 정비사업지역 내 기존 세대수만큼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사업 결과 기존 세대수를 초과하여 신규 공급되는 세대수인 순수 증가세대수에 비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용지 확보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질의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학교용지 부담금만 납부하고 30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시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학교용지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초등학교가 주택건설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승인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지요?
- 질의 2)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승인을 득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 것 인지요?
- 질의 3) 사업주체는 법상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은 관 할교육청이나 관할 시청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3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4조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5조에서는 1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용 토지와 공용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면제 여부

질의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지를 관할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한 후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전 첨단시설 도입(스마트스쿨 등)을 위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가 첨단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코자 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2. 15.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용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학교설립 요인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학교설립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원인자에게 차별적이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09.5.28)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교설립 원인을 제공한 정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학교증축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허가 조건에 학교 증축에 소요된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인근학교 증축 비용 부담

질의

- 택지개발로 인한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인근 학교 증축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학교를 증축하는데 드는 경비의 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2. 22.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용지법 제3조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용 토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되, 제2호의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학교를 증축하는데 드는 경비의 부담 주체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면제는 별도 사항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인근학교의 학교증축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 교실증축 기부금 납부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여부

질의

-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조건사항이 인근학교 교실증축이었으나,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교실증축 기부금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학교용지 면제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6.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 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나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시·도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용지법의 목적, 정의, 재원 측면에서 모두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비용을 부담한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한 자”와 대등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등으로 학교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명목으로 받은 학교발전기금이 증축비의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학교 증축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조건에 학교 증축에 소요된 금액(기부금)만큼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학교 대부자의 권리

질의

- 폐지학교 대부자가 운동장에 쓰지 않는 노후 놀이시설의 철거를 주장하여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 추경에 반영하여 놀이시설 철거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그 후 다시 사용하는 숙직실의 보일러가 노후되어 교체해달라고 하셔서 그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계약서를 봐도 기관에서 대부자에게 해줘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회신

회신일 : 2013. 2. 27.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별도로 폐교재산 대부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계약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계약이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당초 계약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자가 폐교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다면, 계약이행 기간 중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육정보 및 통계

나이스 접속

질의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로그인 방식으로 접속하도록 해서 어렵습니다.
 1. 공인인증서를 한번 등록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해 놓았지만 불안합니다.
 2. 접속할 때마다 휴대폰 본인 확인 방식으로 해놓으면 본인 아니면 사용할 수 없지 않나요?
 3. 휴대폰에 있는 공인 인증서 사용하려니 휴대폰에 있는 것을 pc로 보내서 은행 아이디로 접속하라고 합니다. 휴대폰에 있는 공인 인증서 그냥 사용이 안 되나요?
 4. 부모도 접속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표 분실 사고도 있으니 부모님 메일로 성적 보내주면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0.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이용 시 학생정보와 관련된 사항(성적, 건강 등)의 열람은 개인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따라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사항은 로그인 인증 또는 인증 없이 열람이 가능함
- 요청하신 휴대폰 본인 확인 방식은 휴대폰을 통하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도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경우 개인정보가 열람되는 위험에 보호하고자 부득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휴대폰에 등록된 인증서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등록된 인증서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휴대폰(스마트폰)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는 휴대폰(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적 등 학교생활정보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학생의 학교생활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어 철저한 보안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인증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 구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이스 접속 어려움

질의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회원가입하는데 1시간 넘게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1600-2226 전화했더니 안내 멘트를 알아듣기 어렵고 상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익스플로러 10에서 들어가면 컴퓨터가 멈추는 것도 자주 발생합니다. 홈페이지를 좀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5. 6.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회원은 어린이, 학생,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명으로 본인 확인 후에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 입력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상담 전화번호 1600-2226은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나이스가 17개 교육청 단위로 운영이 되므로 지역선택 안내 멘트에 따라 해당 교육청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 사용하시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또한 말씀하신대로 안내 멘트가 현재 기계음으로 되어 있어 듣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학생의 학생정보제공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VMS 봉사활동 실적 NEIS 전산입력에 따른 불편

질의

- 4년 전부터 가족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 <http://www.vms.or.kr>(이하 VMS)을 통하여 실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왜 NEIS에서는 1365 나눔 포털의 데이터만 조화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VMS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 NEIS 전산입력하기에 불편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9.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와 “1365나눔포털”은 2013년 3월부터 연계되어 “1365나눔포털”에 있는 학생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365나눔포털”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관련 포털사이트로 “나이스”뿐만 아니라 “VMS”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이트들에 대한 종합적인 취합을 “1365나눔포털”에서 담당하고, 그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할 필요가 있는 회원은 직접 본인이 나이스로 전송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1365나눔포털” 가입시점 이후부터 VMS와 연동이 된다고 안내를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1365나눔포털” 고객센터에 확인한 바로는 “1365나눔포털”은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VMS의 기존 봉사활동 실적 연계 가능”합니다.
- 따라서 기존 VMS 시스템 사용자는 “1365나눔포털” 가입을 통해 VMS의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1365나눔포털” 고객센터(02-714-1365)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IS에 입력된 개인정보 변경

질의

- NEIS에 입력한 개인 정보 자료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누군가가 변경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인 정보를 제3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대상자에게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4.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에 있는 인사업무는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변경이 된 인사기록 카드의 관리 또한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동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 인사부서에 문의한 결과 임용날짜 등이 잘못 등재 되었을 경우 관련 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정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귀하께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도교육청에 연락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IS 대국민서비스 프로그램

질의

- NEIS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데, windows8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하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가 windows8인데, 아이 정보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더 큰 문제는 언제 windows8이 지원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6.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사용자 편의성과 동시에 학생의 학교생활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어 서비스 이용 시 정보보안 프로그램들(키보드보안, 인증서관리 등)이 함께 구동됩니다.
- 현재 윈도우8 및 IE10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보안 프로그램들을 시험하고 있으며, '13년 하반기 중(11월 예정)에 단계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 문제

질의

- 현재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환하는 등의 조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며, 고유식별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학적부 작성·관리 등 대학 학사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학적 관리 등과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질의

- 사립학교에는 법인이 존재하고 직원을 상대로 1년에 1회 근무평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법인이 직원들의 근무평정평가 점수를 대학에 요청하였는데 근무평정평가 점수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인은 직원의 근무평정점수 확인용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

우 법인이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법 조항에 의거하여 거부하여도 상관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의 근무평정평가 점수도 해당 직원의 성명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된 형태라면 개인정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동법 제15조 제1항 제2,3,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동 조문 제2항 제1~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질의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CPO)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총무처나 사무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개인정보 관련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정보전산부서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각급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의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에서도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기준으로,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처·실·국장 등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보직자’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로 인한 제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고유업무영역내 전산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청구

질의

-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행정실의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면 운영위원들은 자신의 지난회의 때 발언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결재권자(운영위원장)와 운영위원들은 교육청에 최종 보고되어진 전자화일 형태의 회의록이 off line 형태의 회의록(서면결재된 회의록)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교원 또는 직원만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한정을 시킴으로서 학부모운영위원이나 지역운영위원의 전산정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그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그 “학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개념인지 아닌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심의)결과는 교육정보공시서비스(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go.go.kr>)를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말씀해주신 내역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자동발급기] 주민번호 입력 방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질의

- 각 국/공립대학교에 경우무인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추후 운영시에 무인자동증명발급기 운영시에 본인이외 발급에 대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발급기에 대한 본인확인에 대한 범위와 기계장치를 통한 개인정보입력에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 무인 증명서 발급기계의 본인 확인 기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납품되는 장비는 지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학교에 납품되는 장비는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 확인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본인 이외의 자가 증명서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대학교에서 무인 자동 증명발급기로 운영 중인 기기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본인 이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학교내에 설치되는 무인자동 발급기는 본인이 대학에서 보관 중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출력하는 장치에 해당하는 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무인자동 발급기의 운영 그 자체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훼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그 인과성이나 고의 과실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학번 등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보다 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요청

질의

-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한창 창의력과 논리력을 길러야할 시기에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 과다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평가에서 50% 이상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교육청 간 경쟁, 학교 간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급으로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7. [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미진한 학교를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동 평가는 교육과정 목표의 도달정도를 파악하는 준거지향적평가(절대평가)로서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평가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2008년부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계기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높아지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낮아지는 등 학생들의 학력 증진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을 5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정보공시자료 활용

질의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 및 공립대학 리스트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4. [교육부 교육통계과]

-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해 대학의 주요 정보(등록금, 취업률, 교원연구실적 등)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대학알리미 소개 > 공시대상학교 메뉴에서 학교명단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학교목록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현황, 학사운영, 교육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 설립 취지, 현황, 방향성

질의

- 사이버대학의 설립취지, 최초 개교학교(설립 방법), 현재 사이버대학의 현황(학교 수 및 학생수 등), 향후 교과부에서 지향하는 사이버대학의 방향성 등 사이버대학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이러닝과]

-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고등교육법 제2조),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입니다.(고등교육법 제52조)
- 사이버대학의 현황 및 개략적인 자료는 www.cuinfo.net(사이버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부 사이버대학의 방향성 - 새로운 교육요구에 대해 원격교육의 장점을 살린 사이버대학이 설립·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이버대학 공무원전형 추천 절차

질의

- 사이버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전형의 경우 교육부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부 신청이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행부에서 하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생 선발과는 동일한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15. [교육부 이러닝과]

- 사이버대학의 정원 외 위탁학생은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의 공무원훈련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또는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 「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도록 되어있습니다.
-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위 정원 외 위탁학생 외에 안전행정부와 사이버대학간 협약을 통해 산업체위탁교육 학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등록 보육실습

질의

- 시간제등록을 해서 보육실습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대학은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모집인원이 다 차서 지원을 마감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 등록은 입학사정관제로 선착순이 아닌 지원자의 성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인원이 마감됐다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지요? 입학사정관제면 지원자 다 받고 서류 심사해서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1. [교육부 이러닝과]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이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칙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사이버대학교는 일반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사이버대학 졸업 후,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대학원에서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학점은행제 관련제도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회신

회신일 : 2012. 8. 23.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 사이버대학이란 인터넷을 통해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받지 않고 학습하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고등교육법 제2조5호)
- 사이버대학은 2001년 평생교육법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9개 대학이 최초 개교를 해서 2008년까지 17개교가 개교를 하였습니다. 2007년에 고등교육법에 사이버대학이 추가됨에 따라 전환인가를 통해 현재 15개교(서울사이버대 포함)가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전환되었고, 2개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아있습니다.
- 전환 인가된 사이버대학은 일반 정규대학과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이며, 현재 사이버대학은 전환 인가된 15개교 및 신설 4개교를 합쳐 총 19개교가 있으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개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학과 통폐합 관련 학칙 개정

질의

- 대학 학과 통폐합 관련하여 학칙에 근거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의 설문이나 의견개진 정도는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신설된 지 3년밖에 안된 학과를 입시실패를 이유로 통폐합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1.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일반대학의 학과 및 모집정원 결정은 학칙으로 정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은 정부가 승인한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학과의 신설·폐지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학은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거쳐 학칙을 개정·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학과 설·폐에 따른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인터넷 강의 활성화

질의

- 학교교육에 있어서 누구나 사교육을 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EBS 교육방송이 있지만 초등 교과 과정을 아이들이 볼 수 있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터넷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시험공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4.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 교과부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기본 취지는 초·중등학생에게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교과관련 보충학습용 수준별 이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공교육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에 있습니다.
- 현재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에 대한 학생 이용률과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는 각 시도별로 특색 있게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교과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과학습의 심화 및 보충 학습을 하고 사이버 담임선생님의 관리를 받으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경기지역의 교육청에서는 ‘경기다높이’(http://danopy.goedu.kr)라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운영하는 학급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개설된 학급에서 자유로이 학습하는 유형과, 사이버 선생님의 승인을 받고 학습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 이 중 어느 형태를 선택하셔도 학습이 가능하십니다. 앞서 안내드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문의하시면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 활용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ebsi 인터넷 강의 다운로드 불편

질의



- ebsi에서 인터넷 강의 다운로드 확장자를 wmv에서 mp4로 변경하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pmp를 이용 중인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bs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지도 않고 일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mp4파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mp4, wmv모두 제공하던 것을 mp4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8.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 ebsi 강의 서비스의 다운로드 제공방식은 EBS와의 협의를 통해 2012.1.15(토)부터 wmv와 mp4 방식 모두로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부와 EBS에서는 EBSi가 수능 준비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이버 대학원 박사과정 인허가

질의

- 우리나라에 몇 개의 사이버 대학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대학원은 유일하게 저의 학교뿐입니다.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갈 곳은 박사과정인데, 박사과정(인허가無)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전문 인재육성을 위해서 박사과정이 필수요건인데 석사과정 수료 후 어디로 가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1. 24.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에 따라 일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이버대학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위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써, 평생교육실현을 위한 사이버대학의 설립 취지 및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기관 전환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사이버대학의 일반대학원 설치는 이르다고 여겨집니다.
- 향후, 사이버대학의 정책 수립 시 귀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bs로 인한 교재 총판의 어려움

질의

- EBS는 이번에도 모집공고 없이 기존 총판에 다른 지역을 얹어주어 한 곳으로 몰아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모집 공고를 기다렸던 총판들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인 만큼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기존에 하는 사람만 계속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 중 EBS 교재 총판에 대한 사항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확인하였으며, 이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학생들의 교재 구입 편의 및 원활한 교재 공급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교재총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EBS 교재 총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평가, 면접, 현장실사 등의 단계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재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학기 초 등)에 지역 총판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규모의 교재 공급 능력을 지닌 총판의 긴급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총판에서 일정기간 대행 공급토록 함으로써 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 지역 총판 및 신규 총판에 대한 공개모집이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학 및 대학원

● 사립대학 교원임면 문의

질의

-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의 1~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학기에 신규 임용 심사과정을 거쳐 임용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면 대학 측의 요구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대학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재임용 심의 신청이 가능함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이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우교수의 법적 조항과 합법성

질의

- 각 대학에서 대우교수라는 직책을 마련하여 정교수 임금의 1/10로 하고 있습니다.
 1. 대우교수가 9시간 강의하면 전임 1명으로 취급하여 학생 대 교수 비율을 맞추어 대학 평가시 대학에 유리하게 하는 현 제도가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2. 대우교수라는 직책이 우리나라 법이나 교육부 조례, 기타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서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의 학생 교육 및 학문연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관 및 자체규정 등을 통해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확보를 산정에는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의 경우에는 교원 법정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둘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임면 문의

질의

- 사립대학 교원 임면시 대학 측의 요구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을 임면하는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본의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 당하지 않습니다.

사립대학 총장 임용

질의

- 모 대학법인의 정관을 자세히 보니 교원의 경우 채용정보를 1개월 이상 일간신문 등에 공고와 수차례의 심사단계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를 학교의 장(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의 장(총장)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내용뿐입니다.
- 그러면 총장을 임용할 때 교원과 같은 일간지 공고와 심사단계 등은 생략하고 이사회의 의결만 거쳐 이사장이 임용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사립대학 총장의 임용 관련 사항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총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장후보자의 자질, 대학경영 능력, 학교 발전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의 겸직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국립대학교 교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 두 개의 직위와 관련하여 모두 보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개 직위(단과대 학장) 대해 보직수행경비(기성회비)를 지급하고, 다른 1개 직위(대학 부설기관장) 직위에 대해 국고에서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를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 및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국립대 교원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는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수평적임 겸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교원의 종류 및 임면

질의

1. 현행법상 교원의 범주에 비전임교원(명예교수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현행법상 비전임교원이 해당 학교의 법인 이사로의 겸직 가능 여부?
3. 현행법상 비전임교원의 신분을 해소(사직, 사임) 한 이후 교육부에 이사 승인 요청시 이사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원은 총장,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교육부에 이사 취임 승인 신청 시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다른 결격사유 등 하자가 없을 경우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합니다.

교수회 성격

질의

-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제4조에는 학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학평의위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회”의 정확한 정의나 성격이 궁금합니다.
- “교수회”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수협의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교수회의 등 대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성격을 부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9.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교수회에 관련된 것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위원회 및 교수회를 설치할 경우 학칙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학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국립대의 경우에는 학칙 및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학평의위원회 및 교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교원의 인사관리

질의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임강사의 경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21. [교육부 대학정책과]

- 2011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전임강사가 조교수에 포함됨에 따라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교수로 명칭이 바뀐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채용 당시의 기대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질의

- 교육부에서 2012.12.3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를 보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합니까? 해당 기준표 또는 규정 또는 지침 또는 자료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대학정책과]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속병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속병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2.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3.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교육공무원 조교의 야간수업보조 근무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질의

-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 신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거 야간 학부 개설에 따라 방학 및 휴일(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수업이 편성된 매일 주·야간 수업보조를 위해 9시에 출근하여 2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 수업보조 근무에 따른 수당을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대학 총장은 학교운영을 위해 조교를 임용할 경우 학칙 및 자



체규정에 따라 근무조건, 보수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 조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학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다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445호)'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적정하게 집행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무의 성격, 계급, 다른 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과, 조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연구보조비 지급대상이고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봉급을 적용받는다라는 점 등을 볼 때, 조교가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와 근무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여 반드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서도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국가인권위원회 2006. 11. 6, 05진차1028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원 특별채용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의해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그리고 현재 서류, 기초, 전공, 교육능력, 면접의 절차를 학칙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데 특별채용의 경우 절차에 대한 부분도 학칙에 명시하거나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7.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국립대 교원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국립대 교원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9조의3에 따라 추진되어지고 있으나, 특별채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다만,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중 효력 유지 규정'에서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채용 역시 신규채용의 한 방법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육공무원의 휴직, 연구년, 해외연수 파견 기간 중 직무종사 가능 여부

질의

-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라 교육공무원(대학교 교수)이 휴직, 연구년(안식년), 해외연수 파견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성과연봉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 교재집필, 시험출제 등 직무에 종사하려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교육공무원이 고용휴직, 연수휴직 등 휴직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요?
 2. 교육공무원이 해외연수 파견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요?
 3. 교육공무원이 연구년(안식년)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대학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을 필요할 경우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 대학 교원의 안식년 또는 연구년은 대학 학칙 및 자체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바, 안식년 또는 연구년 중인 교원의 복무는 대학의 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징계의결 요구 요건

질의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3항에 의하면,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된 것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징계” 이상을 의결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것의 의미가 죄명 및 처분내용에 상관없이 기소유예 이상이면 무조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대학 내의 문제로 기관장인 총장 앞으로 구약식(벌금) 기소를 한다면 총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소유예 이상이더라도 죄명 및 처분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고’, ‘주의’ 등을 처분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대학정책과]



- 교원의 징계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대학의 총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을 경우,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장이 구약식 기소되었다면 공무원 범죄 수사결과 통보 등 처리결과 및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인의 전공과 다른 대학원의 전공교수로 소속변경 발령

질의

- 전문대학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자체의 전임교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당국이 22년 전에 이미 교육부에 ○○대학교 학부 신학과 소속 교원으로 등록된 본인을 설립기준이나 근거가 전혀 다른 전문대학원 교수로, 그것도 본인이 전에 전공해 본 적도 없는 교수로 소속 및 전공 변경 발령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학교당국 임의로 본인의 기존 소속을 바꾸어 교육부에 소속변경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교원의 소속과 관련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휴직 관련 해석

질의

- 도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에 임용되고자 현재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대학에 휴직을 신청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는 휴직 또는 고용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

의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6호의 '다른 국가기관'이라 함은 포괄적 의미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 3(고용휴직) 제2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특별법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 5. 9.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는 제기하신 민원은 대학 교원이 독립교향악단에 고용될 경우의 휴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에 따라 대학 교원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수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민간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에 고용휴직이 가능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의 다른 국가기관은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 제81조를 준용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이외의 기관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교향악단의 기관 성격을 해당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특별법이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특별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조항 관련

질의

- 국립대 기성회 계약직 교육지원조교로 5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며 사무보조를 하는 대학원생 조교가 아니며, 일반 계약직이나 기성회직과 동일하게 9시 출근 6시 퇴근, 방학 때도 근무시간의 조정은 없으며, 주말 당직도 순번에 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7. [교육부 대학정책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국립대 조교의 임용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2에 따라 대학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교의 근로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대학교 야간건축공학과 및 기타학과 야간대학 개설 요청

질의

- 건축공학과 야간대학 좀 개설 좀 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2005년부터인지 야간대학이 다 없어졌습니다. 편입학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학교가 전국에 야간개설학교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교 좀 다니고 싶은데요.

회신

회신일 : 2013. 6. 5. [교육부 대학정책과]

- 귀하께서는 재직자들의 학습권을 위해 대학교에 건축공학과 야간과정을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대학 정원조정 및 학과 통폐합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학의 정원조정 및 학과 통폐합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제4항에 의거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정원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립대학은 정원조정 및 학과 통폐합시 교육부의 사전 허가 필요)
- 최근 각 대학들이 높은 대학 진학률, 재직자 과정의 신입생 충원을 하락 등을 이유로 야간과정을 폐지하고, 동 입학정원을 주간으로 조정하는 학과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학들이 동 주야간 입학정원 조정과정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한, 대학자율화 정책에 의거 교육부가 대학에 야간과정 개설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가능 여부

질의

- 학교법인의 부속 대학병원내의 근로생활시설에 의약품도매업체 창고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대부분이 단독건물에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학교법인 부속 병원에 의약품창고 설치하는 병원과 도매상의 유착의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 직영도매 오해 가능성이 있고, 도매상 창고 임대료와 도매 직원 파견은 약사법에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성 노무 제공 등이 문제가 발

생활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2. [교육부 대학정책과]

-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포함)은 별도 설치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대학병원은 설치법에 따라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과 의료요원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및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에서는 민원인이 질의한 목적의 의약품도매업체 창고 임대는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립대학 부속병원(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부를 수익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제5조, 제6조, 제28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식당, 매점, 서점 등) 및 교육·연구 활동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기준에 부속병원의 법적기준 마련 요청

질의

- 의과대학 유지를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기준에 부속병원의 법적근거를 마련을 요청합니다. 현재 의과대학은 부속병원이 없어도 위탁병원(인턴수련병원 기준)만 있으면 빗겨 나갈 수 있으며, 현재 위탁병원으로 강의와 실습이 갑자기 옮겨지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준비 없는 교육환경과 강의, 실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사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교육부의 무관심한 정책에 학부모로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부속병원 없는 병원에 처벌을 강화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 없도록 교육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4. [교육부 대학정책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는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규정입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항 삭제는 의학교육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수급, 대학 및 의학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참작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덧붙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대학설립·운



영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간

질의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재직기간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1년 이상의 잔여기간별 명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원 중 정년퇴직예정일이 2014.08.31. 퇴직예정인 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2013.7월 중에 하여 2013.8.31.자로 명예퇴직하려고 하는데 잔여기간이 1년으로, 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에 1년도 포함이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8. [교육부 대학정책과]

-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안정행정부 발간)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본요건 중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정년퇴직일이 2013년 12월 31일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목적

질의

-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불가피했다면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1. 8.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법인화 이전에 서울대는 국가 행정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직·예산·인사 운영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이 적용되어 대학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 따라서 세계 일류 대학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서울대가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법인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0.12월 제정되고, 동법 부칙에서 정관인가, 이사 선임 등 설립준비를 고려하여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11.12.28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대학 교원의 상통직 경력

질의

-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나온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에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의 인정대상 경력 중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 질문합니다. 개인병원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개인병원의 의미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중 개설주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개인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를 개인병원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호봉 재확정 상통직 경력 인정을 상향 조정

질의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교원 상통직 경력 호봉 인정을 상향 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경력이 오래되어 근가로 넘어가신 분도 호봉 재확정이 가능한지요?
 2. 금번 대상에 교원 외에 조교도 포함이 가능한지요?
 3. 상통직 경력은 대학졸업 이후 경력인지, 아니면 석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1. 근속가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에 의거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므로 호봉재확정 사유가 발생하면 재확정 가능합니다.
2.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9호)에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 인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공무원인 대학의 조교



는 향후 예규 개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9호)에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은 - 대학(전문대학) 졸업후의 경력으로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 석박사 학위 취득후 경력을 인정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직전환 인사 관련 및 교육공무원 유급휴직 경력 인정

질의

- 질문1) :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이 된 경우에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까?
- 질문2) : '06.3.9일자 임용된 교수의 임용기간 산정시 채용전 산업체경력(동일분야, 동일업무 담당)에서 급여를 받고 휴직을 한 경력(2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2.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질문1)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보임용 면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규의 일반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정규의 기능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시보임용 기간의 면제 및 기간단축이 가능하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가 단축 또는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2) 대학 교원의 상통여부(동일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육과학기술부예규에 따라 엄격히 하되,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5.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년제 대학교 교수 임용 학력 기준

질의

- 4년제 대학교에 근무할 조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해야 가능하고 4년제 대학교에 근무할 교수는 전문대학만 졸업해도 연구실적과 교육실적만 충족하면 임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12.7.22 이후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 규정 별표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로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7년, 교수는 10년의 연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자격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대학별로 그 요구 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별 채용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공전환에 관한 질의

질의

- 사학법에 규정된 전공전환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전공전환 대상은 학교내 전공학과가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데?
 2. 전공전환시점은 폐과로 결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과원이 0이 된 폐과 시점인지?
 3. 전공전환신청자의 보수를 임의로 60% 지급한다고 자체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9. 2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학생정원과 관련된 사항은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과 신설 및 학과 통폐합 등 관련하여서도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전공전환규정도 학과 설폐 관련하여 대학에서 정한 학칙으로 보이는 바 관련 사항은 대학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학과개설 및 운영

질의

1. 학과의 개설 및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예를 들면 학칙에 명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 자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지 - 학칙에 의한다면 학칙의 변경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2. 1개의 학과에서 ○○과 A, ○○과 B등의 표현으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지(별도의 학생 모집,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3. 대학에서 동일학과에서 코스 또는 전공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9. 2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1. 대학의 학과 개설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이나,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사항인 학칙에 정해져야 합니다.
2. 모집단위 결정은 대학의 자율이며, 최소 모집단위가 학과라고 볼 때, 그 이하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명칭을 정하는 “코스” 나 “전공”의 자율적 운영은 가능하나, 모집단위의 최소단위를 학과로 정한 이상 그 이하의 단위(전공, 코스)로 별도 학생모집은 불가합니다.(2학년 이후 전공으로 선택은 가능)

대학 교원 졸업 학부 연한 문제

질의

- 저는 학문의 다양성과 대학 간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졸업 학부에 따른 임용 쿼터 제한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종신’으로 그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과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대학에서 특정대학 출신의 과대한 임용이 학문적 폐쇄성과 경직성을 가중시켜 학문적 수월성을 저해하므로 개방적 임용풍토를 조성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통해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 아울러, ‘전공분야’ 일치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임용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관련 전문가를 통한 채용심사 등을 거쳐 대학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간호교육인증평가 항목에 비정년전임교수 반영 이의

질의

- 간호교육기관인증에서 전임교수에 포함되는 비정년전임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인증평가기준에 정년이든 비정년이든 상관없이 전임교수의 강의비율로 되어 있어서, 대학에서는 강의전담이나 다를 바 없는 처우조건으로 비정년 전임교수를 늘이고 있습니다.
- 본래 인증평가항목에 전임교수로 한정지은 이유는, 불안정한 신분에서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전임으로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0. 2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학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2012.4.1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 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
- 국립대 기금교수(국립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자라야 함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자(최소 전임강사 수준)이어야 하며,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자이어야 함. -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부설기관 등에 임용 배치된 자는 제외함
-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되,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에 입력(예 :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교원(인문한국사업 : HK, 중점연구소사업 등)). 단 HK 교수의 경우 국·공립대는 'HK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HK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상기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하며,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설치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 기준 *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4호의 1~3항)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과 같은 부설기관에 임용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우, 강의전담 교원 등의 명칭으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전임교원에서 조사하지 않음
- 전임교원 중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은 제외함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 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계약직 전임교원의 경우 대우수준이 전임교원에 준하고, 재임용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토록 대학용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년 전임교원의 경우,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전임교원의 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교육의 질 담보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부와 간호교육평가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수의 정년트랙 전환

질의

-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비정년트랙 교수의 정년전환이 교과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인지, 교육법상 어느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거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의 교원에 임용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방법 등 일부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것은 임용권한이 있는 대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정년트랙, 비정년트랙이라는 정의는 법령이나 규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학교 자체내에서 학칙이나 정관에 정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방법

질의

- 대학선진화-2534(2012.03.16) 공문 알림에서 2013년 4월 1일 정보공시 조사시부터 임용횟수를 제한한 전임교원, 전임교원 상태가 휴직, 파견자, 안식년 중인 자를 교원수에서 제외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전임교원이 징계(정직) 처분을 받아 정직 중인 교원은 전임교원수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 및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시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수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평생교육원 시간강사 경력)

질의

-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 평생교육원 시간강사로서 교육생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취득하도록 근무하였다면 대학의 시간강사와 똑같이 호봉 확정 경력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지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를 주는 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강사의 경력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원의 시간강사 경력은 호봉 확정시 인정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호교육인증평가 시 전임교원 기준

질의



○ 간호교육인증평가시 정년인지, 비정년인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전임여부에만 관심을 둔다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한 인증평가의 목적이 자칫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정년인지 비정년인지는 확인하지 않는지?
2. 비정년이라면 어떤 비치 자료로 확인하게 되는지?
3. 사전에 전임교원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공지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임교원의 범위는 대학정보공시 지침(6-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은 전임교원의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교육평가원은 계약직 전임교원의 경우 “대우수준이 전임교원에 준하고, 재임용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간호교육평가원은 비정년 전임교원의 경우 교수업적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 교육 및 지도에서 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책무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수 등 대우수준이 전임교원에 미달하거나, 재임용 심사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임교원에 대한 정의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자료집에 명시되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설명회 및 지방순회 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교육의 질 관리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부와 간호교육평가원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원확보를 포함 전임교원 기준

질의

- 간호와 4년제 지정 신청시 전임교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년이든 비정년이든 전임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대학을 비롯하여 일부 대학들이 정년 대신 비정년 전임교원을 채용하여 전임교원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정년 상관없이 전임이면 되는 것으로 전임비율을 평가할 경우 과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2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대학정보공시지침 상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교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 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 수당 등을 지급 받는자 *전임교원 중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은 제외하며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자 역시 제외함.

● 대학교 교직원의 범위

질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내용 중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교원 또는 직원은 어디까지 해당 되는지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 시간강사는 교원 또는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교원, 직원 및 조교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강사는 교원이나 직원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경력 인정

질의

-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몇 년 동안 하였습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준공무원)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2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란 교원 및 조교를 말하며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강사는 공무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학과 개편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

질의

- 학과 개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가 임상병리사 양성을 포기하고 다른 학과로 개편시 입학정원은 변동이 없는지요? 예를 들면 임상병리학과와 입학정원이 40명인데, 임상병리기사를 포기하고 다른 학과로 개편시 새로 만들어지는 학과의 입학정원은 40명으로 유지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1. 2.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교육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일부 분야*에 한하여 우리부가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공립재학(자치단체 지자체 협의), 수도권 소재 대학, 보건·의료분야(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정원 배정), 교원양성 분야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임상병리사 양성학과를 폐지하고 그 학생정원으로 우리부가 정하는 분야가 아닌 타 학과를 증원하는 경우 그 정원은 교육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임상병리학과 40명 감축 → 행정학과 40명 증원(전체 편제정원 기준 전년도 이상 교원확보율 유지시 조정 가능) 한편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는 그 인원 증원과 더불어 감축도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과 대학 공학인증

질의

- 공학인증을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었는데 2학기 전에 취업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공학인증은 학교를 다녀야 하고 다니지 않을 경우 인증뿐만 아니라 졸업 자체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해도 공학 인증 때문에 인증 탈락뿐만 아니라, 졸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1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공학인증은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음을 보증

하는 제도로써 공학인증과 졸업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 공학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학년별로 정한 의무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학인증은 졸업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학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졸업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조기취업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공학인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학인증 포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학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한 학생들도 이로 인해 졸업을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공학인증 탈락으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시수 및 졸업이수 학점 미충족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과목의 이수 및 성적의 관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각 대학의 학칙은 수업의 4분의 3 또는 3분의 2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며, 향후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기 부여된 학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교원 해석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수 충족 기준에 대하여 교원은 고등교육법의 14조 2항의 교원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14조 2에 따르면,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학에서 “대우교수”라는 명칭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여 주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이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책이 있음)에는 교수 혹은 강사에 속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우교수가 대학설립 운영규정상 교원으로 분류되어 교원확보 충족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대우교수는 해당대학에서 자격기준, 임용조건 등을 학칙이나 정관에 정하여 임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원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에 겸임, 초빙교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정원 조정

질의

- '2014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과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계획서 내용 중 '야간 정원의 주간 정원 전환'에 대해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학생정원 조정계획 1쪽에 보면, 주야간 전환기준 미충족시 행정제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시행령 71조의2의 행정처분 세부기준표에는 주야간 전환 기준 미충족에 대한 제재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근거인지요?
- 2. 정원조정계획은 편제 미완성 대학이라도 교사확보율만 충족하면 야간 정원의 주간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2학년도에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아직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여건을 충족해 야간 정원을 주간으로 전환할 경우, 설립 당시 100%였던 교지확보율이 그 이하로 저하된다면 대학설립 4대 지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일반기준 바.에 따르면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을 따르며,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 총장 임용

질의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총장임용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 임용할 때 신문과 같은 일간지 등에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지요?
- 2. 임용심사는 전임교수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총장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요?
- 3. 전임 총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하여 후임 총장을 임용할 경우 전임 총장의 해임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 후임 총장을 임용하기까지(임용공고 후 서류접수기간, 서류심사 및 면접기간 등)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2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대학 총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총장 임용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학칙 관련 교육부 권한**질의**

- 전국의 사립 및 공립 대학교는 자체 학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각 대학교들의 학칙에 대해 변경 및 삭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 권한의 정도(권고 등)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법, 정책을 어디서 구해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전공 설치, 학생정원, 교과목의 이수단위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상의 세부내용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제60조(시정 또는 명령)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폐쇄 관련 질문**질의**

- 학교가 감사지적 사항을 바로잡지 못하고 폐교당하면 재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태까지 이수한 학점이나 성적기록은 어떻게 되면 인근대학 유사학과로 편입된다고 들었는데



데,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정확히 어떤 학교로 가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교육부의 대학 폐쇄 명령에 따라 폐교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적생(재학생+휴학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이 진행되며, 이때 폐교의 인근대학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이 됩니다.
- ※ 인근대학(동일 도내)특별편입생 수요조사 → 폐교 재적생에 특별편입학 여부 및 희망대학 수요조사 → 인근대학 및 재적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편입학 추진 이때 편입생에 대한 학적부 등 관련서류는 편입예정대학으로 이송되며, 제적생 및 졸업생 등의 학적부 관련서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송되어 향후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www.u-haksa.or.kr



학점 인정

질의

- 필리핀 대학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은 하지 않은 상태로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학교를 한국으로 다니고 싶어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리핀 학교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편입 학원에 물어보니 학원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보았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우리나라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위한 지원자격은 ①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규정
- ②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필리핀 대학에서 몇 년을 수학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을 필리핀에서 이수하였는지, 국내에서 이수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초·중등의 경우 외국에서 10년 이하의 학제를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음 → 10년 학제 초중등교육과정 + 대학 2년 과정을 이수할 경우 고졸 학력으로 인정함

● 편입학 모집 규모 축소

질의

- 편입 문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매년 줄어든다고 예상은 하지만 갑자기 학사 같은 경우는 10퍼센트에서 정원내 2%로 줄어들었습니다. 편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간 겁니다. 일 년 동안 공부해서 가고 상위권 대학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전공시험도 따로 봅니다. 그리고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적표도 보죠. 거기엔 출석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시험만 보고 합격시키지도 않고 서류전형도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2012. 4월 지역대학 발전 방안,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편입학 모집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민원인의 의견처럼 1990년대 초반의 경우는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았다고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통계청 등의 자료(장래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학령인구 추이: 붙임 지역대학 발전방안(시안)[참고자료] 1쪽 참조 따라서 1996년 확대(2→5%)된 학사편입학 모집규모를 확대 이전규모로 축소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 학년 입학정원의 5→2%, 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10→4% 이내로 조정. 두 번째로 “더 나은 공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입을 하거나 자신의 전공이 안 맞아 편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민원인께서 느끼시기에 많이 부족하였다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 따라 국가(교육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하였으나, 모든 학습자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따라 학교 등의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입학정원 증원)하는 행위가 제한되어있어 국토부에서는 법률로 수도권 내 학생정원을 제한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학의 특성화 노력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의 성적처리 권한 소재

질의

- 전임교수가 담당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수강생들의 최종 성적처리를 앞두고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재임용 취소 인사발령을 받았고, 그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주기 위한 성적 처리 작업을 하기 이전에 교수 신분이 박탈되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3.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민원인께서는 성적처리 이전에 담당교수의 신분변동이 있을 때 성적처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6항에서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임용 취소 통지와 동시에 교수 신분이 박탈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원 임용 관련업무 소관부서 : 교육부 대학정책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성적처리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해당대학의 학칙에 따라 처리하실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입생 학생회비 납부

질의

- 저의 둘째 딸이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쳐 약 400만원(학생자율경비 14,000원 포함)정도 납부하고 입학에 맞춰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과 학생회비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4년 치 352,000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입니다.
- 학생회를 운영하자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치를 한꺼번에 내

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부담이 갑니다. 매년 납부 받아서 그해에 집행하면 학부모 부담도 적고 결산도 더 쉬울 거 같은데 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3.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처럼 문제화 되고 있는 대학의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비 징수 등에 대해 자체 조사하도록 전체 고등교육 기관으로 요청하며, 부적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칙, 자체규정 등으로 마련하여 학생회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 2013.3.11.자 공문시행

편입학 규모 축소

질의

- 수도권 대학의 편입 인원을 축소한다고 하네요. 편입을 축소한다고 해서 학벌보다 실력 위주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차피 학교도 하나의 실력이고 누구에겐 새로운 꿈을 펼칠 기회일 수 있는데 축소한다니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6.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기회균등)는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에 따라 수도권 지역내에 학교의 신설·증설(용도변경 포함, 증설은 입학정원을 말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의 공생 발전 여건 마련을 위해지난 해 4월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민원인이 느끼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집중투자 하고, 전문대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위 및 성적증명서 인증

질의



- 대학교 졸업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교육부에서 인증해주실 수 있는지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학원 입학에 위한 서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 국내 교육부가 대학교 졸업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인증해야 된다고 해서요. 교육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에 따라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성적처리, 졸업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교육부)가 대학의 학위 및 성적증명에 인정/불인정 등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께서 졸업한 대학이 위 인정기관에서 인증한 대학인지를 해당 대학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대 6년제 과정 도입 목적

질의

1. 약대 6년제 도입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2. 약대 6년제는 꼭 도입되어야 하나요? 없다면 현실적인 보완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30.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3일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년제에서 6년제로 확대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보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약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기초·소양 교육 2년, 전공교육은 4년으로 수업연한을 확대한 것입니다.

부당한 교수업적평가규정

질의

- 교무처에서 “2013학년도 교수업적평가 평가의 예외 대상자 평가안내”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내용은 본인이 2012년 7월 7일부로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2012년 1학기때(3월 1일~8월 31일)이루어진 산학협력 실적은 2012년 산학협력 실적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규정 어디를 보아도 1학기에 파견기간이었으니 그때의 산학협력실적은 해당 학년도에 인정이 안 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고, 더욱이 1개 학기 업적이 있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한된 유권해석을 교무처 나름대로 내리고, 결국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있어서 큰 장해요인을 만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임용사항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원업적평가 규정 또한 임용사항 중 하나입니다.
- 구체적으로 대학의 장은 교원의 임용에 대해 조건을 정할 수 있는데(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조건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후 적용하게 됩니다.
- 교육부에서는 부적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 사안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며, 대학의 장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해 대학에서는 금주 금요일에 재심위원회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알려진 바, 이 위원회를 통해 개정의견을 충분히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정규학기 최소 수업일수 문의

질의

- 대학 정규학기 최소 수업운영 일수 및 특강형태의 수업 학점인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3.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점 당 이 수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으로 살펴볼 때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학생들이 등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학사 일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 간 집중이수는 특정교과에 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설해야 하며, 교육관련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학점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호봉제 공무원의 성과급제 공무원 전환

질의

1. 호봉제 공무원을 성과급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명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성과급제 연봉제는 많은 대상자가 기본승급(C등급)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물가인상분과 승급분의 인상은 기본적인 급여의 기본입니다. 기본승급을 하지 않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과연봉적용을 원한다면 기성회비에서 받는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일정액은 월급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로 변경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14.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1. 국립대학 교원은 2010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획일적인 보수체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업적과 보수를 연계한 차등적 보상체계 도입을 통한 동기 부여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적 연봉제에서는 기본연봉에 포함된 정책조정액이 있습니다. 정책조정액에는 호봉승급분의 일부와 해당연도 처우개선분(물가상승률 고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봉 상승액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 연구보조비는 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 관계법령 등에 따른 수당이 아니므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과세소득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나, 성과급 연구보조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국립대학 교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제33조 별표31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 대상이며, 동 규정 부칙 제8조에 적용 연도가 명시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5. 기본연봉에 호봉승급분 일부, 처우개선편(물가상승률 고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속가봉 경력의 신입교원 초임호봉 확정

질의

- 『공무원보수규정』 및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해 볼 때, 연봉제 신입교원 초임호봉확정 시 근속가봉 경력의 근가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33호봉까지만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4.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입교원부터 근가호봉이 폐지되어 초임호봉 확정시에 근가호봉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호봉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대학 졸업 학력 인정

질의

1. 이러한 형태로 학점을 이수하여 중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경우 학위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 받아, 출입국 내역과 학교 재학, 부모의 근무기간 등을 비교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와 비교할 때 어떠한 결과를 주어야 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학위인정이 가능하다면 국내대학의 편입학 지원자격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민원인께서는 중국 대학에 편입한 학생이 학기당 10~20여일 중국에 머물러 수업을 받고, 부족한 시간인 중국 교수가 국내 모처에서 파견되어 수업을 진행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입학 시 학점인정 여부는 각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사안입니다.
- 다만, 학기당 10~20여일 중국에 머물러 집중수업을 받고 부족한 경우 국내 모처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학점을 이수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대학의 경우, 특구 또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면 분교설치가 불가하고,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한 경우 불법학습장에 해당됩니다.

조기졸업관련 학칙의 해석

질의

-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학과에 승인을 받아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12.6.13)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졸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후의 개인 일정을 준비하던 중 학사지원과로 부터 학칙에 따라 편입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아니란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12.7.24) 되었습니다.
- 학교가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단지 이수 학기가 모자란다고 졸업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란 것과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민원인께서는 재학 중인 대학의 학칙 제36조의 단서조항이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7개 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편입대학에서 7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편입생은 조기졸업이 불가하다는 것이므로 전적학교 교과과정 이수를 인정하여 편입생을 선발하였음에도 전적학교 4학기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편입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대학은 학칙으로 대학의 조기졸업 요건을 포함한 졸업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학생에게 조기졸업 및 졸업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재학 중인 대학은 조기졸업 요건을 학칙에 정하면서 '7개 학기'를 편입생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어 편입생은 조기졸업이 전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명백하게 편입생의 조기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편입생의 경우 7개 학기를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4학과 편입대학에서 이수한 3학기의 합으로 유추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입생에게만 조기졸업은 인정하는 대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결정사항이므로 편입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편입대학에서는 전적 대학의 취득 학점만 인정할 뿐 평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학마다 학점부여 방식(상대평가를 하는 대학과 절대평가를 하는 대학)이 서로 다르므로 편입대학에서는 기존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의 구별

질의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 운영을 위한 교비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 회계에 해당하는 교비와 납부금을 포함하는 교비회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구분하는 규정이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요. 셋째, 일반적으로 “학교법인 ○○대학교”의 회계라고 하면 당해 학교법인의 회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회계의 구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일명 “학교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일명 “법인회계”)로 구분됩니다.
- 또한,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하고,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성됩니다. - 예를 들어, 학교회계는 ○○대학교 교비회계, ○○대학교부속병원회계를 말하고, 법인회계는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유업 등)입니다.

사립대학 기능직 직원 대우 수준

질의

- 제가 근무하는 사립 대학교의 모든 규정에는 직원의 모든 보수 규정과 근무 규정은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정년은 공무원과 전혀 다른 57세에 퇴직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공무원의 규정에 준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가장 큰 정년에 대해서는 전혀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 아울러 같은 교직원 중에서도 일반직은 5~3급까지 승진할 기회가 있지만 기능직은 6등급이 끝입니다. 등급에는 별다른 미련이 없지만 5급 이상은 60세에 퇴직을 합니다. 5급 이상의 직원과 그 이하의 직원은 이렇게 차별화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는 2월과 8월에 맞이하게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정년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께서 제기하신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 학원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법인 개방 이사 선임 절차

질의

-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와 관련하여 3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이사회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개방이사는 꼭 선임해야 하는가와 선임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3.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개방이사 정수만큼의 이사 정수는 일반이사가 선임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회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이는 학교법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glaw.scourt.go.kr>)를 안내해 드리니, 동 사이트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법인 교육용 재산의 사용

질의

-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지 않고도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임대 등 수익용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벌칙이 따

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9.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부를 수익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제5조, 제6조, 제28조 등) 등 관계법령과 교육용 기본재산 유형(교지, 교사, 체육장, 연구시설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식당, 매점, 서점 등) 및 교육·연구 활동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정관 변경

질의

- 질문 1.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관 변경이 가능한가?
- 질문 2. 임기가 끝난 이사회가 긴급사무처리권에 의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정관 변경이 가능한가?
- 질문 3. 정관을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보고해야 하는 바, 이사회 의결 순간부터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질문 4. 이사회 의결로 변경된 정관에 대해서 교육부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교육부의 시정 및 변경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가?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질문 1, 2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질문 3. 변경된 정관의 시행일은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4.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PF)

질의

- 2012년도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중간에 박사과정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재학생전



형으로 석박사통합과정에 신규지원 후, 서류전형, 면접전형에 각각 합격하여 2013학번으로 현재 박사과정을 수학과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처음으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서 박사 코스를 시작하였고, 연구실도 올해 3월 박사 방으로 옮기고 학생증도 신입생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2013학번으로 신규 발급 받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한국연구재단에서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이하 GPF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과정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GPF 사업의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이 자의적인 해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상 석박사통합과정은 제도 도입의 취지상 학사취득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바로 입학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석사과정 입학 후 통합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운영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며, 석박사통합과정 도입 취지에 따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1년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한 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였다가, 일부 대학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2011년에만 한시적으로 전환생의 지원을 인정하되, 학교에서 학칙 등을 개정하여 석박사통합과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 지원대상자를 정상적인 석박사통합과정 중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등록

질의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 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재단 이사회 측에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10일이 지나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분명히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학교법인도 학교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을 게재하고 있으나, 참석이사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회의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동 법인에 이사회 회의록을 기한 내에 공개하도록 지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학협력단 회계

질의

-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추진시 사립학교법 제13조의 세입세출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시보조금과 협력단 대응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력단은 대응비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협력단 회계로 전출할 수 없어 대학 교비 예산과 교비 통장을 이용해 운영 지출할 계획입니다.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외에는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비는 법률에 의해 다른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데, 산학협력단의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예산으로 편성 지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7. 10.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는 각각 구분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산학협력단 사업은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음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권

질의

-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인에 이사전원을 임시이사로 파견한 후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정식이사가 파견되는 과정에서 1~2명 정도의 임시이사를 포함하여 정식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정상화 이후 최초의 이사장 선출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중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이사가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위 경우 이사장 선출시 임시이사가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3. 감사선출시 임시이사가 감사선출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7. 11.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1. 정관상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이 사도 본인도 동 선출에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2006.6.15 2004다10909 대법원 판례)
2. 이는 새롭게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임 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행위인바 임시이사도 동 안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교 토지 기부채납 절차

질의

○ 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시는 대학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1년 ○○대학교 캠퍼스 이 전과 개교가 완료 되었습니다
2. 우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토지의 무상귀속)”를 통해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나, 대학 측에서는 학교부지의 축소, 입학정원의 확보, 각종 대학평가, 정보 공시제 등 주요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지방도로 설치를 위한 교지의 기부채납 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대학 재산관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시는 동지역의 도로확장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대학교 재산관리지침이 우선하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2. 7. 2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교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증여 등은 「사립대학교 재산관리지침」 이 아닌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우리 부 허가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교지”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됨
- 교지의 무상증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교육용 기본재산의 증여는 「사립학교법」 제 29조제6항에 따라 동 재산 손실에 대한 교비회계 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본재산(부동산)의 증여는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 심의, 의결 및 동법 제28조 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신고수리) 절차를 거침

● 대학교 부지에 학교의 부대시설로 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

질의

- 현재 운영 중인 대학교 부지 100만㎡ 중 약 60만㎡의 부지가 완만한 임야인 상태로 보전되어 있습니다. 골프학과 신설에 따른 약 60만㎡의 부지에 대학교의 변두리 부지 약 20만㎡를 더 추가하여 골프장(9홀 규모)을 대학교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학교부지에 추가부지를 편입하여 학교의 부대시설로 골프장(9홀 규모)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의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교지 내에 설치되는 건축물인 운동시설(골프장)은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명시된 것을 따라야 함
- 또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운동시설(골프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우리부의 허가사항임.

● 외상매출채권 발행시 관할청 허가 여부

질의

- B2B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구매기업이 되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28조에 근거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은 판매기업에 대출을 하여 주고, 향후 구매기업이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은행은 해당액을 인출하여 대출상환에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은 구매기업(학교법인)을 대출심사대상으로 심사하여 대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저희는 은행 측으로서 학교법인에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 없으니 그냥 대출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 은행 입장에서는 구매기업인 학교법인의 신용 등을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향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대출을 상환 받게 되므로 학교법인이 의무부담행위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5.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각종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른 약정 사항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학교법인이 기채(대출)하여 이자를 부담하는 등 의무부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우리 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설립계획서 제출시 대학의 교지 소유권 확보 여부

질의

- 2007년 6월 3자(경기도, 평택시, ○○○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대를 포함한 주거시설과 산업단지시설을 146만평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 3. 15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본 사업부지에 대학설립 인가신청서 제출하기 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시 교지 확보계획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 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서의 토지이용계획 및 조감도에 ○○○대학교 위치와 부지면적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시 반드시 대학(대학설립주체)의 교지소유가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향후 교지 확보계획만 있어도 가능한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2. 8. 2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시 교지 소유권 확보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검토 시 교지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 할 경우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 가능 재원을 제시하거나, 타인이 소유 토지를 학교법인에 출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등)
-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조감도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교지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제출 시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의과대학과 공동 국내교육법인 설립

질의

- 우리 대학에는 의대가 없어 해외 의과대학과 국내에 공동으로 해외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premed 성격의 의학기초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30.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해외대학과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별도의 학교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질의**

- 사립학교법 제14조4항 규정상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사회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이사추천에 부적합 자라고 이 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추천 요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위원회의 활동기간 안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
 3. 기타 추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회신

회신일 : 2012. 9. 5.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회의 의결로 대학평의위원회(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법인의 경우 당해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재추천을 요청할 수 없음.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3. 기타 추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조항이 알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 만으로는 답변을 할 수 없음.

사립대학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질의**

- 수도권에 위치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학교 운영법인의 이



사회 회의록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스캔되어 올라오는데 일부를 보이지 않게 올리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급여나 평가 같은 부분인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6.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비회계로 지어진 건물(어린이집) 운영

질의

1. 교비회계로 지어진 건물을 현재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해당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학교(총장)가 운영하며 교비회계에서 대체경비 사업으로 운영함. 수익 등 없음. 교육 관련 학과 실습 및 사회봉사 실습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됨.
2. 또한 이 경우 교비로 지어진 교육용 건물이면 꼭 교육용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나요? 교육용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면 그 적용범위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육용으로 구체적인 활용 가능여부 검토 및 대학구성원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어린이집 운영 범위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건축공사 계약 방법

질의

- 질문1) 실내건축의 내부 인테리어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인테리어업체로 일괄 발주하여 실내건축에서 각 부분별로 하도급 주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기공사, 실내인테리어, 내장, 상하수도 등)
- 질문2) 신축공사시 민간에서는 건축면허만 가지고 전문공사(전기, 통신, 설비 등) 하도급을 주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사립대학에서는 처음부터 분리발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0. 15.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 관련 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종합공사의 경우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영업범위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상 “법정부담경비” 의미

질의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의 “법정부담경비”의 의미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서의 “법정부담경비”의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10. 26.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익의 범위에 명시된 법정부담경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와는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음.

학교법인 설립 임원 정관 기록 범위

질의

- 사립학교법 관련 정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에는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반드시

학교법인 설립당초의 임원만 정관에 정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설립 이후에 취임한 임원이지만 학교발전에 공이 많은 임원이 있을 경우 정관에 기록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1.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 사항 이외에도 학교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재 사항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는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법인의 의료기 리스 차입시 관할청 허가

질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조의 3(신용공여의 범위)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시설대여업을 금융, 신용공여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대여리스를 학교법인에서 진행할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2.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각종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른 약정 사항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학교법인이 기채(대출)하여 이자를 부담하는 등 의무부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우리 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법인의 임원(이사) 자격기준

질의

- 법인 임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교육경력이사>직에 시간강사 경력도 포함이 되는지요?
-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경력도 고등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의 이사로 취임이 가능한지요?



- 사임 및 퇴임이사에 대해서 등기 해제시 개인인감을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 문제는 퇴임이사가 여러 사정으로 개인 인감을 제출해 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법인 이사님들이 무보수 봉사직이기에 퇴임 후 서류 제출을 기피할 확률이 높는데 이를 중앙 정부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의 ‘교육경험’으로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됩니다. 아울러, 대학교원으로서의 교육경험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뿐만 아니라 제17조의 교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동법 제20조의 교원으로 재직 한 경력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으로 인정됩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상 “법정부담경비” 범위

질의

- (질문1)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법정부담경비”의 의미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익의 범위에 명시된 법정부담경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와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면, 그것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질문2) 동일하지 않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의 “법정부담경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3)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와 달리 대학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교직원의 사학연금부담금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4)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학연금 등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학연금 등의 법정부담금은 80%이상만 충당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의 ‘법정부담경비’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당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관리하며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직원의 사학연금부담금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의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연금 등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부속병원 차입금 반환시 회계 처리

질의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12. 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속병원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차입금의 원리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였을 경우 차입금의 원리금 등 전액을 부속병원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직접 반환하여야 합니다.

● 부속병원 설치 지역 제한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교사시설구분에 의학계열의 부속시설인 부속병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교는 의과대학입니다. 타 지역에 분교(캠퍼스)와 부속병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분교에는 의학계열 학과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분교에 부속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본교에 의학계열 학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학의 교지 어느 곳이나 부속병원 설치가 가능한지, 의학계열 학과가 있는 교지에 부속병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10.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부속병원은 의학계열의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당해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교사)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질의

-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는 ‘각 구성단위 대표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 평의원은 교수평의회에서 주관해서 선출하고, 학생 평의원은 학생회 주관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직원 평의원은 직장발전협의회(노사협의회) 주관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직장발전협의회는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대학평의위원회는 각 구성단위 대표자로 구성되므로, 직원 평의원 선출은 직장발전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대표들을 제외하고요. 이 판단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 대표를 포함한 직장발전협의회에서 직원 평의원 선출을 주관해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10.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귀하가 속해 있는 학교법인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대학 분식회계 처벌 규정

질의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규정처럼 사립대학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12. 18.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대학의 분식회계에 대한 벌칙 조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교육관련 법령에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교비회계의 타 회계 진출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사립학교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용 토지의 수익용 재전환 후 기부채납 가능 여부

질의

- 관할청 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면적만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부채납 면적을 정확히 측량 후, 해당 면적만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31.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교육용 기본재산의 증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절차와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취득 재원에 관계없이 동 재산의 손실에 대한 교비회계 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12.8.24.) 국회 계류 중임

●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결의

질의

-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로 식사를 할 경우 금액(일반 기업은 50만 원 이상 기재)에 상관없이 식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재하여 지출결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민원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4.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법인세법」 제25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은 회계 처리 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 시에는 별도 기준금액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은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따른 교원인건비 등 교비회계 처리

질의

- 교수 재임용절차이행 등에 관한 소송에서 본교가 일부 패소한 교원인건비 지급 및 소송비용에 대한 교비회계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1. 교원인건비 교비회계 지급처리 - 교원 재임용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원인건비 지급판결 결과에 따라 교비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이에 대학이 교비회계로 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였음)
- 2. 변호사비용의 교비회계 지급처리 - 이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 하였습니다. - 이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4.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므로 교원 보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이므로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

질의

- 질문 1) 학칙의 범위가 좁은 의미로 대학학칙, 대학원학칙 등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광범위한 의미로 대학 내 모든 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만약 광범위한 해석에 따라 모든 제 규정을 포함한다면 대학 내 학사내규나 일반행정, 복무, 관리, 위원회규정 등 수시로 발생하는 규칙들을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3) 상기 관련조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평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을 한다고 해도 자문과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민원인께서는 학칙의 위임에 따른 대학 내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심의 사항을 학칙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임에 따른 대학 내 규정과 시행세칙은 평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의 학칙 기재사항을 대학 내 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 됩니다. 특히, 위 법령에 위반하여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대학 내 규정과 시행세칙에 정하여 대학 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평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심의는 어떠한 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책,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단순 참고의 자문과 차이가 있고,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대학평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이 교육관계 법령 등에 적법하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중화 현상**질의**

-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중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법률저널 한 기사 통계를 보면, 법관의 80%의 출신학교가 서울지역의 특정 3개대학이며, 겨우 2%만이 지방대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서 발표한 전공분야 법을 강화 및 보완하고,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실무에 배치하는 정책을 한다면, 일부 대학원의 편중화를 완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고비용, 학교측 입장에서는 적자의 애물단지인 로스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비용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로스쿨 제도는 수년에 걸친 각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 현재 5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12년 첫 졸업생이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비취볼 때 '12년 취업생들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금융권,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였다는 점은 로스쿨 제도의 공



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난 반면,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검사 및 법관의 일부 학교 편중화, 입학 시 쿼터제를 적용한 법학전공자 제한, 고비용에 따른 학교측 부담 등은 향후 우리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 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이나, 민원인께서 주신 고견 및 현장 의견 등을 적극 참고하여 로스쿨 제도 정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원 학위 취득 방법

질의

1. 대학원의 경우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수료가 되는 건가요?
2. 대학원 학위취득기준은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논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험통과하고 논문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학교마다 기준이 다른데 교육부에서 대학원 수료와 학위취득에 관해 정한 지침 중에 무엇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2.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반영 요소

질의

- 대부분의 의전원이 표면적으로는 영역별 반영률을 공개하나 이는 형식적이고 실반영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영어라면 토익 20% 이렇게는 나와도 점수별 기본 점수 및 구간별 점수는 전혀 소개되지 않아 지원에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학교별 실반영률만이라도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강부터는 모든 면을 명확하게 선수과목 성적 실반영 방법, 실반영 구간 등을 공시하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6.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바(제34조), 추구하는 인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입시전형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학에 따라 의치의학입문검사의 반영비율, 반영형태(점수화, 최소 자격기준) 등 반영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 인정 여부

질의

1.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경우 모든 이수요건은 충족하고 학위를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 9월에 졸업에 필요한 모든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으나, 학위는 2013. 6월에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2. 그리고 현 시점에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의 Degree Verify Certificate를 받아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 Degree Title: No Degree - Enrollment Only - Date of Attendance : 09/26/2005 to 09/25/20125. 이런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3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입학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은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독학사, 사내대학 등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뜻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6.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학위 취득 이외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취득한 대학학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2013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입학자격 여부는 입학 당시 해당학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졸업자 동등 자격 인정 기준

질의

-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후기 공학대학원 모집과정 중 석사학위과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접수모집 요강을 확인한 결과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 해당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6.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따른 대학 학위 인정 이외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취득한 대학 학위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해당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지원 자격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입니다. 현재 각 대학별 자율형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산재자, 탈북민 등 각각의 기준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4급 이상의 사회적배려 대상에 해당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유공자를 추모하면서도 막상 그러한 법률의 적용과 수행에 기반하여야 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가유공자를 사회적배려대상자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로스쿨의 특별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각 로스쿨의 자율적 사항이며, 이를 기초로 특별전형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제안해주신 국가유공자의 보호 및 인식 제고 등에 대해서는 타 사회적 배려 계층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입학기준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대학원 진학

질의

- 기초수급자는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없지요? 대학원은 조건부가 제외를 해주지 않지요? 입학전형에 기초수급자를 명시하고도 로스쿨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뽑아준다는 명목 하에 로스쿨 외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입학정원의 약 5~10%를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입학정원 2,000명 중 최소 100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민원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들의 로스쿨 진학으로 조건부가 제외 대상은 되지 않고 있으나, 장학금 혜택 및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09~11년 로스쿨 전액장학금 지급률 43%(최고 80%, 최저 25%), 11년 기준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4.9% 또한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도입 당시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었던 부분이며, 현재 논의 중인 예비시험 도입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특별전형을 통해 얼마든지 법조인 진출이 가능하며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이중 학적**질의**

- 대학원 이중 학적 질문입니다. 대학원(일반대학원)·대학원(특수대학원) 이중학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반대학교(대학)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학교 홈페이지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4.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이중학적에 대하여 현행 고등교육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대학이 학칙이나 관련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등록금**질의**

-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돈을 받으면서 연수원을 다녔었는데, 현 로스쿨 제도는 서울 사립 로스쿨의 경우 일 년 등록금만 해도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게다가 서울에 집이 있지 않은 경우는 3년 동안 1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연수원보다 로스쿨을 해서 좋아



진 게 뭔가요? 이제는 돈 없으면 판·검사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네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9.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현재 로스쿨 등록금은 사립의 경우 평균 1,800여만 원, 국립은 1,000여만 원 정도로 타 대학원에 비하여 다소 고액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장학금 지급률이 학부 및 타 대학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으로 '09~'11학년도 기준, 전체 사립 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지급률은 약 44%를 상회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서울 내 사립 로스쿨은 전액 장학금 지급률이 약 75%를 나타낸 곳도 있습니다.
- 이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많은 로스쿨생이 장학금 혜택을 통해 어느 정도 학비 부담을 덜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진출에 있어서도 로스쿨은 3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법시험 준비기간에 비하여 다소 짧다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 제도가 아직 정착단계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나, 로스쿨 제도 취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및 실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 더 나은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교원의 타교 겸임교원 임용 가능 여부

질의

-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시는 교수님께서 다음 학기에 타 대학의 겸임교원으로 출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겸임교원으로 출강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느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한지와 타교 겸임교원 출강이 가능하다면 본교 교원확보율과 타교 교원확보율에 중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겸임교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 2013년 대학정보공시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작성지침에 따르면 교원의 중복 통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절학기 이수를 통한 졸업 가능 여부

질의

- 박사과정이 6학기제로서 42학점(논문 6학점 포함) 이수하면 되는데, 이미 36학점을(코스웍) 마쳤습니다. 그러나 문제 되는 것은 이미 3학점, 6학점 합 9학점(논문지도 포함)을 신청하여 이제 남은 것은 논문 디펜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설령 논문이 통과되어도 아직 한 학기가 남아 있게 되므로 한 학기를 마치기 위하여 계절학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여름 계절학기를 통하여 한 학기에 해당하는(15주이상) 교육을 마쳤다고 하면, 해당학교가 요구하는 한 학기로 인정받아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교육과정의 운영, 등록 및 수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에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 학칙의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학대학 편입 자격

질의

- 현재 4년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학대학원 체제에 변경사항이 많아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의치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병행체제로 가고 있는 학교들이 한 가지 체제로 전환하면서 2015학년도부터 몇 년 간은 의대 총정원의 30%를 편입으로 반드시 뽑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편입은 일반편입(2학년 졸업자 → 3학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사편입(4학년 졸업자 → 3학년)을 말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5.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문의하신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병행대학의 학제전환에 따른 학사 편입학 제도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를 병행하던 대학이 2015학년도부터 의대로 학제를 전환함에 따라 일정수준의 의사 의료인력의 배출을 위해 전환한 년도부터 4년간 학사편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대 예과가 아닌 본과로 편입학 하는 개념이므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사 엄정화 제도 폐지 요청

질의

- 로스쿨 학사엄정화 제도 때문에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법학유경험자와 경쟁하여 유급, 학사경고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교육부에서 바라는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로스쿨에 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학사 엄정화 제도를 폐지하여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3년간 공부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11학년도부터 시행중인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강화방안 폐지 요구건에 대해 우리 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 시장과 이해관계자(법무부, 변협, 로펌 등)들이 로스쿨 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질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1학년도부터 25개 로스쿨이 합의하여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전국 로스쿨, 로스쿨 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도로 현 시점에서 학생의 휴학 및 중도탈락을 이유로 폐지를 논하기 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로스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로스쿨 및 로스쿨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종류 구분

질의

- 대학원 중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4.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합니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입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하며, 전문대학원의 경우 전문학위 수여가 원칙이나 학칙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운영방식 등은 해당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진학을 원하시는 해당 대학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학위 학생의 학적 관리**질의**

- 2013-2학기부터 ○○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는 ‘국외대학 학생이 ○○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뒤 한양대 학위를 받는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복수학위로 온 학생들이 교육부 지침상 ‘재학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환학생처럼 ‘외부인’으로 관리되어야 맞는지 궁금하여 민원신청 합니다.
- 또한 ‘매학기 4.1일, 10.1일 교과부에 보고하는 고등교육통계’에도 해당 학생들이 재학생으로 관리된다면 재학생으로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6.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3년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33페이지 공동학위, 복수학위 등의 기타연수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상 공동학위 복수학위 연수생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 조건**질의**



- 대학 운영에 대한 제도 운영 요령을 보니 복수학위는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외국대학과의 MOU를 체결로 복수학위를 줄 수는 없는 건지요?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에 대한 자세한 요건들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약(MOU)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거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학위의 수여는 최초 입학대학 졸업요건 충족 시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 대학 간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동명의 학위(Joint Degree) 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모두 수여가 가능합니다.

산학협동과정 학사 운영 방법

질의

- 각 대학원 및 협동과정(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새로이 설치하려고 할 때 사립학교법상 종교사학에서 운영하는 4년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산학협동과정으로 신학과에 석박사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 산학협동과정은 정원외 과정인지, 정원내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22조에서 말하는 산업체 범위에 종교단체도 산업체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에는 종교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는 협동과정의 분야에 대하여 대학원 또는 학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협동과정은 정원내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재입학 여석 판단 기준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을 보면,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던데,

- 1) 여기서 말하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이란 재입학을 하려는 학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입학을 원하는 재학생이 속하는 학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 2) 그리고 재학생수는 전체 재학생수는 아닌 것 같은데, 기준 학년도는 언제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2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학년도는 학생이 재입학후 속하게 될 학년도입니다. 재학생수에는 휴학생을 포함하지 않으며, 복학생을 더하여야 합니다.
- 매학기 편입 및 재입학생 모집계획 수립시에는 자퇴자, 미등록제적자, 성적불량제적자 등 실제 학교를 떠난 제적자수를 추정하여 재학생수를 산정하므로 실제 편입학·재입학생 모집이후에는 입학정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학생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 자격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의무석사)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3조는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박사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입학을 원하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모집요강 및 입학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박통합과정 학위 인정

질의

- 석박통합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입니다. 석박통합과정 수료에 대하여 ‘석사학위 취득’의



조건을 부여하는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나 연구소 채용조건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석박통합과정 수료를 '석사학위 이상'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학사졸업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해결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석·박사통합과정은 학문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을 연계·운영하는 제도로써 동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입학자는 박사학위과정까지 4년 이상을 수학하여야 하며, 계속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하면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여기준인 수업연한 경과 및 학점이수를 충족할때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의 일부(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등)를 생략하고 석사학위 자격을 인정하여 박사학위 해당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학위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양성·배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동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칙에 의거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35조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석사학위 과정의 인정 여부는 학칙에 따라 당해 대학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립대학내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절차

질의

- ○○대학교가 현재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중 “사회복지대학원”이 있는데 종교사학이라는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대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정원이나 운영은 동일하고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에 별도의 승인이나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학칙을 변경하여 시행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대학원을 둘 수 있습니다. 대학원

의 설치에 우리부의 승인, 인가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개정을 통해 하
실 수 있으며, 대학원의 명칭 변경 또한 정상적인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과와 한의과전문대학원 차이

질의

- 한의과 외에 한의과전문대학원이 생겼는데 왜 생겼나요?
- 1.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2. 전문대학원은 기존 한의사와 같은 자격을 부여 받는 건가요?
- 3. 관련 자료나 사이트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한의학의 과학화 및 R&D 확대를 위해 한의학 연구의료기술 개발을 담당할 특성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원으로 한의사이면서 R&D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기존 학부의 한의과와의 차이점은 대학원과정이므로 수업연한, 입학 및 졸업 요건, 취득학 위 등 학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졸업한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학부의 한의과 졸업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는 부산대 한의전(1개대학)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이 궁금하시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 없이 외국 박사학위 취득시 인정 여부

질의

- 외국박사학위 취득 인정여부에 질의 드립니다. 1. 교과부에서 대학원으로 인가 전에 신학 교 5년제(초급대학과정2년+신학대학원3년)를 수료하고 신학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학사학위가 없는데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를 통해 받은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외국 대학에서 6개월 체류하면서 수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외국박사학위 신고 하면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박사학위를 인정하여 주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5조는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에 의하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 박사학위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국대학의 정식 인가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 대해 정식 인정(인증) 기관은 없으며,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수요기관(학교 또는 기업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질의

- 대학원 내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설치,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특정학과, 일반대학원 정원 내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교과부에 신청, 심의, 허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교 대학원 자체에서 심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 석박사 통합과정의 운영 방법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학위과정 T/O와 그 적용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 사안 적용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대학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3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은 학문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을 연계·운영하는 제도로써 학교 자체적으로 학칙개정을 통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입학자는 박사학위과정까지 4년 이상을 수학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으로 모집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학적 관리 자격 기준

질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2호 규정의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외국국적 학생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입학조건을 충족하고 규정에 맞게 입학전형을 거쳐 정원내로 입학하였다면, 또한 위 학생은 외국국적 해외동포로 법무부로부터 발행한 F-4 VISA를 소지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신분이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2호의 규정의 모집정원의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학생의 신분은 외국인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9조는 대학의 정원외 입학 자격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동법 제30조 제4항은 대학원의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는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유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출입국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외국인학생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개별학교에서 장학금, 연구비 등의 수혜자격등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책과 관련한 외국인 학생의 기준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통계자료 등의 목적으로 구분되는 “외국인학생”은 그 분류 목적이 다르므로 그 정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간의 소속 변경 가능 여부

질의

1. 대학에서 학칙으로 명시를 하는 경우, 일반대학원 소속 학생을 전문대학원 소속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반대인 전문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러한 경우 정원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일반대학원 해당학과 폐지로 인하여 유사한 전공의 전문대학원으로 편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신규 입학 정원 이외의 정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의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그 설치 조건, 수여학위, 교육목표 등이 다르므로 학생들의 모집 및 정원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정원외 규정은 학교의 폐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귀교의 사례와 같이 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생의 소속변경은 정원외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로스쿨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질의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서울권 로스쿨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말 보건복지부 지침상 '대학원생은 수급자가 탈락이 되거나 직업교육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야 생계비 지원이 된다.'고 하여 상담과 면담 등으로 1학기 내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 중산층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등록금과 학사관리 엄정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개선에 대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우리 부는 로스쿨이 약속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모집과 장학금 지급 계획을 이행하도록 매년 점검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대학원생의 자활사업 조건부과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부에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9월말 복지부에 로스쿨생의 자활사업 조건부과 제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교과부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대학원생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원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학원 응시 자격 충족 여부

질의

- <입시요강의 응시자격> :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2012년 8월 졸업예정인 자 ◆ 외국에서 수학한 경우, 위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현재 학력사항> : ◆ ○○대학교 건축과 졸업(3년제) : 123학점 취득 ◆ 사이버학교에서의 21학점 취득 :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 미신고. (2012년 10월 19일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 신고)
1. 현재 학력사항으로 보았을 때 응시자격에 미달되는 것이지요?
 2.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라 함은 반드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라는 뜻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려면 대학교 졸업 및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취득제도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며, 다만 각 대학원마다 학칙으로 지원자격 등을 정하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유선 확인 결과, 민원인께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하신 내역이 없으며, 이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대학교에서 사이버강좌로 대학원학위 수여 가능 여부

질의

- 교과부에서 인가한 사이버대학(원)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에서도 일부강좌이지만, 인터넷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대학교에서도 인터넷으로만 대학원학위를 줄 수가 있나요? 줄 수 있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강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원격대학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격대학원의 한 종류인 사이버대학원의 경우 사이버대학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상 두 대학원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수업만을 통한 오프라인 특수대학원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의무전문석사학위로 박사 과정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의무전문석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전문석사학위로 박사과정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1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박사과정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박사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입학을 원하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모집요강 및 입학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동시 진학 가능 여부

질의

-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대학교 학사편입을 이용해 다른 전공을 배울 수 있는지요? 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님 같은 학교의 대학 대학원은 가능한가요?
- 그리고 이번에 초등2급 정교사 자격증과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영어)을 갖고 졸업할 예정입니다.(복수전공이용) 만약 교직이수를 실시하는 대학의 일반과(ex. 생명학과)에 학사편입으로 진학한다면 학점 관계없이 생물로 교직이수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대학원 또는 학부(재적 학교 또는 타 학교 포함)에 재학하는 것을 이중학적이라고 합니다. 이중학적에 대하여 현행 고등교육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대학이 학칙이나 관련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해당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실한 수학을 위해서 이중학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자격의 취득은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승인받은 학과에서만 취득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승인받지 않은 일반학과에 편입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생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생물교육과 또는 교직이수과정을 승인받은 생물 관련 학과에 편입하셔야 합니다.

mba 학위 취득

질의

- mba학위를 취득하면 타 대학교의 mba에 진학해도 다른 학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2.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mba학위 취득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동시행령 제43조에서 48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학위 수여의 조건,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진학을 하시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학력 허위기재 판단

질의

1.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본 교단 총회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고 담임목사의 청빙자격을 신문에 광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빙된 담임목사가 졸업한 학교가 졸업 당시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라는 조건이 되지 않아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규 대학으로 예비인가도 받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후 모 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연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1. 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라 교원의 채용에 대한 지원자격 및 학력 등의 검증은 임용권한이 있는 해당학교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해당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 등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연구과정은 평생교육 또는 계속교육 차원에서 교양증진, 직업교육 또는 연구상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 개설하는 별도의 과정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학칙에 그 목적, 대상 및 인원, 과목, 이수기간, 수업료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바,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정규 석/박사 학위과정과 혼동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 및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특별과정)를 이수한 경우는, 통상 학위 수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사용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졸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사항을 기재시 해당 대학원의 연구과정 수료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학전문대 폐지 관련

질의

- 의학전문대제도가 몇 년 간 시행되다가 의대로 대부분 전환되었습니다. 의학전문대제도를 추진한 배경과 또다시 의대로 전환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책을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2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의사양성, 기초연구능력 및 인격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 우수인재의 의대 집중 및 입시과열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학교육 과정을 일시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의과대학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 중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로 체제를 선택하기로 도입당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치전원체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연장, 군의관 부족 및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우려 등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사양성 학제가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학이 자율로 학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용 자격 요건

질의

- 4년제 대학 졸업과 2년 과정에 석사학위 받았으며,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2년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원 경력으로 석·박사과정과 중복 없이 대학 졸업 후 연구경력이 4년 되는데 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로 신입교수 채용에 응모할 자격이 되는지요. 또한 법령상 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임용자격이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2. 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12.7.22 이후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 규정 별표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로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7년, 교수는 10년의 연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자격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대학별로 그 요구 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별 채용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박사과정 수료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석·박사 재학기간에 대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으로 보아 30%에서 70%까지 경력을 인정(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대학의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으로 보아 100%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원의 채용 기준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해당대학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요청

질의

-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2년 기초의학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기본적인 복합학위체제는 기초의학(2년)-박사과정(3년)-임상의학(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미필 남자학생의 경우 군문제등으로 학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군미필 남자학생의 경우 특별히 기초임상의학과정(4년)-박사과정(3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시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복합학위 과정생의 전문연구요원 지원을 위해 통합과정의 2년을 마쳤을 경우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마친 것으로 인정 및 2+3+2과정의 4+3과정으로 전환 허용을 요청하셨습니다.
- 1.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있어, 2년을 마쳤을 경우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2.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과정 등은 학칙에 따라 대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과학자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복합학위 과정은 군복무 관련 사유일 경우 2+3+2과정에서 4+3과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환가능여부를 학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원 체제 관련 법령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로스쿨을 폐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 6년제에 관련한 법률은 법제처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것은 법률이 제정이 안 되어서 단계적으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다시 의대로 복귀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 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바꾸는 것인지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3. 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법 제5조(설치인가 등) 및 법 제40조(인가취소)를 근거하여 개별 로스쿨은 폐지가 가능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문배경 및 기초연구능력을 가진 의료인력 양성, 우수인재의 의대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다양한 의사양성 학제가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학이 자율로 학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필요성에 따라 특별법 제정 등 설치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의대 복귀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

질의

- 대학 내 문화재연구소 비정규직 임금이 최근 조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호봉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국립대학교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립대학교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소 경력에서 50%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국립대학교 박물관이 공공기관이 아닌지? 아니라면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18.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관리담당관]

-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 출자 및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립대학교는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영조물*로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조물은 국가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에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시설을 말함.
- 답변 드린 내용은 공공기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경력인정에 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소관부서에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닥터 펠로우십 제도 개선요청

질의

- 현재 글로벌 닥터 펠로우십제도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우수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회화를 잘해야 지원을 받는다는 현실로 인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영어학원, 외국 유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너무 머나먼 이상일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6.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 귀하가 제기한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젊은 대학원생에게 노벨상 수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동 사업의 목적입니다.
- 따라서 외국어 논문작성 및 평가시 영어발표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도 같은 결론임) 다만, 동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어 논문작성 및 발표평가 등에 대하여는 보완되고 대체되는 방안이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 평가지표 계산식 문의

질의

- 평가지표 계산식 문의취업률 2013학년도 평가지표 계산식 $0.6 \times ('13.6.1 \text{건보취업률} + \text{국세DB 취업률}) + 0.2 \times ('12.12.31 \text{건보취업률} + \text{예체능계 인정취업률}) + 0.2 \times ('12.6.1 \text{취업자의 유지 취업률 9월, 12월})$ 계산식 중 유지취업률(9월, 12월)은 평균값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9.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 취업률 평가지표 계산식에서 유지취업률은 2012.6.1자 건보 취업자 중에서 2012년 9월과 12월 모두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발표될 예정이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중 ‘총장직선제’ 문의

질의

-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12쪽의 “‘총장직선제 개선’ 지표는 제외하되, 지원금 조정시 반영” 및 16쪽의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금년도 지원금 전액 삭감 또는 환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지표 여부에 관해

- 1) ‘총장직선제 개선’은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입니까?

- 2) 만일 지표라면,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10쪽 및 11쪽의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지표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3) 만일 지표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금년도 지원금 전액 삭감 또는 환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16쪽의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금년도 지원금 전액 삭감 또는 환수”에 관해
- 1)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1쪽의 “교육역량강화 지원”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금년도 지원금 전액 삭감 또는 환수”가 필요합니까? 양자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2) 국립대학은 2013년도 “지원금 전액 삭감 또는 환수”라는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 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고, 그 규정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까?
 - 3) 만일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 1-1) '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장직선제 개선’이 평가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원금 조정시 반영됩니다.
- 1-2) (평가지표가 아니므로 답변 불필요)
- 1-3)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에 의거, 국가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도 이러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부교육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및 지원조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2-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학부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장직선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논공행상, 재정낭비, 개혁리더십 제한 등)은 대학의 교육·연구 분위기를 훼손하여 교육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총장직선제 개선이 대학의 교육역량강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2-2) 각 국립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정 관련 제 규정(학칙, 자체규정 등)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반하여 제·개정하는 경우 '13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전액이 삭감 또는 환수됩니다.
- 2-3) 상기 1-3)의 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전 문 대 학

● 초임호봉 책정 - 학력과 상통직 경력 산정

질의

- 국립대학 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호봉 산정에서 석·박사를 파트 타임으로 하면서 외부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호봉산정 질의입니다. 석사기간 : 1993.3~2000.2 군경력 : 1993.3~1996.6 상통직(협동조합중앙회) : 1997.1~2000.12 석사기간 2년과 군경력 3년만 인정해 주는데 석사기간 7년 중 석사 2년과 군 3년을 제외한 나머지 2년은 상통직근무경력으로 추가할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중복된 기간의 경력에 대한 호봉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면, 석사와 근무경력 중 유리한 경력 하나를 택하셔야 하며, 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전문대학 교과목 이수단위

질의

-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일반적으로 이론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 실습, 실기교과목은 3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1학점으로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의 자료를 참고하고, 수집한 결과 각 대학별로 그 내용이 천차만별인 거 같습니다.
- 일부대학은 실험, 실기교과목이라고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을 모두 1학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교과목 이수단위의 지침이 궁금합니다. 대학의 자율화를 위하여 각 대학의 학칙에 명시한 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론 15시간 이상 1학점 실기·실습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보는 것이 매우 혼동됩니다. 명확한 범위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학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 학교의 교육목표, 비전 등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학칙



에 규정·운영할 수 있으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학점당 매 학기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 실기, 실습수업의 경우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전문직업인 양성)에 맞도록 이론시간보다 2배를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열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학과의 명칭이 디자인애니메이션과에서 2014년도부터 시각미디어디자인과로 변경되어 현재의 예체능계열을 디자인계열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대학에 건의하였으나, 정보공시관련 문제로 인하여 계열명칭을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계열명칭 변경이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3.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등) 제9항 관련, ⑨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계열별 구분표(첨부파일)위 조항에 의거, 대학설립 4대 요건 중 교사 및 교원의 산정 기준이 되는 대계열의 분류는 별표 1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확보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계열 분류 범주를 벗어난 경우는 교사확보율이나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적용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정 통보

질의

- 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대학의 자율사항이면 교육부로 학과 정원 조정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3.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정원 조정 통보”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법령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은 모집단위별(학과) 입학정원을 학교규칙(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 배정(증원) 등은 대학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집단위(학과)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며,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학과의 설치 또는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학 당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원의 대기발령

질의

- 본 대학의 인사 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의 5호를 지켜야 하는지요? 제17조의2(대기발령) ① 교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징계요구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폐과 교원인 경우
 5. 총장 또는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

회신

회신일 : 2012. 7. 27.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학교법인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적법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질병휴학 처리 가능 여부

질의



- 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8조에 질병휴학은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한 치료 행위 및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2012.3 발행)로 2012년 2학기 질병휴학 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9.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규칙(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호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 자퇴 제적 유급 수료 졸업 및 징계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인 질병휴학은 위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질병휴학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항은 귀 대학에서 학칙에 따른 적정한 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다만, 학칙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귀 대학에서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본 민원 내용을 처리하거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귀 대학에서 여러 회의나 검토 등을 관련 법령 등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 일반직원 자격 제한

질의

- 지금 현재 우리대학에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촉탁직원이 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도 직원임용 제한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3.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따라서 해당학교의 정관과 규칙에 따라 시행하시되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 조교의 사학연금 가입대상 여부

질의

- 사립학교에 다니는 생계형 조교(정규직)입니다. 학교 측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공문에 의해 동의서(신설실습사무직+연봉제)를 빌미 삼아 연금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② 정관이 개정, 제정(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지침)되기 전 동의서를 돌리고 서명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③ 사학연금 강제 탈퇴 후 사측의 안내에 따라 개인적금 가입 시 사학연금과 개인적금에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8. 23.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 따라서, 조교가 사학연금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경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정관이 개정, 제정(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지침)되기 전 동의서를 돌리고 서명을 받았을 때, 법령에 위배되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개인적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으며, 사학연금의 미가입에 따른 손해액 청구는 본인 및 학교가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법인 이사 자격

질의

- 학교법인의 이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직의 고위공무원이 학교법인의 이사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지요? 모 대학의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법인의 회의록에 공무원이 이사로 되어 있고 회의록에 그 법인의 이득을 위해 관련 부처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 학과]

- 학교법인의 이사 자격은?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의 학교법인 이사 가능 여부? 가능함, 다만 비영리법인 이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검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시 학력 인정

질의

- 방통통신대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중이구요. 이수학점은 70학점 이상입니다.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싶어서 자격요건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전문대 졸업과 동일하게 되는지, 즉
1. 학사과정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전문대학 졸

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취득학점은 기준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2. 전문대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해석과 명시규정을 답변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4.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규정에 따르면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칙 등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귀하께서 이수한 학점 등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라고 하였을 경우라도 이는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 요지에 따라 자격증 취득, 타 회사 입사 시에 모집 요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자격증 담당 부서에 문의 하셔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즉,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동등학력을 소지한자 포함) 등의 경우로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라고만 지원조건을 명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니 귀하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지원조건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의 산업체위탁과정 개설 제한

질의

- 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의 산업체위탁과정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에 대하여 관련법규가 있는지 등의 질의한 결과, 이들 과를 간호학과나 방사선학과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어, 장관이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보건의료행정학과 산업체위탁과정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사료됩니다. 간호학과나 방사선학과의 경우 개인면허를 내고 의료사업을 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하여 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건의료행정학과의 경우 단지 면허를 낼 수도 없는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에 보건의료행정학과와 산업체 위탁과정 개설 제한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회 할 수 없다면 관련법규를 문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9.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 학과]

- 고등교육법 제40조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또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계획을 통해 운영한 것이 귀하가 말씀하시는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학과장 교체

질의

- 모 대학 야간 학생입니다. 학과장님이 교체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1) 학과장 교체 때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2) 학과장 교체 때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3) 절차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 학과]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

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귀하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정관,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학과장 교체시 재학생의 동의여부, 학교의 결정 등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학생의 출석 가능 여부

질의

-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학교 다니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했고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이 있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 할 것이라 생각하고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출석일수가 모자라 학점인정이 안돼서 문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민원 신청을 합니다. 대학의 성적인정조건은 한 학기 총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학교 측에서도 출석을 정확하게 해야만 성적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8.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점을 취득하려면 대구보건대학의 학칙에 따라 출석 수업 및 시험, 보고서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구보건대학의 학칙에 따른 수업일수의 1/4이상을 결석할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 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직장에 근무하는 날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한국폴리텍대학의 소관 부처

질의

-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5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인했다며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 아니라고 하네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는데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9.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하여 설립된 전문대학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 연한

질의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3년제 졸업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요즘 전공심화과정 2년제 과정이 생겨서 입학하려 했는데 다시 2년을 다해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처음 3년제 입학할 때는 졸업 후 자격증만 취득하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법이 바뀌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공심화과정 1년만으로도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2. 11. 2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1년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한 대학의 경우 2년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1년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담당부서에 민원 취지 및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 초빙교수 재임용

질의

-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초빙교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3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초빙교원은 대학과 민원인과의 임용계약관계에 따라 당연 퇴직할 수 있고, 대학 내 자체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 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대학 교원 자격 기준

질의

- 학위가 없는 고졸자도 전문대학의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용이 가능한가요? 예능(대중음악)분야의 연구 실적이 누가 봐도 탁월한 분이 있는데 고졸 출신입니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호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제 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내의 학교 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 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회신

회신일 : 2012. 12. 7.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졸 출신도 대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대학의 보육교사 실습기록 확인

질의

- 2005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2007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과 특성상 실습이 있는 학과라 2005년1학기 겨울방학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모두 제출되었고 한 달간 실습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지는 나중에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주었고 졸업 후에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서류가 잘못되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 제가 너무 늦게 자격증 신청을 하게 된 잘못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도 기간이 오래되었다 하여 실습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실습을 하지 않고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학교 측에서 저한테 학점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12. 1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대학을 졸업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당시 서류제출의 오류로 인하여 신청이 안 된 상태로 지내다가 현재에 이르러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자격증 발급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자격증 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는 보육실습 학점은 귀하가 재직당시 관련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점 부여에 대하여는 대학 측에서 확인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육교사 자격증과 관련한 문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학교법인 정관 개정

질의

1. 학교법인에서 정관개정 내용을 신고하여 아직 보고 중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세부 업무규정들을 점검 및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신고한 정관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이 승인절차가 끝난 다음에 세부 업무규정을 바꿔야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2.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형의 경우 반드시 학과에 소속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 산학협력단으로 소속할 경우 교원 T/O로 인정이 되는지요?
3. 재임용절차 이행촉구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대학이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법인이 지불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24.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은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12.12.13.자로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 따른 세부 업무규정은 정관 변경 및 우리 부 시정사항 이행 후 절차에 따라 변경하

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소속은 학과, 산학협력단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KEDI의 고등교육기관 교원기본통계조사 시에는 소속학과가 없는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되므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산학협력단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교원의 수행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를 '소속학과'로 입력해야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은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 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임용권이 법인에 있다면 소송비용은 법인에서 지급하고, 손해배상이 미지급된 임금이라면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호봉 재확정 적용 규정

질의

- ○○대학 호봉 재확정에 대한 심의과정과 심의 결과에서 규정(공무원의 민간 상통직경력 인정비율 최대 100%로 상향 및 비정규직 경력도 상통직 경력으로 인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의 자문 없이 진행되어진 회의 또한 규정 해석상 다른 견해가 있으니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27.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9호, '12.7.1)에 따라, 상통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원이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02-3704-1600)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지원 자격

질의

-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을 지원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대학 측의 답변을 듣고 최근에 인터넷원서접수를 하고 학교 측에 문의해 본 바 갑자기 교육부 방침이 바뀌어서 개인사업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수가 얼마나 많은데 배움의 길을 국가가 나서서 봉쇄할 수가 있는 건지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막다니요.

회신

회신일 : 2013. 1. 18.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 학과]

- 우리 부에서는 2013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을 각 전문대학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시행계획에 따르면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입학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에서 입학조건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과 교원 신분 정리

질의

- 학과가 폐지되어 차년도 신입생 정원을 부여받지 못한 폐과교원은 금년도에 소속을 변경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학과가 폐지되었지만 재학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소속을 유지해야 하나요? 소속을 유지하면 교원확보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1. 21.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 학과]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폐과라 함은 정원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정한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5.30 2006구합29454)이 있습니다.

● 대학 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가능 여부

질의

- 우리 대학의 정년보장교원임용과 관련하여 현재 1, 2심 무죄판결이후 대법원(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는 교원(부교수)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010년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요약)> ⇒ 의결주문 : 범죄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확정될 경우 즉시, 정년보장교원심사 절차 이행 결정.(심사일 : 2010.11.16)

회신

회신일 : 2013. 1. 21.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교원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학과장의 업무 범위와 관리 의무

질의

- 학과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학과장의 업무범위고등교육법, 학교 내부 학칙 등 모든 규정을 찾아봐도 학과장이라는 직책이 어디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2. 학과장이 되고 보니 다른 전임교수님, 겸임교수, 시간강사 분들의 수업진행에 대한 이런 저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 (1) 질문 1. 학과장은 학과 내에서 학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민법상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교무처장이나 총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나요?
 - (2) 질문 2. 아니면 교무처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대신 해당 교수, 겸임교수, 강사에게 공문으로 수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독촉공문만 보내면 민법상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1. 21.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과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인 및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전임교원의 겸직

질의

- 대학 전임교원이 급여는 대학에서만 지급받고 타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받는 조건이며 본인의 전공분야와 겸직하려는 타 기관의 업무성격이 일치하는 경우 대학전임교원이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대학 외의 타 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겸직이 가능하다면 타 기관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직위에 제한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1. 24.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준용 된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정하는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이사회(임면권이 이사회에 있으므로)의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비영리 업무에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

질의

- 2012년도에 전문대인데 간호과 일원화로 간호과가 4년제로 바뀐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타 대학에 2학년 마치고 편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의 학교에서 2학년을 마치고 일반 편입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31.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전문대학의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편입학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대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에 대한 질의

질의

- 학교법인 ○○학원의 총장과 학생복지관 및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도급공사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교묘하게 계약서 등을 불공정하게 한 결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공사계약을 학교장과 체결한 것이 무효이고 법인 이사장과 체결했어야 한다고 저희 회사가 주장하면서 위 공사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학생복지관”과 “골프연습장”에 관한 공사계약체결권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학교장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26.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건물 신·증축 등을 위한 시설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예산과목으로 모두 편성이 가능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공사비 재원이 교비회계일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학교의 장으로 합니다.

전문대학 산업체 입학서류 중 위탁교육계약서 필요 여부

질의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반에서 공부하기로 입학절차를 진행하던 중 첨부서류 중 [위탁교육계약서]가 있는데 저의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서 직장의 신분이 확인되는데 위탁교육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 학교에서는 위탁교육계약서까지의 서류구비가 교과부가 정한 서류구비의 원칙이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재직증명과 보험가입 사실 확인으로 직장인의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지는데 위탁계약서는 서류구비에서 생략하면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2. 27.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대학의 장과 산업체의 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산업체위탁교육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대학 교수 해임 절차

질의

-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요구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후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즉,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지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결을 한 바가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2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 학과]

-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임면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안은 우리부 직속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반환

질의

- 등록금과 입학금 반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당 대학 입학과에서는 입학금을 전혀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데 같은 대학 학부에선 4주 이내엔 등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규정이 다른 건지, 다르다면 같은 명칭의 대학에서 규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대학장학과]

-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반환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학자금 상환

질의

-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4학년입니다. 아파트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소득으로 인정학자금을 중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이 여의치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로 200만 원 정도 중도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에 관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다시 상환 금액을 환수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중도상환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도 상환 기간의 이자부분은 대출은행을 통해 증명 가능한 내용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 [교육부 대학장학과]

- 민원내용 검토결과 이의신청을 통해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납부했던 학자금대출상환금액에 대해 환수하게 되었으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7조에 의거 처리되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 근거 문의

질의

- 저희 집은 전세금 7천만 원이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봉은 둘 합쳐서 과세 전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며 세금 공제후의 실수령액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억울한 것은 국가장학금신청을 했는데 소득 기준 탈락이라고 합니다.
- 도대체 소득기준은 무엇인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득탈락이라고 장학금도 못 받게 생겼다고 억울해하는 딸은 보고 한숨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2학기 때도 장학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대학장학과]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미혼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 합산의 대상이 되며, 건물, 토지, 주택, 전월세, 자동차정보, 월보수(직장보험료납부자) 및 종합소득(지역보험료 납부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모든 대상에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말씀도 참고하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별적인 등록금 면제

질의

- 저는 정시로 입학 하었는데 등록금을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등록금의 25%를 면제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학교 측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수시입학 학생 전원은 면제가 되고 정시학생들은 면제가 안 된답니다. 학교 내부 방침이랍니다. 똑같은 입학생인데 단지 수시로 입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시학생들은 수시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내고 다닙니다. 수시 학생들의 성적이란가 그런 기준도 없이 수시 입학생 전원에게 면제해 주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3. [교육부 대학장학과]

- 대학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및 당해학교의 학칙에 의거 학교의 장이 책정하고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피청구 대상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질의

1. 학자금 대출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이름, 금리, 상환, 금리 인하이나 인상, 군의무 복무 기간 동안의 이자, 직업 군인 의무복무 기간 동안의 이자, 대학원 학자금)
2.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5. [교육부 대학장학과]

- 정부는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 군복무이자 내용을 추가 설명하자면 저소득계층 위주인 든든학자금 대출만 군복무중 이자가 면제되며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학자금 상환은 거치기간(이자) + 원금상환(원금+이자)나누어져 있고 원금상환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제도로 학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안내 소홀

질의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제도 신청기간이 지나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고 콜센터 1599-2000번으로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장학재단에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늦어지니 기다려달라는 말씀과 4월 초에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콜센터로 전화를 드렸더니 등록금 대출 신청은 이미 3월29일에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출 마감 전에는 마감일자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9. [교육부 대학장학과]

- 201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1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학자금대출 신청 시 이러닝 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학자금 마련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용절차는



모든 신청자가 따르는 것으로 예외로 학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1~2주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 심사는 재단심사와 대학심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재단심사는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소득심사가 진행이 되고 대학심사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내용을 소속대학에서 재단으로 업로드하면 승인 처리가 됩니다. 민원인의 경우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합격에 대한 전산처리를 늦게 하여 발생된 문제로 판단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 변경

질의

- 저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원생입니다. 2009년 1학기 대출금액을 받을 때 4년 후 졸업할 것을 예상하고 상환 시작하는 날짜 설정을 2013년 3월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학을 하게 되었고, 아직 졸업 전 상황이라 상환기한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이 당시 전산이 구비되지 않아 은행에 일부 권한을 양도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에서도 기간 변경 등 정보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학 재단 쪽에서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환기간 변경이 2009년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환 시작기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4. [교육부 대학장학과]

- 정부는 대학(교) 재학 중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에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시 보증을 서 지원했습니다. 이후 높은 이자와 저소득 가정 지원 확대 요구로 '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학자금대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및 성적 우수 장학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05-2학기 ~ 09-1학기의 은행권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전 정부에서 보증을 서 진행한 대출 건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기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 진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출의 조건 변경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작한 09-2학기 이후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품에 대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출의 상품이나 자금 조성 여건 등에 따라 조건 변경 등을 모든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도와 절차를 큰 틀에서 운영하다보니 민원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와 양해바랍니다. 주신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되며,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장애인)

질의

-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대하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했다가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 기준의 점수가 장애인의 경우는 너무 높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이 C 학점(70/100)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은 70점을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 [교육부 대학장학과]

- 2013년 국가장학금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이수학점 적용이 제외되며, C학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환경(장애인, 생계곤란자, 다자녀)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통해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교내외장학금도 있으니, 대학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적 기준 완화 방안도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계절학기 수업료의 등록금 포함 여부

질의

- 최근 대학생들의 계절 학기, 졸업 전 초과학기 수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학기 등록금과 달리 학점별로 책정되는 계절학기 및 초과학기 수업료가 ‘고등교육법’ 등에서 말하는 ‘등록금’에 포함되나요? 그래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9. [교육부 대학장학과]

- 대학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업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수 학점 및 학생수 등이 해마다 상이하여 전년 대비 인상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등록금 인상률상한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다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전문대학 학기 중 취업시 등록금 납입액

질의

- 전문대학 2, 3년제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취업 마지막 학기 때(즉 2학년 2학기) 취업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 매번 나가지 않아도 졸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를 시험 볼 때 한번만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등록금은 전액 납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등록금 전액 납부가 맞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대학장학과]

- 수업연한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48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수업연한은 정규학기로 정규학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학위의 수여의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50조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라고 명시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정규학기에는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학점을 이수 못할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수업료 반환 기준일자

질의

- 등록금의 반환 기준일자 산정과 관련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자퇴 등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해당금액을 환불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환금액이 발생하는 마지막 날이 주말 등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 학칙에는 교육법령에 의거한 수업료 반환기준표가 안내되어 있으며, 학생의 자퇴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방문서류 제출 등의 과정은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30. [교육부 대학장학과]

- 정부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어려운 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신 반환금액이 발생하는 마지막 날(30일, 60일, 90일)이 주말등과 같은 공휴일로 겹칠 경우에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시기

질의

- 가계곤란 장학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기간이 6월 초까지라는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계곤란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이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대학장학과]

- 가계곤란 교내장학금은 대학(교)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대학(교) 자체에서 예산 마련 방법과 지출을 결정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장학금 제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계곤란 교내장학금과 관련이 없으나 학교 자체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교내장학생을 선정하는 것은 학교자체의 선발기준으로 사료됩니다.

로스쿨 특별전형 장학금

질의

- ○○대 로스쿨에 특별전형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하는 절망적인 사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학기당 학점 평균이 2.3이상이어야 하는데 저처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들은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학습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경쟁해서 학점평균 2.3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2. [교육부 대학장학과]

- 대학(교)의 교내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그 중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교내장학금의 선발 규정은 대학별 자율적인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교내장학금 기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

질의



- 학교에 전화를 해보니 입학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입학일 전에 등록을 포기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을 했고 휴학을 하였기 때문에 수업료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대학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제6조제2항 관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기준은 반환사유일입니다. 학기개시일로부터 경과된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을 받게 됩니다.

※ 대학등록금 반환기준(제6조 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 대학등록금 반환기준일 산정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기준

질의

- 대학들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방침(한국장학재단)에 의거 2011학년도 등록금통계조사시스템에 등록시 교내 장학금중 일부 금액을 장학금으로 불인정한다는 지침과 또한 외부(정부)장학금과 내부장학금을 동시에 받아서 등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외부(정부)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우선 인정하고 교비장학금은 차액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의사항
 1. 장학금 산정시 등록금 초과분에 정부장학금이 우선되고 교비장학금 차상위로 계산되어 장학금 지급률에 제외되는 불합리적인 것을 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장학금 지급시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생들이 봉사와 근로 장학금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

칙 제3조2항에 포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10% 이상 학비감면이 되었는지의 판단 기준 추가사항 - 학비 감면의 대상이 되는 등록금액(감면 대상이 되는 등록금액의 범위) 산정 시 당초 등록금액에서 국가장학금, 사설 및 기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 - 단, 국가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교내 대응 투자분은 학비감면액에 포함 가능)
- ※ 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의 선정은 교내 학비감면계획 수립 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학교 측 의견 반영 ◇ (例示) A학생이 등록금이 350만원인 경우 - ① 국가장학금: 50만원, ② 지자체 사설 및 기타장학금 50만원, ③ 국가 근로 장학금(국가 지급분) :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 A학생의 등록금 범위는: 350만원 - 50만원① - 50만원② = 250만원임 따라서 등록금 범위 250만원 범위 안에서 학비감면 가능 위와 같이 국가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학금 자격 상실에 따른 구제 절차

질의

-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가면서 휴학을 하였고, 1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는데 이것이 어찌된 것인지요?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면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다는 어떠한 내용의 고지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8. 1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대학(교) 교내 장학금 사업에 대해 우리 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그 중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선발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선발은 대학별 자율적인 규정에 의해 시행하며, 안타깝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학에 따른 장학생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소속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학점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감면요구

질의



- 현재 4학년 마지막학기 복학예정입니다. 졸업학점 1학점이 남아 있는데 취업준비를 이유로 대략 2~3학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절학기를 통해서 추가학점을 수강할 시에는 학점별로 학점당 소정의 금액을 결정하여 추가적인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원리에 맞추어서 학점을 적게 듣는 학생에게는 학비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1학점이든, 15학점이든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문의하신 4학년 2학기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 방법)에 의거 당해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 건은 당해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 사안으로 해당 학교의 관계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자격 기준

질의

- 아들의 대학 2학년 2학기 등록금은 사학연금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나 생활비가 필요한 차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생활비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 되었습니다. 거절 이유가 등록금을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받으면 생활비 대출이 되고 타 기관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만 별도로 신청하는데 왜 등록금과 연계시키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에서 최대 일백만원의 생활비를 대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1학기 1개의 기관에서만 학자금 대출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타 기관 등록금 대출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동일 학기 생활비 대출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준비 중에 있으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 개발 등의 문제로 당해 학기에 대한 생활비 대출은 어려운 점, 넓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 소득심사는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신청자와 부모님의 월 소득과 재산 정보(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를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금융재산 및 부채 등에 대해

서는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소득분위 산정 시 금융재산(부채)반영에 대한 개정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제도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대학원 신설과정 평균 등록금 책정

질의

- 교육대학원 신설과정 평균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근거를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2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대학 평균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교과부 공고 제2011-549호 2012학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약대생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

질의

- 의대생, 치의대생, 한의대생, 약대생 관련 질문입니다. 이들 학생에게 국가세금 지원되는 게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현재 장학금 제도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유형2의 경우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료보건계열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국립, 사립, 공립대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노력으로 많은 학부생들에게 학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질의

- 드림 장학금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차상위나 다름없는데 제 남편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림장학금을 탄력 있게 운영해 주셔서 우리 아들같이 분명한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해외 유학생 장학제도는 2012년 대통령 드림장학금이라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총 10명 이내의 장학생에게 3.6억원의 장학금 지원중입니다. - I 유형(5명) : '12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 II 유형(5명) : '1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외대학 입학 확정(예정)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현재 해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어렵게 외국 대학원에 합격하신 상황에서 학비 마련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재정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해외 유학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질의

-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 1. 우선 자비로 결제를 해야 하는지요?
- 2. 장학금 신청이 되면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아니면 학교로 입금이 되는지요?(학교에 자비로 먼저 결제를 했을 때 가정)
- 3.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장학금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너무 늦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1월 10일까지로 기억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등의 학자

금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교과부에서는 우선 감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의 일정 따라 우선 감면되지 못하고 자비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자비로 납부된 경우에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신입생으로 신청하게 되면 학교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즉 합격 전에도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심사 중에는 합격이 되어 있어야 수혜가 가능하며 만약 합격이 늦어지게 된다면 3월에 있을 추가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록금에 대한 동결 및 인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학부생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시 장학금 규정 적용 시효

질의

- ○○대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원에 입학할 때 장학금 50% 특전을 받고 입학하였으나, 올 입학생부터 30%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학칙에는 장학금에 대한 관한 학칙이 없습니다.
- 입학 당시 장학금 50%를 받고 입학했는데, 다음 학기에 30%로 줄이면 50%를 받고 입학한 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장학금 비율이 바뀐 시점에 입학한 학생부터 30%로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2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교내 장학금은 대학(교)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대학(교) 자체에서 예산 마련 방법과 지출을 결정합니다. 대학(교) 교내 장학금 사업에 대해 우리 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그 중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선발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선발은 대학별 자율적인 규정에 의해 시행하며, 안타깝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입학당시와 장학금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의 장학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입학금 사용용도

질의



- 올해 대학 신입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등록금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쓰임새도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입학금 제도를 어떻게 이대로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입학금 금액도 우리 아이의 경우 87만원이나 하니 등록금의 25% 정도입니다.
- 반값등록금도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서 입학금을 100만원 가까이 내는 건 억울하네요. 게다가 입학금에 오리엔테이션 경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경비는 따로 또 내고 하니 정말 그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금은 동 조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지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상용됩니다.
-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등록금 인상 관리 체계 하에서 입학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대학에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 수강학점과 등록금 금액 책정

질의

- 대학교에서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통해 학기를 이수합니다. 그런데 수강신청학점에 관계없이 4학년 내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교 학칙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대학교 경리과에서 그러더군요.
-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수강하든 여섯 과목을 수강하든 상관없이 같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질의하신 수강신청(과목, 학점)과 등록금 징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징수방법)에 의거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신청학점의 과소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

질의

- 75세가 넘은 부모님과 자녀 4명을 둔 가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 연봉이 6,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우리 애들 둘 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확일적으로 정해버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와 같이 다 자녀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국민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1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우리부에서는 대학 학업 과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국가장학금 유형 1의 경우,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소득 8분위 이내 및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요건으로 하여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1분위 450만원, 2분위 270만원, 3분위 180만원, 4분위 135만원, 5분위 112.5만원, 6분위 90만원, 7분위 67.5만원, 8분위 6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득분위 조사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유관기관을 통해서 공적정보를 취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미혼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 합산의 대상이 되며, 건물, 토지, 주택, 전월세, 자동차정보, 월보수(직장보험료납부자) 및 종합소득(지역보험료 납부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분위 심사에 있어 자녀수를 반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하여 우대토록 하고 있으며 추후 셋째 자녀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 마련 필요

질의

-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8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신용불량자 되었을까? 대학생들의 대출이라면, 대학교등록금, 의식주문제 아닌가요? 이런 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것 아닙니까? 대학생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3. 1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우리 부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금융거래로써 '신용정보업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근거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업무 취급기준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학자금의 경우 대출 후 바로 상환이 개시됩니다.
- 이에 현재 지표를 심사하고 지원하므로 신용평가 기준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의 안정성, 건전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10년부터 시행한 든든학자금의 경우 대출 후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유예가 되고 소득에 따라 상환이 개시됩니다. 미래 소득을 반영하여 최소 기준(소득 7분위 이하,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70/100 이상)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 이 제도는 특성상 상환이 늦게 개시되므로 매년 많은 기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귀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 제도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금액 감면 요청

질의

-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해 연체를 하다 취업을 하여 현재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을 살리고자 대출금 탕감도 해주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학자금대출은 빠져 있는지요? 성실히 납부하는 졸업생들도 조금의 탕감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 고등교육의 학자금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에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시 보증을 서 지원했었습니다. 이후 높은 이자와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 요구로 '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매학기 상당한 기금을 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7%대의 이율을 '13년 1학기 현재 2.9%로 인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매학기 금리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있으며, 대출 이용자는 규정된 약정을 체결함으로 지원합니다.
- 민원인께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학기 학자금대

출은 시행 규정에 따르는 약정에 동의함으로써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전 대출의 부채탕감 및 금리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존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중 상환이 완료된 대출자와의 형평성 및 한정된 재원 등 학자금 대출 제도와 절차를 큰 틀에서 운영하다보니 민원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금 상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및 취업 지원

LINC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의

- 대학교 4학년 2학기인데, 학교에서 LINC 사업의 하나로 현장실습을 통한 방학기간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학기를 앞 둔 학생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지만, 모집과 선발에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학이 끝난 뒤 인턴 활동 결과 보고서와 해당 기관의 평가를 통해 해당 현장실습 학점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학기간 이후에 학점이 인정될 경우 졸업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학교 교무처에서 졸업사정과 심사를 통해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있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졸업학기를 앞둔 많은 학생들은 해당 과목의 학점을 신청하지 않고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 및 참여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대학생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현장실습은 LINC 대학 재학생이 4주 160시간 이수하시면 학점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현장실습 참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자세한 현장실습 참여방법은 해당 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질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는 산학협력단장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은 조직상으로는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나, 법적인 성격으로는 학교법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입니다. -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는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국공립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회계 처리

질의

-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접수된 기금이 일반기부금이라면 어떤 용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5. 20. [교육부 산학협력과]

- 기부금품이 산학연협력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접수 가능합니다.
-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의 발전기금을 지출함에 있어 접수한 기금이 일반기부금이라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일반관리비, 운영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 산정 기준

질의

- 산업체 경력이 7년 8개월의 경력이 있고 현재는 교과부 지원의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의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이 시작된 2009년 7월1일 시작부터 현재까지 산학협력연계망사업의 실무 총괄 전임으로 임용되었고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요즘 채용공고가 나고 있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의 실무담당자경력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1.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대학 내 산학협력연계망사업단’ 근무 경력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의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외 산업현장의 경력자를 대학으로 유입시켜 산학협력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산업체 경력이 7년 8개월이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상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 교원임면권자가 필요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경력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함에 따라(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 기준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 가능), 해당대학의 산중교수 채용목적에 부합한다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문의하신 국가지원사업 우대의 경우, 귀하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채용공고에 공지한 부분이라면 귀하의 산학협력연계망사업단 근무 경력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인정 기준

질의

- 인정 기준에 보면 초중고 또는 대학에서의 교원이나 직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내의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학교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있었으며,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형태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사업체명과 같이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6.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는 대학이외의 산학협력주체(기업, 국가기관, 연구소 등)인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 이에 대학 및 대학 내 기관(산학협력단, 각종 부설연구소, 정부예산지원의 사업단 등 포함) 근무경력은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경우 산학협력전담을 목적으로 교원을 채용하도록 하여 활용해오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존에 채용된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을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마련 이전('11.9.7)에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 승진 심사를 받는 자에 한해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입 회계 처리

질의

- 현재 우리대학은 산학협력단 산하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수입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하여 교비회계에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교비가 약 45%, 중소기업청 지원금이 약 55% 투입되어 신축을 하였습니다.(등기는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수입을 교비회계로 전출 처리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의 여부와 처리해도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1.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창업보육센터의 재원이 교비가 45%, 중기청 지원금이 55%라고 하셨는데 중기청의 지원금이 대학을 통한 지원금일 경우 대학 명의로 등기가 되어 교비회계에서 직접 수입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중기청 지원금 55%가 산단을 통한 지원금일 경우 45:55의 비율로 창업보육센터 건물 내 대학과 산단의 소유를 나누고 해당 부분의 임대를 하는 측에서 임대료를 직접 수입처리 하셔야 합니다.



국립대 기금교수 수당 제한

질의

1. 국립대 기금교수(연봉계약제)는 자녀교육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 임용계약서상에는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2. 타 국립대학 기금교수(연봉계약제)도 자녀교육수당 등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8. 23.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국립대학의 교원(교육공무원)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자녀교육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기금교원은 대학의 자체재원(기탁금, 기성회계, 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하는 교원으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닙니다.
-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대학별로 자체규정(기금교수운용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어 급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단, 국립대학의 기금교원일지라도, 대학정보공시 상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해야(최소 전임강사 수준)'하므로, 이를 고려한 보수총액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귀하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운영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 인정 기준

질의

- 최근 지역 모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 채용공고 내용 중 자격요건에서 산업체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그간 저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가운데 대학교 대학강사 등을 겸임하면서 상호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일반보험대리점(부지점장) 등에서 약 10여년 이상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서접수를 희망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의 직종이나 직업도 산업체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7.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의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서 “산업체경력”이란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하게 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여기서 의미하는 “산업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a.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b.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귀하가 문의하신 보험업의 경우 1-b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외교인(보험판매원)은 상근직원으로 보기 어려워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 상근직으로 근무하여 재직증명이 가능하다면(재직증명서 등)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대학에서 임용하고자하는 목적(분야)에 부합하는 경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령 내에 해당 법인명과 사업내용이 특정된 법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0. 13.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산촉법이 산학협력단을 규정함에 있어 민법 일부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불가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 따라서, 산학협력단을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5호마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목에 해당되어 국가기관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질의요지> 연구과제 이외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간접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
- 산학협력단 의견 - 지급 불가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가능하나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어 보상금 지급할 수 없음
- 사업책임자 의견 - 지급 가능 - 사업비에서 징수한 간접비는 이미 산학협력단의 재원이므로 지급가능하며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보조금에서 간접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산촉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시킨 것으로 간접비를 징수하였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회신일 : 2012. 11. 15.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과제가 아닌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간접비를 납부하여 산단 간접비 수익으로 계상하였을 때 보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2조 1항 4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동법 31조 1항 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어 있고, 본 건은 이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상기건과는 해당이 없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 기준에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

는 능률성과급을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학협력단의 캠프 진행 가능 여부

질의

-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및 산하기관인 자율연구소(학교기업 아님)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질의1)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캠프 진행시 학생들을 상대로 참가비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자체 캠프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캠프사업의 예산집행 근거를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4) 동 사업을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 내에 특정행정부서(평생교육원, 영재교육원 등)에서 예산집행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12. 24.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캠프운영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대학 고유의 프로그램 및 인력 등을 직접 활용하여 운영할 경우에 가능합니다.(운영위탁계약은 불가) 따라서, 운영을 위한 참가비 징수는 가능하며, 대학 내 예산집행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참고, 산촉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4호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마지막으로 동 사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구관련 개인카드 사용시 회계 처리

질의

- 1. 지금까지 개인카드 후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을 해야 하지만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개인카드도 확인 후 처리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3. 연구자에게 사전 충분히 인식시켜 주었다면 당연히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4. 세출예산 집행절차 미이행으로 집행 불가라고 하지만 국외, 국내 학술연구발표로 출장서류를 제출합니다. 5. 최신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 규정(2012. 7.25) 제9조(연구비 사용 및 집행) 3항에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 카드인 경우는 집행 불가능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례대로 학회 등에서는 개인 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정말로 연구비카드 외는 안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1. 17.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연구과제의 학회등록과 문헌구입비를 개인카드로 사용 후 지급 받는 부분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연구과제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주관기관 내부규정 등)을 검토하시고, 과제 주관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 출원 비용, 특허 소유권

질의

- 특허 출원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대학 소속 교원이 특허 출원시에 연구진흥의 결과물이므로 출원에 대한 비용을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요? (소유권은 산학협력단 명의)
 2. 특허권의 소유권을 산학단이 아닌 대학명의로 출원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1. 30.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특허 출원에 대한 지원은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명의일 경우 출원에 대한 비용을 산단 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며, 대학명의로의 출원은 교비회계에서 출원비용을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출원에 대한 비용지급 주체와 특허 소유권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질의

-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언급된 것 외에도 일반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

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예를 들어 산학단이나 학교에서 방학 중 기숙사를 이용한 수익사업(캠프, 수련회)이나, 대여료를 받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산학단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해 수익의 발생이 가능하며, 다만 산축법 제27조, 제31조와 정관상의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캠프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대학 고유의 프로그램 및 인력 등을 직접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운영위탁을 통해 산학협력단이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납니다.(산축법 제27조 1호, 4호)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학과 개설과목 수강 관련

질의

- 본교는 계약학과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여, 계약 당사자인 산업체 시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학과 개설과목은 계약학과 학생만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타학과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타학과 수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강을 허가하고 있는데, 일반대학원생이 타학과 수강신청을 통해 산업체 시설에서 진행하는 계약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취업지원과]

- 계약학과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에서 채용예정자나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한 학과이므로, 산업체 등의 채용예정자나 그 소속직원만 계약학과의 수강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계약학과 설치

질의

- 계약학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대학원에 계약학과 석·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현재 대학원에는 유사학과 및 모체학과가 없고 학부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에 계약학과 설치가 가능한지요?
2. 동일한 권역의 서로 다른 A, B, C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학과(재교육형) 설치, 운영 시, 협약서에는 참여하는 모든 산업체 대표가 각각 서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하나의 산업체가 대표성을 갖고 서명하며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담는 것으로 같음이 가능한지요?
3. 또한 2와 같은 형태로 2014년도 계약학과가 설치, 운영하다가 차학기 혹은 차차학기 신입생 선발 시에는 또 다른 D, E, F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여 같은 계약학과를 운영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4. 9. [교육부 취업지원과]

질의 1. 계약학과와 새로운 학과(학부) 설치에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대학의 유사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고 학과가 없는 경우에만 교육과정이나 담당교수 등 교육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계약학과를 신설하실 수는 있으나, 학사관리 및 담당교수요원 등 학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여건 확보가능성을 미리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학과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단체와 대학 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산업체 대표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수업체가 계약참여시, 산업체 대표자 1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업체별 대표자와 각각 체결해야 합니다.

질의 3.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와 재학생이 학위 취득이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존산업체(A, B, C)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학과를 폐지해야 하지만, 새로운 산업체(D, E, F)에서 동일한 계약학과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선취업 후진학제도 정보

질의

- ○ ○에 살고 있는데요. 공단처럼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사내대학이 있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보들은 보통 기숙사, 대출 이런 것밖에 없고 정작 알고 싶은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곳이던가 아니면 학교와 협력하여 선취업 후진학제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19. [교육부 취업지원과]

- 우리 부에서 운영 중인 후진학제도는 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계약학과,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 중소기업기술사관, 사이버대학 등이 있습니다. 동 제도들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교육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hifive.go.kr>입니다.

학교기업 설치 및 인허가

질의

- 대학교내 학교기업 설치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내에 학교기업 형태로 웨딩홀, 농축산물판매점, 일반음식점 등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 대학교 건물은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처럼 학교기업 사업장 개설시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때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교 전체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4.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1.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은 일반법으로 학교기업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마친 후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기업은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기업은 학생의 현장실습을 위해 교내에 설치하여 직접 물품이나 용역의 기획·제작, 판매 등의 경험을 쌓아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기 전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목적이 강한 제도입니다. 상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학교기업의 설치가 타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나 신고 등의 요건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종을 학교기업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교의 경우 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수익용 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이상 해당 업종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을 수익용 자산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교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기업은 산촉법 제36조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고, 특정학과 및 교육과정과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기업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① 대학에 영리사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 ② 교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 학교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요건이나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교에서 학교기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웨딩홀, 농축산물 판매점, 일반음식점’은 귀교의 단일학과인 협동조합경영과의 교육과정이나 현장실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교에서 질의하신 업종을 학교기업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사립학교법과 인허가 및 신고요건을 정한 타 법령의 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촉법 제36조에 위배되므로 학교기업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범대학 취업을 지표 이의

질의

- 교육계열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교육부의 취업률을 통한 대학 지원 삭감 등의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학과는 처음부터 교사가 되고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사 TO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통해 교사 임용고시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대학전체의 취업률에 사범대 학생들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대학의 취업률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문제로 인해 예·체능계 및 사범계 대학들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 또한 이러한 대학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결과 2012년부터는 1인 사업자(연간 1,200만원 이상) 및 프리랜서(연간 300만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취업률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 창작활동들에 대해서도 취업률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과마다의 모든 애로사항을 적용하기에는 동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아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 정책의 취지가 대학교 스스로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조기 진로 교육을 통해 대학 졸업 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특정 계열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둘 수 없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학과 운영

질의

- 계약학과 입학에 위한 협약 당시 “운영요령 제2조 제2항”의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입학하게 된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기 종료 후 계약학과 학생들의 자격확인(퇴사, 이직여부 등)을 위해 서류확인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계약학과 학생들의 자격 확인(퇴사, 이직여부 등) 결과, 증빙서류 상,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체는 계약학과 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산업체 요건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동 사업체 소속 학생은 제적처리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체 소유시설에서의 계약학과 수업 진행 가능 여부

질의

- 제가 조그마한 산업체를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모 대학과 협약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 하고자 하는데 수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코자 합니다. 수업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소유 교육시설에서 수업을 일부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채용조건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채용조건형은 권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 소유의 교육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교육기관(대학)으로 근로자의 교육을 의뢰하는 것으로서, 산업체가 계약학과와 설치주체가 되는 제도입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학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소속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사업장과 대학 간에 권역제한을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아직 재직자가 아닌 신분이므로 대학과 사



업장 간의 거리에 대한 권역제한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귀하께서 채용예정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대학에서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개설이 가능한 규모인지 여부와, 또한 지방대학교에서 수도권까지 대학교 원이 매번 근무지의 출장으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소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귀 기관에서의 운영경비 부담 등)하여 계약학과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대학교에서 계약내용 및 대학의 학교규칙(교원확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대학 당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기업 수익 장학금 지급 및 폐업시 신고 절차

질의

-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학교의 교비 및 국고를 지원받아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요?
- 그리고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되어 학교기업을 운영하였고 전용통장에 현금이 남아 있거나 학교기업 운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현금은 학교교비로 이전하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폐업시 관할 기관에 폐업신고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19.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1.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의 운영 및 현장실습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은 순이익의 사용은 교비회계(또는 산단회계)의 일부로 학교에서 자율적 사용은 가능하나, 학교기업 발전을 위한 재투자 또는 현장실습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의하신 대로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상의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시려면, 회계기간 중에는 불가하고, 회계결산 시 사용하시려는 금액을 학교회계처리규정에 따라 교비회계로 전출한 후 학교 내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학교기업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원 후 3년간의 성과활용기간 동안 학교기업을 유지·운영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기업을 폐지할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3년간 학교기업 유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지원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학교기업 폐지는 학교의 자율로 학교기업 자산을 학교기업 소속에 따라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로 전출하시면 됩니다.
3. 학교기업 폐지시, 학내 의견수렴 등 학내 절차에 따라 폐지하면 됩니다. 학교기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관련한 학칙의 수정과 영업허가 등을 받았을 경우 소재지 관할 지자

체에 폐업 및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휴학생 문제

질의

- 글로벌 MBA에 1학기 하고 휴학 중에 있으며 9월에 복학입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하고 계약학과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학과에 전화해서 저의 경우를 물어보니 복학해서 다니라고 하고 향후 진행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 즉 1년은 공단에서 수업하고 남은 1년(2학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단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나머지 1년을 수업 들으라고 하면 퇴근하고 불가능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8.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대학에 설치 운영하는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학과 학생은 일반학과 학생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대학 당국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연구보고서의 경우 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미국은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불한 연구물은 공짜로 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연구결과물을 무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 이런 논문을 읽기 위해 또 출판사에 돈을 내야한다면 이중지불이라는 논리에서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연구물을 무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하며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학술진흥과]



- 민원인께서는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물을 무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연구결과물의 원문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www.riss.kr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www.prism.go.kr
3. 기초학문자료센터 : www.krm.or.kr
4.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www.kci.go.kr
5. 공공데이터포털 : www.data.go.kr
6.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 www.ndsl.kr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규정 소급적용 효력

질의

- 연구윤리 부정행위 검증 규정의 소급 적용 효력에 대한 문의 우리 대학 A교수의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제보된 당시(2012.7월 접수) 대학에서 운용 중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개정2009년)을 적용하여, 2007년도에 심사 완료된(2007.12월) A교수의 연구윤리 논문 표절을 소급하여 검증 판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우리 대학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제보 당시 운용 중인 규정(2009년 규정)을 적용하여 A교수의 대상 논문에 대하여 숙고한 후, 자기표절에 해당된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자기표절”로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본인 논문이 심의 발간된 과거 2007년도 연구윤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학술진흥과]

- 민원인께서는 연구윤리 부정행위 검증 규정의 소급 적용 효력에 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2011.6.2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하기 위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검증시효기간을 삭제한 점 및 신법우선의 원칙 등을 감안한다면,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최초로 제보된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됩니다.

● 연구윤리 분쟁시 중재기관

질의

- 논문 출판 등 학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중재 처리해 주는 부서가 있는지요?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할지 연락처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회신

회신일 : 2013. 4. 19. [교육부 학술진흥과]

- 민원인께서는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회 등 중재처리기관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2007년 교육부 훈령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2.8.1 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관련 지침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자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로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계적 학술지 논문 투고 지원

질의

-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논문을 투고하려고 하나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6. [교육부 학술진흥과]

- 우리 부에서는 일반연구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교원,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 과제를 심사하여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위 사업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문의 : 042-869-6068)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요청

질의



-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학문은 이제 이공계에서 인문학으로 넘겨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문학의 대표 주자는 국어, 국사 등의 국학(Koreanology)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 국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 인문학은 사람됨을 가르쳐야하는 교육의 목적상, 교육에 가장 부합하는 학문입니다. 오늘날의 인성교육 강화도 여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9.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정부에서는 인문학 육성을 위해 연구자 생애주기에 맞는 개인연구, 공동연구, 발전주기에 따른 집단연구, 인문사회 연구지원 성과확산 및 국제 인력교류를 위한 국제교류 등 연구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국민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인문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징계사유의 시효

질의

-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해 “징계와 관련하여서도 연구부정행위가 저질러진 날을 징계사유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국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연구부정행위가 저질러진 날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지 말고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된 날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 또는 오해할 수도 있어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목적이며, 동 결과에 따른 대학 교원 등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 관련 규정을 별도 적용하여야 하며, 징계관련 사항은 우리 부 교원정책과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 시효기간 문의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6.2자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부정

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가 검증시간 5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폐지가 된 시점인 2011.6.2자를 기준으로 이 개정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일자 관계없이 전체기간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폐지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011-218호, 2011.6.2의 부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 이후의 건에 대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교 도서관 활용

질의

- 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교통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해 지역 대학교의 도서관을 일부라도 대출하거나 열람을 할 수 있는 방안 개선하고 확대 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연회비를 몇 만원이라도 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들이 있지만 조금의 연구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19.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 대학 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5호)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주요업무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그러나, 동시에 제7조 제3항에서는 “대학도서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도 각 대학 도서관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대학도서관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학 도서관 이용은 대학의 여건에 따라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 등 대학도서관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정한 도서관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리 부에서 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은 해당 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 대화 혹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에서도 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단과대학 교수에게 사례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동일 대학교 내 우리 단과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예, 동일대학교내 인문대학에서 사회대학 소속 교수에게 의뢰)의 교수에게 우리 대학에서 필요한 실태조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은 이 교수님께 실태조사 계획부터 설문지 작성, 설문, 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부탁하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12. 7.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붙임 전문 참조)에 따르면 정책개발에 따른 조사, 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등을 근거로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급금 지급 등의 사항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및 저작권 정책

질의

1. 한국연구재단의 <기초학문자료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귀 센터의 <서양 중세도시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보고서를 PDF의 형태로 열람하려고 했으나, 우선 DRM 형태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인 크롬에서 볼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최근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편적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유사 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서비스는 크롬과 파이어폭스에서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또한 귀 센터는 해당저작물을 CCL BY-NC-ND 2.0 KR로 배포한다고 공포하셨으나, 실제로는 DRM을 걸어 해당 저작물의 자유로운 2차 배포를 막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2. 7.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 민원인께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시스템 및 저작권 정책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 담당자에게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는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진 각종 연구성과물을 연구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CCL(Creative Commons Lisence) 정책을 도입하여 CCL조건하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연구성과물을 CCL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민원인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운동의 가치와 정신에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CCL조건하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악용하여 비영리 조건(NC)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연구성과물 원문을 다량으로 다운로드하여 상업적으로 재배포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은 국내 현실과 특히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 CCL조건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보편화될 때 까지는 그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국내에 CCL의 가치와 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를 도입하여 다량의 원문 다운로드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연구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로그인한 이용자에 한하여 인쇄를 1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에 설정된 CCL조건 범위 내에서 재배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DRM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의 브라우저를 제외한 다양한 브라우저 이용자의 원문열람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 개선계획이 이미 2012년 말에 수립되어 개선 작업이 추진 중이며 2013년 6월까지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조속히 개선작업을 완료하여 기초학문자료센터 이용자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문자료센터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도서관 종이 좌석표 대신 반납대여 가능한 칩 대체 요청

질의

-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열람기에서 나오는 작은 종지로 인해 환경 미화원께서 고생하신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환경 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대학교 도서관 종이 절약으로 등록금감면 및 교육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도서관 좌석 무인 배치기에 종이대신 서울지하철 1회용 토큰 플라스틱 칩과 유사한 것이 나오면 어떨까요? 도서관 퇴실시 플라스틱 칩 반납 장치도 있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9.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키오스크 형태의 열람실 좌석발급기의 경우, 대학에 따라 발급 확인증을 종이형태로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별도의 발급 확인증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이 형태의 발급 확인증을 사용할 경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처리 및 용지 낭비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및 일반열람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와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키오스크 형태의 좌석발급기보다는 모바일 기반의 좌석발급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운영중에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안해주신 플라스틱 칩 형태의 발급확인증도 좋은 제안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기반의 좌석발급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키오스크 형태의 좌석발급기는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또한 민원인께서 제안해주신 방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확인된 바로는 그러한 제품을 상용화한 업체나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이러한 문제는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결정할 문제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소속기관)

원격연수과정 선착순 수강신청 개선

질의

- 원격연수 신청시작 당일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서 3교시 수업을 하고 다시 접속하여 들어왔더니 이미 수강 신청할 강좌가 마감 되었습니다. 연수지명번호 다 받아놓고도 한꺼번에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강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여 참 허탈합니다. 선착순의 맹점을 개선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5. 2. [중앙교육연수원]

- 질의하신 '원격연수과정 선착순 수강신청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격연수는 연수과정에 따라 교육대상이 다양하고 대상별 수요예측이 매우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 원은 전국 최대 원격연수과정 운영 실적을 자랑할 정도로 대용량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전 과정이 무료과정이다 보니, 매월 신청기간 첫 날 신청인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 가용 인력, 콘텐츠의 과부하 등으로 제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격연수는 집합연수과정과 달리 수강신청 시 선착순 외 별도의 신청·승인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연수과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수과정 신청 첫 날 다수의 신청자가 접속하여 불편을 초래한 점 사과드리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원에서는 매 년 시스템 장비의 고도화와 시·도 교육연수원 요청 시 우리 원 원격연수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보유콘텐츠 공동활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필요시 시·도교육연수원에 우리원에 개설된 동일 과정개설도 건의해 보시거나, 참여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격연수 콘텐츠 강의진행 바 학습자 임의 조정 개선

질의

-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데 하단의 강의 진행 바를 묶어 놓으셔서 정상적인 강의 수강이 불가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기존의 타 강의들처럼 제발 풀어주세요. 콘텐츠 내용 수준에 따라 수강자가 유연하게 학습하게 해야 능률도 오를 텐데 이걸 너무 출석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있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 아마 이런 강의 유형이 이수율도 낮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하루 속히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을 존중하여 하단의 강의 진행 바를 묶음에서 해지하여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5. 10. [중앙교육연수원]

- ‘원격연수 콘텐츠 강의진행 바 학습자 임의 조정 개선’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 원격연수과정은 국가직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직무연수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원격연수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한 ‘원격연수 콘텐츠 강의 진행 바 학습자 임의조정’ 사항은 2010년 감사원(감사원 사회문화국) 지적사항으로 학습 진행 바를 임의 조정하여 학습하는 것은 편법학습이므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실적은 개인에 따라 연수 학점화, 상시학습 인정 등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일부 학습자들이 정상적인 학습시간 보다 현저히 적은 학습으로 이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도 향후 업무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증 발급

질의

- 연수과정 이수를 완료하고, 연수 이수증 발급을 하려고 해도 발급창이 안 열려요.

회신

회신일 : 2013. 6. 11. [중앙교육연수원]

- 이수증은 두 가지 종류의 Active X 파일이 설치되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위한 리포트 디자이너 파일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파일이 설치되어야 하나 사용자 환경에 따라 위 두 가지 파일이 설치 안 되어 출력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통합기술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컴퓨터 원격지원을 통하여 기술 지원 해드리겠습니다.



이수 점수 등록 요청

질의

- 저는 5월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5월에 공부한 점수는 언제 등록되는지요.(현재 ○○

시 교육청 업무토털에 등록이 안 됨) 점수등록되는 시기와 안 된다면 무슨 이유로 안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30.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우리 연수원에서는 연수이수 실적에 대한 나이스 등재프로그램을 7월에 개발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12년도 이후 원격연수 이수한 실적이 상시학습실적으로 등재 관리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2012.7.25)한 바 있으므로 소속교육청에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연수 수강**질의**

- ○○과정을 수강중입니다. 공지사항의 매뉴얼대로 앱을 설치하고 강의를 듣고자 했으나 나의 학습방을 클릭하면 '요청하신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한 번도 접속된 적이 없으며 지난 주 쯤부터 계속 접속해 봤으나 소용없어서 민원 남깁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3.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우리 연수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모바일 기기 활용 원격연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일부 과정에 대하여 11월 중에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 운영결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연수는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연수가 진행되어 종료되었습니다.
-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연수를 수강하고자 하셨으나, 오류가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오류를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연수가 종료되어 유감입니다. 우리연수원에서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연수 시범운영을 거쳐 오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연수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날짜**질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쳐야하는데 시험 날짜가 모두 토요일이더라구요. 종교적신념이 강한 딸 아이는 토요일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며 그냥 포기하려 합니다. 일년에 한번이라도 좋으니 일요일이나 다른 평일 날 시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사 시험 날짜의 일요일로 변경 요청은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년에 4회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일요일로 변경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1회에 한정하더라도 일요일로 옮길 경우 응시가 어렵게 될 사람이 토요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 5회 이상으로 시험 횟수를 늘릴 경우에는 일요일 실시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응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 중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저작권

질의

- 한국사관련 책을 출판 예정인데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들을 조금 가져와 기출문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그러는데요, 딱히 어디 문의할 곳이 없어 민원으로 신청해 봅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30.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 문제의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저작권협회로 직접 연락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기출 문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 협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02-2608-2097

환급문의

질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시험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환급이 안 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5. 7.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급 기간은 결제 방식 등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02-500-831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장 증설

질의

-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 실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는 수험자입니다. 시험을 치르다보니 불편함을 느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가로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우로 다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 현재 한국사시험은 부산1, 부산2로 권역이 나뉘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동·서로 너무 극과 극으로 분할되어 있어 수험생이 시험 치러 가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조금만 더 지역적인 모양이나 교통편을 고려하여 서부, 중부, 동부로 시험장을 나눠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편하고 즐겁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조금만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19. [국사편찬위원회]

- 고사장의 임의 배정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미리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학교 혹은 학원 등에서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 잘 아는 응시생들끼리 동일 고사실에서 배정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시험 보는 것과는 달리 부정행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인 문제인데, 최종 응시 인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사실을 미리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즉 원서 접수 시 고사장 선택이 가능하려면 미리 고사장을 섭외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 응시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사실을 얼마나 빌려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최종 응시 인원을 확인한 후 그에 맞게 고사실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원서 접수 시 고사실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는 임의 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권역 세분화 등 추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고사실 배정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사실 배정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UCC 관련 저작권

질의

- 독도 관련 우리역사 바로알기 UCC 대회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캡처한 사진을 UCC에 추가 하려고 하는데 국사편찬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독도의 지형과 경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 또한 문화적 자부심 고취를 위한 교내 UCC 대회입니다. 캡처 사진을 UCC 제작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3. [국사편찬위원회]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만 확실하게 밝힌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학습 목적이기 때문에 출처만 분명하게 표기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외 한국인 유학생(대학이상) 통계

질의

- 국외 한국인 유학생(대학이상) 통계 '08년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대학이상) 통계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도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과정별/국가별로 잘 정리되어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1. [국립국제교육원]

- 유학생 통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유학 및 교원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부 통계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파견

질의

- 저는 국비유학생에 관심 있는 대학교 졸업예정자입니다. 국비유학생 파견모집에 보면 졸업

자(학위취득자)를 지원자격으로 하는데 예외규정에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 말에 대해 대학교 측에 문의해 봤으나 자신들은 잘 모르겠으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의 상황을 설명 드리면, 4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교양 한 과목 3학점이 모자라 졸업하지 못한 졸업유예자입니다(9학기 대상자) 졸업논문 및 전공과목 등은 모두 다 패스했지만 교양 한 과목 때문에 이번학기 2013년도 1학기 때 교양 한 과목을 듣고 있으며(9학기) 이 과목이 성적인정 되면 이번 학기에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물론 이 과목이 F가 나온다던가 하면 학위는 못 받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위를 취득하게 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국립국제교육원]

- 국비유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의 전략적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글로벌 인적자원 선발 및 육성- 유학 선호도가 낮은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학문의 균형 발전 도모-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유학기회 제 공국비유학생 선발 자격은 국외유학의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제21조(응시자격)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전 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인 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국비유학생 선발 자격에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이 상이여야 합니다.
- 이때 졸업예정자는 8학기를 다 마치고 140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로 졸업만 남겨둔 사람입니다. 성적사정시 8학기성적 모두를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 ○ ○ 님은 성적(3학점부족)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학을 가시려고 하다면, 유학 준비를 하시면서 외국어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시고, 내년에 정식으로 자기수학계획서와 대외활동실적서를 더 충실히 준비하셔서 지원하세요. 국비유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을 보니 보통 2~3년을 준비하셨다고 들 하세요.



공무원 신분으로 국비유학생에 선발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지원 유무

질의



- 국외훈련에 관심 있는 공무원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2013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예를 들면 중국유학의 경우 연간 USD 14,610의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의 경우, 체제비로 재외근무수당 5급 5등급의 85%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국비유학생에 공무원이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족이 함께 외국에 나갈 경우에 생활비 등 체제를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8. [국립국제교육원]

- 국비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국비유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의 전략적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글로벌 인적자원 선발 및 육성-유학 선호도가 낮은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학문의 균형 발전 도모- 저소득층 특별전형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유학기회 제공국비유학생 지원 자격은 공고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은 해외 우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을 수학하시는 “학위과정 장학제도”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과는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국내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대상이므로 공고된 장학금(학비+생활비) 이외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대 졸업생의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한국방송통신대도 마찬가지로 해외대학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인가요? 전문대졸생인데 대학원까지 진학을 고려하며 학사학위부터 공부할 생각이라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4. 22. [국립국제교육원]

- 문의하신 ‘방송통신대 졸업하여도 지원가능한가요?’에 대해 본원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생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학국가별로 본원에서 제시하는 유학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준에 의한 공정한 선발을 통하여 얼마든지 원하는 국가에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래 사이트에서 유학하려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유학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하는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홈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 → 알림 소식 → 공지사항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모집 공고 또한, 다른 질문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졸학생 유학 장학금 제도

질의

○ 고졸 학생에 대한 유학 장학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4. 29. [국립국제교육원]

1.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현재 고3)이나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2. 조건 : 고3 또는 졸업생 → 학교장 추천, 검정고시합격생 →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야 함.
3. 특혜 : 예비교육과정 1년, 일본에서의 대학생활 4년 총 5년 동안 국비장학생 혜택을 받음 (전액무료)
4. 시험 : 필기시험(영어 수학 물리 화학) 및 면접시험 통과자
5. 구체적인 사항은 본원의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 자료실, 공지사항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학 중퇴자 지원 장학제도

질의

○ 대학 중퇴자입니다. 제가 정말 외국에서 공부를 더하고 싶은데 집안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의 상황에 맞는 장학제도가 있을까요?(국내장학이라도)

회신

회신일 : 2013. 4. 30. [국립국제교육원]

○ 고졸이나 대학 중퇴자가 응모할 수 있는 장학제도는

1. 일본 문부성 전수학교 장학생(일본어 필수)
2. 호주 직업훈련 장학생(영어 필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국내 장학제도는 아직 없지만, 기술교육대학교 등과 같이 장학금이 많은 대학에 응시한다면 교내 장학금을 받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며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외국 유학에 대한 선발 일정이나 자격은 본원의 모집 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원 홈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 → 알림 소식 → 공지사항 → 외국정부 초청장학생 모집 공고

정부 국비장학생 선발 지원 분야 질의

질의

- 국비 유학생 지원 가능 분야에서 융합분야-고부가서비스에서 글로벌헬스, 글로벌교육, 녹색금융, MICE 등만으로 예시가 되어있는데, 커뮤니케이션(media, culture and visual communication), visual art, art management, 또는 film, visual management와 같은 예술 융합분야 혹은 사회과학융합분야의 경우에는 지원 학과 대상이 아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4. 30. [국립국제교육원]

- 국비유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의 전략적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글로벌 인적자원 선발 및 육성 - 유학 선호도가 낮은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학문의 균형 발전 도모 -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유학기회 제공
국비유학은 에 근거하여 전공분야와 파견 국가를 매년 결정합니다.
- “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파견 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제18조)” 융합연구분야의 고부가서비스산업의 글로벌헬스, 글로벌교육 등은 분야예시일 뿐입니다.
- 커뮤니케이션도 세부전공으로 다양하므로 visual art나 art management가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학문분야라고 판단되시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시 학점 인정 여부

질의

-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데 캐나다의 학교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와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들으면 학점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매결연이면 교환학생으로 오는 건지 그래서 학점도 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국말만 배워서 가는 건지 알고 싶네요?

회신

회신일 : 2013. 5. 8. [국립국제교육원]

- 먼저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격은 국내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 소속 대학의 대학생으로 현재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지 않는 외국 국적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1. 먼저 국내의 대학 중에서 자격이 있는 대학을 “우수교환 학생 지원 사업 수학대학”으로 선정하고,
 2. 수학대학으로 선정이 된 대학은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저희 원으로 추천합니다.
 3. 그 후 저희 원에서는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우수 교환학생을 선발하여, 월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희 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외국의 대학생이 우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우선 한국의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한국의 대학이 저희 원에 수학대학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신청을 한 후 수학대학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우선 소속 대학(A대학)에 어느 한국학교(B대학)와 협정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고, 2014년도에 B대학이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 수학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A학교를 통하여 B대학의 우수교환학생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A학교의 해당부서에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지원하시더라도 모두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우수 및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선발을 거치게 됩니다.
- 2013년도 우수 교환학생은 이미 선발 완료되었으며, 2014년도 선발 계획은 아직 미정이고, 올해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직 미정)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은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에 관한 문의는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지원팀 이정은 주무관(02-3668-1380)으로 하시면 됩니다.
- 다른 하나는 저희 원에서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외국에서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미친 후 공관장을 추천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학점 인정은 아직 안된다고 합니다.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의 한국어 수강에 대한 문의는 041)850-6030~4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자료 다운로드

질의



- 중국에서 한국어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TOPIK 자료를 찾던 중 이곳에 오면 기출문제/모의고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던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 6. 18. [국립국제교육원]

- TOPIK 기출문제/모의시험 사항 안내입니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출문제 관련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 우측 상단의 정보마당에 마우스를 대시면 기출문제 다운로드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듣기평가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모의시험 관련 TOPIK 학습지원시스템(www.studytopik.go.kr)로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모의고사, 급수 진단 등 내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접속 시 혹시 이미지파일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다운로드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자격

질의

-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은 나중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꼭 해외에 있을 때 정부가 초청해서 들어오는 것만이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인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9. [국립국제교육원]

-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전액 장학금(full scholarship) : 학부장학생 프로그램, 대학원장학생 프로그램 - 장학금 : 생활비, 왕복항공료, 한국어연수비, 의료보험비 등 - 지원기간 : 학부 - 4년, 석사 - 2년, 박사 - 3년 (*이외에 사전 한국어연수 1년을 추가 지원합니다) - 신청시기 : 학부 - 9월~10월, 석사, 박사 - 3월~4월 - 신청경로 : 학부 -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 석사, 박사 -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대학 - 참고사이트 : www.niied.go.kr __ (English version) __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 NOTICE
 2. 일부 장학금(partial scholarship) : 자비유학생 프로그램(학부과정) - 장학금 : 생활비 50만원, 학업진로지도 - 신청시기 : 2월~3월 - 신청경로 : 한국대학 - 참고 사이트 : www.gks.go.kr 특히 신청경로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정부초청 학부장학생 프로그램은 반드시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지원해야 하나, 대학원장학생 프로그램과 자비유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한국대사관 이외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재학하는 대학이 자비 유학생 프로그램 참여 대학인 경우, 자비 유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모두 한국 내 정규대학에 등록하여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D-2비자로 유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만, 어학연수과정으로 재학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 국비장학생 수혜 전공 문의

질의

- 국비유학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7. 25.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선발과건은 지원 자격부터 선발방법까지 정해져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영역과 선발인원은 매년 공고를 통해 공고되며, 올해를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선발분야의 지역연구, 기초학문연구, 융합연구분야는 세부전공을 정하여 세부전공자만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니오라, 본인이 융합연구 혹은 기초학문연구에 본인이 희망하는 유학전공이 포함된다고 생각되시면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본적인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은
 1. 국내대학 4년제 졸업자이며 전체학점이 100점만 점 중 80점 이상인 자
 2. 공인외국어성적을 갖춘 자
 3.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
 4. 전공 관련 대외활동실적 및 수학계획서를 작성한 자에 한합니다.
- 이상을 조건을 갖추시어 2013년도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선발공고이후 국비유학생에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부 국비유학 서류 확인대조필

질의

- 한국정부 국비유학 서류의 확인대조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접수를 할 때 외국어 및 기타 자격증을 제출할 경우 출신학교에서 확인대조필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읽었는데 확인받은 날짜는 공고가 나고 난 이후부터 확인받은 것만 인정을 받는가요?

2. 학교가 멀어 가기 힘든데 학교 외에 기타 기관(ex. 동사무소)에서 확인대조필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25. [국립국제교육원]

1. 공고가 나오고 나면 전국대학으로 협조공문이 가게 됩니다. 즉, 원본대조필은 반드시 출신대학의 총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한번은 학교를 직접 가시기 때문에 이때, 해당출신대학의 담당자님이 자격증 및 공인외국어성적 등의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출신대학의 총장님의 추천서 (직인)를 받으러 학교방문을 하실 때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2. 동사무소 등은 해당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관기관과 권한이 없어서 원본대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아프리카개발은행 인턴십 수행 지원금 지원 여부

질의

- 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6개월에서 1년간 아프리카개발은행(튀니지 소재)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급이며, 대학원수료상태인 관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획재정부 포함)을 찾지 못하여, 전액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가 인턴십 수행 및 생활지원금을 제공받을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8. 2. [국립국제교육원]

- 아프리카개발은행 무급인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인턴사업 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정부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기구에서의 인턴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국제전문여성인턴”이 있으며, 지원 자격은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여성이면 참가가 가능하고, 해당 인턴모집공고후 소정의 지원 절차에 따라 선발 및 희망 국제기구에서의 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부에서는 국제기구 인턴근무 희망자에 대한 개별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교포학생 일시귀국시 학교수업 허용

질의

- 미국 여름방학 기간(6월~9월)동안 해마다 한국 와서 한 달 남짓 한국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면서 한국말, 전통, 한국문화, 정서 등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사실 한국에 오면 말도 서툴고 학교생활도 익숙지 못해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어린학생한명 한명이 모여 한국인의 자부심도 갖고 홍보도 한다고 확신합니다.
- 그러나 듣기론 외국 교포학생들의 한시적 수업이(여름방학) 불가할지도 모른다고 하기에 꼭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9. [국립국제교육원]

1. “해외교포학생 일시귀국시 학교수업허용”에 관련된 사항은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교포학생이 임시 거주하게 될 지역의 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청강생 형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하계 방학기 간동안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등 방학 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본원에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1년간의 장기교육과정 및 3개월간의 단기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본원의 홈 페이지 혹은, 모집을 담당하고 있는 재외공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원 홈 페이지 www.niied.go.kr → 재외동포교육 → 모국수학교육과정

일본공대 국비유학생 선발 관련

질의

1. 서울소재 여고를 금년에 졸업하는 자녀가 본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학교장 추천 선발기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졸업하는 학교 학교장 추천은 인원이 제한되나요, 또 내신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하나요, 기 졸업생은 졸업당시 내신성적으로 아니면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지원 자격 : 2010년도는 수시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로 되어있는데 2013년도는 어떤지요, 정확한 지원 자격을 알려주세요. 자녀가 1994.3. 출생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29. [국립국제교육원]

1.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이하 한일이공계로 약칭) 선발시험 응시자 추천은 시도교육청 별로 정한 추천기준에 따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한 추천 인원 내에서 추천을 합니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원자 수가 적음에 따라 추천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나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도 1994년 3월 1일 이후 출생 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추천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시도교육청 추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동일할 것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추천인원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2. 한일이공계에 최종 합격하고 나서 국내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수시와 정시 모두 포함) 한 일이공계를 포기하게 되면 차후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동 선발 시험을 포함하여 그 밖의 국비 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 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복무 관련 질의

질의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휴가처리 및 계약기간 만료일 전 출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4. [국립국제교육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급휴가는 귀교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간 상호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고용계약서 14조(유급휴가)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또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합의에 의해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 사용한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가(귀교 원어민의 경우 13일)는 상호 협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유학생 자격

질의

- 국비유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1. 국비유학생의 응시자격을 전부 갖추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2. 저의 대학교에서 복수학위제로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3학년이에요. 그래서 졸업예정도 아닌데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3. 국비 유학생이라는 것은 4학년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학교 3+2같은 복수학위를 하려는 사람들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15. [국립국제교육원]

- 국비유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의 전략적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글로벌 인적자원 선발 및 육성- 유학 선호도가 낮은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학문의 균형 발전 도모-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유학기회 제공 국비유학의 응시자격은 (대통령령) 제20조 1항에)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본 문부성 연구장학생 관련 문의**질의**

- 올 해 있을 문부성 연구장학생에 지원하고 싶은데요. 수습이라는 신분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2013년 1월 17일 수습 발령, 11개월 수습 예상)
1. 응시원서 양식의 '현재의 신분' 항목에 공무원으로 체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된 경우 상사의 추천장이 필수적인지요. 저의 경우 여기서의 상사는 직속 상사를 의미하나요?
 3.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 유학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를 면접 서류 마감이전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의 증빙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3. 15. [국립국제교육원]

1. 응시원서 양식의 '현재의 신분' 항목에 공무원으로 체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 공무원에 체크해야 합니다.
2. 취업된 경우 상사의 추천장이 필수적인지요. 저의 경우 여기서의 상사는 직속 상사를 의미하나요? - 예, 추천이 필수적이며 상사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3.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 유학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를 면접 서류 마감이전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증빙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응시 원서에 기관장의 직인을 받으면 됩니다.



유학시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드리고 추천을 받으면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 일정은 본원의 모집 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원 홈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 → 알림 소식 → 공지사항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모집 공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문경고 의결 가능 여부

질의

-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견책으로 징계할 사항에 대해 감경하여 ‘불문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 종류만 정하고 있을 뿐 불문경고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불문경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6.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는 징계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정관 및 인사 관련 규정에 불문경고의 징계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불문경고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여서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볼 수 없어 우리 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원의 파면 및 해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절차

질의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파면 및 해임은 교원의 임면사항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의 장의 제청, 법인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한 징계절차는 징계의결 요구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파면 및 해임은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징계의결의 요구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의 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사립

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 또한,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근무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사립학교의 징계절차 문의

질의

1. 사립학교에서 징계의결 후 임면권자에게 통고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2. 징계처분 시작일을 징계의결서에 표기를 꼭 해야 되나요?
3.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한 징계의 종류와 양이 파면 또는 해임이 아닐 경우에도 교원인사위원회 및 학교의 장의 제청이 꼭 필요한가요?
4. 임면권자(이사장)가 징계의결 요구 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꼭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나요? 임면권자 직권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도 무방한가요?
5. 임면권자(이사장)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결과를 통고 받고 이를 다시 이사회에 꼭 안건으로 다루고 당사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7.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계의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징계자의 불확정한 신분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사립학교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후 지체 없이 임면권자에게 통고를 하여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징계의결서에는 통상적으로 징계처분 시작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계의 종류와 양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6조에 따르면, 임면권자가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



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및 53조의3에 따르면 파면·해임은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의 장의 제청,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나, 파면·해임이 아닌 징계의 의결 요구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면권자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당초 배제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징계위원회에서 배제징계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하여서 가능하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임면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징계위원회로부터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 위원의 공석에 따른 징계절차 문의

질의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총 7명입니다. 개회정족수는 재적위원의 2/3이상 참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입니다.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에 위원 2명의 사직 및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7인 중 2인이 사직 혹은 정년퇴직으로 인해 공석이 되지만, 나머지 5인의 징계위원의 출석과 의결로 기존 의결정족수(7인 중 2/3 출석, 과반수 찬성, 즉 당초 의결정족수 기준)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미 진술청취를 마친 다른 5인의 위원들에 의해 징계의결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건부 재임용 문의

질의

-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저희 대학에는 조건부 재임용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17조 【조건부재임용】 ①총장은 실적평가 또는 교원심사평정결과가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여 재임용이 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 재임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재임용 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최소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교원업적평가가 재정보정되었고 총 6년의 평가 중 5년의 평가는 재임용 충족 점수가 되었는데 1년의 평가에서 재임용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조건부 재임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 재임용의 형태를 취하였고, 1년 동안 동일 직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된 후 다시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때 4년간의 교수업적평가를 1년 내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1년에 관하여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부족한 점수에 대하여 충족시(2년치 평균) 다시 재임용 6년의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재임용이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조건부 재임용 처분 역시 기본적으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이 거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건부 재임용을 통해 대상 교원에 대하여 1년간 퇴직을 유예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3. 10. 2008구합34382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조건부 재임용 처분 자체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아 소청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조건부 재임용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재임용 거부(조건부 재임용)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방법

질의

-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되어 해당교원을 직위해제 및 징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장이 학교법인에 직위해제 및 징계 제청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교원이 구속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판결문을 기초로 서면심사하여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반드시 진술을 들어야한다면 구치소에 찾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현재 형사사건으로 교원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에 있어서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에 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5항에서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교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교원이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임 배제 처분의 교원소청 심사 청구 등의 가능 여부

질의

- 공립학교 교원으로서 학교로부터 담임배제(담임미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교원소청심사 및 고충심사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행정소송 가능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1.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담임배정 여부는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참조)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답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담임 배제 여부에 대한 고충심사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공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하시려면 먼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를 하신 후, 그에 대한 불복을 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중앙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충심사 결정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청심사 결정과 달리 행정소송은 하실 수 없습니다.

교원징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른 재징계 절차 문의

질의

1. 사립학교 교원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파면되었으나, 민사소송(파면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심판결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재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이때 '원처분의 징계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판결 이후 복직 절차와 재징계 요구를 하기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3. 법인 이사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직위 해제'를 명할 수 있나요? 또 그렇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유설명서'를 교부하면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를 동시에 교부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1.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처분의 징계사유와 더불어 판결 선고 이후의 새로운 징계사유에 관해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새로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모든 절차(배제 징계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제청을 통한 이사회 의결 등)를 거치고, 추가된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한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2.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 처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후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절차(배제징계를 징계의결 요구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의 장의 제청을 통한 이사회 의결 등)를 거친 후, 임면권자(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면, 징계의결이 요구 중 이어야 하므로, 먼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 후에 위 조항을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징계의결 요구 사유설명서 외에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당연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 계속 진행 가능 여부 문의**질의**

- 교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퇴직 사유(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2.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현재 피징계자인 교원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당연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퇴직 사



유가 발생한 때 면직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소멸하게 되므로 더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보 처분의 교원소청 심사 대상 여부

질의

1. 행정 내신 처분을 받아서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행정소송을 하면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 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전보 처분은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 등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은 생활상 불이익이 교육공무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서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공립교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교원소청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교사의 교원소청심사 대상 여부

질의

1. 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교사들도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2. 사립유치원 등에서 특별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에도 소청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과 유치원 강사(「유아교육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임용된 강사) 등은 교원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각급학교의 ‘교원’은 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았을 경우 소청청구가 가능하고, 소청이 접수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정당한 절차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 통보합니다. 참고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4조).

특히, 파면·해임은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의 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각급학교 ‘교원’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총괄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박준모
김용호

기획 및 편집

사무관
교육연구사
공업주사

김규호
이정우
안재준

인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 신청 ⇒ 질의회신사례집)

또한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부 민원 콜센터
(☎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